

#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2016



문화체육관광부





## 【 안 내 】

본 매뉴얼은 유원시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법령, 업무절차, 안전관리, 민원사례, 서식, 참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유원시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유원시설업자의 유원시설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발간한 것입니다.



# 차 례

## I.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1.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관련 용어 .....	3
가. 유원시설업의 정의 .....	3
1) 국내 유원시설업의 정의 .....	3
2) 해외 유원시설업의 정의 .....	5
나. 관련 용어 .....	6
2. 유원시설업 현황 및 통계 .....	8
가. 국내 유원시설업 현황 .....	8
나. 국내 유원시설업 통계 .....	11
1) 연도별 유원시설업체 수 .....	11
2) 자본금별 사업체 수 .....	12
3) 유원시설업체별 조직형태 .....	13
4) 연간 매출액 및 세부 항목별 매출액 .....	14
5) 유원시설업체별 이용객 수 .....	16
6)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에 따른 통계 .....	17
다. 해외 유원시설업 현황 .....	18

## II.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1.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	23
가. 개요 .....	23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	26

다. 기타유원시설업 .....	30
라. 기타유원시설업관련 키즈카페 .....	33
<b>2. 유원시설업 세부 업무 체계 .....</b>	<b>41</b>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41
1) 유원시설업 종류 .....	41
2) 설비 및 설비기준 .....	41
나. 허가·변경허가·조건부허가 .....	43
1) 허가 .....	43
2) 변경허가 .....	47
3) 조건부 영업허가 .....	49
다. 신고·변경신고 .....	53
1) 신고 .....	53
2) 변경신고 .....	56
라. 관광사업의 양수 .....	58
1) 지위 승계 .....	58
2) 처분 또는 명령의 승계 .....	60
3) 휴업 및 폐업 고지 .....	61
마. 보험가입 등 .....	62
바. 타인경영 금지 .....	63
사.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위생 기준 .....	64
1)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64
2) 안전요원 .....	67

아.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 .....	69
1) 영업질서 유지 .....	69
2) 안전관리 .....	69
3) 안전교육 .....	70
4) 보고 및 사후조치 .....	71
5) 상호 표시 .....	71
자.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	72
1) 유원시설업자 등의 의무 .....	72
2)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72
3) 안전성검사 시기 .....	72
4) 안전성검사 방법 .....	73
5)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	74
6)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	75
7) 검사종류 .....	76
가) 허가전검사 .....	76
나) 정기검사 .....	78
다) 재검사 .....	79
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	81
8) 검사기준 .....	83
가) 허가전 안전성검사 .....	83
나) 정기검사(재검사) .....	85
9) 검사대상 .....	86
차.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	92
1) 안전관리자 자격 .....	92
2)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93
3) 안전관리자의 임무 .....	93
4)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	94
5) 안전관리자 선임 .....	95



2. 유원시설업 입지 관련 법령 .....	121
가. 개요 .....	12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124
다. 유원시설업 운영 가능한 건축물 및 용도지역 .....	128
1) 유원시설업 입지지역 .....	128
2) 유기시설의 공작물축조 신고 .....	130
라. 유원지 .....	133
1) 정의(제56조) .....	133
2) 유원지 결정기준(제57조) .....	133
3)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제58조 제1항) .....	134
4) 유원지 내 설치물 및 설치기준(제58조 제2~5항) .....	134
5) 유원지 개발 절차 .....	137
6) 유원지 관련 해석 .....	139
마. 관광지와 관광단지 .....	141
1) 정의(법 제2조) .....	141
2) 시설기준(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및 관련[별표 18]) .....	141
3) 설치 가능 시설(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143
바. 도시공원 .....	144
1) 정의(법 제2조) .....	144
2) 도시공원 계획 및 설치 .....	144
3) 도시공원에서의 유원시설업 .....	145
사.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148
1) 정의 .....	148
2) 사업계획 승인 .....	149
3) 사업계획 승인 기준(시행령 제13조) .....	150
아. 지구단위계획 .....	151
1) 지구단위계획 .....	151
2) 지구단위계획구역 .....	152

## IV. 기타 사항

1. 사행성 기구 .....	159
가. 사행성 기구 운영 현황 .....	159
1) ‘레이싱나이트’ 사례 .....	159
2) ‘테크니컬피싱’ 사례 .....	164
나. 사행성 기구 신청시 대처 .....	166
2. 안전사고 .....	167
가. 안전사고 유형 .....	167
나. 안전사고 현황 .....	168
다. 안전사고 통계 .....	169
3. 유원시설업에서 푸드트럭 운영 .....	171
4. 코드 아담제도(어린이 실종예방) .....	175
5. 해외 유원시설관련 동향 .....	179
가. 해외 유기기구 현황 .....	179
나. 해외 유원시설관련 표준 동향 .....	180

## V. 민원사례

1.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의 유형(FAQ) .....	185
2. 민원사례 .....	192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192
1) 수영장업에 대한 유원시설업 허가 여부 .....	192



2) 기타유원시설업에서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추가 .....	193
3) 유기사설 폐기에 대한 변경허가신청 관련 문의 .....	194
4) 무료 주민대상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허가 여부 .....	195
5) 유원시설 영업허가 전 사람 탑승 가능 여부 .....	196
6) 모노레일 허가관련 .....	197
7) 한시적 영업 후 영업재개시 절차 .....	198
나. 신고 및 변경신고 .....	199
1)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199
2) 야영업장내 비대상 유기기구 신고 여부 .....	200
다. 유기사설·유기기구 해당 여부 .....	201
◎ 일반 유기사설·유기기구 .....	201
1) 공중하강체험 .....	201
2) 인공암벽, 사계절 썰매장 .....	202
3) 전동레일바이크 .....	203
4) 저수지의 오리배 .....	204
5) 미니바이킹 이동식 영업 .....	205
6) 행글라이더 체험장, 4륜 오토바이 .....	206
7) 매직스윙 놀이기구 .....	207
8) 방탈출 게임시설 .....	208
9) 주드라이브 .....	209
10) 4D 체험시설 .....	210
11) 로프웨이와 레일웨이 혼합 이동기구 .....	211
12) 스크린승마 .....	212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	213
1) 수영장 .....	213
2) 야외 간이물놀이 시설 .....	214

3) 회사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 .....	215
4) 시티슬라이드 .....	216
라.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 .....	217
1) 키즈카페 운동시설지역에 설치 가능여부 .....	217
2) 키즈카페 건축물 용도 .....	218
3)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어린이놀이시설과 중복 .....	219
4) 문화및집회시설에 키즈카페 설치 가능여부 .....	220
5) 키즈카페 본점과 지점별 신고 .....	221
6) 키즈카페내 검사대상 유기기구 있는 경우 .....	222
마.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223
1) 유원시설업장의 풍속계 .....	223
2) 실내 유원시설업 다른 업과의 구획 .....	224
3)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225
5) 휴식시설 설치 해석 .....	226
6) 의무실 약품 사용 .....	227
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	228
1) 안전사고 보고 및 조치 .....	228
2)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권한 유무 .....	229
3) 안전요원 배치 .....	230
사.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	231
1) 「국토계획법」상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 .....	231
2)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가능여부 .....	232
3) 자연녹지지역 내 ‘배터리카’, ‘두더지’ .....	233
4) 위락시설에 유기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34
아. 기타 .....	235

1) 행정처분 차수 적용 .....	235
2) 공매로 인한 유원시설업 소유자 변경 .....	236
3) 유원시설업의 타인 경영 .....	237
4)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수 .....	238
5) 수륙양용선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 .....	239
6) 휴업 중 보험 가입 .....	240
7) 놀이형 보트타기 안전·위생기준 적용 여부 .....	241
8) 결격사유 조회 및 미신고 폐업 .....	242
9) 양수(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승계여부 .....	243
10) 관광사업자의 영업보증금 예치 .....	244

## VI. 부록

1.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의 유원시설업 규정 .....	247
2. 법정서식 .....	301
[서식 1]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303
[서식 2]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305
[서식 3] 유원시설업 허가증·조건부 영업허가증 .....	306
[서식 4]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 .....	308
[서식 5]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309
[서식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310
[서식 7] 유원시설업 신고증 .....	311
[서식 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13
[서식 9]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	314
[서식 10]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	316
[서식 1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317
[서식 12]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	319
[서식 13]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신청서 .....	320

[서식 14]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321
[서식 15]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322
[서식 16]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 .....	323
[서식 17] 행정처분기록대장 .....	324
[서식 18] 처분사전통지서 .....	325
[서식 19] 공작물 축조신고서 .....	326
[서식 20]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	327
[서식 21] 공작물 관리대장 .....	328
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	329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서 .....	413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 .....	414
[별지 제3호 서식] 비검사 대상 확인검사 신청서 .....	415
[별지 제4호 서식] 유기기구 결과 통보서 .....	416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설계검사 결과보고서 .....	417
[별지 제6호 서식] ( )년도 허가전검사·정기검사·재검사 결과 .....	418
[별지 제7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성적서(A) .....	419
[별지 제8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성적서(B) (물놀이형) .....	420
[별지 제9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조서 .....	421
[별지 제10호 서식]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서 .....	422
4. 관광진흥법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설명 및 사진 .....	423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 .....	425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 .....	438

5.유원시설 운영매뉴얼 .....	447
[1] 청결업무 매뉴얼 .....	450
[2] 안전점검 매뉴얼 .....	453
[3] 시운전 매뉴얼 .....	459
[4] 운행자 업무 매뉴얼 .....	460
[5] 안전운행 매뉴얼 .....	464
[6] 영업마감 매뉴얼 .....	467
[7]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 운영매뉴얼 .....	469
[8]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의 수처리시설 운영 매뉴얼 .....	476
6. 유원시설업 의무 게시 사항 작성 예시 .....	483
[1] 영업소 명칭(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 명칭) .....	486
[2] 이용요금표 .....	487
[3]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사항 .....	488
[4] 안전점검표시판 .....	489
[5]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490
[6] 물의 순환 횟수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491
[7]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492
[8] 수심표시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493
7. 유원시설업 의무 구비서류 작성 예시 .....	495
[1] 유관기관 연락체계 .....	498
[2] 중대사고보고서 양식 .....	499
[3] 안전운행 표준지침 .....	500
[4] 안전관리계획서 .....	502
[가] 안전점검 계획 .....	502
[나] 비상연락체계 .....	503
[다] 비상시조치계획 .....	504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에 해당] .....	508
[5] 안전점검일지 .....	509
[6] 안전교육계획 .....	510
[7] 안전교육일지 .....	512
[8]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에 해당] .....	513
[9]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에 해당] .....	514
[10] 안전모니터링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에 해당] .....	515
8. 유원시설 담당 지자체 현황 .....	517
9.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업체 현황 .....	527
10. 주요기관 연락처 .....	547

# I.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 1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관련 용어

### 가. 유원시설업의 정의

#### 1) 국내 유원시설업의 정의

##### 가)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어린이놀이기구」와 구분됨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관광진흥법에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제1호)

##### 나)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유기사설·유기기구 분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 검사대상은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운동특성에 따라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하며 주행형은 주행 종류에 따라 궤도, 주로, 수로, 자유주행형으로 세분류됨. 고정형은 승용물의 운동특성에 따라 종회전고정형, 횡회전고정형, 복합회전고정형, 승강고정형으로 세분류됨. 관람형은 체험장소와 형태에 따라 기계관람형, 입체관람형으로 세분류됨. 놀이형은 일반놀이형, 물놀이형으로 세분류됨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유기기구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함

구분	분류	분류 기준	대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주로/수로/자유	모노레일, 코끼리열차, 후름라이드, 범퍼카 등
	고정형	종회전/횡회전/복합회전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타가다디스크, 브레이크댄스, 우주전투기, 풍선타기 등
	관람형	시뮬레이션 체험	영상모험관(가상체험), 다이내믹시트 등
	놀이형	일반/물놀이	미로탐험, 에어바운스, 파도풀, 바다슬라이드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주행형	시속 5km 이하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등
	고정형	회전 반경 3m 이내	술저로봇트, 우주전차, 목마 등
	관람형	이용자 스스로 참여	도깨비집, 거울집, 입체영화관(좌석고정) 등
	놀이형	높이 3m 이하 등	붕붕뽀뽀, 미니에어바운스, 인형뽑기 등

2) 해외 유원시설업의 정의

- 국제표준 ISO 17842-1와 유럽표준 EN 13814 등 해외 관련 표준에서는 유기사설·유기기구(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는 이동식,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계 및 구조물, 예를 들어 회전목마, 그네, 보트, 회전관람차, 롤러코스터, 활강장치, 관람석, 막 또는 섬유 구조물, 부스, 무대, 사이드쇼 및 예술적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규정함.

[참고]

ISO 17842-1 : 2015(Safety of 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 —Part 1: Design and manufacture)

Mobile, temporary or permanently installed machinery and structures, e.g. roundabouts, swings, boats, Ferris wheels, roller coasters, chutes, grandstands, membrane or textile structures, booths, stages, side shows, and structures for artistic aerial displays.

EN 13814 : 2004(Fairground and amusement park machinery and structures - Safety)

Mobile, temporary or permanently installed machinery and structures e. g. roundabouts, swings, boats, ferris wheels, roller coasters, chutes, grandstands, membrane or textile structures, booths, stages, side shows, and structures for artistic aerial displays.

- 미국의 경우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유기기구를 영구적 놀이기구와 이동식 놀이기구로 구분함
  - 영구적 놀이기구(permanent amusement rides)는 180일 이상 한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스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탑승자를 운송하는 기계 장비, 수상 도구 혹은 영구적 성격의 시설들의 조합을 의미함
  - 이동식 놀이기구(portable amusement rides)는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쉽게 이동·분리·조립이 가능한 유기기구임

## 나. 관련 용어

### 1) 테마파크(Theme park)

- 테마파크란 통일된 테마를 바탕으로 오락, 여가, 놀이 등의 목적을 갖는 시설들로 구성되고 연출된 유원지(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사전). 계획된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환경, 놀이시설,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비일상적인 레저공간(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테마파크는 다채롭고 다양한 테마를 가짐. 테마파크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따라 통일성이 조성됨. 또한 테마파크는 하나의 독립된 공상체계로서 비일상적인 유희공간이자 현실과의 차단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가상·허구의 공간임<sup>1)</sup>
- 테마파크는 다양한 오락, 음식과 음료, 샵, 특정 테마를 토대로 설계된 환경을 포괄하는 공간임<sup>2)</sup>
  - IAAP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는 테마파크를 “테마를 가진 어트랙션을 보유하고, 음식·의상·오락·소매점·놀이기구 등이 갖춰진 곳”으로 정의함
  - 어트랙션(attraction)은 방문객들의 즐거움, 유희, 오락, 교육을 위해 조성되고 관리되는 영구적인 자원을 의미함
- 테마파크 내 대부분의 어트랙션에는 특정 테마가 함축되어 있음.<sup>3)</sup> 즉 테마란 ‘이용객 경험의 주요 부분’으로, 유원시설의 설계·개발·운영을 위하여 주요 고려사항임

### 2) 워터파크(Water park)

- 워터파크란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 2004)
- 워터파크는 설치 시설에 따라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영장업,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장업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1) 이종국·공성훈. (2007). '테마파크 활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4): 143-149

2) Ho & Ap. (2009). 'Manual on Elective Theme Parks and Attractions'

3) Pikkematt & Schuckert. (2007). 'Success Factors of Theme Parks: An Exploratory Study'. Tourism. 55: 197-208

많음.

- 팬션 등에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일정공간에 물을 담수하여 미니 수영장 형태로 임시 운영. (수영장업에도 속하지 않고 유기기구가 없어 유원시설업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2 유원시설업 현황 및 통계

### 가. 국내 유원시설업 현황

- 2015년 12월말 현재, 895개의 유원시설업이 등록되어 있음. 이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40개(4.46 %), 일반유원시설업은 284개(31.73 %), 기타유원시설업은 571개(63.79 %)가 등록되어 있음.
- 2012년, 종합유원시설업 38개, 일반유원시설업 236개, 기타유원시설업 115개를 비롯해 유원시설업 등록업체가 총 389개였던 것에 비하면 최근 전반적으로 유원시설업이 양적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기타유원시설업(456개 증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

〈표 1-1〉 유원시설업 현황 (2015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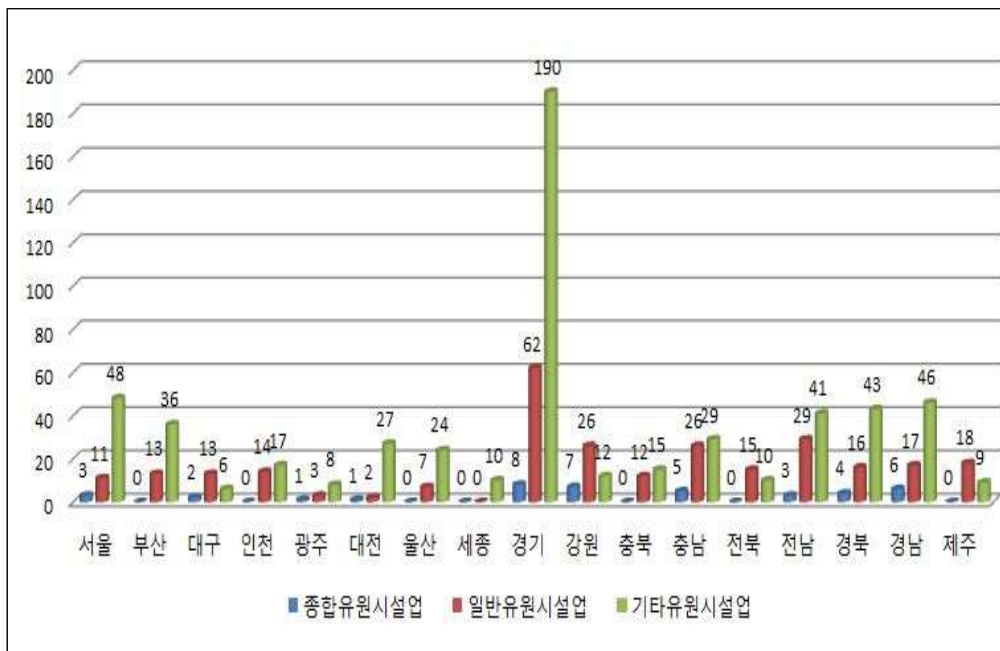
구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합계
서울	3	11	48	62
부산	0	13	36	49
대구	2	13	6	21
인천	0	14	17	31
광주	1	3	8	12
대전	1	2	27	30
울산	0	7	24	31
세종	0	0	10	10
경기	8	62	190	260
강원	7	26	12	45
충북	0	12	15	27
충남	5	26	29	60
전북	0	15	10	25
전남	3	29	41	73
경북	4	16	43	63
경남	6	17	46	69
제주	0	18	9	27
합계	40	284	571	89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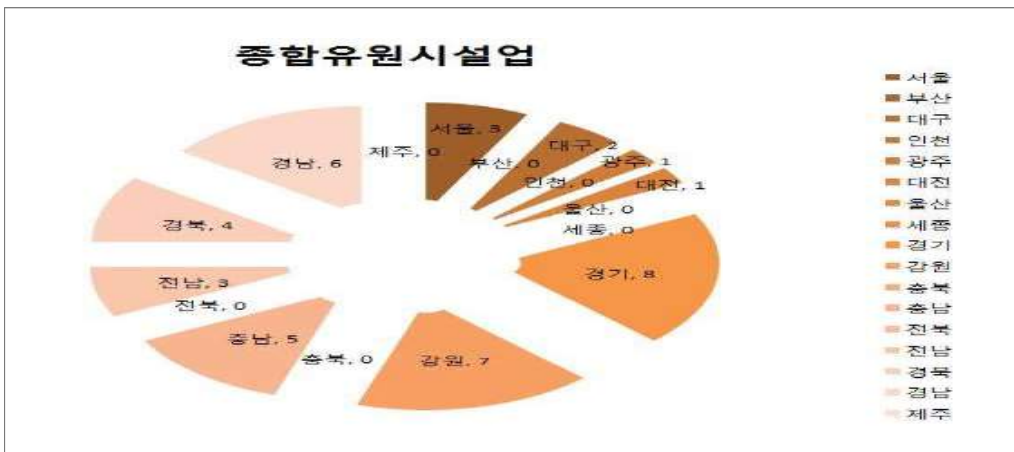
## I.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 2014년초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가능한 입지가 확대되어 키즈카페 형태로 운영하였던 업장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많이 하게 됨.
-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슬라이드, 수중모험놀이 등)를 작은 규모로 설치한 물놀이형 시설이 펜션이나 시관할 공원에 많이 생겨남.
- 유원시설업체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29%), 전라남도(8%), 경상남도(8%), 경상북도(7%), 서울(7%), 충청남도(7%), 부산(5%), 강원도(5%) 순으로 분포도가 높게 나타남.
- 전국의 유원시설업체 중 29%에 해당하는 260개의 유원시설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함. 경기도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각각의 사업장이 가장 많이 분포함.
  -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잠재적인 수요자층의 접근성이 뛰어나 유원시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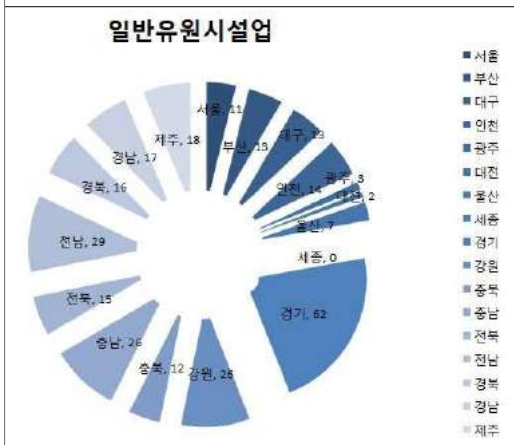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별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 분포 현황(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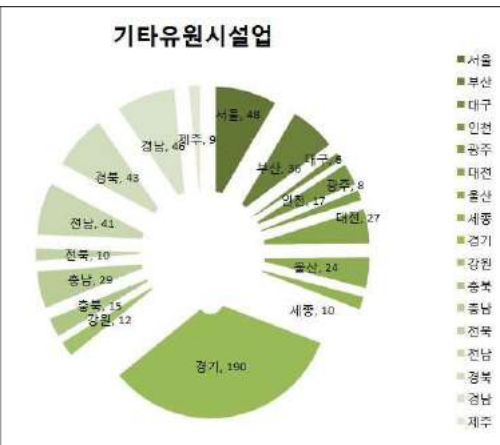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별 유원시설업 분포 현황(2015년)



[그림 1-3] 시도별 종합유원시설업 분포 수



[그림 1-4] 시도별 일반유원시설업 분포 수



[그림 1-5] 시도별 기타유원시설업 분포 수



나. 국내 유원시설업 통계

1) 연도별 유원시설업체 수

- 2013년까지 근소하게 증가, 감소하던 업체수는 2014년 들어 전년대비 60 % 증가함.
- 특히,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각각 60 %, 75 %로 큰 성장세를 보임.
- 복합놀이문화 개념이 확대와 경기침체가 만나 대규모 놀이공원 보다는 주거지역 인근, 펜션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축제장등에 소규모의 일반 및 기타유원시설업이 크게 늘어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민들을 위한 놀이문화 창출에 적극적임. 또한, 별다른 신고 없이 운영되던 많은 키즈카페들이 지자체의 대대적인 지도 아래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하여 업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표 1-2〉 연도별 유원시설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종합유원시설업	45(14.85)	42(11.41)	38(9.77)	42(11.41)	49(8.3)
일반유원시설업	161(53.13)	178(48.40)	236(60.67)	178(48.37)	284(47.9)
기타유원시설업	97(32.01)	148(40.22)	115(29.56)	148(40.22)	260(43.8)
전 체	303(100)	368(100)	389(100)	368(100)	593(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전체 유원시설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림 1-6] 연도별 유원시설업체 수

## 2) 자본금별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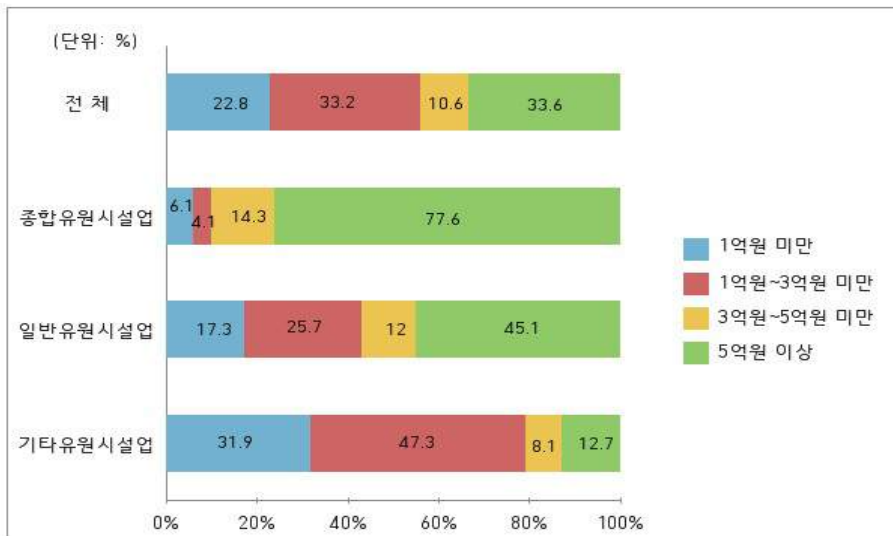
- 자본금별로는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업체가 각 33 % 정도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체에 해당함. 종합유원시설업(77.6 %)과 일반유원시설업(45.1 %)은 5억원 이상인 업체가 가장 많고 기타유원시설업은 2013년에는 1억원 미만과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갖는 업체가 비슷했으나 2014년도 들어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수가 크게 늘어남

〈표 1-3〉 유원시설업체 자본금 분포 (2014년)

(단위 : 개, %)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3억원 미만	3억원~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종합유원시설업	3(6.1)	2(4.1)	7(14.3)	38(77.6)
일반유원시설업	49(17.3)	73(25.7)	34(12.0)	128(45.1)
기타유원시설업	83(31.9)	123(47.3)	21(8.1)	33(12.7)
전 체	135(22.8)	198(33.2)	62(10.6)	199(33.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유원시설업에서 해당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1-7] 자본금별 유원시설업체 비중

3) 유원시설업체별 조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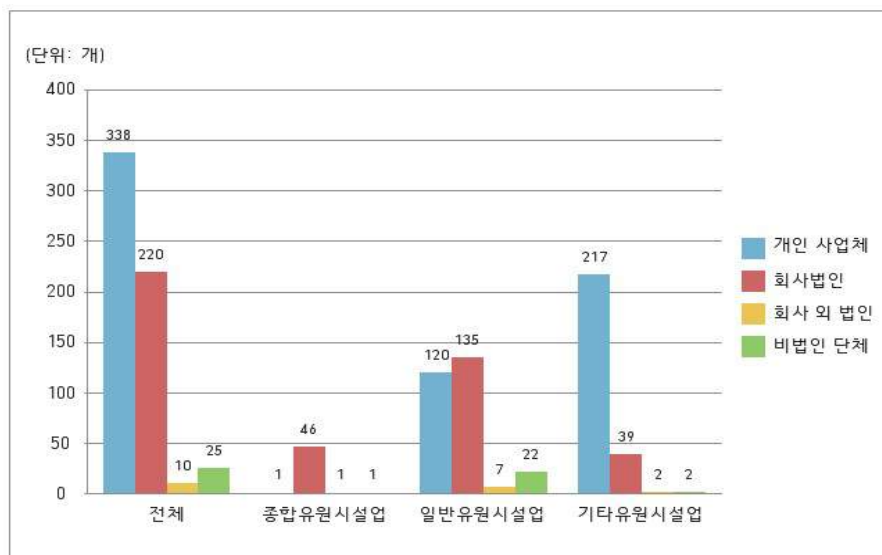
- 유원시설업은 최근 회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49.86 %를 차지하였으나 일반유원시설업 및 기타유원시설업이 크게 늘며 개인 사업체로 운영되는 업체 수가 57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종합유원시설업은 회사법인(93.9 %, 46개), 기타유원시설업은 개인사업체(83.5 %, 217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이 42.3 %(120개), 47.5 %(135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표 1-4〉 유원시설업체별 조직형태(2014년)

(단위 : 개, %)

구분	전 체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의 법인	비법인 단체
종합유원시설업	46(100)	1(2.0)	46(93.9)	1(2.0)	1(2.0)
일반유원시설업	284(100)	120(42.3)	135(47.5)	7(2.5)	22(7.7)
기타유원시설업	260(100)	217(83.5)	39(15.0)	2(0.8)	2(0.8)
전 체	593(100)	338(57.0)	220(37.1)	10(1.7)	25(4.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유원시설업에서 해당 조직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그림 1-8] 조직형태별 유원시설업체

#### 4) 연간 매출액 및 세부 항목별 매출액

- 유원시설업체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은 2013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종합유원시설업은 2013년도 대비 2.5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종합유원시설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0 %정도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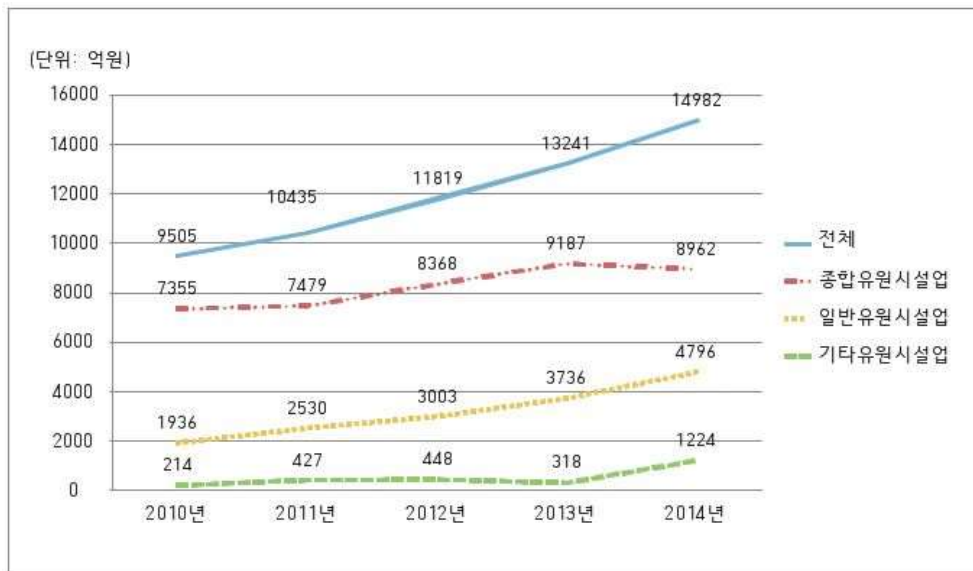
〈표 1-5〉 유원시설업체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억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종합유원시설업	7,355(77.4)	7,479(71.67)	8,368(70.8)	9,187(69.38)	8,962(59.82)
일반유원시설업	1,936(20.4)	2,530(24.25)	3,003(25.41)	3,736(28.22)	4,796(32.01)
기타유원시설업	214(2.6)	427(4.09)	448(3.79)	318(2.4)	1,224(8.17)
전 체	9,505(100)	10,435(100)	11,819(100)	13,241(100)	14,982(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당해연도에서 각 유형별 유원시설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1-9] 유원시설업체 연도별 매출액 추이

I.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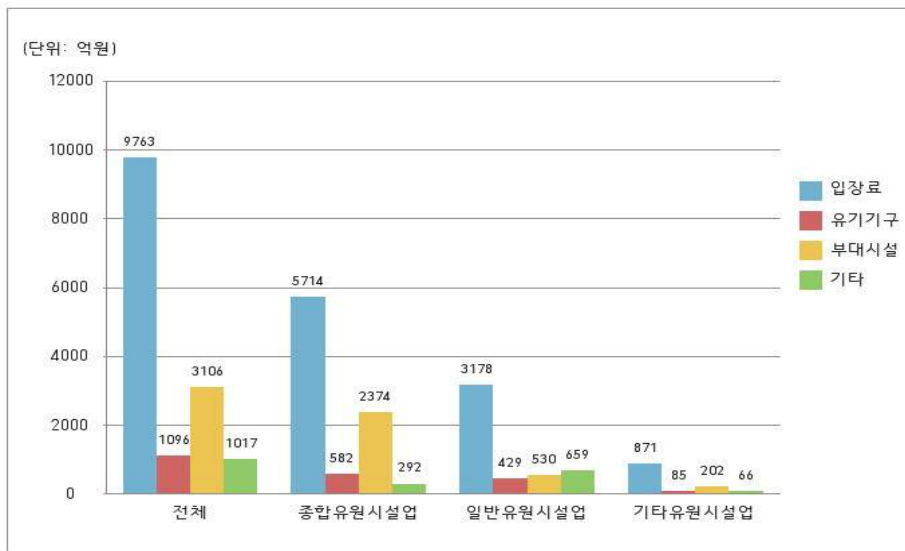
- 매출액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장료 수입(9,763억원), 부대시설 수입(3,106억원), 유기기구 이용 수입(1,096억원), 기타(1,017억원) 순으로 나타남. 즉 전체 매출액 중 입장료 수입이 상당 부분(65.2 %)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도까지는 부대시설(종합유원시설업), 유기기구 이용수입(일반 및 기타유원시설업)의 비중이 각 업종별로 크게 차지하였지만 2014년도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입장료의 수입이 60% ~ 70%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복합놀이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매출의 이동으로 보이며 유원시설업체는 이용객 수요에 적합한 사업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1-6〉 세부 항목별 매출 (2014년)

(단위 : 억 원, %)

구분	전체	입장료	유기기구	부대시설	기타
종합유원시설업	8,962(100)	5,714(63.8)	582(6.5)	2,374(26.5)	292(3.3)
일반유원시설업	4,796(100)	3,178(66.3)	429(8.9)	530(11.1)	659(13.7)
기타유원시설업	1,224(100)	871(71.2)	85(6.9)	202(16.5)	66(5.4)
전체	14,982(100)	9,763(65.2)	1,096(7.3)	3,106(20.7)	1,017(6.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각 유형의 유원시설업에서 세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1-10] 세부항목별 매출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 5) 유원시설업체별 이용객 수

- 내수경기 침체와 신종플루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유원시설업체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이용객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유원시설업체 연간 이용객은 2014년 총 10,292만명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유원시설업이 4,658만명(45.26%), 종합유원시설업이 4,426만명(43.0%), 기타 유원시설업이 1,208만명(11.74%)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이전과 달리 2010년에 들어와 종합유원시설업체 이용객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나, 2014년에는 일반유원시설업 이용객이 종합유원시설업보다 230만명정도 더 많이 이용함

<표 1-7> 연도별 이용객 수

(단위 : 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종합유원시설업	3,228(46.64)	4,164(48.98)	4,237(46.69)	4,647(51.16)	4,426(43.0)
일반유원시설업	2,673(38.62)	3,067(36.07)	3,611(39.8)	3,622(39.87)	4,658(45.26)
기타유원시설업	1,020(14.74)	1,270(14.94)	1,226(13.51)	815(8.97)	1,208(11.74)
전 체	6,921(100)	8,502(100)	9,074(100)	9,084(100)	10,292(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당해연도에서 각 유형별 유원시설업 이용객 수가 차지하는 비중



[그림 1-10] 유원시설업 연도별 이용객 추이

6)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에 따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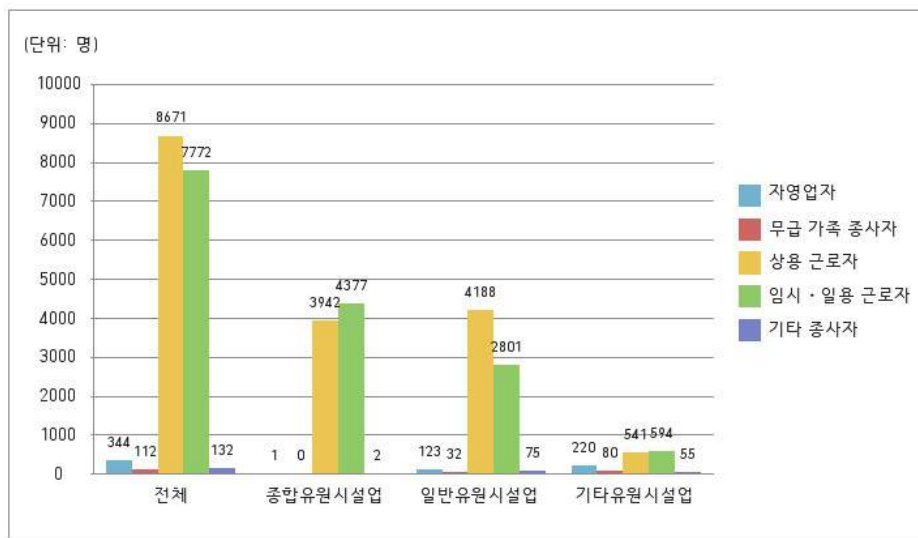
-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일반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만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유원시설업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반영함.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안전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형태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표 1-8>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2014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종합유원시설업	8,323(100)	1(0.0)	0(0.0)	3,942(47.4)	4,377(52.6)	2(0.0)
일반유원시설업	7,220(100)	123(1.7)	32(0.4)	4,188(58.0)	2,801(38.8)	75(1.0)
기타유원시설업	1,489(100)	220(14.8)	80(5.4)	541(36.3)	594(39.9)	55(3.7)
전체	17,031(100)	344(2.0)	112(0.7)	8,671(50.9)	7,772(45.6)	132(0.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괄호 안은 각 유형의 유원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비중



[그림 1-11]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 다. 해외 유원시설업 현황

- 놀이와 즐거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테마파크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테마파크 사업에 대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입지 지역의 특성과 소비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유원시설업이 조성되고, 놀이기구, 리조트, 카지노 등 기타 구성요소들이 합쳐진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기차게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테마파크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4 %의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유럽은 3 %로 증가했고, 미국은 2 %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최대의 시장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5 %의 성장을 보임
- 아시아는 전세계 테마파크의 top 25개중에서 10개의 업체가 있음.
  - 한국은 에버랜드와 롯데월드가 전세계 테마파크중에서 20위 내에 있음.
  - 일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The Wizarding World of Harry Potter”의 오픈과 도쿄 디즈니랜드의 30주년(2013년)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은 송성파크의 입장객수 증가와 중국 형친에 새로 생긴 침롱 오션 킹덤의 첫해에 놀라운 입장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상해에 디즈니 랜드가 오픈할 예정임.
- 유럽은 남부의 경우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으나, 북부의 경우 성장을 이룸
  - 프랑스에서는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좋은 성과를 냄
  -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의 “Parque Warner”, ‘Raving Rabbids’를 오픈한 “Futuroscope”가 좋은 성과를 보였다.
- 중동지역은 워터파크 분야에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시장임을 보여줌
  - 현재 대형 테마파크가 다수 개발중이며 수년 내 전세계 테마파크의 순위에도 포함되는 곳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전세계 테마파크 상위 10개 테마파크 중 6개 이상이 있음.



I.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현황

〈표 1-9〉 상위 25위 테마파크 입장객 수

(단위: 천 명, 전년도 대비 증가율%)

순위	상호	입장객(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1	매직 킹덤(플로리다)	16,972	17,142	17,536	18,588	19,332(4.0%)
2	디즈니랜드(도쿄)	14,452	13,996	14,847	17,214	17,300(0.5%)
3	디즈니랜드(미국 애너하임)	15,980	16,140	15,963	16,202	16,769(3.5%)
4	디즈니 씨(도쿄)	12,663	11,930	12,656	14,084	14,100(0.1%)
5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오사카)	8,160	8,500	9,700	10,100	11,800(16.8%)
6	디즈니 엠폿(Epcot) 센터 (플로리다)	10,825	10,825	11,063	11,229	11,454(2.0%)
7	디즈니 애니멀 킹덤 (플로리다)	9,686	9,783	9,998	10,198	10,402(2.0%)
8	디즈니 헐리웃 스튜디오 (플로리다)	9,603	9,699	9,912	10,110	10,312(2.0%)
9	디즈니랜드 파크(파리)	10,500	10,990	11,200	10,430	9,940(-4.7%)
10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미국 애너하임)	6,278	6,341	7,775	8,514	8,769(3.0%)
11	유니버설 스튜디오(플로리다)	5,925	6,044	6,195	7,062	8,263(17.0%)
12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 (플로리다)	5,949	7,674	7,981	8,141	8,141(0.0%)
13	오션 파크(홍콩)	5,404	6,955	7,436	7,475	7,792(4.2%)
14	롯데월드*	5,551	5,780	6,383	7,400	7,606(2.8%)
15	홍콩 디즈니랜드	5,200	5,900	6,700	7,400	7,500(1.4%)
16	에버랜드*	6,884	6,570	6,853	7,303	7,381(1.1%)
17	유니버설 스튜디오 헐리웃 (캘리포니아)	5,040	5,141	5,912	6,148	6,824(11.0%)
18	송성파크(중국 항저우)	-	-	-	4,200	5,810(38.3%)
19	나가시마 스파랜드 (일본 구와나)	4,465	4,465	5,850	5,840	5,630(-3.6%)
20	침롱 오션 킹덤(중국 형친)	-	-	-	-	5,504(-%)
21	유로파 파크(독일 러스트)	4,250	4,500	4,600	4,900	5,000(2.0%)
22	씨월드 플로리다	5,100	5,202	5,358	5,090	4,683(-8.0%)
23	티볼리 가든(덴마크 코펜하겐)	3,696	3,963	4,033	4,200	4,478(6.6%)
24	에프텔링(De Efteling) (네덜란드 카슈벨)	4,000	4,125	4,200	4,150	4,400(6.0%)
25	월트디즈니 스튜디오(파리)	4,500	4,710	4,800	4,470	4,260(-4.7%)

※ 자료: AECOM(2015), '2014 Theme Index, Global Attractions Attendance Report'를 토대로 재구성  
(에버랜드는 캐러비안베이 입장객 수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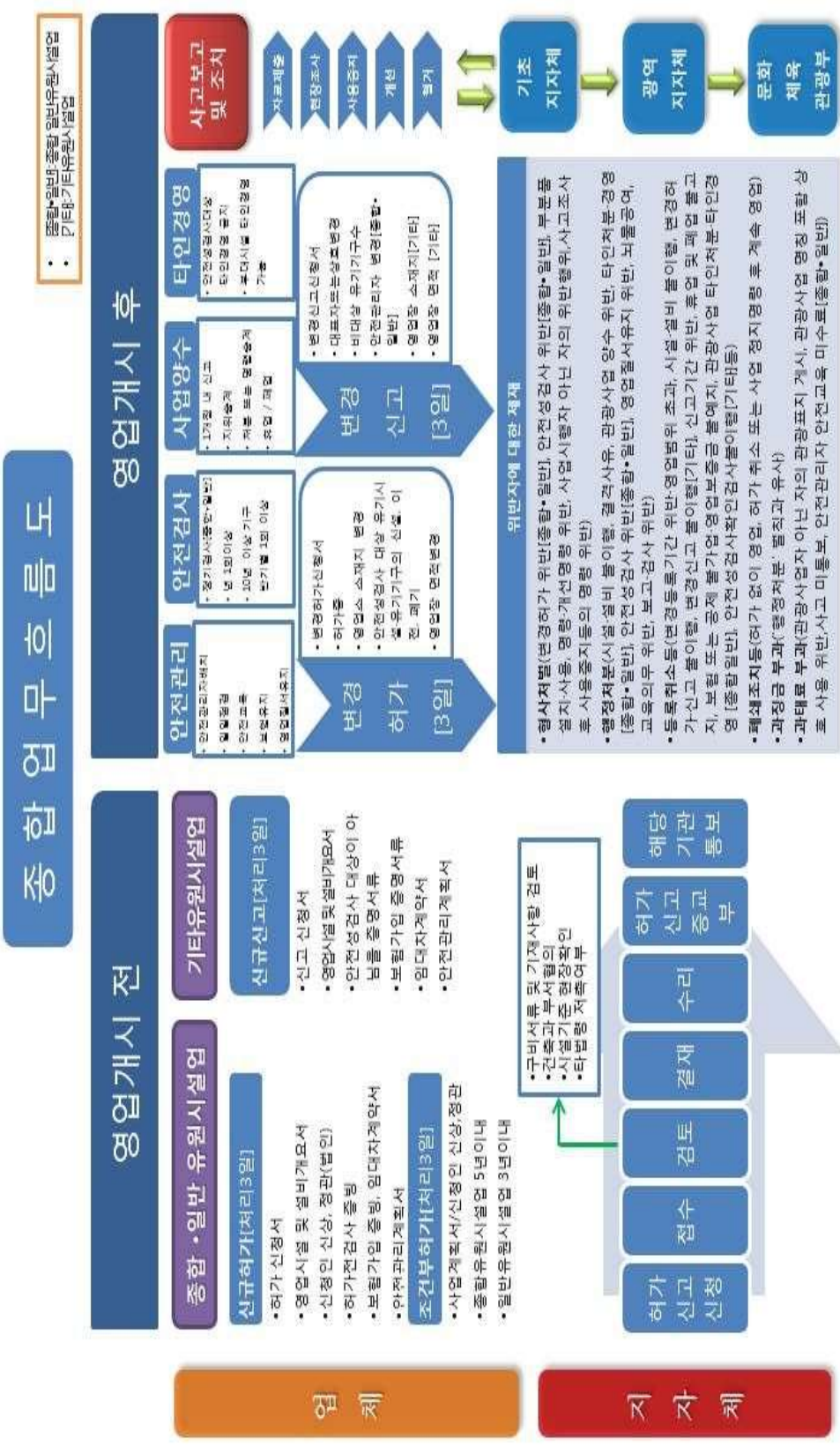
## II.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 1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 가. 개요

- 유원시설업 관련 주체는 유원시설업의 운영자인 유원시설업체,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및 안전 상태를 지도·점검하는 지자체, 유원시설업 관련 법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음
- 「관광진흥법」 및 관련 법규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원시설업 운영 단계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가 다름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는 ‘허가 및 신고 업무’,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처리 업무’, ‘승계·제재 등 각종 행정처리 업무’로 구분됨
  - ‘허가’에는 신규허가,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신고’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가 있으며 각 절차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구비 서류가 다름
  - 유원시설업체와 지자체는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원시설업체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등록 관청에 사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통보 받은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원시설업체는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종 행정관청의 조력 혹은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를 갖추고 있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를 갖추고 있는 기타유원시설업에는 각기 상이한 행정절차가 적용되고, 그 책임과 역할의 범위도 다름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배치
- 영업장명
- 안전표지
- 보월유지
- 영업일내유지

### 안전검사

- 정기검사(종합·일반)
- 보 1회 이상
- 10년 이상 기구
- 반기별 1회 이상

### 변경 허가 [3일]

-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증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면적변경

### 변경 신고 [3일]

- 변경신고신청서
- 대표자본능상표변경
- 비대상 유기기구수
- 안전관리자 변경(종합·일반)
- 영업장 소재지[기타]
- 영업장 면적 [기타]

### 사업양수

- 1개월 내 신고
- 지위양계
- 세무부서 연결양계
- 휴업 / 폐업

### 타인경영

- 안전성검사대상
- 타인경영 금지
- 복대시설 타인경영 가능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행사저벌(변경허가 위반[종합·일반], 안전성검사 위반[종합·일반], 불법품 팔지사용, 영업개선명령 위반, 사업시행자 아닌 자의 위반행위, 사고조사 후 사용중지 등의 명령 위반)
- 행정처분(시설설비 불이행, 결격사유, 관광사업 양수 위반, 타인저분경영 [종합·일반], 안전성검사 위반[종합·일반], 영업질서유지 위반, 피롤공여, 교육의무 위반, 보고·검사 위반)
- 등록취소등(변경등록기간 위반·영업범위 초과, 시설설비 불이행, 변경허가 신고 불이행, 변경신고 불이행[기타], 신고기간 위반, 휴업 및 폐업 불고 등) 또는 강제 불가업·영인보충금 불예치, 관광사업 타인저분 타인경영 [종합·일반], 안전성검사확인감사불이행[기타등])
- 폐쇄조치등(허가 없이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후 계속 영업)
-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벌칙과 유사)
- 과태료 부과(관광사업자 아닌 자의 관광표지 게시, 관광사업명칭 포함 상 표 사용 위반, 사고 미통보,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미수료[종합·일반])

업  
체

지  
자  
체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배치
- 영업장명
- 안전표지
- 보월유지
- 영업일내유지

### 안전검사

- 정기검사(종합·일반)
- 보 1회 이상
- 10년 이상 기구
- 반기별 1회 이상

### 변경 허가 [3일]

-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증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면적변경

### 변경 신고 [3일]

- 변경신고신청서
- 대표자본능상표변경
- 비대상 유기기구수
- 안전관리자 변경(종합·일반)
- 영업장 소재지[기타]
- 영업장 면적 [기타]

### 사업양수

- 1개월 내 신고
- 지위양계
- 세무부서 연결양계
- 휴업 / 폐업

### 타인경영

- 안전성검사대상
- 타인경영 금지
- 복대시설 타인경영 가능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행사저벌(변경허가 위반[종합·일반], 안전성검사 위반[종합·일반], 불법품 팔지사용, 영업개선명령 위반, 사업시행자 아닌 자의 위반행위, 사고조사 후 사용중지 등의 명령 위반)
- 행정처분(시설설비 불이행, 결격사유, 관광사업 양수 위반, 타인저분경영 [종합·일반], 안전성검사 위반[종합·일반], 영업질서유지 위반, 피롤공여, 교육의무 위반, 보고·검사 위반)
- 등록취소등(변경등록기간 위반·영업범위 초과, 시설설비 불이행, 변경허가 신고 불이행, 변경신고 불이행[기타], 신고기간 위반, 휴업 및 폐업 불고 등) 또는 강제 불가업·영인보충금 불예치, 관광사업 타인저분 타인경영 [종합·일반], 안전성검사확인감사불이행[기타등])
- 폐쇄조치등(허가 없이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후 계속 영업)
-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벌칙과 유사)
- 과태료 부과(관광사업자 아닌 자의 관광표지 게시, 관광사업명칭 포함 상 표 사용 위반, 사고 미통보,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미수료[종합·일반])

업  
체

지  
자  
체

[그림 2-1] 종합 업무 흐름도

신규 허가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변경 허가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p>① 허가신고 신청(서류검토)</p> <p>•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서(신고서, 신고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계약서</li> <li>- 기구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확인서</li> <li>- 신고서 기구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증명서류(신고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증명서류)</li> <li>- 포항가업증명서</li> <li>- 안전관리자 인적사항(허가시만 해당)</li> <li>-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li> <li>- 내지면적(실내인 경우 건축물 면적) 40㎡이상 여부(신고시만 해당)</li> <li>- 안전관리계획서</li> </ul> <p>• 담당부서 협의(지자체 건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단서 :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 : 종합유희원시설업 : 위락시설 기타유원시설업 :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또는 문흥시설(500㎡ 이상)</li> </ul>	<p>•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이전·신설·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li> <li>- 변경신고 변경신고 신청서, 신고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신설·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li> </ul>
<p>② 접수</p>	<p>•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p> <p>• 문화체육관광시스템 접수처리 (수수료 발생)</p>
<p>③ 검토</p>	<p>• 시설기준 현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내외 구조 등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 구획여부</li> <li>- 비상시탈출 및 홍수시설 설치 여부(허가시만 해당)</li> <li>- 화장실 구비 여부(허가시만 해당)</li> <li>-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li> <li>- 위문시설, 발전시설, 인내소 설치 여부(허가시만 해당)</li> <li>- 음주점 및 매점 시설 설치 여부(종합유희원시설)</li> <li>- 유기사설·유기기구 적정 설치 여부</li> <li>- 일일안전점검표시판 설치 여부</li> </ul> <p>• 시설기준 현장확인(시설변경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사설·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li> <li>- 유기사설·유기기구 폐기·이전 시 확인</li> <li>- 영업소 면적 (축소, 증설) 확인</li> </ul>
<p>④ 결재</p>	<p>• 시설변경 시 확인 결과, 출장 복명(보안·반려·수리 결정)</p> <p>• 변경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p>
<p>⑤ 수리</p>	<p>• 문화체육관광시스템 변경허가(신고) 처리 및 허가증(신고증) 제작</p> <p>• 허가(신고사항 통보(민원인))</p>
<p>⑥ 허가신고증 교부</p>	<p>• 허가(신고)증 교부(민원실 ○번 창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증(신고) 교부(채권 ○○원, 대표자 변경 시 면허세 ○○○원)</li> <li>-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li> </ul>
<p>⑦ 해당기관에 통보</p>	<p>• 해당기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관공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협회</li> </ul>

[그림 2-2] 지자체 허가신고 업무 흐름도

※ 자료: 경기도 ○○시 자료 참조

##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 1) 영업개시 전

-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가)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지 여부를 확인함
  - 종합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를 6종 이상 갖추고 있으며,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하되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며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함
  -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를 1종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함
-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 다른 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함

#### 나) 허가전검사: 안전성검사 기관

- 허가전검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접수 및 검사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심사 및 현장검사(설계검사 및 하중·전기설비 및 제어회로·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검토) 실시
- 적합(개선필요 포함), 부적합 판정
  - 적합 판정 또는 부적합 판정 결과는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지자체 및 업체에 통보
  - 부적합 판정 후 업체에서 보완완료 조치후 안전성검사기관에 재검사 신청에 따른 재검사 실시



다) 허가: 지자체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결재 처리함
  - ‘반려’ 처분 시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함
  - ‘보완’ 처분 시 보완 후 영업을 개시하고, ‘수리’ 처분 시 지자체는 허가증을 발급하며 업체는 영업을 개시함

2) 영업개시 후

- 영업개시 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관광사업 양수’, ‘변경허가’, ‘변경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원시설업체의 법규 위반 시 벌칙 등 처분을 내림

가)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함
  -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안점점검일지 또는 일일안전점검 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시 이미 다른 업체에 선임되어 있거나 허가업체 직원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면 안됨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 이용자 안전, 자체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 영업소 명칭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되며, 매 2년마다 1회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침해여부를 판단 후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조치를 해야함

나) 안전성검사

-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  
의 안전 상태를 확인받되 10년 이상이 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반기별로 1  
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다) 관광사업 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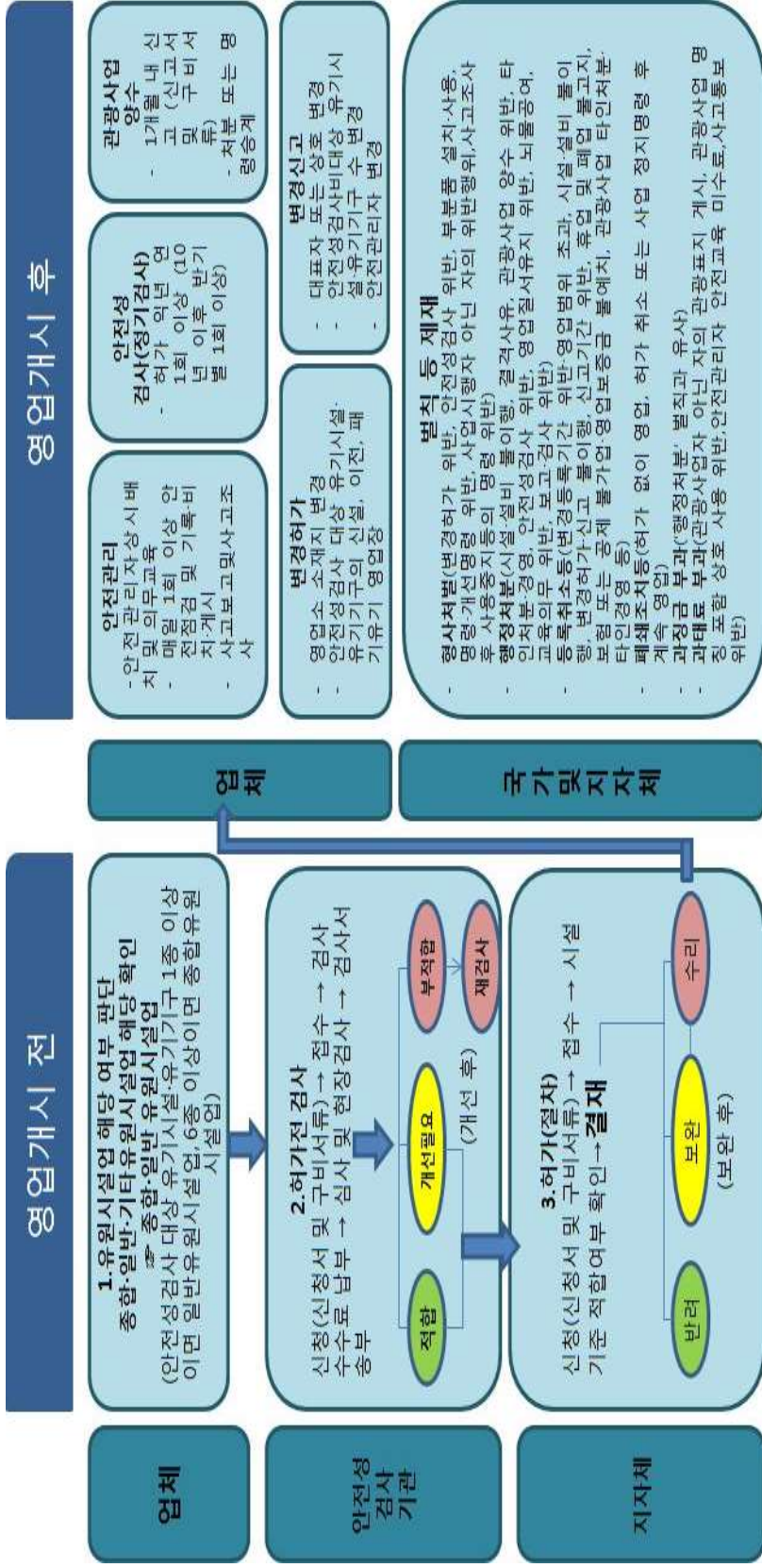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경매·환가·압류재  
산의 매각 등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승계됨

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영업소 소재지 변경,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영업장 면적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  
야 함
- 경미한 사항(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안전관리자의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마) 벌칙 등 제재

- 유원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음



[그림 2-3]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업무절차

## 다. 기타유원시설업

### 1) 영업개시 전

-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가)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지 여부를 확인함
- 설치하고자 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 검사: 안전성검사 기관

-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검사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검사를 통해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을 내림
- 안전성검사 기관은 ‘적합’ 판정 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해당 시·군·구에 검사서를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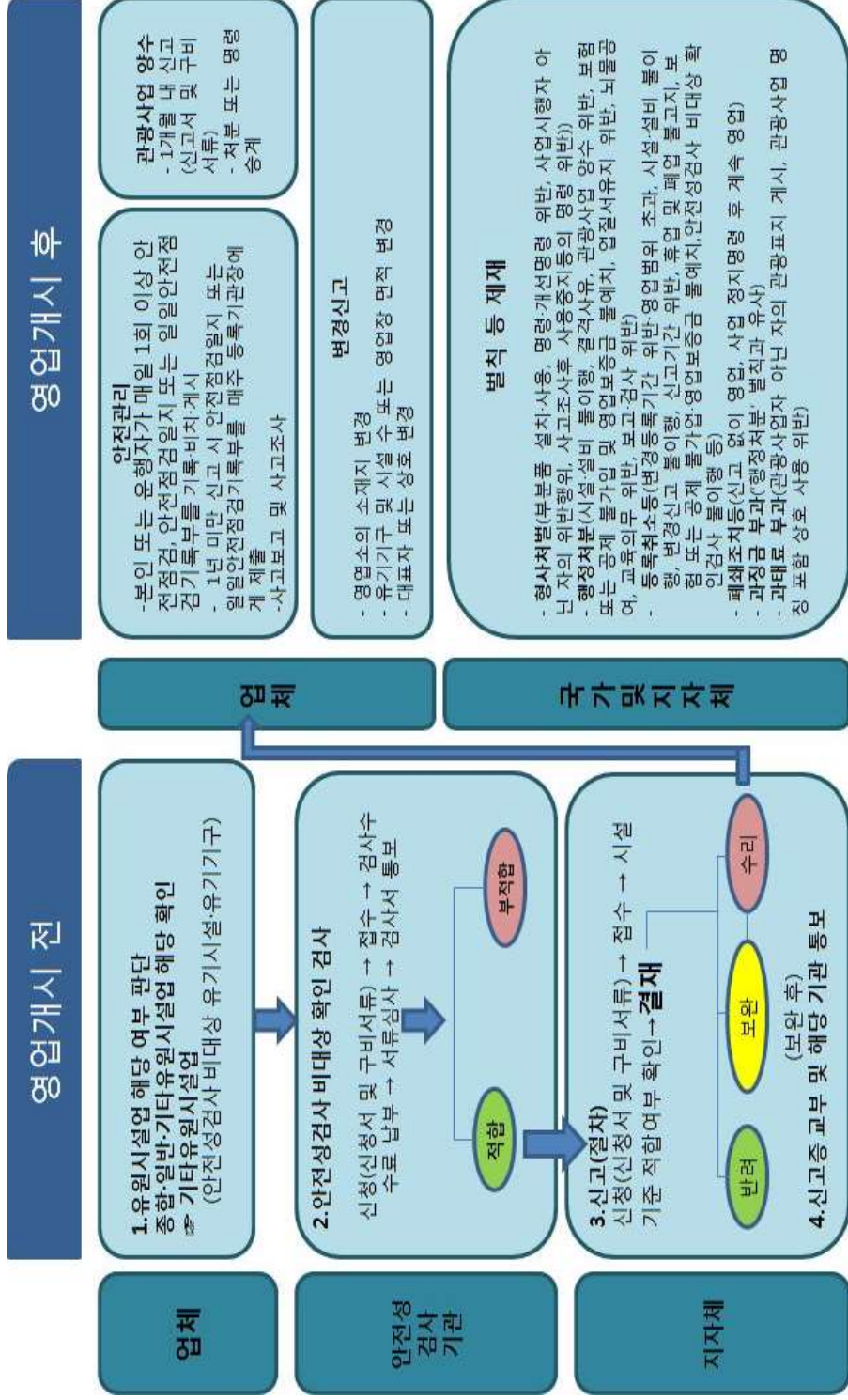
#### 다) 신고: 지자체

- 신고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서, 각종 구비서류(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보험 가입 등 증명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한 후 결재 처리함
  - ‘반려’ 처분 시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 ‘보완’ 처분 시 보완 후 영업을 개시하고, ‘수리’ 처분 시 지자체는 신고증을 발급하며 업체는 영업을 개시함

### 2) 영업개시 후

- 기타유원시설업체는 영업개시 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관광사업 양수’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원시설업체의 법규 위반 시 벌칙 등 처분을 내림
- 가) 안전관리
  - 본인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함
    - 1년 미만으로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 이용자 안전,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 영업소 명칭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침해여부를 판단 후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조치를 해야함
- 나) 관광사업 양수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승계됨
- 다) 변경신고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라) 벌칙 등 제재
  - 유원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음
    - 안전성검사 위반, 타인처분 및 경영 등의 사항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만 적용되고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림 2-4] 기타유원시설업 업무절차

## 라. 기타유원시설업관련 키즈카페

### 1) 영업개시 전

- 키즈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진흥법의 유기사설·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 가)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유기사설·유기기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지 여부를 확인함
- 설치하고자 하는 유기사설·유기기가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

- 설치기구중 안전성검사 대상 1종 이상 있는 경우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업무 절차 시행

#### 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만 있는 경우

- 설치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만 있는 경우 기타유원시설업 업무 절차 시행

#### 라) 설치기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 또는 기구에 대하여는 유원시설업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함

-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가면서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기구는 관광진흥법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각각 적용 관리되어야 함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

그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목에 해당되어 설치이전에 안전인증을 필한 시설·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시 최초검사는 설치자가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후 정기검사는 키즈카페 운영 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됨

〈키즈카페의 어린이놀이시설과 유기시설·기구 관련 사항 비교〉

구분	어린이 놀이기구	유기시설·기구
관련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광진흥법
업종	없음	대부분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도 가능)
검사	제조사 제조검사 설치시 설치검사 2년에 1회 정기검사	최초 설치시 비대상 확인검사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시에는 해당기구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
설치기구명	폐쇄형놀이기구 조합놀이대	플레이스페이스 (폐쇄형놀이기구, 조합놀이대와 동일한 기구)
	해당없음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코인라이더, 붕붕뽀들 등
보험	가입	가입

- 식품위생법 적용(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게 되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업신고시 면적 구분

- 식품위생법에 대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면적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에 대한 면적을 별도 구분 관리함.
- 시설기준의 구획 기준은 출구가 같고 간단히 영업장 구획 인정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실내에서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 키즈카페내 유기기구이면서 어린이놀이기구 해당 기구



플레이스페이스(어린이놀이설명:폐쇄형 놀이기구)

플레이스페이스(어린이놀이시설명:조합놀이대)

○ 키즈카페내 유기기구

	
<p>미니기차(궤도길이 30 m이내)</p>	<p>미니기차(궤도길이 30 m초과) ※ 궤도길이 30 m초과되어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시설</p>
	
<p>붕붕뽀뽀</p>	<p>붕붕뽀뽀(유아용)</p>
	
<p>에어바운스(구름바다)</p>	<p>에어바운스</p>
	
<p>코인라이더</p>	<p>코인라이더(회전목마)</p>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에 7.폐쇄형놀이기구, 8.정글짐이 관광진흥법의 플레이스 페이스에 해당됨

안전인증기준		
어린이 놀이기구(Play Ground Equipments for Children) 부속서2		
<p>서문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뽕뽕이, 회전 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놀임봉, 평행봉 등이 해당한다. (표 5 어린이 놀이기구의 모델구분 참조)</p>		
표5 어린이 놀이기구의 모델구분		
놀이기구명	모델구분	
1. 그네	가. 종류별(제1형, 2형, 3형, 4형) 나. 재질별(기동, 그네보, 좌석, 그네줄, 구동부) 다. 모양별	
2. 미끄럼틀	가. 종류별(웨이브, 두, 연결(부착), 나선형, 곡선형, 독립, 터널, 복합터널, 다수트랙미끄럼틀) 나. 재질별(미끄럼틀 바닥면, 유지측면, 가로대, 측면보호대) 다. 모양별	
3. 공중 놀이기구	가. 종류별(매달림형, 좌석형) 나. 재질별(기동, 좌석, 중심 케이블, 매달림 줄) 다. 모양별	
4. 회전 놀이기구	가. 종류별(A,B,C,D,E형) 나. 재질별(스테이션, 기동) 다. 모양별	
5. 흔들 놀이기구	가. 종류별(1,2,3,4,5,6형) 나. 재질별(몸체, 구동부) 다. 모양별	
6. 스페이스 네트	가. 종류별(다이아몬드형, 피라미드형, 평면형) 나. 재질별(기동, 네트) 다. 모양별	
7. 폐쇄형 놀이기구	가. 종류별(조합형, 볼풀장 등) 나. 재질별(기동, 플랫폼, 울타리, 계단 및 접근수단, 구성부품등) 다. 모양별	
일 반	8. 정글짐	가. 종류별(단일, 복합) 나. 재질별(기동, 손잡이, 발판) 다. 모양별
	9. 오르는기구	가. 종류별(철봉, 늑목(늑철), 놀임봉, 평행봉, 암벽오르기등) 나. 재질별(기동, 손잡이, 발판) 다. 모양별
	10. 건너는기구	가. 종류별(구름다리, 징검다리, 평균대 등) 나. 재질별(기동, 손잡이, 발판) 다. 모양별
	11. 조합놀이대	가. 종류별 나. 재질별(기동, 플랫폼, 울타리, 계단 및 접근수단, 구성부품등) 다. 모양별
	12. 기타놀이기구	가. 종류별(1~11까지의 놀이기구에 속하지 않는 기구, 모래짐 등)

	나. 재질별(기둥, 플랫폼, 울타리, 구성부품 및 기구 등) 다. 모양별
12. 충격흡수용표면재	가. 종류별(매트, 블록 등) 나. 재질별(상부층, 하부층) 다. 모양별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표 2-1)을 말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2])

<표 2-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장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장소	근거 법규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휴게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1항
주택단지	「주택법」 제2조제6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 관련[별표 2]

## 2) 영업개시 후 (기타유원시설업 기준)

- 영업개시 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관광사업 양수’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유원시설업체의 법규 위반 시 각종 벌칙처분을 내림

### 가) 안전관리

- 본인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유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함
  - 1년 미만으로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함
  -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사설·유기기의 안전 상태를 확인받되 10년 이상이 된 유기사설·유기기는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 이용자 안전,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 영업소 명칭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침해여부를 판단 후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조치를 해야함

나) 관광사업 양수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경매·환가·압류 재산의 매각 등의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승계됨

다) 변경신고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영업소 소재지 변경,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영업장 면적의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안전관리자의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라) 벌칙 등 제재

- 유원시설업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음
  - 안전성검사 위반, 타인처분 및 경영 등의 사항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만 적용되고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2 유원시설업 세부 업무 체계

###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

#### 1) 유원시설업 종류

-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보유 개수 및 면적 규정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됨(「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표 2-2> 유원시설업 유형

유형	정의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2) 시설 및 설비기준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표 2-3)에 부합하여야 함

- 종합유원시설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6종 이상으로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표 2-3>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 기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함	
종합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승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li> <li>■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li> <li>■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원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3,025평이상)</li> <li>■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li> <li>■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li> </ul>
일반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소</li> <li>■구급약품 비치</li> </ul>
기타유원시설업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 (12,1평이상)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나. 허가·변경허가·조건부허가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5조, 제31조

1) 허가

가) 허가 담당 주체 및 허가 관련 사항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 허가 시 검토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 및 검토 내용은 <표 2-4>와 같음

<표 2-4>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관련법규 및 담당부서

항목	내용	근거법규	담당부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시설의 안전성</li> <li>■안전관리자 배치 등 영업질서를 위한 사항</li> </ul>	「관광진흥법」	지자체 관광관련 부서
유원시설업 입지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내에서 입지가능 여부 검토</li> <li>■「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종별 설치가능 여부 등 검토</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지자체 도시관련 부서
건축물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li> <li>■건축제한 및 건축용도별 사용 제한 등 검토</li> </ul>	「건축법」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오수처리 검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별, 면적별, 입지지역에 부합하는 오수처리계획 등 적합성 여부</li> </ul>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과
소방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검토 도면 작성</li> </ul>	「소방법」	소방서
상수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 배수관 설치의 적정 여부</li> <li>■급수해당구역 여부 등</li> </ul>	「수도법」	상수도 사업소

나) 허가절차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정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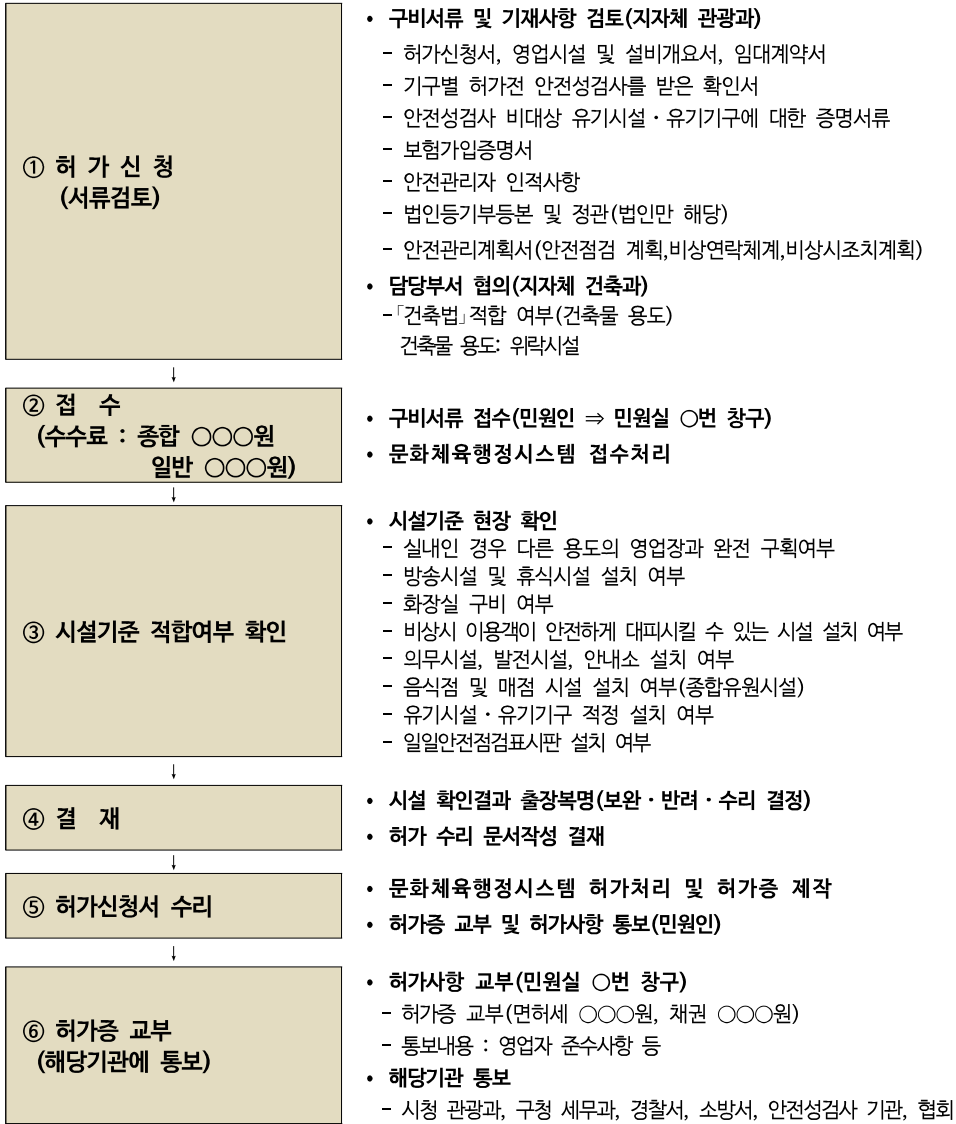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정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③ 정관(법인만 해당)
- ④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⑧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2-5] 신규 허가 절차

※ 자료: 경기도 〇〇시 자료 참조

## 2) 변경허가

### 가) 요건

- 유원시설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중요사항’
  - 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③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나) 변경허가 절차

#### (1) 변경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허가증
  - ②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이전·신설·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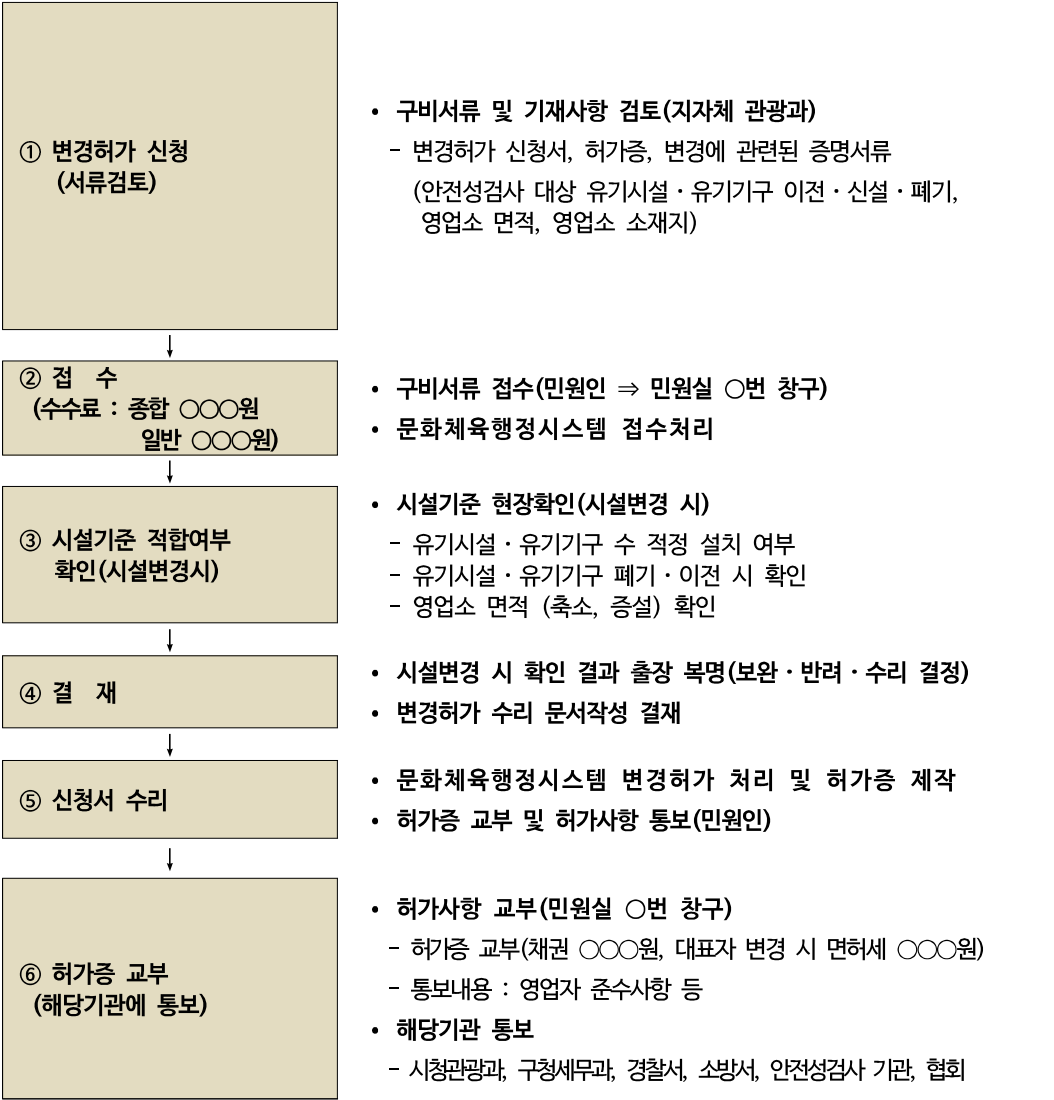
####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시설 변경시)

-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유기사설·유기기구 폐기·이전 시 확인, 영업소 면적(축소, 증설) 등을 확인함

#### (3) 결재

- 보완, 반려, 수리 결정하되 수리 결정시 허가증을 교부함

**변경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2-6] 변경허가 절차

※ 자료: 경기도 〇〇시 자료 참조

### 3) 조건부 영업허가

#### ▣ 「관광진흥법」 제31조

##### 가) 조건부 영업허가 및 취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설비(법 제5조 제2항)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3년 이내의 기간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①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③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함
- 조건부 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①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②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정관(법인만 해당)

②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 시설 및 설비 계획(법 제5조 제2항)

-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 조건부 영업허가의 허가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
  - ③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법 제33조 제 2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법 제3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1항)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31조 제2항)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결격 사유 및 처리 방법>**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 신고·변경신고

### ■ 「관광진흥법」 제5조

#### 1) 신고

##### 가) 주관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5조 제3항)

##### 나) 신고절차

###### (1)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유기시설·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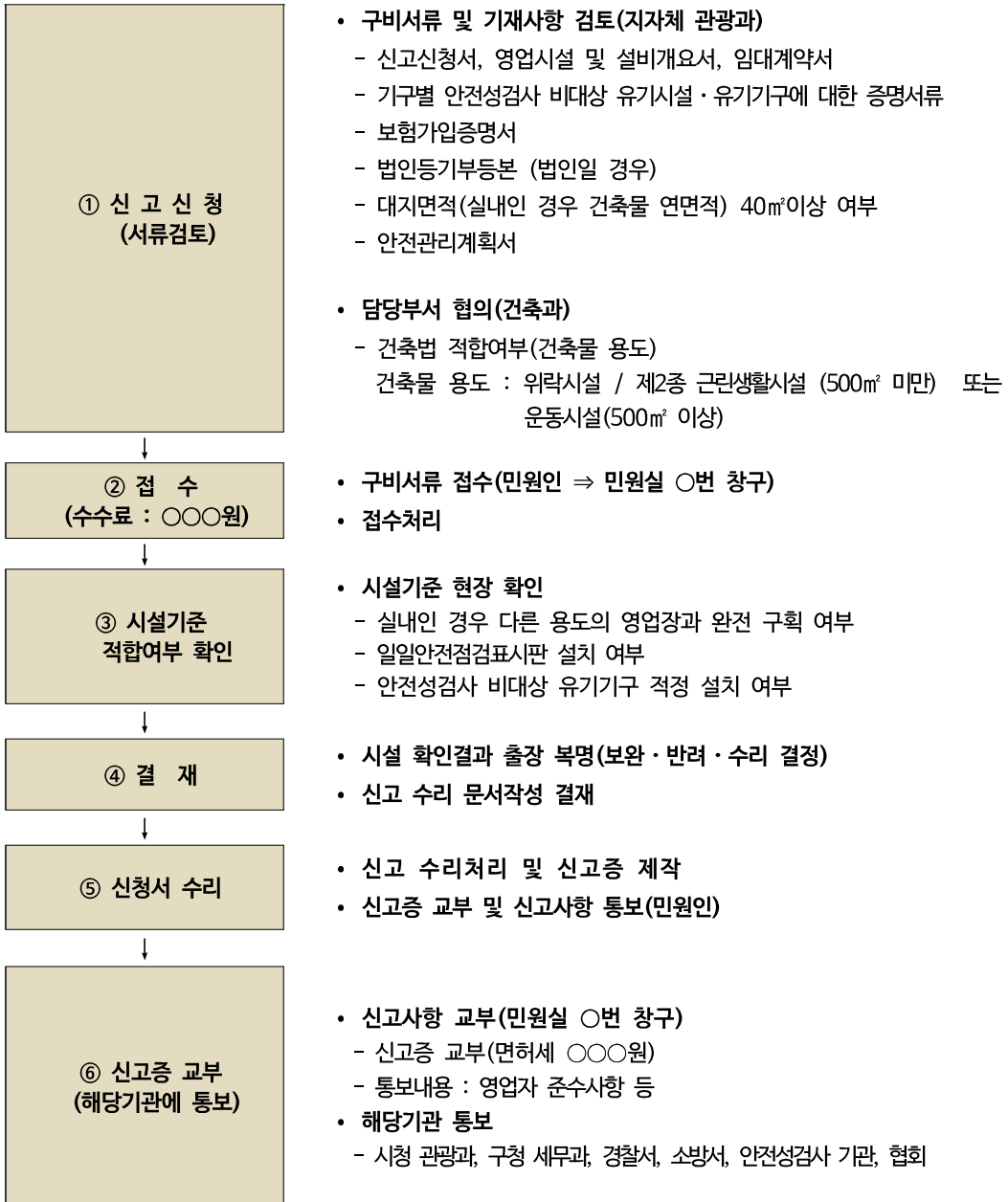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신고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그림 2-7] 신고 절차

※ 자료: 경기도 〇〇시 자료 참조

## 2) 변경신고

### 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종합유원시설업 · 일반유원시설업 (법 제5조 제3항)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li> <li>■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li> <li>■ 안전관리자의 변경</li> </ul>
기타유원시설업 (법 제5조 제4항)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li> <li>■ 유기시설 · 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li> <li>■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li> </ul>

### 나) 변경신고 절차

#### (1) 변경신고 신청: 변경신고 신청서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별지19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사용)

##### ① 신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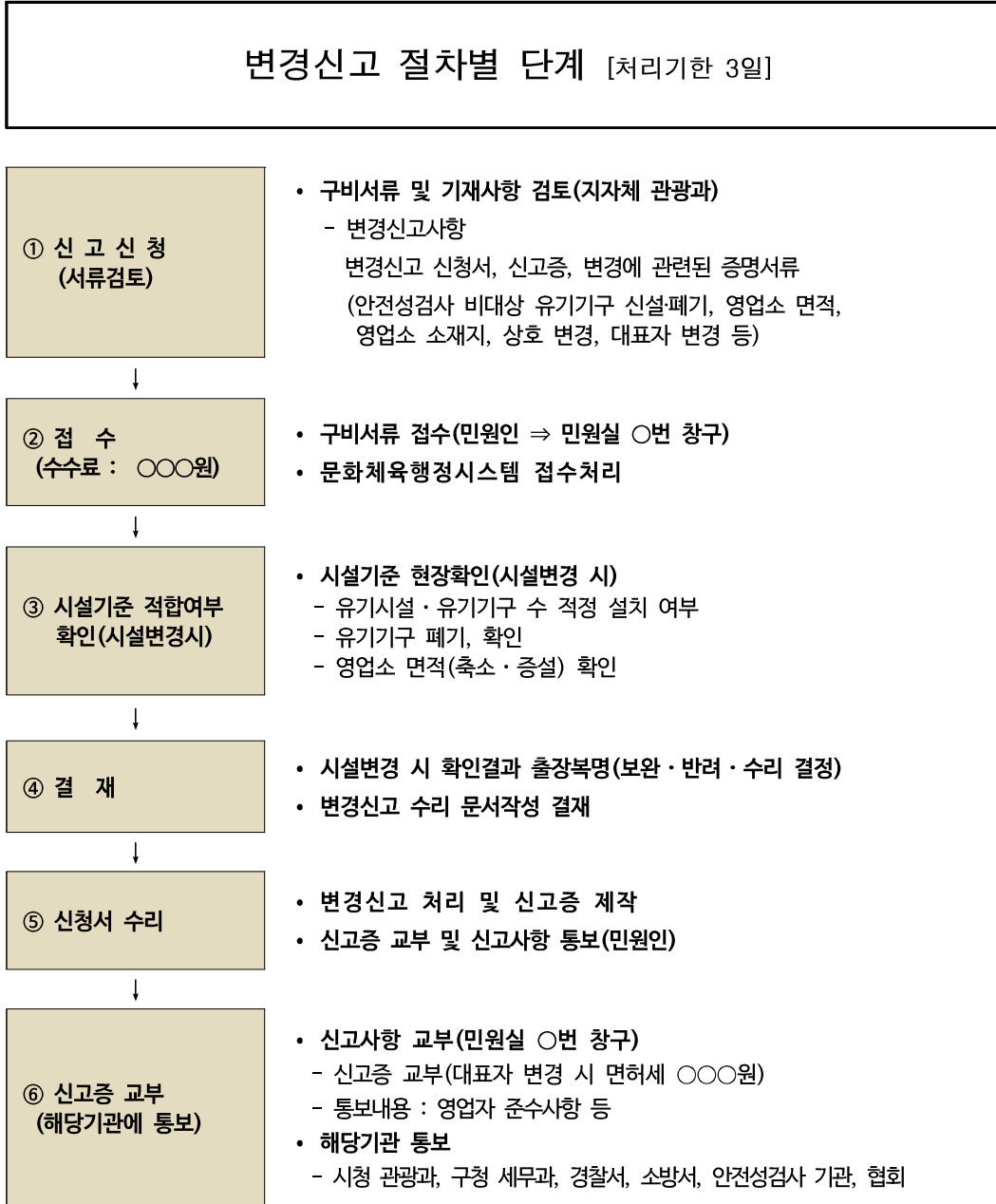
- ②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신설 · 폐기,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시설 변경시)

-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유기기구 폐기 확인, 영업소 면적(축소, 증설) 등을 확인함

#### (3) 결재

- 보완, 반려, 수리 결정하되 수리 결정시 신고증을 교부함



[그림 2-8] 변경신고 절차

※ 자료: 경기도 〇〇시 자료 참조

## 라. 관광사업의 양수

▣ 「관광진흥법」 제8조 , [처리기한 5일]

### 1) 지위 승계

#### 가) 지위 승계 요건

- (1)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合併)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함

#### 〈양수도 및 합병 개념〉

- 합병(合併):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하는 것
- 영업의 양수도(讓受渡): 유기적·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행위
-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 ‘작은 합병’으로, 기업의 재편성 또는 결합의 중요한 수단이 됨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
-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를 승계함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 ①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 ② 등록대상 관광사업으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시행령 제5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시설이 있을 것

- ③ 지정대상 관광사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시행규칙 제14조 관련[별표 2]에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3) 관광사업자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결격사유)를 준용함

나) 지위 승계 절차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 포함)

-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처분 또는 명령의 승계

- 관광사업자가 법 제 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3) 휴업 및 폐업 고지

-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허가, 신고 등이 효력이 있음에도 유기기구·유기시설이 폐기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휴업·폐업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해 등록기관등 장이 허가,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함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마. 보험가입 등

### ▣ 「관광진흥법」 제9조

-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법 제 9조)
  -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신청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적 보험 상품이 없으므로 통상 영업자 과실에 따른 이용객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첨부함. (단순화재보험 불가)

## 바. 타인경영 금지

### ■ 「관광진흥법」 11조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를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음. 단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음(법 제11조)
- 또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sup>4)</sup>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0조)

**법제처 법령해석례** [07-0051, 2007.3.23., 문화관광부]

【질의요지】「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사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사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사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사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사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사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4) ‘온천장’ 요건을 갖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된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2호)

## 사.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위생 기준

▣ 「관광진흥법」 제32조, 시행규칙 별표 10의2

### 1)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가) 안전 기준

##### (1) 이용자 안전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함
- 음주 등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사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함
-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됨
-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사업장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함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상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함

(2) 시설 안전

-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

나) 위생 기준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을 표시함(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 풀(pool)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함
-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함(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제3호 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①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함.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함
  - ②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함
  - ③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함
  - ④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함
  - ⑤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인 개수가 2개 이하이어야 함
-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는 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준내용으로 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수질검사 횟수 등은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관련 「수영장업」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의 제정 목적이 달라 동일적용 보다는 참고내용으로 검토하여야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도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



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함

## 2) 안전요원

### 가) 안전요원 배치 시 준수 사항

-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함  
(※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란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함)
-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함. 다만 수심 100cm 미만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음.

<표 2-5>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요원 배치 기준

풀 면적	안전요원 배치 기준	안전요원 자격
수심 100cm 이상의 풀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수심 100cm 미만의 풀	면적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	상기 자격요건 가능하며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가능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9조의2 관련 [별표 10의2]제11호

**<수상안전요원 관련 사례>**

Q: 저는 지방의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감시탑에는 수상 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성수기를 대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채용 중인 바 응시자 중 (사)한국청소년스키스쿠버협회에서 취득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자격증이 수상안전요원 자격 요건이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은 대한적십자사나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면 족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한국청소년스키스쿠버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위 대한적십자사나,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이라면 이 또한 가능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나) 유원시설업자의 책무

-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아.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 유지

▣ 「관광진흥법」 제34조

1) 영업질서 유지

-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2) 안전관리

가) 유원시설업자 유형별 안전관리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기타유원시설업자
  - 본인 스스로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표 2-6> 안전관리자 및 점검서식 기준

구분	안전관리자	점검서식	보관연한
종합·일반유원시설업자	상시 배치	안전점검일지	1년 이상
기타유원시설업자	본인 또는 운영자	안전점검기록부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안전관리자 혹은 본인 또는 운영자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	매주 지자체 장에게 제출

※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

-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함

다) 이용자 안전

- 안전수칙 게시
  -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 운행 전
  -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운행 중
  -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3) 안전교육

-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4) 보고 및 사후 조치

-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 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유원시설업자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7항(지자체 장의 개선 권고)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상호 표시

-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함

## 자. 유기사설 ·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 ■ 「관광진흥법」 제33조

#### 1) 유원시설업자 등의 의무

-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종합유원시설업자 ·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 2)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 · 검사기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서식의 유기사설 · 유기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유기사설 · 유기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3) 안전성검사 시기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 4) 안전성검사 방법

##### 가) 검사 빈도

- 허가된 지 오래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더욱 빈번하게 실시하도록 함

<표 2-7>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 빈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빈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연 1회 이상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	반기별로 1회 이상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나) 재검사

- 재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 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②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
  - ③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영정지 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5)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 안전성검사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로 구분함
- 안전성검사 결과는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으로 구분됨(제3조)

<표 2-8> 안전성검사 결과

구분	내용
적합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선 필요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 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검사 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료: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제3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

- ‘개선필요’ 판정 후 개선완료 상태에 대해 안전성검사 기관의 확인절차가 추가되기도 함

<표 2-9> ‘개선필요’ 판정 사후 절차

구분	내용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유원시설업체에서 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됨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체에서 개선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한 서류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확인 요청 →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확인 후 개선완료 공문을 지자체로 통보함



## 6)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 1)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제5조)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검사신청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완료 요청일자가 1주일 이내일 경우
  -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검사신청자가 반려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 2) 검사결과 통보(제9조)

-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시설·유기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유기기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함

## 7) 검사종류

### 가) 허가전검사

#### (1) 의미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3조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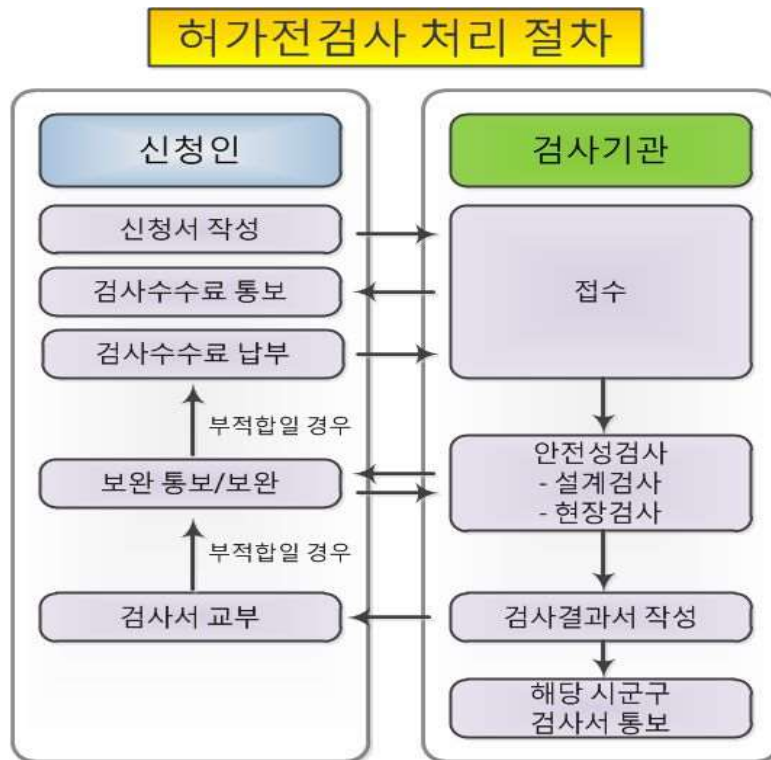
#### (2) 허가전검사 기준

-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제6조 제1항)
  - ① 하중에 대한 안전성
  - ②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 ③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 유기사설·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제6조 제2항)
  - ①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②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③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④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 ⑤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 (3) 허가전검사 방법 및 절차

- [별지 제1호] 서식의 유기기구안전성검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기기구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안전성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제4조)
  - ①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
  - ② 유기사설, 유기기구의 전체 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 ③ 구조계산서(중요부분)
  - ④ 전기회로도
  - ⑤ 유·공압 회로도

- ⑥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
- ⑦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접수: 신청서와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가 완료됨
  - 검사수수료 납부: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검사수수료를 신청업체에 통보하며 신청업체에서는 현장검사 이전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구비서류 심사: 구비서류의 검토
  - 현장검사: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최종 시운행까지 출장검사를 실시함
  - 검사서 송부: 현장검사가 종결되면 검사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그림 2-9] 허가전검사 처리 절차

## 나) 정기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1) 의미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3조 제5호)
  - 10년 이상 된 유기기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 2009년 9월 22일 질의 답변

Q: (안전성검사 기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반기별 1회 안전성검사 적용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통상 반기별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의미하며 해당 조문 시행일이 2009년 3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입법취지, 업계의 혼란방지 및 법률 시행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1~6월) 1회, 하반기(7~12월) 1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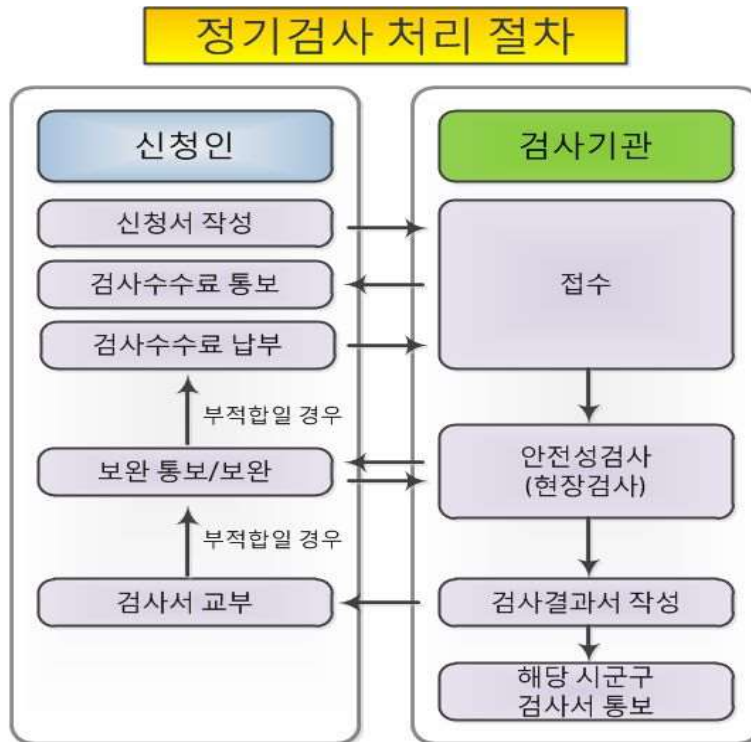
### 2) 정기검사 기준(제7조)

- 정기검사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별표 6]에 있는 검사항목(유기시설·유기기구 위치별 안전계수)을 따름.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음

### 3) 정기검사 절차

- 신청자격: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 서식의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제4조)
  - ① 유기기구조사서
  - ② 정기검사를 처음 받을 경우 또는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 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함
- 신청업체의 접수 완료 및 검사수수료 납부 후 검사반의 현장검사가 실시됨
  - 현장검사가 종결되면 검사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 처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됨



[그림 2-10] 정기검사 절차

#### 다) 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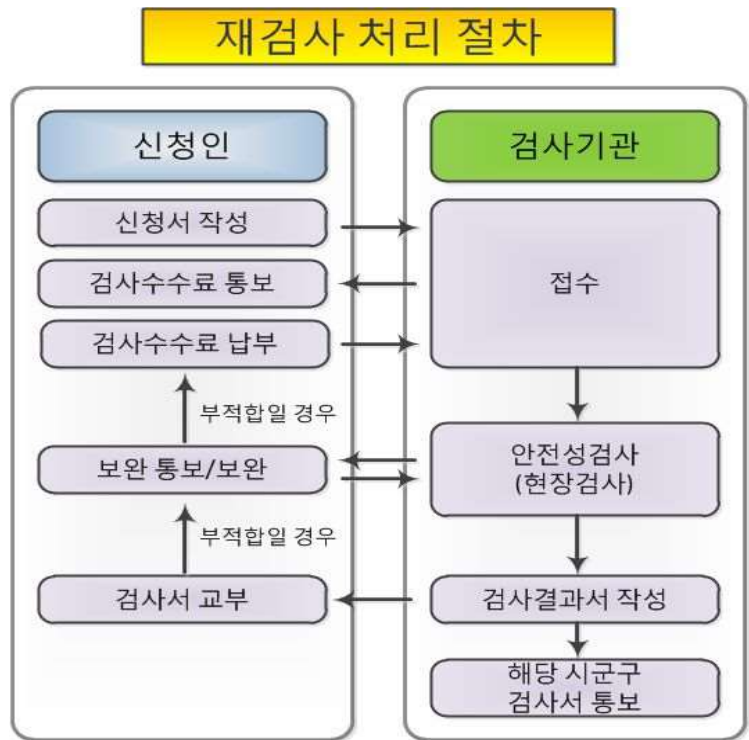
##### 1) 의미(제3조 제5호)

- 다음의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유기기구(유기기구 결함이 아닌 사고는 제외함)
-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영정지기간의 합산 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

2) 재검사 절차

- 신청자격: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를 받은 자)
-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존업체의 경우, 유기기구조사서를 첨부해 재검사를 신청하되 재검사신청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업체의 접수 완료 및 검사수수료 납부 후 검사반의 현장검사가 실시됨
- 현장검사가 종결되면 검사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 처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됨



[그림 2-11] 재검사 절차

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1) 의미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의미함(제3조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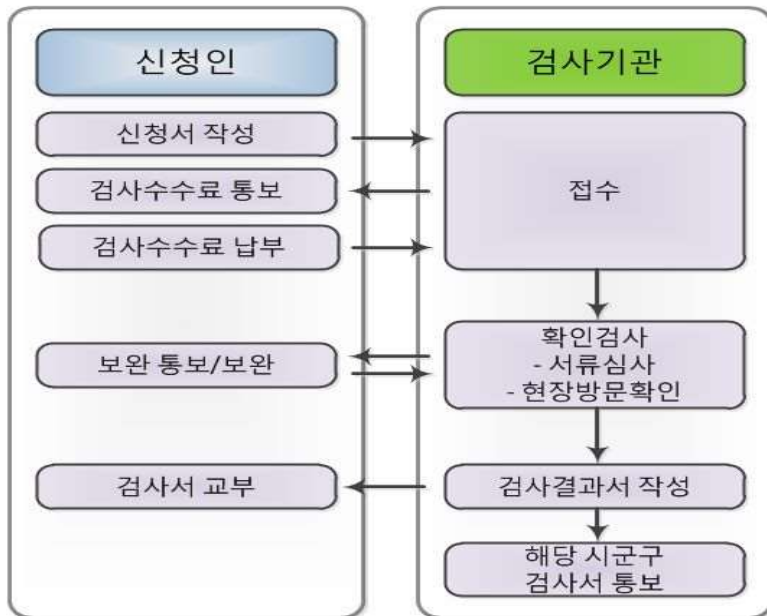
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확인 검사 절차

- 신청자격: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받은 자) 또는 신규로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려고 하는 자
-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 ②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③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전경사진
  - ④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신청업체의 접수 완료 및 검사수수료 납부 후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사반이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실시함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유형 <표 2-10> 참고
- 최종 확인 검사가 종결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 구에 발송함

〈표 2-10〉 현장 확인검사 대상과 신청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 유형

유형	예시	
	현장 확인검사 대상	신청 확인검사 대상
가. 주행형	배터리카,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미니기차(궤도길이 30 m 이내),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슬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키,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폴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다. 관람형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라. 놀이형	로데오타기, 플레스페이스, 붕붕뽀들,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 m 이내 또는 면적이 120㎡ 이내)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팔씨름, 건슈팅, 인형뽑기, 스키타기,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등

비대상확인 처리 절차



[그림 2-12]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 검사 절차



## 8) 검사기준<sup>5)</sup>

### 가) 허가전 안전성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5]

#### (1)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함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은 해당 기구에 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작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적용에서 제외함

#### (2) 공통기준 및 구조계산·설계 기준

- 허가전 안전성검사 공통기준으로 승용물,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운전실, 점검로 및 점검사다리, 출입문, 옥내통로, 계단, 안전유도표시, 안전점검판, 풍속계, 부하시험 등을 규정함
- 구조계산 및 설계 기준으로 하중, 안전계수 및 허용응력, 피로한도, 안전성평가항목을 규정함

#### (3) 완성검사기준

-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구분해 허가전 안전성검사 완성검사기준을 적용함

5) 부록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참조

〈표 2-11〉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완성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 장치,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

※ 자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5)요약

〈표 2-12〉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완성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기어,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 장치, 부력기구,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

※ 자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5)요약

나) 정기검사(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6]

○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구분해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을 적용함

〈표 2-13〉 고정식 및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기어,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 장치, 부력기구,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안전유도표시, 풍속계, 안전점검판, 기타 시설

※ 자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6]요약

### 9) 검사대상

<표 2-14>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내용	대표시설명칭	
안전성 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등 11종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등 3종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름라이드 등 3종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등 4종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 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등 7종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등 9종
		복합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등 14종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등 3종
	관람형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등 1종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등 3종
	놀이형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등 3종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등 6종
안전성 검사가 아닌	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등 6종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등 24종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등 6종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등 34종	

※ 부록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사진)』 참조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릭, 서킷2000, 클래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탐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후름라이드	후름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로스트밸리 등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애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약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코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터,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구	회전비행기	탐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논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심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팬이놀이, 스카иден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챌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ता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보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5)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궤도길이가 30미터이내인 것을 말한다),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술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폴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물레이션, 만다라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뽀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내이거나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 차.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 「관광진흥법」 제33조, 시행규칙 제41조

### 1)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자격
<p>종합 유원시설업</p>	<p>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기계 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기사· 전자산 업기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li> </ul>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 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 ·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li> </ul>
<p>일반 유원시설업</p>	<p>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 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기사·전자산 업기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기계정비산업기사·기계정비 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li> </ul>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 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 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 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p>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 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 ·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p>

※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별표 12)

## 2)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에서는 설치 유기기구의 개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이 다르게 규정됨 (※ 다른 업체와 중복하여 배치 불가)

<표 2-15>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개수	
	1종 이상 10종 이하	1명 이상
	11종 이상 20종 이하	2명 이상
21종 이상	3명 이상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별표 12]

## 3) 안전관리자의 임무

- 안전운영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8.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에의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원 시설업자도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교육내용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4.>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교육이수 시점

- 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에 1회 교육 후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 신규 교육은 선임된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후 교육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됨

예) 해당 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새로 선임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이 안되어 다른 업체에 가서 선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력과 상관 없이 선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4.〉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 5) 안전관리자 선임

- 최초 허가 서류 신청시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 제출하게 됨
-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에서는 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허가 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 허가 업체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 안전사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짐으로 허가 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함
  - 허가 업체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 타인경영금지에 따른 처벌 가능
-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체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선임하여야함

## 카. 사고통지 및 조치

▣ 「관광진흥법」 제33조의2 (시행일 2015.11.19.)

### 1)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유원시설업체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허가 관청에 사고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됨
- 사고보고를 받은 허가 관청에서는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 함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2) 중대한 사고 등

-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 사망자 발생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
- 현장조사 실시하는 경우
  -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
  - 현장조사 실시하려면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통보(다만, 긴급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3) 조치내용

-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명할 수 있음
  - ① 사용중지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개선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 ③ 철거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확인 검사

- 개선완료한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운행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함

### 5) 사고통보 기한 및 보고내용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내에 사고 통보
- 사고 통보 내용
  - ①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② 사고 발생 경위
  - ③ 조치 내용
  - ④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⑤ 사고 발생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서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1조의2(유기사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5항~7항]**

-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사용중지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개선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 3. 철거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의2(유기사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조치 내용
  -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타.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기관

### ▣ 「관광진흥법」 제80조

#### 1) 안전성검사 위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을 확인하는 검사’(법 제33조 제1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등록기관등의 장은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을 확인하는 검사’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함(시행령 제6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함(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 2) 안전성검사 위탁업체에 대한 형법 적용상 지위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 3) 안전성검사 기관

#### 가) 안전성검사 기관 요건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70조 관련[별표 24]

#####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함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 장비 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  
[FFT분석기·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달(modal)프로그램 포함]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준

- 가. 비영리법인이어야 함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두어야 함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

**[위탁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파. 안전관리자 교육 기관

### 가) 교육위탁

- 관광진흥법 개정(2015.8.4.시행)으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유기사설·유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

### 나) 교육내용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유원시설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하. 위반자에 대한 제재<sup>6)</sup>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 1)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형)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84조, 제8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법 제5조 제2항)
    - 사고조사후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자(법 제33조의2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4조)
    - ①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5조 제3항)
    - ②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5조 제4항)
    - ③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sup>7)</sup>(법 제33조)
    - ④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
    -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 ⑦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해 조성사업을 한 자(법 제55조 제3항)
  - 양벌규정(법 제85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6) 형사처벌은 유원시설업 운영자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운영자 등 위법행위를 한 자 혹은 유원시설업 관련 유기시설·유기기구, 유원지에 귀속됨. 따라서 처분대상은「관광진흥법」상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업종에 한정함
- 7) ‘설치한 자’는 유원시설업 운영자를 의미함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벌칙), 제84조(허가와 신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 행정처분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광역시·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기관등의 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표 2-16> 및 <표 2-17>과 같음
- 등록기관등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표 2-16> 행정처분 일반기준

기준	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에 따름 -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처분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li> <li>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li> <li>④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li> </ul>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관련[별표 2]

〈표 2-17〉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5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라.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은 영업소 폐쇄명령)
마.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은 시정명령)	신고업종은 영업소 폐쇄명령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은 사업정지 6개월)



II. 유원시설업 업무 체계

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 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커.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퍼.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허.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 업종은 사업정지 1개월)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관련[별표 2]

▣ 「행정절차법」

○ 제2조(정의)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3.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 제출 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함

○ 제22조(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함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함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24조(처분의 방식)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 3) 등록 취소 등

#### ■ 「관광진흥법」 제35조

- 가) 관광사업의 등록등 받은 자, 신고한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에 대한 정지 혹은 개선 명령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①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법 제4조)
    -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법 제5조 제2항, 제4항)
    - ③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조 제3항, 제4항)
    - ④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조 제4항, 제5항)
    - ⑤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8조 제7항)
    - ⑥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
    - ⑦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법 제11조)
    - ⑧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4조)

- ⑨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15조)
- ⑩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제4항)
- ⑪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
- ⑫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⑭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 단서)
- ⑮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78조)
- ⑯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 위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의 의무 등

-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록 시 통보규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

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4) 폐쇄조치 등

##### ■ 「관광진흥법」 제36조

##### 가) 폐쇄조치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제5조 제1항·제2항, 제4항),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제24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5조)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③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나) 폐쇄조치 절차 및 방법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5) 과징금 부과

#### ▣ 「관광진흥법」 제37조

##### 가) 부과기준 및 한계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2항)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행령 제34조 제2항)

<표 2-18>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단위: 만 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종합	일반	기타
2.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4항	1600	1200	800
나.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나.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관광사업의 양수 등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400	320	120
13.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2000	1600	1200
14. 안전성검사 등 위반	제33조	2000	1600	1200
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5. 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제34조	1200	800	400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8. 보고·검사 위반	제78조	800	400	80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별표 3)

나) 부과방법

- 등록기관등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 시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함
-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과태료 부과

▣ 「관광진흥법」 제86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별표5

가) 일반기준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능(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표 2-19>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기준	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li> <li>-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li> </ul>
처분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li> <li>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②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li> <li>③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li> <li>④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⑤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li> <li>⑥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⑦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나) 부과기준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규정을 위반한자(법 제33조 제3항)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 4항)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하지 않은 경우(법제33조의2제1항)에 대해 1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함 (2015.11.19.시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Ⅲ. 유원시설업 운영 및 입지 관련 법령



# 1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 유원시설업에는 영업 준비, 영업 개시, 영업 종료 전(全) 과정에서 여러 법령이 적용됨
- 유원시설업은 관광산업 육성 수단이라는 점에서 진흥 대상이지만, 안전관리 및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규제 대상이기도 함. 따라서 유원시설업에는 진흥,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 동시에 적용됨

<표 3-1>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개정안 미 반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li> <li>○ 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 2](특정소방대상물)</li> </ul> <p>2. 근린생활시설</p> <p>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11. 운동시설</p> <p>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p> <p>14. 위락시설</p> <p>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p>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li> <li>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li> <li>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li> </ul>		
「주차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조 제1항(주차장설비기준 등)</li> <li>○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1. 위락시설</td> <td>시설면적 100 m<sup>2</sup>당 1대(시설면적/100 m<sup>2</sup>)</td> </tr> </table>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m <sup>2</sup> 당 1대(시설면적/100 m <sup>2</sup> )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m <sup>2</sup> 당 1대(시설면적/100 m <sup>2</sup> )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법제73조,규칙제40조 제42조)</li> <li>-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li> <li>*전기설비종류 및 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li> </ul>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자 배치(제15조)</li> <li>-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 : 2인</li> <li>-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1인</li> </ul>		
「수도권정비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m<sup>2</sup>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30만m<sup>2</sup>) 제한 &lt;시행령 제4조&gt;</li> <li>-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6만 m<sup>2</sup>이상 제한</li> </ul>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7조</li> <li>-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li> <li>- 감면비율 : 100분의 10</li> <li>*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상시근로자수100인미만 또는 매출액100억원 이하</li> <li>*그밖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이하</li> <li>○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법제121조의2, 영116조의2</li> <li>- 대상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li> <li>- 감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소득세 : 최초7년간 100 %, 이후 3년간 50 %</li> <li>•취득세·등록세·재산세·증토세 : 최초 5년간 100 %, 이후 3년간 50 %</li> </ul> </li> </ul>		

## 2 유원시설업 입지 관련 법령

### 가. 개요

- 개별 법령에서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을 규율하고 있음
-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유원시설업 설치 가능한 곳으로 정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 및 지구로 정하는 곳에 유원시설업이 입지할 수 있음

<표 3-2> 개별 법령 상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법령	유기시설·유기기구 입지 가능 지역
「건축법」 시행령	<p>[별표 1](건축물의 종류)</p> <p>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놀이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li> </ul> <p>제13호(운동시설) 가목(놀이형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ul> <p>제16호 위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안에서 위탁시설 설치 가능함</li> <li>○ 동법 시행령 [별표 8, 9, 10, 11]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탁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li> </ul> </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6호 “위탁시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ul>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p>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제4호</p> <p>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p>

<p>설치기준에 관한 규칙</p>	<p>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음</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p>○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제외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p> <p>○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으로 한정)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 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함</p>
<p>「수도권 경부고속도로법 시행령」</p>	<p>○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p>



〈표 3-3〉 유원시설업 가능 입지 지역

입지지역	내용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경우,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입지함</li> <li>- 기타유원시설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입지 범위가 더 넓은, 기존 물놀이형 입지는 위락시설로 축소됨 (표 2-5 참고)</li> </ul>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유원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생산관리 지역 혹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됨</li> </ul>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업은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됨으로써 관광단지를 구성함. 관광단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함</li> <li>■ 유원시설업은 공공편익시설이 갖추어진 곳 또는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 18]의 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됨으로써 관광지를 구성함</li> </ul>
도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중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체육공원에 유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음</li> </ul>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으로 운영할 수 있음</li> <li>■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휴양업으로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음</li> <li>- 제1종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li>- 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ul>
관광휴양 진흥개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유원시설업이 입지함</li> <li>■ 관광휴양진흥개발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함</li> </ul>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을 정의함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 용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법 제2조 제15호)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법 제2조 제16호)
  -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군·자치구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법 제2조 제17호)
-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함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함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함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함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표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	정의	구분	정의	구분	정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상업지역	도시·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원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표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구분	정의	구분	정의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차 제한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취락지구	농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농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 다. 유원시설업 운영 가능한 건축물 및 용도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1. 유원시설업 입지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놀이형 시설)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놀이형 시설)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음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위락시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 3-6>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축물 용도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호	목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계획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보전	생산	자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놀이형 시설 (기타유원 시설)	x	x	▲	▲	▲	●	●	●	●	▲	●	●	●	x	▲	●	▲	▲	●	▲	x
운동 시설	놀이형 시설 (기타유원 시설)	x	x	▲	▲	▲	●	▲	▲	●	▲	x	x	▲	x	▲	●	x	x	▲	x	x
위락 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x	x	x	x	x	x	●	●	▲	▲	x	x	x	x	x	x	x	x	x	x	x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한 「건축법」상 건축물 재구성함

※ ▲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지역임

## 2. 유원시설(유기시설·기구, 유희시설)의 공작물축조 신고

### ■ 「건축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원시설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건축조례에 유희시설을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건축조례로 유희시설을 지정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시행령 제118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118조 제5항)
  - 공작물 축조신고서에는 ‘공작물등의 배치도’와 ‘공작물등의 구조도’를 첨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 「건축법」시행령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등의 준용)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건축신고), 제21조 제3항(착공신고 등),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5조 제1항(건축물의 유지·관리), 제40조 제4항(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5조(건축물의 견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기),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제87조(보고와 검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를 준용함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13. 유원지, 종합휴양업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건축법」시행규칙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작물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44조(공작물등에의 준용)

- ①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라. 유원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0조) 제3장 제4절

### 1. 정의(제56조)

-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함(제56조)

### 2. 유원지 결정기준(제57조)

- 시·군내 공지(空地)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유원지의 소유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함.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 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하도록 함
-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함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함

### 3.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제58조 제1항)

-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할 것
-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 특색 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함
-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4. 유원지 내 설치물 및 설치기준(제58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표 3-7)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법 제58조 제2항)
- 유원지 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 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법 제58조 제3항)
-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전문휴양업, 종합휴

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은 제2항(표 2-6)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음(법 제58조 제4항)

- 유원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58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58조 제5항)
  - 제1항 제4호: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제1항 제5호: 특색 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표 3-7〉 유원지 시설별 설치물

호	시설	설치물
1	유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li> <li>■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li> <li>■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li> </ul>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 포함)·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 포함)·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뉘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 포함)·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5	위락시설 <sup>8)</sup>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시설 노유자시설 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위락시설 가목의 시설(단란주점) 관광휴게시설 다목의 시설 전망대·의무실·자전거대여소·서바이벌게임장·음악감상실,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7	관리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포함)·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자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8) 「건축법」상의 위락시설과 다름.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은 ①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유희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을 의미함

## 5. 유원지 개발 절차

### 1) 입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유원지를 결정함
-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생산관리지역 혹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조성될 수 있음

<표 3-8> 유원지 개발 가능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계획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보전	생산	자연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개발 가능한 유원지 재구성

### 2) 예비적 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움
  -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함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 혹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효과를 도모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 6. 유원지 관련 해석

### 1) 유원지의 용적률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내에서의 용적률은 50 % ~ 100 % 이하로 제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3.1.1)으로 녹지지역의 용적률이 100%로 강화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발하는 유원지의 용적률은 현행「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적률을 따라야 함

### 2) 유원지 내 건축물의 층 수

- 유원지 내 건축물 건축 시 층 수, 높이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유원지의 규모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원지 내 건축물의 높이(층 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도록 함

#### ■ 용적률(容積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은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임.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적용됨

#### ■ 건폐율(建蔽率):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인 건축면적 비율, 즉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임
-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도시지역은 20~90%(상업 90% 이하, 공업 70% 이하, 주거 70% 이하 등), 관리지역은 20~40%,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임

### 3) 도시공원 유원지로의 변경절차

#### ○ 시·군의 지침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게 되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이나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 관광지과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 18]

1. 정의(법 제2조)

-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2. 시설기준(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및 관련[별표 18])

1) 관광단지

- ‘공공편익시설’(가목)을 갖추고, ‘숙박시설’(나목)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다목) 또는 ‘휴양·문화시설’(라목)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접객시설’(마목) 및 ‘지원시설’(바목)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관광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될 수 있음

공공편익시설(가목) + 숙박시설(나목) + 휴양·문화시설로서의 종합유원시설업(라목)

2) 관광지

- ‘공공편익시설’(가목)을 갖춘 지역
  - 다만 ‘숙박시설’(나목)부터 ‘지원시설’(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 관광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될 수 있음

공공편익시설(가목) + 휴양·문화시설로서의 종합유원시설업(라목) + (기타)

<표 3-9>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종류 및 구비기준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희음식점, 관광극장 유희업점,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중사자 전용숙소, 관광중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관련 [별표 18]

### 3. 설치 가능 시설(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관광지,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 시설지구 안에 유원시설업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원시설업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동·오락시설지구’에서 ‘휴양·문화시설’로서 설치됨

<표 3-10>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지구 별 설치가능 시설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 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 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오락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문화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어촌 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 19]

## 바.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 1. 정의(법 제2조)

-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기반시설 중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따른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2. 도시공원 계획 및 설치

-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화됨(법 제15조)
- 1인당 공원면적 기준(시행규칙 제4조)
  - 도시지역 내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에서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도시공원의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시 입안은 시장·군수가, 결정은 시·도지사가 함
-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함)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 3. 도시공원에서의 유원시설업

-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 **유희시설** :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 1])
- 유희시설을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임(표 2-10)
- 도시공원 내 설치면적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등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함(표 2-11)
  - 근린공원의 경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에만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규제함

〈표 3-11〉 도시공원 종류

공원		정의	규모	유원시설 설치 가능 여부	
생활권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천5백㎡ 이상	○	
	근린 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인근 거주자 이용)	1만㎡ 이상	○
			도보권 근린공원 (도보권 내 거주자 이용)	3만㎡ 이상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내 거주자 이용)	10만㎡ 이상	○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			100만㎡ 이상	○	
주제 공원	역사 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x	
	문화 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x	
	수변 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x	
	묘지 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10만㎡ 이상	x	
	체육 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만㎡ 이상	○	
	기타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1만㎡ 이상	x	

※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6조 관련 [별표 3]



〈표 3-12〉 도시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공원		공원면적	건폐율	공원시설 부지면적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20 이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60 이하
	근린공원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40 이하
		3만제곱미터~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 이하	
주제 공원	체육공원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50 이하
		3만제곱미터~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50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하

※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관련 [별표 4]

## 사.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

### 1. 정의

-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함(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유원시설업을 설치 가능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이 있음

〈표 3-1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전문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고,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어야 함</li> <li>■ 온천장으로 전문휴양업 등록 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li> <li>-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li> <li>-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홀더·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li> </ul> </li> </ul>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p>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sup>9)</sup>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 +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li> <li>☞ 음식점시설 +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li> </ul>
	제2종 종합휴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li> <li>■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li> </ul> <p>☞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p>

※ 자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9) 전문휴양시설에는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이 있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 2.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임(법 제15조 제2항)
-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23조)
  - ①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2만 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함),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
  -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 ⑤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⑥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사업계획 승인 기준(시행령 제13조)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①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②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③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
    -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아. 지구단위계획<sup>10)</sup>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지구단위계획

1) 정의 및 특징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 (법 제2조 제5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됨(법 제50조)
-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지구단위로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임
-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며 관광개발은 대부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루어짐
-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표 3-14〉 지구단위계획 유형

구분	등록기준
제1종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자료: 「국토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이석호·정우식. (2009). 관광개발실무. KNOU PRES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함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52조)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가구)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교통처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단지, 관광특구임(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7호)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지구에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있음
- 개발진흥지구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30,000㎡ 이상

-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및 중심기능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으로 구분됨
-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나 이와 함께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조성함

〈표 3-1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구분		등록기준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 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음</li> <li>■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함</li> <li>■ 구역의 면적은 지역적 특성·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li> <li>■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 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30% 이상으로 함</li> <li>■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구획함</li> </ul>
기반시설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8m 이상</li> <li>- 구역면적이 30만㎡ 이상 60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m 이상</li> <li>- 구역면적이 60만㎡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m 이상</li> </ul> </li> <li>■ 구역 내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하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함</li> </ul>
	상수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구역에서의 상수도는 간선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함</li> <li>■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일반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구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대상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ul>
	하수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구역에서의 하수도는 간선하수도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함</li> <li>■ 계획배수면적을 기준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 등 계획하수량을 추정하여 하수관거·배수펌프장 등 하수도시설을 계획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처리장확충계획 등을 고려함</li> <li>■ 해당 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장확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li>■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최소한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ul>
	공원 및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li> </ul>
	구역 내 폐기물 발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 포함)을 계획하여야 함.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li> </ul>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계획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별로 수립함</li> <li>■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는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경사도는 25도 이하이고, 입안 지역 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50m 이하인 지역으로 함</li> <li>-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되 양호한 조망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li> <li>-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 이내로 함</li> <li>-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분 이상을 이격하도록 함</li> <li>-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40m 이하로 제한함. 다만, 사전경관분석을 통하여 랜드마크 등 관광 휴양지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층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제출함</li> <li>- 표고·경사도는 계획 입안 당시의 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함</li> <li>-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음</li> </ul> </li> </ul>



경관	건물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 경관에 맞도록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li> <li>■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 중에 선택하여야 함</li> <li>■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 가능하나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li> </ul>
	담장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함</li> <li>■ 담장 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해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함</li> </ul>
	스카이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함</li> </ul>
환경	생태계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의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함</li> <li>■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 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도는 산림연결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li> <li>■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을 적용하여야 함</li> <li>■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 포함)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이상)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li> </ul>
	녹지 및 공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 경계도로 주변은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되, 폭원의 1/3 높이로 마운딩을 설치하여 녹지의 기능과 효과를 제고함</li> <li>■ 계획상 도로나 보행도로로 인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단절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도 가급적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오픈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계획함</li> </ul>
	환경오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도로와 건물 사이에 건축선 후퇴로 완충공간을 두고 녹지를 이용하여 분리시킴</li> </ul>
	방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계획은 입안대상지역 안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구역 내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li> <li>■ 방재계획에는 구역 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li> </ul>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 설치 등 개발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li> </ul>

※ 자료: 이석호·정우식. (2009). 관광개발실무. KNOU PRESS.



## IV. 기타사항



## 1 사행성 기구

### 가. 사행성 기구 운영 현황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레이싱나이트’, ‘테크니컬피싱’, ‘레크레이션피싱’ 등의 기구가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차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이싱나이트’, ‘테크니컬피싱’ 등이 「관광진흥법」상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놀이형 유기기구가 아니라고 해석하였고, 법원도 위 기구들이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청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 유원시설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종전에 ‘레이싱나이트’, ‘테크니컬피싱’ 등을 설치해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였던 많은 업체들이 폐쇄됨

#### 1. ‘레이싱나이트’ 사례

※ ‘레이싱나이트’에 대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거부처분의 정당성(2011구합10508)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 당사자 : 원고(레이싱나이트 설치자), 피고(문화체육관광부)

#### 〈사건 개요〉

- 2011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시·도에 ‘레이싱나이트’가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유기기구가 아님을 통보함
- 2011년 1월 14일,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인 ○○○○에서 ‘레이싱나이트’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를 거부함
- 2011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를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사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이싱나이트’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

1) 원고의 주장

- ‘레이싱나이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게임물 또는 사행성 게임물 또는 구(舊)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인 ○○○○는 ‘레이싱나이트’를 검사하여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기타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거부 처분으로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음

2) 법원의 판단

(1) 요지

- ‘레이싱나이트’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 거부처분은 정당함

(2) 이유

①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요건

-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어야 함

② ‘사행성’의 의미

○ 「사행행위규제법」에서의 정의

-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뜻함(법 제2조 제1항)
-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임(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게임산업진흥법」에서의 정의

- 사행성 게임물이란 배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거나 경마 등을 모사한 게임물 등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의미함(법 제2조 제1호의2)

③ ‘레이싱나이트’ 성격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레이싱나이트’ 형태 및 이용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시중에 ‘레이싱나이트’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유기기구는 ‘이용자가 구슬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을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하나로 규정한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과 유사하므로 사행성이 있음
  - 이용자는 업주로부터 이용권 판매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고 직접 이용권 자판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가 입력된 이용권을 발급받아 게임장에 입장함
  - 이용자는 대형스크린에 나타나는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영상을 보고 우승말에 베팅을 하여 점수를 획득함. 즉 이용자가 베팅을 한 후 별다른 조작행위 없이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됨
  - 게임이 끝나면 업주는 이용자에게 잔여점수를 마일리지 형태로 카드에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카드를 사용하여 다음에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카드 또는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사용하여 상품권 등의 경품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품권이라는 경품의 특성상 환전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용자가 이러한 환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용할 우려가 있음

④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sup>11)</sup>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고 신뢰한 데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1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참고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신청 거부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원고는 다른 업자들이 신청한 ‘레이싱나이트’에 대한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의 비대상확인을 신뢰하였을 뿐이고,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음
  -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이 종전에 ‘레이싱나이트’에 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상기구인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은 위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레이싱나이트’의 사행성과 실제 영업 형태, ‘레이싱나이트’를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운영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폐해, 유사업소에 대한 통일된 단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하여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 신청 거부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행성' 관련 법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재물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함
    - 가. 복권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사행기구")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함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함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구를 말함
  6. "사행성 유키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키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가. 사행성게임물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함
    -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2. ‘테크니컬피싱’ 사례

### ※ ‘테크니컬피싱’에 대한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및 시정 명령 취소(2011구합26558)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 당사자 : 원고(테크니컬피싱 설치자), 피고(서울시 ○○구)

#### (사건 개요)

- 2011년 6월 1일, 원고는 미니농구대 1대, 인형뽑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함
- 2011년 6월 15일, 원고는 미니농구대 1대, 인형뽑기 1대 외에 ‘테크니컬피싱’이라는 유기기 구 4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였지만, 2011년 6월 16일, 피고는 ‘테크니컬피싱’은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기구가 아님’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함
- 2011년 8월 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8월 19일까지 원고의 영업장에 설치된 ‘테크니컬피싱’ 기계를 모두 철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함

#### 1) 원고의 주장

##### (1)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의 위법성

- ‘테크니컬피싱’은 안전성검사 기관인 ○○○○로부터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 구로 판정되었으므로 변경신고에 형식적 하자가 없음
- ‘테크니컬피싱’은 사행성이 없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 구입
- 피고의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 고객들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함

##### (2) 시정명령의 위법성

-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시정명령도 위법함
- 피고의 시정명령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 고객들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함

## 2) 법원의 판단

## (1) 요지

- ‘테크니컬피싱’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함

## (2) 이유

## ① 처분권자의 권한

- 안전성검사 기관에 위탁되는 권한은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한정되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위임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처분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음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 설치’가 기타유원시설업의 실제적 요건이고, ‘사행성이 없을 것’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요건임
- 따라서 ‘사행성 유무’는 처분권자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에 있어서의 실제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내용이 되므로 처분권자는 사행성 유무에 관하여 안전성검사 기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② 사행성 유무

- 사행성 평가 기준
  - 참가자의 영업자에 대한 재물 교부
  - 우연적 방법에 의한 참가자의 재산상 득실 결정
  - 재산상 이익의 환전 가능성
- ‘테크니컬피싱’의 사행성
  - 손님의 업주에 대한 돈 지불
  - 자동 실행에 의한 우연적인 게임결과 산출
  -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의 이용권으로서의 전환 구조를 갖추고 있음

- ③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 고객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사행성 기구의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국가의 특별한 관리 하에 두는 것이 마땅하므로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이나 카지노업에 비하여 완화된 관리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설치를 제한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될 만큼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 고객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레크레이션피싱’ 사례>

- 법원은 ‘레크레이션피싱’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신청 반려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함(2010구합43563)
- ‘레크레이션피싱’의 사행성
  - 레크레이션피싱은 레버나 낚시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낚는 낚시 형태의 게임으로 다음의 이유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함
  - ① 1만 원으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총 7분 정도의 게임시간이 주어지고 이용자가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 점수가 추가되어 게임시간이 증가함
  - ② 이용자는 레버나 낚시대를 조작하여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지만 시작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 ③ 기구 내부의 전산장치에는 배당테이블 파일 등에 회전수와 표시될 화면, 당첨 점수가 미리 설정되어 있음
  - ④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쿠폰을 매개로 현금과 쉽게 교환할 수 있음
  - ⑤ 이용권 단위금액 등에 비추어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 나. 사행성 기구 신청시 대처

- 신청 기구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의 해당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문의 확인 후 처리 해야됨
- 현장점검시 경찰내 사행성 게임기 단속반과 합동 점검 실시
- 사행성관련 행정소송 통보가 온 경우 앞의 사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소송이 단기간 끝날 수 있도록 해야됨  
(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오래 진행하는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2 안전사고

### ▣ 「관광진흥법」 제33조

#### 가) 안전사고 유형

- 유기사설·유기기구 사용 시, 그리고 유원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함
  - 유원시설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원인은 시설물 결함, 운행자 관리 미숙, 이용자 부주의(안전수칙 미수행) 등으로 분류됨
- 특히 유원지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유원시설업장에 여러 부대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자체 결함,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고 이외의 안전사고가 증가함
- 안전사고 원인과 유형이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표 4-1> 안전사고 발생 형태

사고발생 형태	내용
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진 것
전도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미끄러짐 포함)
충돌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낙하·비래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붕괴·도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진 경우
협착	물건사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감전	전기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폭발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난 경우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열된 경우
화재	화재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관련물체 또는 발화물을 기재
무리한 동작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거나 불안정한 자세 또는 동작의 반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상 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된 경우
유해물 접촉	유해물질 접촉으로 중독이나 질식된 경우

## 2. 안전사고 현황

- 주행형 유기기구에서는 주로 브레이크 고장 혹은 정지 센서 작동으로 인한 열차 간 충돌로 안전사고가 발생함
- 유원시설업장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므로 화재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안전사고는 유기사설·유기기구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주변 환경이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더욱 커지게 하므로 유기사설·유기기구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 환경도 안전의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놀이시설형의 실외형 에어바운스는 돌풍으로 날아가거나 실내형 에어바운스는 정원초과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관리자 부재중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안전사고 매스컴 보도 현황  
매스컴에 보도된 현황을 정리하면 정지사고가 대부분으로 인명피해가 경미 하였음.

〈표 4-2〉 매스컴 보도 현황

일시	지역	사고내용	상해정도
2015.2.20.	인천	바이킹 놀이기구의 탑승자 고정보호용 안전바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풀리면서 남녀승객 14명이 타박상 등 경상	경상
2015.4.26	대구	미니코스터 기종인 사슴열차가 집전장치 접촉 불량으로 레일에 멈추어 약 15분 동안 10여명의 승객이 레일위에 정지 된 차량에 고립된 상태에서 업체 측과 소방서에서 탑승객을 하차시킨 고장 사고	경상
2015.4.28	서울	자이로드롭이 60m높이에서 3분간 멈춰 선 상황 발생(39명 탑승)	없음

2015.5.4	경기	크레이지레프트 센서 (안전바 작동 여부를 확인)가 20개중 1개의 좌석에서 운행 중 오작동 하여 승용물이 그대로 멈추는 상태가 되었음 승용물과 지면의 높이는 약 2.5m정도로서 준비된 사다리를 통하여 20여명의 승객모두를 10분 이내에 안전하게 하차	없음
----------	----	---	----

※ 짚라인, 번지점프, 수영장(워터파크) 등의 사고는 유원시설업과 관련 없으나 매스컴에서 놀이공원 사고로 같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

### 3. 안전사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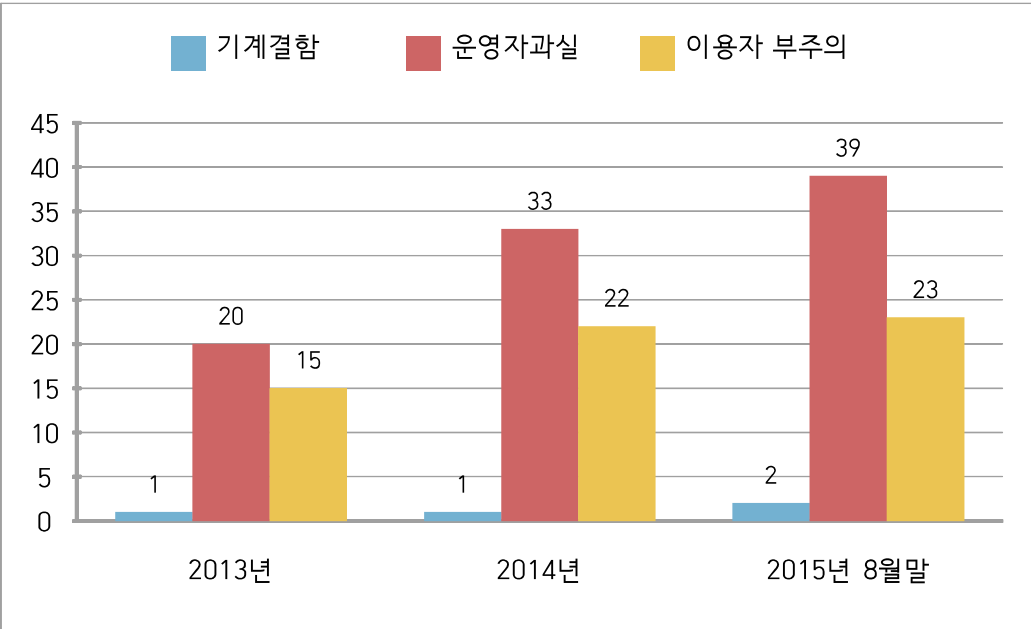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현황(2013 ~ 2015.8,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사고관련하여 지자체에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3년 36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64건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운영자 과실(92건, 59%), 이용자 부주의(60건, 38%), 기계결함(4건, 3%)으로 나타났음

또한 유기기구별로는 타가다디스크,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붕붕뽀플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함

구분	기계결함	운영자 과실	이용자 부주의	합계
2013	1	20	15	36
2014	1	33	22	56
2015	2	39	23	64
계	4	92	60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 3 유원시설업에서 푸드트럭 영업

▣ 관련 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 가. 푸드트럭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교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영업

#### 나. 푸드트럭 허용 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하천법」 제2제1호에 따른 하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 쉼터
-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다.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절차

- 1) 영업자 선정 및 사용 계약체결(유원시설업자)
  -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 영업장 내에 푸드트럭 허용 장소를 정하여 푸드트럭 영업 사업자를 선정 및 임대계약등 사용계약 체결

\* 푸드트럭 허용 장소 선정시 고려사항

-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주변에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
- 푸드트럭 영업에 이용 가능한 전기,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
-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
- 주변 식품판매 상권 등을 고려
-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지역 등

\*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및 계약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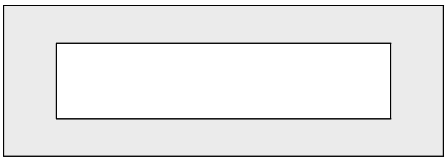
- 푸드트럭 영업신고증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확보한 경우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승인 발급하는 것으로 영업장소 확보단계인 공무(선정)단계에서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말 것
- 계약시 영업자가 푸드트럭 보유자인 경우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기간은 이를 고려하여 설정

○ 유원시설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자 및 이용객이 푸드트럭 영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면 또는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

《푸드트럭 영업지역 표시》

• 영업자 및 이용객이 허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허용장소(시간) 및 업종을 체육시설 내 바닥에 페인트로 표시

※표시 예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지역-1(휴게음식점)  
10:00 ~ 19:00(11월 ~ 2월 10:00 ~ 17:00)

• 푸드트럭 허용지역 크기는 푸드트럭 내 영업만 허용할 경우 푸드트럭 주차 가능 크기<sup>1)</sup>로 하고, 푸드트럭과 함께 이동식 야외탁자 등을 이용한 영업을 허용할 경우<sup>2)</sup> 푸드트럭 주변 허용 영업 범위 표시

1) 너비 2.0미터 길이 5.0미터(주차장 설치기준)  
2) 사업자가 “옥외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2) 푸드트럭 영업신고(푸드트럭 영업자)

- 푸드트럭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
  -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위생 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 푸드트럭 영업자(대표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해당 업종에 맞는 신규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보수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함
  -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푸드트럭 영업자(대표자) 및 종사자는 영업시작 또는 종사 전 미리 건강진단을 신규로 받고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푸드트럭 영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하여 영업소재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신고서를 제출

3)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

-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확인서류 외에 푸드트럭 허용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서류(사용계약에 관한서류)와 자동차등록증(용도변경 등) 확인
- 영업신고증 발부 후 시군구(위생담당 부서)에서는 영업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라. 문의대응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가능해짐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및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련 문의가 있어 유원시설업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부서(위생담당)로 안내 하기 바람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4 코드 아담제도(어린이 실종예방)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 [참고] 코드 아담제도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1981년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코드 아담’입니다.

#### 가. 실종아동 예방제도

코드아담은 놀이공원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임

#### 나. 대상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

\*유원시설에 경우 1만㎡이상인 경우 해당됨

대규모점포( 1만㎡이상), 도시철도역사( 1만㎡이상 또는 환승역), 여객·항만·공항 터미널(5천㎡이상), 전문체육시설(5천석이상), 공연장(1천석이상 또는 프로스포츠클럽), 지역축제장( 1만㎡이상),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다. 실종아동 발생 신고 접수

- 아동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실시
- 아동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

#### 라. 관리지침

시설 관리주체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침에 따라 연 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과태료

실종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이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보건복지부 제2014-118호, 2014.7.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종신고 담당부서 업무분장)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 등의 미발견)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어 보호자 에게 인계되었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경보발령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과 경보전파, 수색실시 등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지침을 중심으로 신고접수 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등에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일시·장소, 주관자,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118호, 2014.7.29>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5 해외 유원시설관련 동향

### 가. 해외 유기기구 현황

- System klarer社의 페이크 슬라이드
  - 최근 경향인 interactive slide의 종류이며, 진행방향으로는 시각적인 요소를 보여주면서 우회코스로 슬라이딩하도록 운영



- WALLTOPIA社의 Rollerglider
  - 야외 및 실내에서 운영가능하며 쥘라인과 유사한 기구로 제작사에서는 유기기구 표준인 EN 13814에 부합하여 제작 및 설치



- Amusement Product社의 Laser Fury
  - 범퍼카의 구동부분을 기초로 하여, 탑승객 간에 레이저 건으로 표적을 맞추면 탑승석이 2자유도로 회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가 포함된 유기기구



#### 나. 해외 유원시설관련 표준 동향

- ISO/TC254(유원시설분야 국제표준 기술위원회)
  - WG 01 "Biomechanical effects" Functions
  - WG 02 "Design,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Functions
  - WG 03 "Operation and use" Functions
  - WG 04 "Methods of measuring acceleration acting on amusement ride passengers"
- ISO/TS 17929 안전표시
  - 임산부 금지 사인: ISO/TC 145/SC2 "안전 식별, 간판, 형태, 심볼, 색"에대한 새로운 버전이 승인됨

- 취객 금지 사인: ISO/TC 145/SC2에서 NWIP 투표 진행 중
  - 각 위원회 멤버들은 2015년 11월말까지 안전표시의 표준화를 위하여 각종 예들을 제출하기로 협의
- ISO/TC 83, CEN/TC 152, IAAPA 보고
- ISO/FDIS 20187 Inflatable play equipment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에 대하여 2015년 1월 12일에 투표마감
  - ISO/DIS 19202-1 Summer toboggan runs -- Part 1: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에 대하여 2016년 1월 23일까지 투표 종료예정
- ISO/TC 8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치"와 ISO/TC 254와의 중복 이슈
- ISO/TC 83과의 연락자를 지정하고, ISO/TC 83의 연례회의 전에 웹미팅을하기로 협의.
  - 트램폴린과 에어바운스는 ISO/TC 83과 중복되며, 위험도를 봤을 때 TC254 편입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제안.
- 일광 안전(Sun safety)에 대한 기준 제안
- 제안 배경 : 야외 활동 중의 피부에 작용하는 일광은 피부암을 발생하며 유원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큼
  - 유원시설 · 기구의 설계 단계에서 다음의 대책이 필요
    - 방갈로와 같은 그늘을 방문객에게 제공
    - 태양 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크림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
    - 유원시설 종사자들에게 차단 모자, 무릎과 팔꿈치까지 보호하는 의류 착용
  - ISO 17842-1에 상기 내용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ISO/TC 159의 내용을 인용, 또는 ISO 17929 생체역학에 정보제공을 위한 부속서로 제공하는 형식을 제안
  - 회의 당일 덴마크에 의하여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NWIP 투표하기로 협의. 표준문서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언급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함.



## V. 민원사례



## 1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 유형(FAQ)

### □ 민원인

-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은 민원인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 유원시설업 이용객, 그리고 유원시설업 관련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 기관이 제기한 민원으로 구성됨

### □ 민원 내용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은 허가 및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행정처리 규정,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및 기구가 「관광진흥법」상 유기사설·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규시설인 키즈카페 관련 문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보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질의가 다수를 이룸
- 그 밖에 법령 해석이 모호해 질의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 차수 적용, 타인경영,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종(種) 수, 보험가입 등 「관광진흥법」의 해석 상의 민원 등이 제기되었고, 건축물 용도, 유원시설업의 입지가능 지역, 유원시설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의무, 각종 행정처분 절차 질의 등이 제기됨

### □ 민원 처리 기관

- 유원시설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주(主)를 이룸. 즉 유원시설업 관련 주요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함
- 「관광진흥법」이외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기관이 민원을 처리함
  - 유원시설업 입지와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규 적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함

<표 5-1> 유원시설업 관련 민원 유형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가. 허가 및 변경허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유기시설·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li> </ul>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이라도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하면 유원시설업 규정이 적용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자가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를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의 행정절차</li> </ul>	유원시설업 허가와 신고대상은 다르므로 기존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을 폐업신고한 후 신규허가를 취득해야 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내용을 증명해야하는 변경허가신청시 폐기내용 증명 방법</li> </ul>	폐기하려는 유기시설·기구의 소유자의 폐기승인 문서, 고철 매각처분 문서,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료 주민대상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허가 대상 여부</li> </ul>	무료이용 되어도 안전을 위하여 허가 대상에 해당됨. 다만 학교행사 및 지역주민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허가전 사람 탑승가능 여부</li> </ul>	등록관청의 영업허가 후 탑승가능 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에 모노레일 허가절차 문의</li> </ul>	모노레일은 궤도주행형 유기기구로서 허가 대상임. 해당 섬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허가신청하여야 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시적 영업 후 영업 재개시 절차</li> </ul>	유기시설·기구의 재검사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는 신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및 변경신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원시설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구비 서류</li> </ul>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영장 내에 비대상 유기기구(붕붕뛰틀) 설치에 따른 신고여부</li> </ul>	트램폴린은 붕붕뛰틀이며 구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다. 유기시설 · 유기기 구 해당 여부	1	• 공중하강체험 (아라나비, 하늘 가르기, 짚라인, 짚와이어 형태)을 개발해 시행하는 임대 사업 「공중하강체험시설」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시설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 인공암벽, 사계절 썰매장 (물포함)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3	• 전동레일바이크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 ‘주행형’ 중 ‘궤도주행형’의 궤도자전거에 해당함
	4	• 저수지의 오리배 운영 저수지에서의 오리배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관련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5	• 화물차 뒤에 싣고 이동하며 영업하는 ‘미니 바이킹’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 ‘중회전 고정형’ 유기기구에 해당함
	6	• 행글라이더 체험장, 4륜오토바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7	• 매직스윙 유기기구에 해당여부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함
	8	• 방탈출 게임시설 유원시설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9	• 주드라이브(Zoo Drive) 유원 시설업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0	• 4D 체험시설의 관광진흥법령 적용 여부 4D 영상관의 좌석이 움직이는 경우,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에 해당함. 단 게임물인 경우 게임산업진흥법령에 적용 받을 수 있음
	11	• 로프웨이와 레일웨이 혼합 이동 기구의 업종구분 타 법령과 혼용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법령 적용하고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 구분 구획 관리하여야 하나 등록관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함
	12	• 스크린 승마시설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대상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물놀이 1	•수영장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적용하며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면 유원시설업에 해당함	
물놀이 2	•야외 간이물놀이 시설의 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동식 수영장)만 있는 경우는 유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슬라이드 등의 부속시설로 착지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슬라이드와 착지 부분(수영금지)만 유원시설에 해당 되므로 수영장 시설부분과 구획 관리하여야 하며 간이 수영장 시설을 착지 전용시설로 모두 사용할 경우는 유원시설업으로만 관리하면 됨	
물놀이 3	•회사 콘도미니엄 건물에 조성된 수영장에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투숙객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기시설·기구 설치하고 한시적 영업하는 경우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며 유기시설이 없는 경우 체육시설법의 수영장업에 해당함	
물놀이 4	•시티슬라이드 물놀이형 유기시설에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상 물놀이형 바디슬라이드에 해당함	
라. 키즈카페 (기타유원 시설업)	1	•키즈카페 운동시설지역에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상 건축물 용도가 제 13호 운동시설일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함
	2	•키즈카페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4.3.24.)되어 키즈카페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500제곱미터 미만)가 가능하게 되었음
	3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 및 집회시설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가 불가능함
	5	•키즈카페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소재지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본점 및 각 지점별로 해당 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함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키즈카페내 검사대상 2기종 있는 경우</li> </ul>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아야됨
마. 시설 및 설비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원사업체에서의 풍속계 설치</li> </ul>	20m이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가 있는 유원시설업체는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 유원시설업에서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함’의 의미</li> </ul>	독립된 건물에 상응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나 독립성이 불가능한 경우 고정된 차단시설을 하는 등 구분 관리하여야 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설치한 경우 종합유원시설업 해당여부</li> </ul>	대지면적(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음식시설(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을 수 있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식시설 설치 해석</li> </ul>	휴식시설은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로서 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예를 들어 규정한 것이며, 유원시설 사업장에 설치된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따라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실약품 사용가능여부</li> </ul>	「약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사고 보고 및 조치</li> </ul>	사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영업정지 가능여부</li> </ul>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수 있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요원 배치 위반시 제재</li> </ul>	안전요원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가능함,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사.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시설업의 입지 가능 지역</li> <li>• 유원시설업 관련 부대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 상업지역 및 위락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원지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상 관광지 등에 입지할 수 있음</li> <li>■ 부대시설은 유원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함</li> </ul>
	2	• 계획관리지역 내 유원시설 허가 가능 여부	위락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위락시설 건축할 수 없음
	3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허용 여부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건축 등 인허가 행위가 필요하므로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 건축물의 용도상 위락시설에 유원시설업의 시설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건축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아. 기타	1	• 기타 유원시설업의 행정처분 차수 적용 및 사전통지 기준	동일한 유원시설업체라도 하나의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각 차수별로 사전통지 하여야 함
	2	• 공매로 인하여 유원시설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인수' 개념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 인수 요건 충족 시 승계 가능함.
	3	• 유원시설업의 타인경영 가능 여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는 타인이 경영할 수 없음

민원 질의		처리기관 답변
4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 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개수를 의미함
5	•수륙양용선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 여부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음
6	•휴업중에도 보험에 가입 여부	휴업 중에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7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유기기구의 위생기준 적용 여부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유기기구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8	•결격사유 조회 및 미신고 폐업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취소(신고업종 영업소 폐쇄명령)절차 따름. 폐업미신고시 시정명령 해당절차 이행하는 것이 적절함
9	•양수(지위승계) 안전관리자 승계 여부	고용승계 받은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법령 준수 여부 검토 필요함
10	•관광사업자 영업보증금 예치 가능 여부	허가 및 신고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 대신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민원사례

###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1. 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유기기구로 분류되는지 여부

##### 질 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에도 해당 하면서 동시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포함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는 경우, 그 영업도 유원시설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검사 등의 규정도 적용되어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의 시설기준 및 허가·신고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행정절차

### 질 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자가 이후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를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존 신고내역 폐업신고 후 신규허가’ 취득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의

### 답 변

-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허가와 신고 대상이 다르므로 기존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을 폐업 신고한 후 신규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폐기 증명관련

#### 질 의

- 유기사설 폐기에 대해 질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보면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또한 제출서류를 보면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있는데, 유기사설 폐기를 원하는 경우, 대상시설에 대한 사진과 폐기사유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폐기를 하라는 것인지, 먼저 폐기를 한 다음 폐기한 사진을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질의
  -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폐기를 먼저 하고 그 사진을 넣어 허가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을 먼저 폐기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는 동법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6호 서식의 폐기내용 증명서류란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소유자의 폐기승인문서, 고철 매각처분 문서, 관련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바, 이는 폐기 후에 관련 자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4. 무료 주민대상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허가 대상여부

##### 질 의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료로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물놀이형 유기기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허가대상인지 여부
-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무료로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상 허가면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물놀이형 유기기구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등록시키려면, 안전관리자, 간호사, 안전요원 배치, 방송시설 및 안내소 비치 등 제약이 많아서 일반공원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구역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물놀이형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해 운영방안 질의

##### 답 변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기구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유원시설업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 기구가 무료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성검사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따라야 할 것으로 봄
- 다만, 학교행사 및 지역주민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 관광객을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5. 유기사설 영업허가 전 사람 탑승 가능 여부

### 질 의

- 영업허가 전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것에 대하여 법적 문제 관련 확인 질의

#### 〈민원 개요〉

- 2015년 유원시설업 영업중이며 신규 유기사설을 설치예정
- 신규 유기사설은 7월 1일 오픈 예정이며 현재 계획으로는 6월 20일 쯤 허가전 안전성검사 완료 후 6월 30일까지 영업허가를 득할 계획
- 오픈 전 광고촬영을 하여 대대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광고촬영 일정 문제
- 6월 20일에 안전성검사가 완료되니 이때부터 광고모델을 탑승 후 촬영해도 되는 것인지 6월 30일 영업허가가 완료된 후에 촬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단순히 생각해보면 6월 20일 안전성이 확보되고, 광고촬영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니 광고모델을 태워도 될 것으로 판단함. 법적인 문제 확인 차 질의

### 답 변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절차이며, 등록관청은 이 외에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록 안전성검사를 완료하여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 전 영업행위가 아닌 광고 촬영일지라도 등록관청의 영업허가 이전에 유원시설업 홍보를 하기 위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음

## 6. 모노레일 허가 관련

###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관광궤도업’이 있는데, 섬에 모노레일을 건설할 때 필요한 관광사업 허가 절차 질의

### 답 변

- 관광궤도업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모노레일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유기기구 중 ‘궤도주행형’에 해당됨
- 따라서,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입지가 가능하여야 함

## 7. 한시적 영업 후 영업재개시 절차

### 질 의

-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영업재개시 절차 질의

### 답 변

-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가 휴업을 통보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재검사 여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가 폐업을 통보한 경우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 나. 신고 및 변경신고

### 1.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질 의

-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 대표자 변경 신고 건으로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서’ 및 ‘유기시설 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만으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최초로 허가받을 때와 같이 토지 및 건물(유기시설) 모두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가, 유기시설에 대한 권한만으로도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 답 변

- 유원시설업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상법」 제18조 내지 제28조 규정을 참고하여야 함

## 2. 야영업장 내에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붕붕뽀뽀) 설치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여부

### 질 의

- 관광사업(일반야영장) 등록신청을 진행중에, 사업장내 놀이시설(트램폴린(방방시설))이 있는데, 현재 트램폴린을 설치하여 야영장 이용객들(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 시설물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대상으로 판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야영장업의 부대시설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

### 답 변

- 트램폴린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붕붕뽀뽀’에 해당되며,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므로, 해당시설에 대한 구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함

## 다. 유기사설·유기기구 해당 여부

### ▣ 일반 유기사설·유기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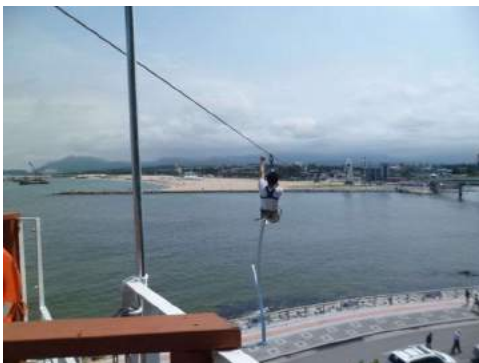
#### 1. 공중하강체험이 유기사설·유기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 이동형 공중하강체험(아라나비, 하늘가르기, 짚라인, 짚와이어 형태)을 개발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

##### 답 변

- 공중하강체험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별표 11]의 유기사설 혹은 유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동 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시설을 레저스포츠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아라나비]



[짚라인]

## 2. 인공암벽, 사계절 썰매장(물 포함)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경기도 ○○군청에서 인공암벽, 사계절 썰매장(물포함)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종류의 시설이 유기사설·유기기구에 해당되어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인공암벽, 사계절 썰매장(물포함)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별표 11]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썰매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나, 인공암벽은 향후 레저스포츠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인공암벽]



[사계절 썰매장]



### 3. 전동레일바이크가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전동레일바이크는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레일바이크(철로자전거)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1](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유기기구)에 의거, ‘궤도주행형-궤도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동레일바이크도 철로자전거와 유사하므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동레일바이크를 운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궤도는 「궤도운송법」제3조 (적용 범위) 제3항 적용 대상 여부

#### 답 변

- 레일바이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별표 11]의 ‘궤도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레일바이크도 유기기구에 해당함
- 전동레일바이크는 철로자전거(레일바이크)의 기능을 개선한 신형모델(유사모델)로,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1]의 ‘궤도주행형,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레일바이크)’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이므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분류됨
- 전동레일바이크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에 해당되므로 「궤도운송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4. 저수지의 오리배 운영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저수지에서 오리배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지 질의

##### 답 변

- 「저수지에서의 오리배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관련된 사업으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오리배]

5. 일정한 영업장소에 고정하여 영업하지 않고, 화물차 뒤에 ‘미니 바이킹’을 싣고 이동하며 영업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근린공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영업장소에서 고정하여 영업하지 않고 화물차 뒤 ‘미니바이킹’을 싣고 이동하며 영업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 ‘미니바이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 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고정형 유기기구 중 ‘종회전 고정형’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및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입지가 가능하여야 함



[화물차형 미니바이킹]

## 6. 행글라이더 체험장, 4륜 오토바이가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행글라이더 체험장이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대상 여부
- 4륜 오토바이가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대상 여부

### 답 변

- 행글라이더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는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유원시설업 대상이 아님
- 4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 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행글라이더체험장]



[4륜오토바이]

## 7. 매직스윙 놀이기구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야외 시설에 매직스윙 놀이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바 해당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라 허가가 불허하다고 하여 허가관련 질의

### 답 변

- 매직스윙 놀이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에 따른 ‘복합회전 고정형’ 신종 놀이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안정성검사 대상 놀이기구로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유원시설업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에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표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위락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바람



[매직스윙]

## 8. 방탈출 게임시설 유원시설업 해당여부

### 질 의

- 방탈출 게임시설(시설규모 25-30평, 퍼즐/수수께끼 등을 풀어서 방에서 탈출하는 오락시설, 청소년/어른 무관)에 대한 기타유원시설업인지 업종 허가 분류 관련 질의

### 답 변

- 방탈출 게임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확인하기 바람



[방탈출게임]

## 9. 주드라이브(Zoo Drive) 유원시설업 해당여부

###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열거되지 않은 ‘유기 기구’ 확인 요청
- 별표 11의 주로 주행형의 무궤도열차 그룹에, 당사 도입 예정인 'Zoo Drive'가 해당되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석 요청

### 답 변

- 해당 기구는 골프장 등에서 이동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으로 보이며, 이를 단순히 외부매핑, 일부변형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광진흥법령상의 주로주행형(일정주로를 가지고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설치 예시로 제시하신 기구 중 가장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는 대전오월드 사파리버스(버스에 외부매칭 작업 한 것) 또한 유기기구가 아니라 자동차로 관리중에 있으니, 자동차관리법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기구를 운영하기 바람



[주드라이브(Zoo Drive)]

## 10. 4D 체험시설의 관광진흥법령 적용 여부

### 질 의

- 4D영상체험관 시설이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원 개요)

- 2011년 6월부터 4D입체영상관을 운영중
- 2015년 3월 17일 지자체로부터 귀 업체시설은 게임기가 아닌 유기기구이니 본 시설의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4월 30일까지 유원시설업 신고 및 안전성검사를 득하고 영업하라는 통보를 받음.
- 4D체험시설을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방문 또는 유선상 알아본 바 수백여곳 이상의 업장이 게임기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유원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음.
- 4D영상기계를 제작 판매 설치한 회사에 문의한 결과 동종업계관련 社 들이 한결같이 게임기 관리위원회에서 게임기로 등급분류 받았기 때문에 유원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정원 탑승인원 4인).
- 정원탑승인원 4인인 단일시설에 유원시설업 허가 및 안전관리자를 채용, 영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많은 매장들이 현재까지 유기기구를 게임기로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질의.
- 본 시설이 유기사설이 확실하다고 판명되면 개인 영세업자로 이루어진 영업장들은 부대비용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답 변

- 4D 영상관의 좌석이 움직이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중 ‘입체관람형’으로,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사설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유기기구 및 유기사설로 판단되어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허가 및 관리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함
-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영상, 기기 등)를 받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는 게임산업진흥법령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11. 로프웨이와 레일웨이 혼합 주행방식의 자주식 이동기구의 업종구분

### 질 의

- 로프웨이와 레일웨이 혼합 궤도구성, 자가운전방식의 2인승 이동기구(선로길이는 공중로프웨이 약1200미터 지상레일웨이 400미터의 중간하차 시설이 없는 트랙 왕복 시스템)의 업종 구분 질의

#### (민원 개요)

- 2013년 검토의견 처리결과에 연장하여 재질의.
- 설치장소는 관광진흥개발지역이며, 로프웨이와 레일웨이를 혼합한 궤도구성
- 주행방식은 자가운전방식의 2인승 이동기구
- 선로길이는 공중로프웨이 약1200미터, 지상레일웨이 400미터의 중간하차 시설이 없는 일정한 트랙을 왕복하는 시스템
-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로프웨이 길이가 레일웨이보다 길어서 궤도운송법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답변

### 답 변

- 레일웨이 약 400미터 구간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 궤도주행형 궤도자전거의 형태인 신규 유기기구에 해당되지만, 와이어로프웨이 약 1,200미터 구간은 현재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4-0030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궤도운송법 등 타 법령의 해당여부 검토 필요
- 전체 중 일부 구간만 관광진흥법령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구간이 타 법령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으나, 그 이외 구간에 대해 적용할 타 법령이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이용객 하차 시설 등 타 시설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획 관리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관리 대상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인 시군구는 동 기구의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12. 스크린 승마시설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사용 중인 건축물 내에 방문객들을 위한 스크린 승마 시설을 설치하려 하는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안전성 검사X)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 하는지 질의.(별표 11에서 유사한 예시내용을 찾았으나 예시내용과 같은 시설 이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확인 질의)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의 분류내용과 예시의 유기기구는 이 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 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어야 함
- 사행성이 농후하고 주 이용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용 스크린 경마는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원시설업 신고대상 이 아님
- 참고사진

유기기구 해당 말타기(승마)	유기기구 해당 안 됨 스크린 승마(경마)
 <p data-bbox="438 1736 662 1780">스크린 시설 없음</p>	 <p data-bbox="821 1736 1300 1792">스크린 시설이 있으며 실내에서 승마스포 츠를 즐기는 시설</p>

##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 1. 수영장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수영장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 답 변

-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함.
- 다만, 수영장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는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2.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수심 1.2m 이동식 수영장) 신고 여부

### 답 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에서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동 종목으로서 수영을 강습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 형태, 대상 고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야외 간이 물놀이시설(이동식 수영장)만 있는 경우는 유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슬라이드 등의 부속시설로 착지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슬라이드와 착지 부분(수영금지)만 유원시설에 해당 되므로 수영장 시설부분과 구획 관리하여야 하며 간이 수영장시설을 착지 전용시설로 모두 사용할 경우는 유원시설업으로만 관리하면 됨



### 3. 회사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이 물놀이형 유기사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여름철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콘도미엄 투숙객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함. 또한 아쿠아테라피와 함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운동종목으로서의 수영이라기보다는 여름철 물놀이 성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수영장, 「관광진흥법」상의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중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질의

#### 〈민원 개요〉

- 2003년 7월, 콘도미니엄을 개장하면서 야외 수영장(바닥면적 90제곱미터 수심 1m, 20제곱미터 수심 60cm)을 설치하였으며 당시 체육시설업 수영장업의 시설기준인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아쿠아테라피(실내 수압 마사지 시설)와 함께 여름철(7월 말~8월 중순) 영업을 함
- 2011년 8월 31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정이 없어짐

#### 답 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10조에서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동 종목으로서 수영을 강습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 형태, 대상 고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4. 시타슬라이드 물놀이형 유기사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시타슬라이드



- 본 제작물을 이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령 적용부분 여부
- 적용된다면, 절차와 방법 여부
-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제작물에 대한 안전검사(KC등) 받는 방법

##### 답 변

- 해당 기구는 경사면에다 에어바운스와 천막재질의 바닥을 설치하고 물을 흘려 주는 형태이므로 유원시설의 물놀이형의 바디슬라이드로 판단됨. 또한 동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동 기구는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원시설로 검사할 경우,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1인씩 출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관광진흥법령 상에는 제작물 안전검사(KC검사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 시설의 사용 허가가능여부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허가전검사와 해당 시·군·구청의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라. 키즈카페 (기타유원시설업)

### 1. 운동시설지역에 키즈카페 설치 가능 여부

#### 질 의

- 운동시설(놀이형시설)에 기타유원시설업도 해당되어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 〈민원 개요〉

- 건축물 면적 약 2000제곱미터 되는 키즈카페(실내에 휴게음식점 및 어린이놀이시설운영)
- 미니기차, 붕붕뽀뽀 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하고자 함(키즈카페 광고하여 손님모집)
- 건축물 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면적이 2,000제곱미터
- 2종근린생활시설 : 기타유원시설업 500제곱미터미만 / 위락시설 : 그 외 유원시설업

#### 답 변

- 기타유원시설업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상 건축물 용도가 제13호 운동시설일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함
-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및 건축용도별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요함

## 2. 키즈카페 건축물 용도

###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에 따라 당 업체에서는 관광객이 아닌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현재 대한민국에 대규모 키즈카페들이 대형쇼핑타운에(아울렛, 백화점, 이마트 등) 들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키즈카페들은 건축물용도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

#### (민원 개요)

- 건축물면적 1,042제곱미터이며 실내에 휴게음식점(영업신고336.95제곱미터) 및 어린이놀이 시설을 운영중에 있는 키즈카페.
- 트램플린(붕붕뽀뽀)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자 함
- 건축물 용도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용도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함.
- 해당 업체의 시설은 주거지역으로(주상복합건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불가능한 실정으로 신고에 어려움

### 답 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건축물 용도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가 가능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동시설 또는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키즈카페내 설치된 놀이기구가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기기구이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구로 안전이 각별히 유의되는 만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3.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 어린이놀이시설과 중복

#### 질 의

- 정글짐(플레이스페이스)의 놀이기구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기시설(비검사대상)에도 해당됨
- 이 경우 이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5곳중)에서의 검사로 적합판정을 받은 상태로 본 검사서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아니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시 반드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비검사 대상일 경우 비검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놀이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놀이기구에 대해 이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성 검사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비검사 대상일 경우 비검사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음

#### 답 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은 개념상 엄격한 구분이 곤란하며, 같은 종류의 놀이기구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키즈카페 내 두 개의 법령에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4. 문화 및 집회시설에 키즈카페 설치 가능 여부

##### 질 의

- 현재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설치기준 등이 있는지 여부

##### 답 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키즈카페 등 기타유원시설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 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 놀이형 시설(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 13호(운동시설) : 놀이형 시설(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 제 16호(위락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5. 키즈카페 본점과 지점별 신고

### 질 의

- 키즈카페 본점이 타시군에 있고, 지점을 우리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음. 이 경우 본점만 본점 소재지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완료하면 지점은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인지 문의
- 여행업의 경우 본점만 본점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지점은 변경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타유원시설업도 이에 준용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등 운영관리도 본점소재지 등록관청의 소관인 것인지 문의

### 답 변

- 키즈카페의 본점이 타 시군구에 있고, 지점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지점별로 해당 관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신고된 각 지점별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사항들을 준수해야 할 것임.

## 6. 키즈카페내 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경우

### 질 의

- 질의내용1 :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유기사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유원시설업 등록 가능여부(건축물대장 용도는 운동시설, 골프연습장으로 표기되어 있음)
- 질의내용2 : 위 사항의 경우 유원시설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 〈민원 개요〉

- 2015년, 실내에 키즈카페 성격으로 운영하는 업체. 유원시설업 등록관련 문의사항 질의.
- 질의내용1 : 상가 4층 실내운영,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시설종목은 아래와 같은 경우
  - 유기사설·기구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12종 15대
  - 유기기구 허가전 안전성검사 유기기구 2종
  - 어린이놀이시설 1종(실내놀이기구 충격흡수용 표면 포함)

### 답 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만 운영하는 경우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이지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1종이라도 설치된 경우는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대상임
- 현재 영업 중인 키즈카페내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이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임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맞아야 하나, 일반유원시설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서 운동시설에는 기타유원시설업만 허용됨
- 따라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종을 철거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한 후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아야 할 것임

## 마.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1. 유원시설업장에서의 풍속계 설치

#### 질 의

- 모든 유원시설업체에서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풍속계를 설치할 때 고정식 대신 이동식 풍속계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1)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허가전검사 항목에 최고 높이가 20m이상인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체의 경우는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2)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풍속이 10m/s 이상일 경우 안전을 위해 운행 중 단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방식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유기사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5)

#### 1. 기본요구사항

14) 최고높이가 20m이상인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체에서는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3. 풍속계

- 1) 업체 내에서 최대풍속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발신기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 2) 발신기는 감지 및 작동이 확실하여야 함
- 3) 지시기는 작동이 정상적이고 경보설정치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함
- 4) 지시기에 경보 설정치를 10m/s로 설정함

## 2.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에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함’의 의미

###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공통기준에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구획이란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왕래 등을 할 수 없도록 벽 또는 시설물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시설과 구분이 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답 변

- 독립된 건축물이 아닌 경우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는 것은 출입구가 다른 등 독립된 건축물에 상응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 키즈카페 내 다른 용도 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 및 식음료시설과 유원시설이 출입구가 다른 등 독립된 건축물에 상응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용도의 시설과 혼용되지 않도록 고정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획이 명확하여야 할 것임

### 3.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을 설치한 경우 종합유원시설업 해당 여부

#### 질 의

- 1,861제곱미터(약 563평)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을 설치하였을 경우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문의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지면적(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음식시설(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을 수 있음

####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 수〉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개수란

- ‘바이킹’과 같이 하나의 기구가 독립된 유기기구로서 이용될 경우, 각각의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됨
  - ☞ 바이킹 1개 → 한 번의 안전성검사, 바이킹 10개 → 10번의 안전성검사
- ‘범퍼카’와 같이 하나의 시설이 여러 개의 승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범퍼카’ 시설을 하나의 유기시설로 보아 안전성검사를 실시함
  - ☞ 여러 개 승용물로 구성된 범퍼카 한 세트를 한 개로 봐 안전성검사를 실시함

#### 4. 휴식시설 설치 해석

##### 질 의

- 질의사항 1 :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 설치범위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휴식공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사항 2 :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유원시설 기종에 따라서는 30분 또는 그 이상 이용객이 대기라인에서 서 있을 수 있는데, 하절기 직사광선에서 서 있을 시 이용객 쓰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동 시설업체 차양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상기 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미비로 관련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1. 공통기준. 나.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휴식시설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로서 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예를 들어 규정한 것이며, 유원시설 사업장에 설치된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따라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봄
- 휴식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내 적절한 곳에 휴식의자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이용자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양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 5. 의무실 약품 사용 문의

### 질 의

- 종합유원시설의 의무시설에서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편의시설에서 판매가능한 품목)들을 손님상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의무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나 조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 「약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원시설에서는 현재 동 약품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 1. 안전사고 보고 및 조치

#### 질 의

-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안전사고는 기계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문의
- 이용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기기구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한 질의

〈민원 개요〉

- 만11세 어린이가 '타가다디스코'를 연속하여 3차례 이용함. '타가다디스코'는 DJ가 상부의 조작실에서 회전과 점핑의 강약을 조절하는 기구로, 오르내림 과정에서 원위부 요골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이라는 8주 진단의 피해를 입게 됨

#### 답 변

- 개정된 「관광진흥법」제33조의2에 따라, 유원시설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이용자의 안전관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사고 이외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간 원활한 합의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임

## 2.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유원시설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종합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으로서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범버카 지붕인 천막이 찢어져 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물기가 있는 채 범버카를 운행할 시 감전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조치 요구하였으나 유원시설업자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 이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구만 영업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수 있음

### 3. 물놀이 유원시설 안전요원 배치 관련

#### 질 의

- 워터파크 내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제11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안전요원이 사고가 난 지점을 조망할 수 없는 지점에 있었다면 해당 유기시설의 안전요원의 배치는 잘못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줄 수 있는지 여부

#### 〈민원 개요〉

- 2015년 ○월 ○일경, 워터파크에서 여성 1명 사고발생
- 물놀이 유기 시설 구조(와일드 익스트림리버, 타원형 길이371미터, 너비5미터, 수심1미터, 다수인원 동시사용 가능여부:가능)
- 해당 유기시설의 안전요원배치에 대한 질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2
  -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수심 100센티미터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미만의 풀에서는 1000제곱미터 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 답 변

-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제11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요원의 수는 최소 배치에 대한 개념이며 해당 안전요원이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워터파크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

## 사. 유원시설업 입지 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 지역

#### 질 의

- 유원시설업은 도시계획이용 상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구이거나 유원지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부대시설로 설치한 건물(매표소 등)이 위락시설이 아닌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 답 변

- 유원시설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상업지역 및 위락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9조)에 따른 유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광지 등에 입지할 수 있음
- 부대시설은 유원시설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함

## 2. 계획관리지역 내 유원시설업 입지 가능여부

### 질 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내에 주로주행형(일반포장도로) 유기기구를 구입하여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고 운행코자 하였으나, 관련 — 관청과 민원자간의 관련법 유권해석이 상이하어 문의

#### (민원 개요)

- 관련 관청 유권해석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5,나,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위락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에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아'항 규정에 의거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
- 다른 유권해석
  - 본 유원시설업 허가대상은 주로주행형 유기기구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아'에 해당되지 않는 유원시설업종 유기기구에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

### 답 변

-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시에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별표1]의 위락시설일 경우 가능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의 '아'호의 의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원시설업을 운영할 수 없음
-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입지가 가능하여야 함

### 3.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질 의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고 영업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 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이 허용된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과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운영하고자 하는 ‘배터리카’, ‘두더지’ 등은 토지에 정착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건축 또는 토지의 정착물 등을 설치하는 등 건축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 등 개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4. 건축물의 용도상 위락시설에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호, 위락시설의 용도에 유원시설업의 시설이 명기되어 있고 따라서 유원시설업의 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락시설에 해당함으로 위락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용도상 위락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부대시설(방송시설 및 휴식시설, 화장실, 안내소)이 위락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공작물설치신고(건축법 83조, 건축법시행령 118조)로 부대시설은 위락시설로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의견에 대한 여부

##### 답 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의미함.
- 이와 관련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 등이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 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라 공작물 등으로도 축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국토부 건축정책과 답변, 2015.10.14.)
-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건축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 아. 기타

### 1. 행정처분 차수 적용

####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일반기준 나항’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해당 유기기구가 다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적용은 1차(시정명령)가 맞는가, 2차(사업정지 10일)가 맞는지 문의
- 행정처분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 10일), 3차(사업정지 1개월), 4차(사업정지 3개월)를 연속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각각의 차수마다 해야 하는가, 아니면 1차 시정명령 시에만 해도 무방한지 여부

#### 답 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별표 2]에 따라 별개의 유기기구를 다른 시기에 각기 설치한 것은 ‘같은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차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행정처분 각 차수별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

## 2. 공매로 인하여 유원시설업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인수’의 개념

### 질 의

-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
- 종전 영업자인 A회사가 ‘지위승계신고서’에 날인을 거부한다면 인수자인 B회사의 날인만으로도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는가? 즉 「관광진흥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시설 인수 관련 ‘지위승계 증명서류’에 종전 A회사의 동의 의사가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민원 개요〉

- A회사 소유의 종합유원시설업 부동산이 자산신탁회사를 통한 공매절차에 따라, B회사로 부동산(토지, 건물) 전체 및 일부 동산의 소유권이 넘어 갔으며 영업시설도 B회사가 점유·운영하고 있음
- B회사는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규정에 의거, 공매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물론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하였기에 기존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유원시설업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바 있음
- 지위승계 신고 수리 당시, 부동산 이외의 해당 영업시설(설비 포함)의 소유권에 대한 객관적인 공부 확인에 어려움(공매 물건 목록에는 별도 표기가 없음)이 있었으며 현재 유원시설업 관련시설은 B회사가 점유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와 관련해 A회사는 ‘소유권’의 의미라고, B회사는 ‘영업할 수 있는 점유(운영 가능성)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답 변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의 인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승계 가능함
- ‘지위승계 증명서류’의 양도인란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 및 법원의 인도명령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3. 유원시설업의 타인경영 가능 여부

#### 질 의

-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 여부

#### 답 변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호에서는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타인이 경영할 수 없는 관광사업의 시설로 규정함
- 유원시설업의 핵심이 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유기기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임
-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비록 허가를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하여도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영은 법규에 위반함

#### 4.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총 수

#####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수를 규정하는데,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는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으로 분류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수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

##### 답 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종'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개수를 의미함

#####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총 수〉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개수란
  - '바이킹'과 같이 하나의 기구가 독립된 유기기구로서 이용될 경우, 각각의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됨
    - ☞ 바이킹 1개 → 한 번의 안전성검사, 바이킹 10개 → 10번의 안전성검사
  - '범퍼카'와 같이 하나의 시설이 여러 개의 승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범퍼카' 시설을 하나의 유기시설로 보아 안전성검사를 실시함
    - ☞ 여러 개 승용물로 구성된 범퍼카 한 세트를 한 개로 봐 안전성검사를 실시함

## 5. 수륙양용선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

### 질 의

-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선박법」 제26조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음
-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 규제 대상 및 내용도 상이하므로 「관광진흥법」 제33조 상의 안전성검사 대상이라 하여 「선박법」 제8조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 6. 휴업 중에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여행업을 제외하고 유원시설업 등에 대하여 휴업 중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유원시설업은 휴업 중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문의

### 답 변

-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 중에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7. 물과 직접 접촉이 없는 놀이형 보트타기에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 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라" 항목 놀이형 중 '보트타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이용자는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음),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39조2 [별표 10의2])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중 놀이형의 보트타기를 설치 운영할 때 이용자가 물과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9조 2(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관련 [별표 10의2]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기구		검사대상 기구
		
놀이형 보트타기	주행형 페달보트	범퍼보트

## 8. 기타유원시설업 결격사유 조회 및 미신고 폐업

### 질 의

- 다른 관광사업 신청서와 달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시에 신청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는 것이 없으면, 결격사유 조회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조항이 모든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신고 시 첨부서류에 적혀있을 때만 조회하는 것인지, 즉 신고 시 첨부서류 어디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데 결격사유 조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질 의
- 폐업을 하고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3차 등의 과정이 있는데, 폐업하고 이미 2년이 지나고 이미 가게도 없고, 여러번 다른 업종의 가게로 바뀌어서 흔적이 없다면 행정처분은 무의미 한지, 무의미해도 1차 시정명령 이후 영업폐쇄명령까지 하는지, 폐업신고 할 때까지 행정처분을 하는지 질 의

### 답 변

- 「관광진흥법」 제7조상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관광 사업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2]상 위반사항 '라.'에 해당되어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절차에 따르게 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마.' 동법 제8조 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엔 1차 시정명령, 2차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3차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9. 양수(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승계 여부

### 질 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관광사업(일반유원시설업) 양수(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 구비서류를 미첨부하여도 되는 지 질의
-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는지, 지위승계 계약서상 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한 승계 조항만 명기 시켜도 되는지 여부

### 답 변

- 「관광진흥법」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고용승계 받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등이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서류 등은 관련 규정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

## 10. 관광사업자의 영업보증금 예치건

### 질 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규정에 대한 질의

### 답 변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및 신고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 대신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VI . 부록



## **1.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의 유원시설업 규정**



관광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유원시설 관련 발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진흥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127호, 2015.12.22, 일부개정] [시행 2016.3.23.]</p> <p>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p> <p>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진흥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840호, 2015.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2.31.]</p> <p>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진흥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5.12.30.]</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p>	<p>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p> <p>5. 유원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5조(허가와신고)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p>	<p>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정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정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p> <p>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p> <p>4.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p> <p>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p> <p>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p> <p>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p> <p>가. 안전점검 계획</p> <p>나. 비상연락체계</p> <p>다. 비상 시 조치계획</p> <p>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지노업의 경우(생략)</li> <li>2. 유원시설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li> <li>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li> <li>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li> </ul> </li> </ol> <p>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li> <li>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li> <li>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li> </ol>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①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증</li> <li>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li> <li>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li> </ol>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p> <p>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p> <p>가. 안전점검 계획</p> <p>나. 비상연락체계</p> <p>다. 비상 시 조치계획</p> <p>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⑤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li> <li>2. 유기사설·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li> <li>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li> </ol> <p>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증</li> <li>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유기사설·기구 검사조서</li> <li>4.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p> <p>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li> <li>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li> <li>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li> </ol>		<p>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p> <p>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li> <li>5.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li> </ol> <p>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li> <li>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li> </ol>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 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08.3.28.&gt;</p>		<p>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나. (생략)</p> <p>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9조 (보험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5.5.18.&gt;</p> <p>제11조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p> <p>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p>		<p>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p>	<p>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 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 생략            제38조(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p> <p>제33조 (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39조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p> <p>제40조(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p> <p>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p> <p>②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원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원시설·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li> <li>2. 사고가 발생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li> <li>3.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영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li> </ol> <p>④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p>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⑦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p> <p>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p> <p>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p> <p>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p> <p>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p>	<p>제31조의2(유기사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li> <li>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伤자가 발생한 경우</li> <li>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li> <li>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li> <li>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li> </ol> <p>②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p>	<p>제41조의2(유기사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li> <li>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li> <li>3. 조치 내용</li> <li>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li> <li>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li> </ol> <p>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 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 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사용중지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2. 개선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p>	<p>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p> <p>3. 철거 명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p> <p>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⑧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34조 (영업질서의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p>
<p>제35조 (등록취소 등) ①관광사업의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p> <p>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p> <p>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p> <p>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6조 (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p> <p>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p> <p>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p> <p>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37조 (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p> <p>제78조(보고·검사) ①생략</p> <p>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p>	<p>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p> <p>②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성상 위법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p> <p>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p> <p>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p>		<p>제69조(수수료) ①~③ 생략</p> <p>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5조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 “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p> <p>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p> <p>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p>	<p>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p> <p>: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3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71조(안전성검사기관지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사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li> <li>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li>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검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li> <li>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 규정</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유기사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p> <p>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p> <p>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p> <p>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p> <p>2.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p> <p>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p> <p>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p> <p>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6조 (과태료) 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p> <p>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p> <p>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6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부칙 &lt;법률 제13127호, 2015.2.3.&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략)</p> <p>제3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p>		<p>부칙(문체부령 제79호, 2011,2,17)(별표11관련)</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p> <p>1. 실내사격 2.양궁 3.석궁 4.바주카포 5.파이어볼 6.고릴라헌터 7.패픽볼 8.풋볼첼린지 9.피치히터 10.도든기든 11.사이드와일더 12.축구 13.페널티슈트아웃 14.스쿼시하키 15.하이스트라이크 16.로보볼 17.두더지 18.햄머액션 19.편치벨리 20.스페이스볼 21.다트게임 22.쇼트 23.레이싱나이트 24.핫스터프 25.버추얼베이스볼 26.버추얼콧 27.벳보이저 28.알파인레이스 29.넛머크 30.버취포물러 31.핀볼 32.정글인</p> <p>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p> <p>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p>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 카지노업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유원시설업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명령
라.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마.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에서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1) 카지노업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에서는 사업정지 6개월)
차.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타.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과.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하.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거. 법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너.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더.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취소		
러.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머.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버.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 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어.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행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커.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피.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허.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고.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업종별 과징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유원시설업		
		종합	일반	기타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4조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00	1200	800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3)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320	120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조			
5. 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6. 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위반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12.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0조			
13. 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4. 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위반	법 제33조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200
15.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위반	법 제34조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200	800	400
16. 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17. 법 제38조(관광중사원의 자격 등)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중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18. 법 제78조(보고·검사) 위반	법 제78조	800	400	80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8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 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30	60	100
나.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4호	100	100	100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2	30	60	1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3	50	100	100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100	200	300
바. 법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5호	30	60	100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원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사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6.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사업장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II 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에서 2.0mg/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인 것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한다.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 ·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보관하도록 한다.
10.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수심 100cm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cm 미만의 풀에서는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cm 미만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스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릭, 서킷2000, 클래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해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주요 주행형	일정한 주요(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요)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뽀슬레이	슈퍼뽀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관람차	로스트밸리 등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애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파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크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크	타가다, 디스크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터,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터,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등실비행선, 바른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챌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하운동 및 좌우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톰,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트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뿔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 2. 안전성검사항목

### 가. 허가 전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1) 기초부	(1) 기초 (2) 기초연결부재(앵커볼트 등) (3) 지주 (4) 철구조(목재구조 등)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 (2) 승용물 연결부 (3) 승용물 안전장치
3) 궤도(수로,주로)장치	(1) 주행궤도(수로, 주로 등) (2) 궤도받침부재 (3) 궤도안전장치(역주행방지장치)
4) 구동장치	(1) 전동장치 (2) 감속장치 (3) 동력전달장치(체인, 벨트 등) (4) 기계요소장치 (5) 로프(강재로프, 섬유로프 등) (6) 컨베이어장치 (7) 차륜장치 (8) 유압장치 (9) 공압장치 (10) 수압장치
5) 제동장치	(1) 제동장치 (2) 완충장치
6) 물놀이 장치	(1) 튜브슬라이드 (2) 바디슬라이드 (3) 파도풀 (4) 유수풀 (5) 서핑라이드 (6) 수중모험놀이 (7) 급수 및 배수장치 (8) 부력기구
7) 에어바운스 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8)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3) 제어회로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6) 피뢰설비 (7) 접지설비 (8) 조명설비 (9) 절연저항 (10) 신호장치
9)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10) 기타사항	(1) 부하시험 (2) 승강장 (3) 안전울타리 (4) 비상출구 (5) 안내표지판 (6) 안전점검판 (7) 풍속계 (8) 기타

나. 정기검사 항목표

구 분	검 사 항 목	
1) 기초부 및 앵커볼트	(1) 지반 및 기초 (3) 지주, 구조부재 (5) 체결부	(2) 앵커볼트 (4) 보조부재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구조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체결부 (4) 승용물 기타장치
3)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3) 역주행방지장치	(2) 받침지주
4) 구동장치	(1) 감속기 (3) 전동기 (5) 축 및 베어링 (7) 체인 및 스프로킷 (9) 로프 (11) 차륜장치	(2) 축, 기계요소 (4) 클러치 (6) 기어 (8) 벨트 및 폴리 (10) 컨베이어장치
5)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3) 수압장치	(2) 공압장치 (4) 밸브 및 배관장치
6)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2) 완충장치
7)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3) 파도풀 (5) 급수장치 (7) 신호장치	(2) 착지풀 (4) 유수풀 (6) 부력기구
8) 에어바운스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9)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10)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11) 기타시설	(1) 승강장 (3) 비상구 (5) 풍속계 (7) 기타 유기시설	(2) 안전울타리 (4) 안전유도 표시 (6) 안전점검판

###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궤도길이 30m이내),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술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폴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드롭,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뽀뽀, 점프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미터이내 또는 면적 120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 분	자 격
종합유원시설업	<p>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p> <p>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기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기사·전자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p>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p>
일반유원시설업	<p>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p> <p>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기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기사·전자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기계정비산업기사·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p>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p>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 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 3. 안전관리자의 임무

-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다.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전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8.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4]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구 분	등 록 요 건
1. 인력 기준	<p>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p> <p>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p> <p>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2. 장비 기준	<p>다음 각 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p> <p>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합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p> <p>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달(modal)프로그램 포함]</p> <p>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p>
3. 그 밖의 기준	<p>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비영리법인일 것</p> <p>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p> <p>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p> <p>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p>

## 2. 법정서식



## [서식 1]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1]

### 허가신청서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유기기구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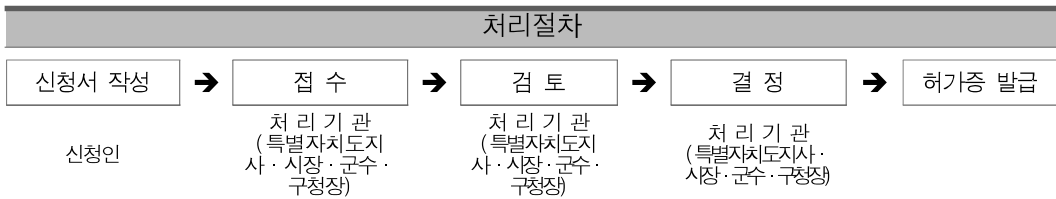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유의사항**
1.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li> <li>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li> <li>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li> <li>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li> </ol> </li> <li>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li> <li>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6.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7.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li> <li>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li> <li>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안전점검 계획</li> <li>나. 비상연락체계</li> <li>다. 비상 시 조치계획</li> <li>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li> </ol>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li> <li>2. 사업계획서</li> </ol>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서식 2]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2]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명	전공	졸업연월일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류	취득연월일	
※ 학력, 경력, 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서식 3] 유원시설업  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3]

(앞 쪽)

제 호  유원시설업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영업허가증  ※ <input type="checkbox"/>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 업 소 명 칭	
2. 소 재 지	
3. 영 업 의 종 류	
4. 대 표 자 성 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 유 기시설·유기기구수 (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 닌 유기시설·유기기구 수(종수)	
8. 허 가 조 건	
9. 영 업 기 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 </div>	





## [서식 4]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4]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								
1. 허가·신고사항				4. 행정처분사항				
업 소 명 (상 호)				처 분 연월일	문 서 번 호	위 반 사 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성 명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일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허 가 조 건								
2. 업소규모								
대 지 면 적		건물연면적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 용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중 지상( )층, 지하( )층							
유기시설·유 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		종					
	안전성검사 대상 이 아닌 유기시설 ·기구		종					
3. 허가·신고사항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성명					

## [서식 5]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6]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유원시설업</span> <div style="text-align: right;">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div> </div>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영업소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⑦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⑧ 변경 전		
	⑨ 변경 후		
	⑩ 변경 일자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상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서명
구 비 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사설·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서식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영업소	④ 명 칭	⑤ 영업의 종류	
	⑥ 대 표 자	⑦ 생년월일	
	⑧ 소 재 지	(전화: )	
⑨ 영 업 기 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 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b>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대상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식 7] 유원시설업 신고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8]

(앞 쪽)

제 호

### 유원시설업 신고증

영 업 소 명 칭 :

소 재 지 :

영 업 의 종 류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영 업 기 간 :

(1년 미만의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서식 9]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23]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 카지노업 : 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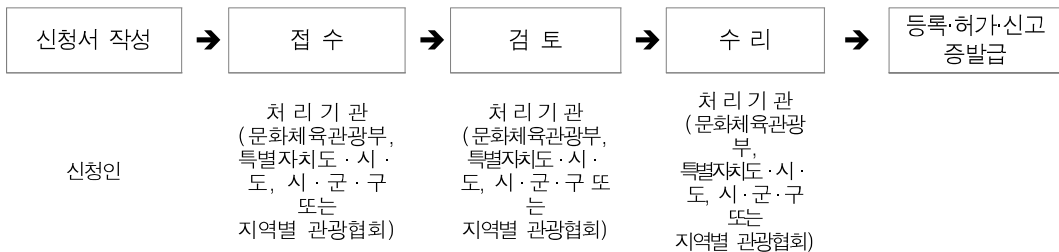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	-------	----------------

#### 처 리 절 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li><li>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li><li>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li></ol>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1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25]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일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			
건설장소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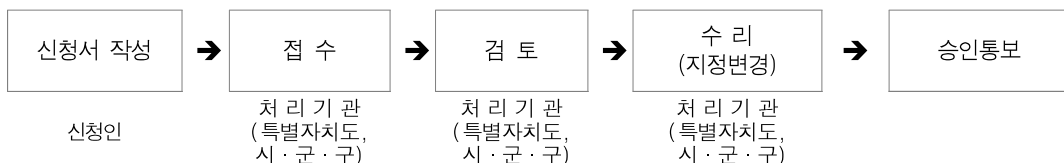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처리절차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li> <li>나. 공사계획</li> <li>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li> <li>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li> <li>마. 조감도</li> <li>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li> </ol> </li> <li>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li> <li>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li> <li>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li> </ol> </li> <li>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li> <li>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li> <li>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li> </ol>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p>



## [서식 13]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40]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 타

첨 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 공개구분 주소

## [서식 14]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44]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협회(기관)명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협회(기관)의 주소			
보유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명
	산업안전분야	명	기타분야	명
보유장비내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		
	관리직원	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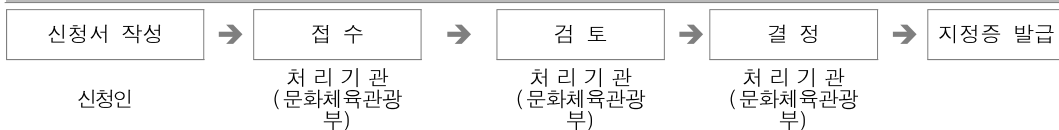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li> <li>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li> <li>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li> <li>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서식 15]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45]

제 호

###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협회(기관)명: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협회(기관)의 주소: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5. 지정기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서식 1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8]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서식 21] 공작물 관리대장

■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32]

### 공작물 관리대장

•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용승인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공작물의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 **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0호)**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정 1998. 8. 27 제1998-37호

개정 2000. 6. 30 제2000- 6호

개정 2004. 1. 5 제2003-18호

개정 2009. 1. 22 제2009- 4호

개정 2014. 8. 26 제2014-3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라 함은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4.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유기기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유기기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6.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유기기구,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영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7.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를 공간이동(다른 허가구역 이동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시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통한 유기시설·유기기의 안전에 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11.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12.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
  2. 유기기설·유기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3. 구조계산서
  4. 전기회로도
  5. 유공압회로도
  6.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한한다.)
  7.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② 허가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적합할 경우는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추가제출 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전경사진

#### 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제5조(안전성검사신청의 반려)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완료 요청일자가 1주일 이내일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③ 검사신청자가 제2항에 의해 반려된 유기사설·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전검사 기준) ①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중에 대한 안전성
  2.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3.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 ② 유기사설·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
  2.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
  3.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
  4.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5.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조계산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해석을 이용한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술형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에는 해당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상황을 자유물체도로 나타내어야 한다.
3. 유기사설·유기기구 운행에 따라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은 별표1의 동적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조계산을 한다.
4. 허용응력은 재료의 기준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5. 안전계수는 하중조건 및 재료의 상태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로서 별표2를 적용하여 구조 계산한다.
6. 유기사설·유기기구에 사용되는 부재의 기준강도는 하중,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상온에서 연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 나. 상온에서 취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 다. 상온에서 반복하중 및 교번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하중에 대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이때 안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라. 상온에서 동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 마.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에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7. 하중에 의하여 발생한 최대응력은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단 기준강도를 별표3의 피로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피로한도보다 작아야 한다.
8. 별표4의 내풍·내진·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에 따라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 ④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KS(한국), EN(유럽),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등에 연관된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전기회로도, 전기결선도, 제어회로도 및 접지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허가전검사 기준은 별표5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 ⑦ 별표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기준) ①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제9조(검사결과 통보)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비검사 대상 확인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키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고시폐지)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0호(2009. 9. 1)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1. 제1항 종전 고시에 따라 시행한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별표5 및 별표6에서 종전 고시와 달라진 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1]

유기시설·유기기구 동적계수( $k$ )

1. 회전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동적계수

운동특성	회전속도	경사각	동적계수	비고
승용물이 수직축 또는 고정된 경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4.5m/s 이하	15°이하	1.3이상	회전목마 등
	4.5m/s 이상	15°이하	1.5이상	
승용물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 또는 진자 운동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0.5m/s 초과	-	1.3이상	대관람차 바이킹 등
	0.5~13.5m/s	-	1.5이상	
	13.5m/s 초과	-	2.0이상	
승용물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 및 승강운동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0m/s 이하	16° 이하	1.5이상	우주전투기 등
	10m/s 초과	16° 이하	2.0이상	
승용물이 회전하는 경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0m/s 이하	70° 이하	1.5이상	회전바구니 등
	10m/s 초과	90° 이하	2.0이상	
승용물이 회전하는 구조물에 매달려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2m/s 이하	-	1.5이상	회전그네 등
	12m/s 초과	-	2.0이상	

2. 궤도 및 지면을 따라 운행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동적계수

운동특성	주행속도	동적계수	비고
일정한 높이로 올라가 관성에 의하여 궤도를 주행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05 km/h 이하	2.0이상	롤러코스터 등
	105 km/h 초과	2.5이상	
공중에 설치되고 높이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40 km/h 이하	1.5이상	모노레일 등
	40 km/h 초과	2.0이상	
지면의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0 km/h 이하	1.2이상	꼬마기차 등
	10 ~ 40 km/h	1.5이상	
	40 km/h 초과	2.0이상	
일정공간에서 자유주행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0 km/h 이하	1.2이상	범퍼카 등
	10 km/h 초과	1.5이상	
지면의 일정한 주로를 따라 운행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20 km/h 이하	1.5이상	스포츠 카 등
	20 km/h 초과	2.0이상	



[별표 2]

유기시설.유기기구 위치별 안전계수

위 치	안전계수
주축, 핀 및 주요 용접부	6 이상
승용물 좌석부분, 계단, 승강장, 가동부분 및 기계부분	4 이상 (취성재료의 경우 10이상)
동하중을 받는 보와 기둥	4 이상 (강재) 7 이상 (콘크리트)
피스톤, 실린더 및 압력배관	4 이상 (취성재료의 경우 10이상)
유압 배관 연결부	6 이상
승객 권상장치, 와이어로프, 체인 등	10 이상

[별표 3]

### 유기시설.유기기구 재료별 피로한도

반복하중을 받는 유기기구의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1항에 제시한 피로한도보다 낮은 값이어야 하며, 만약 재료의 피로강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2항의 근사식을 사용하여 피로강도를 추정한다.

굽힘내구한도(fatigue limit)에 대한 인장강도와 전단강도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적용한다.

$$\tau_e = 0.50 \sigma_e \text{ (최대전단응력설을 적용할 경우)}$$

$$\tau_e = 0.577 \sigma_e \text{ (변형에너지설을 적용할 경우)}$$

#### 1. 재료의 피로한도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i>kgf/mm<sup>2</sup></i> <i>MPa</i>	항복점 하한 <i>kgf/mm<sup>2</sup></i> <i>MPa</i>	회전굽힘 피로 <i>kgf/mm<sup>2</sup></i> <i>MPa</i>	양진 인장압축 피로 <i>kgf/mm<sup>2</sup></i> <i>MPa</i>	양진 비틀림 피로 <i>kgf/mm<sup>2</sup></i> <i>MPa</i>	
볼림	SM10C 3	0.08~0.1	32	21	17~27	13~23	10~17
			314	206	167~265	127~226	98~167
	SM15C 8	0.13~0.1	38	24	19~29	15~24	10~18
			373	235	186~284	147~235	98~177
	SM20C 3	0.18~0.2	41	25	20~30	16~25	11~19
			402	245	196~294	157~245	108~186
	SM25C 8	0.22~0.2	45	27	21~31	17~26	11~20
			441	265	206~304	167~255	108~196
	SM30C 3	0.27~0.3	48	29	22~32	17~27	12~21
			471	284	216~314	167~265	118~206
SM35C 8	0.32~0.3	52	31	22~33	18~28	12~22	
		510	304	216~324	177~275	118~216	
SM40C 3	0.37~0.4	55	33	23~34	18~29	13~23	
		539	324	226~333	177~284	127~226	
SM45C 8	0.42~0.4	58	35	24~34	19~29	13~24	
		569	343	235~333	186~284	127~235	
SM50C 3	0.47~0.5	62	37	25~35	20~30	14~24	
		608	363	245~343	196~294	137~235	
SM55C 8	0.52~0.5	66	40	25~35	20~30	15~24	
		647	392	245~343	196~294	147~235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i>kgf/mm<sup>2</sup></i> <i>MPa</i>	항복점 하한 <i>kgf/mm<sup>2</sup></i> <i>MPa</i>	회전굽힘 피로 <i>kgf/mm<sup>2</sup></i> <i>MPa</i>	양진 인장압축 피로 <i>kgf/mm<sup>2</sup></i> <i>MPa</i>	양진 비틀림 피로 <i>kgf/mm<sup>2</sup></i> <i>MPa</i>
플림	SM10C	0.08~0.13	28	17	14~25	11~21	9~16
			275	167	137~245	108~206	88~157
	SM15C	0.13~0.18	32	19	16~27	13~23	10~17
			314	186	157~265	127~226	98~167
	SM20C	0.18~0.23	36	21	18~29	14~24	10~18
			353	206	177~284	137~235	98~177
	SM25C	0.22~0.28	39	22	19~30	15~25	11~19
			382	216	186~294	147~245	108~186
	SM30C	0.27~0.33	42	24	20~30	16~26	11~20
			412	235	196~294	157~255	108~196
SM35C	0.32~0.38	46	26	20~30	16~26	12~20	
		451	255	196~294	157~255	118~196	
SM40C	0.37~0.43	49	27	21~31	16~27	12~21	
		480	265	206~304	157~265	118~206	
SM45C	0.42~0.48	52	28	21~31	17~27	12~21	
		510	275	206~304	167~265	118~206	
SM50C	0.47~0.53	55	29	21~31	17~27	13~22	
		539	284	206~304	167~265	127~216	
SM55C	0.52~0.58	58	30	22~32	18~28	13~22	
		569	294	216~314	177~275	127~216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i>kgf/mm<sup>2</sup></i> <i>MPa</i>	항복점 하한 <i>kgf/mm<sup>2</sup></i> <i>MPa</i>	회전굽힘 피로 <i>kgf/mm<sup>2</sup></i> <i>MPa</i>	양진 인장압축 피로 <i>kgf/mm<sup>2</sup></i> <i>MPa</i>	양진 비틀림 피로 <i>kgf/mm<sup>2</sup></i> <i>MPa</i>
담금질 뜨임	SM30C	0.27~0.33	55	34	23~42	21~36	14~28
			539	333	226~412	206~353	137~275
	SM35C	0.32~0.38	58	40	25~45	22~40	16~31
			569	392	245~441	216~392	157~304
	SM40C	0.37~0.43	62	45	27~49	23~43	18~33
			608	441	265~480	226~422	177~324
	SM45C	0.42~0.48	70	50	31~52	25~49	22~36
			686	490	304~510	245~480	216~353
	SM50C	0.47~0.53	75	55	35~54	30~51	24~38
			735	539	343~530	294~500	235~373
SM55C	0.52~0.58	80	60	38~56	36~53	26~40	
		784	588	373~549	353~520	255~392	

나. 기계구조용 합금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탄소 함유량	합금강 기호	인장강도 $kgf/mm^2$ $MPa$	연신율 %	회전굽힘피로 $kgf/mm^2$ $MPa$	양진인장압축 피로 $kgf/mm^2$ $MPa$	양진 비틀림 피로 $kgf/mm^2$ $MPa$
0.13 ~ 0.18	SCr 415(H)	> 80	15	28	26	17
				275	255	167
	SCM 415(H)	> 85	16	30	28	19
				294	275	186
	SNC 415(H)	> 80	17	28	26	17
				275	255	167
SNC 815(H)	> 100	12	35	33	22	
			343	324	216	
SNCM 415	> 90	16	31	29	20	
			304	284	196	
0.17 ~ 0.23	SCr 420(H)	> 85	14	30	28	19
				294	275	186
	SCM 420(H)	> 95	14	33	31	21
				324	304	206
	SCM 421	> 100	14	35	33	22
				343	324	216
SNCM 220(H)	> 95	17	33	31	21	
			324	304	206	
SNCM 420(H)	> 100	15	35	33	22	
			343	324	216	
0.22 ~ 0.28	SNCM 625	> 95	18	33	31	21
0.27 ~ 0.35	SCr 430(H)	> 80	18	28	26	18
				275	255	177
	SCM 430	> 85	18	30	28	19
				294	275	186
	SNC 432	> 90	16	31	29	20
				304	284	196
SNC 631(H)	> 85	18	30	28	19	
			294	275	186	
0.32 ~ 0.40	SCr 435(H)	> 90	15	31	29	20
				304	284	196
	SCM 435(H)	> 95	15	33	31	21
				324	304	206
	SNC 236	> 75	22	26	24	16
				255	235	157
SNC 836	> 95	15	33	31	21	
			324	304	206	
0.36 ~ 0.43	SCr 440(H)	> 100	13	35	33	22
				343	324	216
	SCM 440(H)	> 100	12	35	33	22
				343	324	216
	SNCM 439	> 100	16	35	33	22
				343	324	216
0.40 ~ 0.50	SCr 445	> 100	12	35	33	22
				343	324	216
	SCM 445(H)	> 105	12	37	35	23
363				343	226	
0.44 ~ 0.53	SNCM 447	> 105	14	37	35	23
				363	343	226

## 2. 재료의 피로한도에 대한 근사식

재료의 종류	근사식	적용조건
강(iron)	$\sigma_e \cong 0.5 \sigma_{ut}$	$\sigma_{ut} < 1400 [MPa]$
	$\sigma_e = 700 [MPa]$	$\sigma_{ut} \geq 1400 [MPa]$
철(steel)	$\sigma_e \cong 0.4 \sigma_{ut}$	$\sigma_{ut} < 400 [MPa]$
	$\sigma_e = 160 [MPa]$	$\sigma_{ut} \geq 400 [MPa]$
알루미늄	$\sigma_e \cong 0.4 \sigma_{ut}$	$\sigma_{ut} < 330 [MPa]$
	$\sigma_e = 130 [MPa]$	$\sigma_{ut} \geq 330 [MPa]$
동합금	$\sigma_e \cong 0.4 \sigma_{ut}$	$\sigma_{ut} < 280 [MPa]$
	$\sigma_e = 100 [MPa]$	$\sigma_{ut} \geq 280 [MPa]$

주  $\sigma_{ut}$ 는 재료의 인장강도

[별표 4]

### 내풍 · 내진 · 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

구분	적용기준	적용범위
내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풍압과 풍압이 작용하는 유기시설·유기기의 투영면적의 곱으로 계산한다.</li> <li>○ 유기시설·유기기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풍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풍하중에 따른다.</li> </ul>	실외에 설치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에 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작용하는 밀면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으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진하중의 크기를 계산한다.</li> <li>○ 유기시설·유기기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지진하중에 따른다.</li> </ul>	지면과 연결된 기초가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
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쌓여있는 눈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으로 적설하중의 크기를 계산한다.</li> <li>○ 유기시설·유기기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적설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적설하중에 따른다.</li> </ul>	실외에 설치된 일체형의 지붕장치가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

## [별표5]

#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전 안전성검사 기준

## I. 총 칙

### 1. 목 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허가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규칙 별표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한다.
- 2)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ASTM, EN, DIN, JIS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이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은 해당 기구에 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한다.
- 4)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작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II. 공통기준

### 1. 기본 요구사항

- 1) 모든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무부하 시험과 부하시험을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운영에서 전류치, 압력, 각종 유격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부하시험의 경우에는 어린이 1인당 400N, 성인 1인당 750N을 기준하여 정원의 100%로 부하하여 최소 10회 이상 예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하안전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회전관람차는 14. 부하시험 2)항에 의하여 부하시험을 시행한다.

- 2) 모든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정상작동 또는 비상정지, 정전, 고장, 제어회로 이상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가정하여 점검하고 시운전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모든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정상작동 또는 비상정지, 정전, 고장, 제어회로 이상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계의 전복, 풀림, 들림, 이동,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비상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탈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4) 유기사설·유기기구의 동작은 모두 정상적이며 이용객 및 운행자에게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 5) 승용물이 공중에서 뜬 상태로 운동하는 유기사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승용물 등 중요부위 이중안전장치 및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중안전장치 및 보호장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 6) 승용물을 지지하거나 매다는 장치는 강구조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단, 궤도용 침목은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 7) 나사 또는 핀으로 연결된 부위는 이탈이나 이완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볼트, 너트 부분에는 풀림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8) 대기동선을 포함하여 이용객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날카로운 부위 및 위험한 돌출물 등이 없어야 한다.
- 9) 이용객의 머리보다 높은 장소에 설치한 장식물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중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10) 궤도 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운동하는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승용물이 궤도 또는 와이어로프에서 이탈 및 탈락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1) 동일한 궤도에서 2개 이상의 승용물이 운행 될 경우 승용물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와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승용물이 충돌했을 경우에도 이용객 및 승용물에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완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12)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사설 · 유기기구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3) 모든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운행 시작 신호 전달, 안내방송 및 주의사



항을 전달할 수 있는 음향시설 또는 보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4) 최고높이가 20m 이상인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체에서는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5) 운행시 승용물의 최고 높이가 20m 이상인 유기사설·유기기구는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조치가 가능한 차량 및 장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16) 무궤도열차의 회전반경은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최소 회전반경보다 커야 되며, 경사도는 등판능력보다 적어야 한다.
- 17) 무궤도열차 안전문은 운행요원에 의하여만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고 높이는 700mm이상 이어야 한다.
- 18) 무궤도열차의 차량간 연결 장치는 반드시 대차프레임과 견고히 연결되어야 한다.
- 19) 무궤도열차의 차량간 연결 장치에는 보조 연결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20)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정원, 이용(제한)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 21) 승용물을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수량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22) 로프 시브를 사용 할 때, 와이어로프가 로프 시브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 2. 승용물

- 1) 승용물의 출입구 높이는 이용객이 승하차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2) 승용물의 좌석부는 이용객의 탑승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3) 승용물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 상승하는 승용물의 문 또는 문을 대신하는 장치는 이용객이 승용물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문의 유격은 10mm이내여야 한다.
- 4) 승용물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 상승하는 승용물의 문은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승용물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 상승하는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승용물이 밀폐되지 않은 승용물일 경우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운행중 이용객이 승·하차하는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승용물 하단이 승강장으로부터 300mm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 7) 운동특성에 따라 이용객이 좌석에서 승용물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좌석에서 신체의 일부가 반동이 생기는 유기사설·유기기구는 좌석과 승용물 바닥에 30mm이상의 충격흡수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이용객 신체의 일부가 승용물 밖으로 노출될 경우 운행 중 신체가 주변 물체와 부딪침이 없어야 한다.
- 9) 승용물 내부에는 안전주의 사항, 비상시 연락처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10) 승용물에 부착된 창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창살이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살 간격은 150mm이내여야 한다.
- 11) 성인이 타는 긴 의자의 길이는 최소 400mm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아동이 타는 의자의 길이는 최소 250mm이상이어야 한다.

### 3. 승강장

- 1) 바닥 및 천정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 2) 바닥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 3) 부분적인 파손 또는 부식으로 이용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4) 운행 중 이용객이 대기동선에서 승강장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 5) 경사진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회전부와 고정부로 이루어진 승강장에는 그 단차를 50mm이하로 하고 회전부와 고정부간의 틈새는 30mm이하로 하며 회전부 또는 고정부에 안전선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4. 안전울타리

- 1) 안전울타리 및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0N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 2) 안전울타리는 승용물의 끝단에서 1.2m이상 떨어져야 한다.
- 3) 이용객이 안전울타리를 통과하거나 아래로 지나갈 수 없어야 하고 그

형태는 수직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수평구조 및 경사각 60°이하의 경사 구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수직살의 간격은 100mm이하여야 하고 지면과 수평부재와의 간격은 100mm이하여야 한다.
- 5) 안전울타리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 6) 안전울타리의 높이는 1.2m이상이며 충돌 우려가 있는 지역은 1.4m이상,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은 1.8m이상이어야 한다.
- 7) 이동식 울타리는 이용객이 쉽게 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승용물의 끝단으로부터 2m 이상 유격하여야 한다.
- 8) 안전울타리에는 심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 9) 안전울타리에 설치된 문은 부식, 파손 및 심한 녹이 없고 개폐 및 잠김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5. 비상구

- 1) 비상발생 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3) 비상구의 유도안내표지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 4) 비상구는 정전 시에도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 6. 운전실

- 1) 현격한 녹, 부식 및 부분적인 파손이 없고 창과 문의 잠김이 확실해야 한다.
- 2) 운전실은 승객의 승차, 하차 및 운행 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3) 운전실에는 운행자에게 필요한 비상연락망, 비상조치요령, 운전조작요령, 근무수칙, 주의사항 등이 정확하게 게시되어야 한다.
- 4) 운행개시, 종료 또는 경보를 위한 벨, 부저 등의 음량은 적절하고 신호기 등은 점등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5) 비상정지버튼은 운영자가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6) 방송설비의 설치는 견고하고 파손 등이 없으며 안내방송이 이용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7) 이용객의 승차, 하차 및 운행 중 이용객 및 유기시설 · 유기기구의 상

태 확인을 위한 반사경, CCTV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7. 점검로, 점검사다리

- 1) 궤도, 주로, 수로에는 점검로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현저한 녹, 부식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 2) 궤도, 주로, 수로에 점검로의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3) 높이 2m 이상에 위치한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는 점검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동식 사다리로 점검이 가능한 부분은 이동용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 4) 점검사다리는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고 현저한 녹, 부식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 5) 점검사다리는 각 단은 2000N의 하중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6) 점검사다리의 단과 단 사이 거리는 250mm 이하여야 한다.
- 7) 점검사다리의 입구는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하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검사다리는 최소직경 800mm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8) 점검사다리의 상단은 유기시설·유기기구류의 최고지점으로부터 600mm 이상 올라가 설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지점 위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출입문

- 1) 유기시설·유기기구 출입문은 이용객이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2) 유기시설·유기기구 출입문에는 이용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유기기구 출입문의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9. 옥내통로

- 1) 옥내통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2) 옥내통로의 기울기는 7.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 입출구 통로의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한다. 단, 편하우스, 미로 등 옥내통로 자체가 유기기구의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4) 3)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의 이용객만 이용도록 제작, 설치된 대피통로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10. 계단

- 1)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한된 수의 이용객만 이용하도록 제작, 설치된 대피계단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2) 계단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물건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 3) 계단의 너비와 간격은 일정해야하고 15°이하여야 한다.
- 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하여야 한다.
- 5) 계단의 발 딛는 부분의 폭은 240mm보다 커야 하고, 높이는 140~200mm여야 하며, 계단의 경사도는 일정해야 한다.
- 6)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0N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 운영자 용 계단 등의 난간은 500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7) 계단은 5000N/m<sup>2</sup>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안전계수는 4이상이어야 한다.

## 11. 안전유도표시

- 1) 입구, 출구 및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2) 안전유도표시는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 3) 이용객이 안전수칙 및 탑승안내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4)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 5) 강풍, 강설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2. 안전점검판

- 1) 일일안전점검판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일일안전점검판은 파손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 3) 강풍, 강설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4) 일일안전점검판은 유기시설·유기기구명, 안전관리자의 성명, 안전성검사 일자, 일일안전 점검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13. 풍속계

- 1) 업체 내에서 최대풍속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발신기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2) 발신기는 감지 및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 3) 지시기는 작동이 정상적이고 경보설정치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4) 지시기에 경보 설정치를 10m/s로 설정한다.

### 14. 부하시험

- 1) 회전관람차 및 양수펌프 사용하는 유기기구를 제외한 유기기구
  - ① 무부하 경우와 정격 적재량의 100%를 부하한 경우에 따라 정격전압에서 주행속도 또는 회전속도와 전류를 측정한다.
  - ② 부하시험결과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무부하의 경우	정격적재량의 100%를 부하한 경우
속도	설계도서에 기재된 속도의 110% 이하	설계도서에 기재된 속도의 90~105%
전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00% 이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00% 이하

- 2) 회전관람차 유기기구
  - ① 무부하 경우와 정격 적재량의 50%를 편부하한 경우에 따라 정격전압에서 주행속도 또는 회전속도와 전류를 측정한다.
  - ② 부하시험결과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무부하의 경우	정격적재량의 50%를 편부하한 경우
속도	설계도서에 기재된 속도의 110% 이하	설계도서에 기재된 속도의 90~105%
전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00% 이하	전동기 정격전류치의 100% 이하

- 3) 양수펌프를 사용하는 유기기구의 전동기 작동시험은 운행 시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고 전류는 전동기의 정격전류치의 100% 이하여야 한다.

### Ⅲ. 구조계산 및 설계

#### 1 하중

##### 1) 이용객의 하중

###### ① 성인의 경우

a) 2명 이상의 단위로 이용객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1명당 750N을 적용한다.

b) 1명 단위로 이용객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1명당 1000N을 적용한다.

② 아동용 좌석일 경우 400N으로 계산하고 성인과 어린이 공용일 경우에는 성인으로 계산한다.

③ 승용물 부분 및 승강장은  $4000\text{N/m}^2$  하중으로 계산하고 군중이 밀집된 승강장은  $5000\text{N/m}^2$ 로 계산하며 좌석이 있는 승용물 부분은 정원수에 따라 하중을 계산한다.

④ 운영자 전용 계단과 육교 등은  $1000\text{N/m}^2$ 로 계산한다.

##### 2) 구동하중 및 제동하중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동하중과 제동하중은 구동 또는 제동되는 이용객의 질량을 포함한 승용물의 질량과 가속도 또는 감속도의 곱과 같다.

$$F_{dr} = a_{dr} \times (m_v + m_p), \quad F_{br} = a_{br} \times (m_v + m_p)$$

$F_{dr}$  : 구동하중(구동력)[N],  $F_{br}$ : 제동하중(제동력)[N]

$a_{dr}$  : 가속도[ $\text{m/s}^2$ ],  $a_{br}$ : 감속도[ $\text{m/s}^2$ ]

$m_v$  : 움직이는 부분의 질량[kg]

$m_p$  : 이용객의 질량[kg]

단, 속력이 3%이하인 경우  $a_{dr}$  또는  $a_{br} = 0.7[\text{m/s}^2]$ 을 적용하여 구동하중 또는 제동하중을 계산한다.

##### 3) 풍하중

① 바람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풍하중과 풍하중이 작용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투영면적의 곱으로 계산한다.

- ②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풍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풍하중에 따른다.

4) 지진하중

- ① 지진에 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작용하는 밀면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으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진하중의 크기를 계산한다.
- ②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지진하중에 따른다.

5) 적설하중

- 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지붕장치에 쌓여있는 눈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으로 적설하중의 크기를 계산한다.
- ②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적설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적설하중에 따른다.

6) 동적계수

유기기구 운행에 따라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은 지속적인 변동이 발생하므로 작용하중에 별표1의 동적계수를 적용하여 구조계산 및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안전계수 및 허용응력

1) 기준강도

유기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부재의 종류, 하중의 종류, 안전수명의 요구도, 사용환경에 따라 부재의 파괴요인을 고려하므로 기준이 되는 강도를 기준강도라 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상온에서 연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 ② 상온에서 취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 ③ 상온에서 반복하중 및 교변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하중에 대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이때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



는다.

④ 상온에서 동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⑤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에서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 2) 허용응력

① 허용응력은 기준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 3) 안전계수

하중조건 및 재료상태 등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이다.

① 유기기구 구조부재의 위치별 안전계수는 별표2와 같다.

## 3. 피로한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각 재료의 피로한도는 별표3과 같다.

## 4. 안전성평가

외력에 의하여 발생된 부재의 최대응력은 허용응력 또는 피로한도 보다 작아야 한다.

## IV. 완성기능검사기준

### 1.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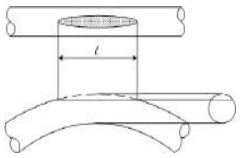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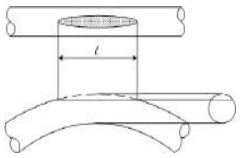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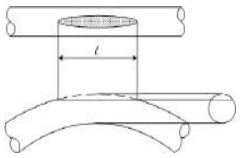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사 방법
1. 기초, 구조부		
1-1 기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부 주위에 과도한 침하, 함몰, 토사유출 및 경사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시설주변 배수로의 배수기능이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기초 콘크리트에 부등침하, 전복, 쏠림, 미끄러짐, 들림 및 이동 등이 없어야 한다.</li> <li>4) 기초 콘크리트에 과도한 균열, 파손, 틈새 및 박리가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1-2 기초 연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볼트는 이중너트체결 또는 풀림방지가 되어야 하며 설계치의 체결토크를 만족하여야 한다.</li> <li>2) 기초볼트 및 바닥판에 과도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초볼트의 과도한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4) 기초볼트 체결부에 물고임 등 배수불량이 없어야 한다.</li> <li>5) 기초연결부(장력조절장치 등 포함)의 조립부, 연결부 등의 요소에는 빠짐, 이완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체결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3 기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없어야 한다.</li> <li>2) 기둥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둥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li> <li>4)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부재의 진동 등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5) 기둥의 기울기는 최초설계치와 비교하여 기둥높이 1/200이하이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4 기둥 연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없어야 한다.</li> <li>2) 체결부(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의 간격이 설계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li> <li>3) 체결부에 과도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4) 보조부재 체결부에는 풀림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5) 핀, 볼트 등에는 풀림방지용 핀(헤어핀, 코터핀, 스프링핀 등) 또는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6)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핀과 핀 구멍의 최대틈새는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li> <li>7)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15 구조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없어야 한다.</li> <li>2) 구조물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구조물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li> <li>4)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은 진동 등으로 인한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5)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6) 유기시설·유기기에 추가 설치되는 구조물(장식물, 광고물 등)은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2. 궤도, 수로, 주로장치

<p>2-1 궤도, 수로, 주로</p>	<p>1) 궤도, 수로, 주로에는 균열, 변형이 없고 현저한 녹,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궤도, 수로, 주로에는 장애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3)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상태는 마모가 가장 심한 부분이 &lt;표 1&gt;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lt;표 1&gt;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7 640 1208 799"> <thead> <tr> <th>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형강 궤도</td> <td>최초 두께의 20% 이하</td> </tr> <tr> <td>강관 궤도</td> <td>최초 두께의 15% 이하</td> </tr> <tr> <td>강판수로, 강판주로</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p>4) 궤도, 수로, 주로의 접합부의 접합상태가 견고해야 한다. 5) 궤도, 수로, 주로의 용접하지 않은 체결부에는 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궤도, 수로, 주로와 지지부재의 연결 상태 및 지지부재와 기둥의 연결 상태는 견고해야하고 연결부에는 균열, 부식,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 7) 궤도, 수로, 주로의 완충용 고무재질을 도입할 경우 설치가 양호하고 고무재의 열화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8) 궤도간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기준치이어야 한다. 9) 궤도에서 차륜 폭의 중심이 설계 허용치수 범위 또는 주행궤도를 3등분한 주행궤도 중앙부에 차륜의 중심이 위치하여야 한다. 10) 수로의 연결부는 심각한 누수가 없어야 한다. 11) 수로표면은 매끄러워야하고 연결부의 국부 높이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12) 수로주행형 유기기구 수로의 수심은 1m 이내이어야 한다. 13) 수로 표면의 마모 및 표면상태는 &lt;표 2&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lt;표 2&gt; 수로 표면 마모 및 표면상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7 1301 1201 1489"> <thead> <tr> <th>수로 표면의 재질</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td> </tr> <tr> <td>금속제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이어야 한다.</td> </tr> <tr> <td>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판수로, 강판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제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p>육안 기기 (비파괴)</p>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판수로, 강판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제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p>2-2 지지 부재 및 침목</p>	<p>1) 지지부재는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지지부재 및 침목에는 균열, 변형 및 심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지지부재의 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 체결부는 이완 및 과도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 (비파괴)</p>																
<p>3. 구동장치</p>																		
<p>3-1 전동 장치</p>	<p>1) 전동장치에는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기타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출력은 설계시의 회전속도와 적재하중을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 3) 전동장치와 연결된 각종 동력전달장치는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전동장치의 체결상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전동기와 구동장치 간에 연결되고 있는 벨트 및 체인 장치 등이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6) 전동기의 제동기는 제동편 마모, 편마모, 손상 등이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li> <li>7) 브러시의 마모상태는 최초길이의 60%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li> <li>8) 회전 및 급유상태가 적합하고 절연 및 접지상태가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li> <li>9) 전동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li> </ol>	
3-2 감속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속기는 설계에서 고려된 회전비와 토오크를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li> <li>2) 감속기의 연결부재는 결합상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li> <li>3)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4) 수직축 또는 수평축의 직각도, 평행도, 동심도의 오차가 설계도서의 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감속기에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6) 감속기의 윤활유 온도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적정온도 범위 내 이어야 한다.</li> <li>7) 감속기의 회전은 정상적이고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8) 감속기의 케이스, 기어, 스프로킷 등에 과도한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9) 감속기를 고정하는 볼트 및 기타체결부에 현저한 녹, 부식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10) 감속기 또는 입출력 축 부위에는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11) 회전부에는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3 클러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러치 장치의 본체 및 링크에 과도한 부식이나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2) 클러치 장치에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마찰판 및 상대 접촉부재에 과도한 마모,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4 축 및 베어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베어링 하우스, 고정용 볼트 등의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윤활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3) 축, 베어링 및 체결부에는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4) 축, 베어링 등에는 이상소음, 마모,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5) 베어링의 발열온도는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6) 베어링 외부에 누유가 없으며 밀봉부에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li> <li>7) 하중에 의한 축의 처짐량은 베어링간 거리의 1/3000이하이거나 0.35 mm/m이하이어야 하고 응력 집중부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5 축이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오일 또는 분체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 장치에는 오일 또는 분체의 양이 적절하고 심한 오일 열화 또는 분체의 마모, 녹, 고착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키, 키홈, 코터, 스플라인 등은 설계허용치수 범위 내에 있으며 하중에 의한 압괴, 전단, 균열, 부식,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p>4) 회전속도의 증감으로 인한 이상발열, 이상소음 및 진동, 충격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p> <p>5) 고무부싱이 열화 또는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p> <p>6) 유체 커플링일 경우 누유가 없어야 한다.</p> <p>7) 이탈, 이완 방지 등의 분할핀의 파손, 탈락이 없어야 한다.</p> <p>8) 연결핀의 부식, 변형, 균열, 손상, 마모가 없어야 한다.</p> <p>9) 정회전, 역회전이 반복되는 축이음에서는 체인커플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p>												
3-6 기어	<p>1)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p> <p>2) 기어 표면의 경도부족에 의한 점부식 현상과 윤활막 파손에 의한 잇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p> <p>3) 기어 상호간의 중심거리 및 중심높이가 설계치수에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p> <p>4) 과도한 진동, 충격으로 인한 균열 또는 부분적인 결함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p> <p>5) 기어의 각 체결부에는 이상소음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p> <p>6) 급유상태는 정상적이어야 한다.</p> <p>7) 기어의 보스, 고정 볼트, 키 등에 이완, 균열, 변형, 파손이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3-7 체인 및 스프로킷	<p>1)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은 &lt;표 3&gt;의 기준을 따른다. &lt;표 3&gt;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상태</th> <th>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인 신장량</td> <td>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축,구멍 등의 직경마모량</td> <td>최초직경의 5% 이하</td> <td rowspan="2">1회/년 이상 측정 2개 이상 샘플 확인</td> </tr> <tr> <td>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td> <td>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td> </tr> </tbody> </table> <p>2) 스프로킷과 축의 조립은 견고하여야 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p> <p>3) 스프로킷의 잇면은 편접촉, 편마모가 없어야 한다.</p> <p>4) 체인 및 스프로킷의 과도한 긴장, 이완, 부식이 없어야 한다.</p> <p>5) 스프로킷 조립부의 부식, 변형, 이완이 없어야 한다.</p> <p>6) 베어링 부품의 조립상태가 견고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p> <p>7) 체인 가이드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마모,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p>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축,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2개 이상 샘플 확인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육안 기기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축,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2개 이상 샘플 확인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3-8 벨트 및 폴리	<p>1) 벨트 및 폴리는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2) 벨트와 폴리 접촉면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p> <p>3) 벨트는 장력이 적절하여야 한다.</p> <p>4) 벨트의 표면과 모서리에 파손, 열화,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p> <p>5) 폴리는 균열 및 부식이 없고 벨트 마찰면에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p> <p>6) 폴리와 축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p> <p>7) 베어링의 설치는 견고해야 한다.</p> <p>8) 베어링의 급유가 양호하고 회전이 원활해야 한다.</p> <p>9) 2개 이상의 벨트가 동력을 전달할 경우 각각의 벨트의 장력이 균일하도록 한다.</p> <p>10) 장력조절장치의 조립이 견고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p>	육안 기기											

3-9 로프	<p>1)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2) 와이어로프의 구동드럼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p> <p>3) 와이어로프의 끝 부분 고정 및 연결 장치에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이 없어야 한다.</p> <p>4) 와이어로프의 고정식 크래프 수량 및 간격은 &lt;표 4&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lt;표 4&gt; 와이어로프 크래프 수량 및 간격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2 645 1209 969"> <thead> <tr> <th>와이어로프 지름(mm)</th> <th>크래프 수량</th> <th>크래프 간격(mm)</th> <th>비고(교육안 기기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9 이하</td> <td>3</td> <td>50</td> <td rowspan="5">             &lt;정확한 방법&gt;         </td> </tr> <tr> <td>9 ~ 16</td> <td>4</td> <td>80 ~ 100</td> </tr> <tr> <td>18</td> <td>5</td> <td>110</td> </tr> <tr> <td>22</td> <td>5</td> <td>130</td> </tr> <tr> <td>24</td> <td>5</td> <td>150</td> </tr> <tr> <td>28</td> <td>5</td> <td>180</td> <td rowspan="4">             &lt;부정확한 방법&gt;         </td> </tr> <tr> <td>32</td> <td>6</td> <td>200</td> </tr> <tr> <td>36</td> <td>7</td> <td>230</td> </tr> <tr> <td>38</td> <td>8</td> <td>250</td> </tr> </tbody> </table> <p>5) 와이어로프는 녹이 없고 윤활상태가 양호해야 한다.</p> <p>6) 와이어로프는 변형, 굴절, 꼬임, 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p> <p>7) 와이어로프 끝단의 고정부는 이완이 없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p> <p>8) 와이어로프 마모는 최초직경의 10% 이하여야 하며 소선의 마모 길이가 &lt;표 5&gt;의 기준 이하여야 한다.</p> <p>&lt;표 5&gt;와이어로프 소선의 마모길이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2 1205 1209 1496"> <thead> <tr> <th rowspan="2">와이어로프 직경</th> <th colspan="2">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8 × S(19)</th> <th>8 × F(25)</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3.5</td> <td>3.1</td> <td rowspan="10">  </td> </tr> <tr> <td>12</td> <td>4.3</td> <td>3.8</td> </tr> <tr> <td>14</td> <td>4.9</td> <td>4.4</td> </tr> <tr> <td>16</td> <td>5.6</td> <td>5.1</td> </tr> <tr> <td>18</td> <td>6.3</td> <td>5.6</td> </tr> <tr> <td>20</td> <td>7.1</td> <td>6.2</td> </tr> <tr> <td>22.4</td> <td>7.8</td> <td>6.9</td> </tr> <tr> <td>25</td> <td>8.8</td> <td>7.8</td> </tr> </tbody> </table> <p>9) 로프가 여러 가닥인 경우, 각 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가져야 한다.</p> <p>10) 로프 시브 및 가이드는 과도한 마모, 파손,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며, 조립은 견고하여야 한다.</p>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래프 수량	크래프 간격(mm)	비고(교육안 기기정방법)	9 이하	3	50	 <정확한 방법>	9 ~ 16	4	80 ~ 100	18	5	110	22	5	130	24	5	150	28	5	180	 <부정확한 방법>	32	6	200	36	7	230	38	8	250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래프 수량	크래프 간격(mm)	비고(교육안 기기정방법)																																																														
9 이하	3	50	 <정확한 방법>																																																															
9 ~ 16	4	80 ~ 100																																																																
18	5	110																																																																
22	5	130																																																																
24	5	150																																																																
28	5	180	 <부정확한 방법>																																																															
32	6	200																																																																
36	7	230																																																																
38	8	250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3-10 컨베이어 장치	<p>1) 컨베이어장치에는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p> <p>2) 조립이 견고하고 각부에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3) 경사가 있는 컨베이어 장치는 반드시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4) 컨베이어 장치에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고 현저한 마모, 부식,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p> <p>5) 컨베이어장치의 각 체결부에는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6) 컨베이어 베어링의 회전은 정상이고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 7) 롤러, 구동롤러, 반전롤러, 긴장롤러 등은 회전이 원활하고 심한 부식 및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8) 컨베이어장치의 구조부재는 설치가 견고하고 녹,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11차륜 장치	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차륜의 회전상태가 적절하고 현저한 손상, 마모 및 편마모, 슬립흔적, 이상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 3) 차륜의 마모는 설계도서의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고 총 마모량은 <표 6>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 6> 차륜의 재질별 총 마모량 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차륜의 재질</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성수지</td> <td>최초 두께의 40% 이하</td> </tr> <tr> <td>강 제</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4) 차륜의 조립은 견고하여야 하고 조립부의 부식, 이완,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5) 차륜의 베어링부의 윤활상태가 적정하여야 한다. 6) 차륜 축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 7) 주행륜을 지지하는 장치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 8) 타이어형 차륜은 공기압이 적절하여야 하고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육안 기기 (비파괴)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제	최초 두께의 10% 이하							
4. 유압, 공압, 수압장치								
4-1 유압 장치	1) 압력회로의 각종 부품은 설치가 견고해야 하고 각 부분에 누유가 없으며 운전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 3) 운행 중 작동유의 온도는 5℃ 이상에서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수냉식 냉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식수 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5) 작동유는 적정량이 탱크 내에 주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오일탱크는 손상,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고 물이나 이물질 등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지붕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 7) 유압펌프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 8) 유압실린더의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누유 및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4-2 공압 장치	1)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압력회로, 액츄에이터 등에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 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	육안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운행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4) 공기압축기의 윤활, 토출압력, 운전전류 등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5) 공기압축기의 기계실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자동 드레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i> <li>6) 공기저장탱크는 현저한 녹 및 부식,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7) 공기흡입 필터에 과도한 오염,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li>8) 공압실린더는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이상 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li> <li>9) 공기저장탱크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이 원활하고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ul>	
4-3 수압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압펌프, 용기, 배관이음부, 패킹 등의 과도한 부식, 균열, 누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펌프장치의 토출압력, 전류치는 적절하여야 한다.</li> <li>3) 배관이음부에 진동흡수장치 및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4-4 기기 및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 등의 설치는 견고하고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2)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 등은 파손 및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li> <li>3) 각종 압력표시계기에는 사용압력을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4-5 밸브 및 배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밸브, 감압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에 과도한 부식, 손상이 없고 작동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2) 각종 밸브의 전기솔레노이드 부분에 과도한 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3) 드레인 밸브는 압력용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4) 밸브 및 배관장치의 각종 조립부는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하며 녹,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li>5) 압력호스는 사용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i> <li>6) 각종 배관에는 외력에 의한 과도한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고 방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i> <li>7) 배관용 고무호스에는 열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접속은 확실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5. 안전, 제동장치		
5-1 제동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제동력 이외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제동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본체 및 제동편 등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브레이크 제동편의 조립은 견고하고, 제동력에 이상이 없으며 조립용 리벳 또는 나사류의 머리 부분은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4) 제동용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의 체결은 견고하고 이완방지가 되어 있으며 녹 및 현저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5) 제동장치 가동부의 축, 베어링 등의 윤활은 적절하고 마모가 적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센서는 조립이 견고하고 손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7) 제동용 드럼 및 브레이크 블록의 마모상태가 설계 두께에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8) 제동장치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9) 제동장치는 급격한 제동 작용 및 불확실한 제동 작용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li> <li>10)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공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li>11) 하나의 궤도 또는 수로에 2대 이상의 승용물이 주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승용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ul>	
5-2 완충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완충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녹, 부식, 이완,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완충장치는 충격력에 대한 완충기능이 적절하며 충격력에 의한 손상,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유압식, 가스식, 기계식 완충기 각 요소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5-3 역주행 방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의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는 견고해야하고 현저한 녹, 부식, 변형이 없고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li> <li>2) 역주행방지장치의 체결부에는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기 및 장치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승용물의 급하강을 방지하는 장치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비파괴)
6. 승용물장치		
6-1 승용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승용물 좌석부의 골조, 외관, 바닥 등에는 현저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승용물은 운행 시 이용객의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4) 승용물 구조부재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마모, 열화,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6-2 승용물 체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 연결 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설계하중을 만족하여야 한다.</li> <li>2) 승용물을 연결 또는 지지하는 체결부, 조립부에 현저한 부식, 이완, 마모, 손상, 파손,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보조와이어, 보조봉, 보조체인 등의 조립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6-3 승용물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 안전장치는 이용객이 장착했을 때 작용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고 충분히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잠김상태가 확실해야 한다.</li> <li>2) 승용물 안전장치는 과도한 손상, 균열, 파손, 마모, 부식이 없고 그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3) 고공 또는 강한 회전력에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체결이 용이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4) 안전장치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탈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5) 이용객의 신체에 접촉하는 안전장치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														
6-4 승용물 기타장치	1) 승용물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은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 손상,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승용물 내부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등이 없어야 한다. 3) 승용물의 좌석, 등받이, 발판, 문, 칸막이, 창문 등에 과도한 이완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7. 전기장치															
7-1 수전반, 제어반, 조작반	1) 수전반 주개폐기는 통상 운전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판넬의 설치는 견고하고 우수의 침입,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각 판넬의 개폐기, 접촉기, 계전기, 저항기 등의 접점에 심한 마모 및 오손이 없고 또한 퓨즈, 차단기 등에 이완이 없어야 한다. 4)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은 설치에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 5) 조작반의 누름버튼, 스위치 등은 파손이 없고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은 각 회로마다 <표 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 회로의 절연저항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2">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th> <th>절연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400V 미만</td> <td>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td> <td>0.1 MΩ이상</td> </tr> <tr> <td>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td> <td>0.2 MΩ이상</td> </tr> <tr> <td>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td> <td>0.3 MΩ이상</td> </tr> <tr> <td colspan="2">400V 이상</td> <td>0.4 MΩ이상</td> </tr> </tbody> </table>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육안 기기 계측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7-2 전압계, 전류계 표시	1)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의 설치상태는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	육안													
7-3 배전선, 배관	1) 전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는 접촉저항이 없도록 확실해야 한다. 2) 철대, 외함의 접지선 연결은 확실하고 접지저항은 <표 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8> 회로의 접지저항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회로의 사용전압</th> <th>회로의 접지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400V이하의 것</td> <td>100 Ω이하</td> </tr> <tr> <td>400V를 초과한 것</td> <td>10 Ω이하</td> </tr> </tbody> </table>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육안 기기 계측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7-4 피뢰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뢰설비는 지상의 접속부(피뢰침, 피뢰도선, 접지선)에 부식이나 탈락으로 인한 전기적, 기계적 이상이 없어야 한다.</li> <li>2) 피뢰설비는 단독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전기적으로 격자(cage)인 건축 구조체에서 종합접지저항값이 150을 고압회로 1선 지락전류로 나눈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공용접지로 시공할 수 있다.</li> <li>3) 피뢰설비의 접지저항값은 10Ω 이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계측
7-5 조명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명장치의 설치에 이완이 없고 조명구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2) 변압기 등의 취부는 견고하고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li> <li>3) 조명장치로 인한 하중이 설계도서에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으로 구조물에 작용해서는 안 된다.</li> <li>4) 물놀이 시설의 조명기구와 같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수중조명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어서는 안 된다.</li> <li>b) 수중조명등은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넘을 경우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c) 수중등기구와 수중금속관로는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단독접지 하여야 한다.</li> <li>d) 물놀이시설 내벽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노출도전부가 없어야 하고, 설치높이는 2.25m 이상이어야 한다.</li> <li>e) 이중절연 된 조명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외함에 접지단자가 있어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li> </ol> </li> </ol>	육안 기기
7-6 공급전선, 집전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전선의 취부는 견고하고, 이완이 없으며 파손 또는 심한 마모와 오손이 없어야 한다.</li> <li>2) 집전장치의 취부는 양호하고, 파손 또는 심한 마모 및 접촉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공급전선, 집전장치는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7-7 리미트스 위치,센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미트 스위치, 센서는 취부가 확실하며, 파손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8. 운전조작장치		
8-1 운전조작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작반의 각 조작스위치의 명판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li> <li>2) 조작레버, 버튼, 핸들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주행에 필요한 시동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기능이 정확하고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4) 방송시설 및 안내보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용객에게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8-2 비상조작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정지장치 버튼은 운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2) 비상조작장치에 균열, 손상,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3) 비상탈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4) 예비전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전원장치는 이용객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을 때까지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9. 물놀이장치		
9-1 슬라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슬라이드의 체결상태는 견고해야 한다.</li> <li>3) 슬라이드표면은 매끄럽고 연결부의 곡부 높이차는 2mm이내여야 한다</li> <li>4) 슬라이드 내부에 물의 양은 적절해야 한다.</li> <li>5) 튜브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풀 구조여야 한다.</li> <li>6) 바디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풀 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li> <li>7) 슬라이드의 이용객 이탈방지 안전벽의 조립은 견고하고 이완,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8) 계단 및 출발지점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li> <li>9) 출발지점에서는 착지물의 상태를 육안 또는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2 파도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파도발생 장치로부터 설계기준 이상의 거리에 이용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li> <li>3) 파도풀의 수심이 1.8m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수심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이용객은 부력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li> <li>5) 파도풀 경사에 따른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6) 파도풀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7) 고수위 파도작동 직전 반드시 예령신호를 실시한 후 고수위 파도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8) 수심 1.2m 지점에는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식, 수심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3 유수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한쪽방향으로 흘러야 한다.</li> <li>2) 유수풀의 수심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3)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 예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4) 유수풀에는 반드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5) 유수풀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6) 입출구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7) 사각지역이 없어야하고 사각지역이 불가피할 경우 관찰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li> <li>8) 유수풀의 바닥, 벽면에 과도한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4 서핑 라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2)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3) 바닥에 심한 파손이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4) 정해진 기구 이외에 다른 기구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5 수중 모험놀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수중모험놀이 및 수중모험놀이내 착지풀에도 반드시 수심표기를 하여야 한다.</li> <li>3) 수중모험놀이시설에는 이용자를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4) 시설물의 파손 및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5)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6 급수 및 배수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 시 검토한 유량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li> <li>2) 물놀이 시설에 공급하는 수량 토출압력은 설계 검토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급수장치 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어야 하며 급수지점도 급물살이 없어야 한다.</li> <li>4) 지정 수위 이상의 물은 자동 배수되어야 한다.</li> <li>5) 배수구의 메쉬(Mesh)는 20mm초과해서는 안 된다.</li> </ol>	육안 기기
9-7 부력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력기구는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2) 튜브는 충분한 공기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li> <li>3) 튜브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와 접착력이 유지되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8 착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착지풀에는 반드시 수심 표시를 해야 하고 수심이 변화는 위치에는 변화에 대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2) 착지풀의 수심은 설계에 반영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어린이풀과 수중모험놀이의 수심은 0.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4) 착지풀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5) 착지풀은 과도풀, 유수풀 및 어린이 풀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6) 착지풀이 없는 바디슬라이드의 착지부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0.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10-1 공기막 장치, 공기막 연결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의 섬유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되 난연재료는 화재 등에 대비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은 이용객 체중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3) 공기막의 모형을 유지하거나 하중에 의하여 모형이 변형된 후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 유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li> <li>4) 공기막에 현저한 열화,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5) 공기막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나 부스러기가 없는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li> <li>6) 풍속이 10m/sec이상 지역에서는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li> <li>7) 공기막장치 주변의 울타리는 공기막장치로부터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8)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마감재 및 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9) 공기막 박음질용 실은 썩지 않는 연사를 사용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p>10) 박음질용 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p> <p>11) 박음질은 겹박음질이어야 하고 그 길이는 충분해야 한다.</p> <p>12) 공기막장치는 이용객이 탑승 이용하는 중 손, 발 등 신체의 일부 및 옷 등이 끼어도 쉽게 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p> <p>13) 터널식의 공기막장치는 충분한 지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a) 길이가 75cm 이하일 경우 터널 내부지름이 40cm 이상이어야 하고 스커트형식 지름이 40cm 이상으로 팽창할 수 있어야 한다.</p> <p>b) 길이가 75cm를 초과하고 2m 이하일 경우에는 터널 내부지름은 50cm 이상이어야 하고 스커트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p> <p>c) 길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터널 내부지름은 75cm 이상이어야 하고 스커트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p> <p>14)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0c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p> <p>a) 높이가 60cm이상 3m 이하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이용객의 신장보다 높아야 하고 측벽 공기막 높이가 1.8m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p> <p>b) 높이가 3m를 초과하고 6m 이하 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이용객 신장의 1.25배보다 높아야 한다.</p> <p>c)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객 신장의 1.25배보다 높은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최상단에는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 단, 지붕 하부와 이용객이 접근하는 최상단의 간격은 75cm 이상이어야 한다</p> <p>15) 높이가 6m이상의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는 슬라이드 최초 1m에는 이용객 신장 높이의 측벽 형태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는 이용객 신장 50% 이상의 측벽 형태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p> <p>16)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착지지점은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p> <p>a)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p> <p>b) 높이가 1m를 초과하고 3m이하 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p> <p>c)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착지지점의 길이는 슬라이드 높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p>	
<p>10-2 공기 주입 장치</p>	<p>1) 공기주입장치는 벽면형태 공기막에서 1.2m 이상, 출입구 등 개방된 면에서는 2.5m 간격을 유지해야한다.</p> <p>2) 공기주입장치 주변에는 이용객이 접근을 금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3) 공기주입장치는 작동은 양호해야하고 송풍구 및 배출구에 과도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p>
<p>10-3 지지 보조 부재</p>	<p>1) 실외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에 고정을 위하여 말뚝기초를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 고정을 위하여 무거운 물체로써 말뚝기초를 대체할 수 있다.</p> <p>2) 말뚝기초는 1600N의 하중에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말뚝기초를 대신하는 무거운 물체에도 같이 적용된다.</p> <p>3) 말뚝기초의 수는 공기막장치의 측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의 1.5배를 1600N으로 나눈 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육안 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지면에서 30~45°로 작용하게 하여야 한다.</li> <li>5) 말뚝기초의 상단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li> <li>6) 말뚝기초가 출입구에 설치될 경우에는 최대한 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 이용객의 신체일부와 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7)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m이상일 경우에는 공기막장치의 붕괴를 방지하는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부과적인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li> </ul>	
10-4 승강 및 하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장치 입출구 끝단에는 잔디, 모래, 충격흡수 매트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설치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장치 입출구에서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울타리는 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 데 설치된 계단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며 계단 답단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4)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 데 설치된 계단 측면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1. 기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요구사항, 승용물,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운전실, 점검로·점검사다리, 출입문, 옥내통로, 계단, 안전유도표시, 안전점검관, 풍속계, 부하시험 등은 허가전 안전성검사 공통사항”을 따른다.</li> </ul>	

## 2. 이동식·임시 유기사설·유기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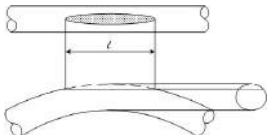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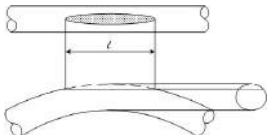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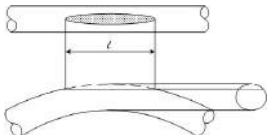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사 방법
1. 기초, 구조부		
1-1 기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면 부동침하가 없어야 하며 받침목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li> <li>2) 시설주변 배수로의 배수기능이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받침목이 설치된 지면 주위에 침하, 함몰, 토사유출 및 경사 등이 없어야 한다.</li> <li>4) 받침목은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li> <li>5) 아웃트리거에 의하여 지지되는 유기기구의 경우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유기기구는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6) 트레일러 및 차량에 직접 연결된 유기기구의 경우 트레일러 및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li> <li>7) 받침 및 고임 장치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1-2 기초 연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닥판에 과도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2) 기초연결부(장력조절장치 등 포함)의 조립부, 연결부 등의 요소에는 빠짐, 이완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체결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3 기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없어야 한다.</li> <li>2) 기둥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둥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li> <li>4)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부재의 진동 등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5) 기둥의 기울기는 최초설계치와 비교하여 기둥높이 1/200이하이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4 기둥 연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없어야 한다.</li> <li>2) 체결부(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의 간격이 설계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li> <li>3) 체결부에 과도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4) 보조부재 체결부에는 풀림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5) 핀, 볼트 등에는 풀림방지용 핀(헤어핀, 코터핀, 스프링핀 등) 또는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6)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핀과 핀 구멍의 최대틈새는 1.5mm 이내이어야 한다.</li> <li>7)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8)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기둥이 지지, 고정되는 이동식 유기기구는 제작사의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설치, 고정되어야 한다.</li> <li>9) 기둥을 지지, 고정하는 와이어로프의 고정각도는 30°~6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45°임.)</li> <li>10)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기둥이 지지, 고정되는 이동식 유기기구의 동일 높이에 설치된 와이어로프 등은 등각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긴장상태가 충분하고 균일해야 한다.</li> <li>11)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기둥이 지지, 고정되는 이동식 유기기구의 와이어 로프 고정을 위한 기초콘크리트 및 고정철골 등의 강도는 충분하여야 한다.</li> <li>12) 와이어로프 등으로 구조물을 고정한 경우에는 장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p>1-5 구조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없어야 한다.</li> <li>2) 구조물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구조물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li> <li>4)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은 진동 등으로 인한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5)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6) 유기시설·유기기에 추가설치되는 구조물(장식물, 광고물 등)은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li> <li>7) 받침대 위에서 유기기구의 수평 및 수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li> <li>8) 운행 중 유기기구의 전복 및 이동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조구조물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 (비파괴)</p>																
<p>2. 궤도, 수로, 주로장치</p>																		
<p>2-1 궤도, 수로, 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궤도, 수로, 주로에는 균열, 변형이 없고 현저한 녹,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2) 궤도, 수로, 주로에는 장애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li> <li>3)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상태는 마모가 가장 심한 부분이 &lt;표 1&gt;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li> </ol> <p>&lt;표 1&gt;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9 1050 1211 1200"> <thead> <tr> <th>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형강 궤도</td> <td>최초 두께의 20% 이하</td> </tr> <tr> <td>강관 궤도</td> <td>최초 두께의 15% 이하</td> </tr> <tr> <td>강판수로, 강판주로</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궤도, 수로, 주로의 접합부의 접합상태가 견고해야 한다.</li> <li>5) 궤도, 수로, 주로의 용접하지 않은 체결부에는 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li> <li>6) 궤도, 수로, 주로와 지지부재의 연결 상태 및 지지부재와 기둥의 연결 상태는 견고해야하고 연결부에는 균열, 부식,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li> <li>7) 궤도, 수로, 주로의 완충용 고무재질을 도입할 경우 설치가 양호하고 고무재의 열화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8) 궤도간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기준치이어야 한다.</li> <li>9) 궤도에서 차륜 폭의 중심이 설계 허용치수 범위 또는 주행궤도를 3등분한 주행궤도 중앙부에 차륜의 중심이 위치하여야 한다.</li> <li>10) 수로의 연결부는 심각한 누수가 없어야 한다.</li> <li>11) 수로표면은 매끄러워야하고 연결부의 국부 높이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li> <li>12) 수로주행형 유기기구 수로의 수심은 1m 이내이어야 한다.</li> <li>13) 수로 표면의 마모 및 표면상태는 &lt;표 2&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li> </ol> <p>&lt;표 2&gt; 수로 표면 마모 및 표면상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9 1720 1217 1910"> <thead> <tr> <th>수로 표면의 재질</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td> </tr> <tr> <td>금속제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td> </tr> <tr> <td>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판수로, 강판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제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p>육안 기기 (비파괴)</p>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판수로, 강판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제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p>2-2 지지부재 및 침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지부재는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지지부재 및 침목에는 균열, 변형 및 심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3) 지지부재의 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 체결부는 이완 및 과도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 (비파괴)</p>
<p>3. 구동장치</p>		
<p>3-1전동장 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동장치에는 설계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기타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출력은 설계시의 회전속도와 적재하중을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li> <li>3) 전동장치와 연결된 각종 동력전달장치는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li> <li>4) 전동장치의 체결상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전동기와 구동장치 간에 연결되고 있는 벨트 및 체인 장치 등이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6) 전동기의 제동기는 제동편 마모, 편마모, 손상 등이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li> <li>7) 브러시의 마모상태는 최초길이의 60%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li> <li>8) 회전 및 급유상태가 적합하고 절연 및 접지상태가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li> <li>9) 전동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li> </ol>	
<p>3-2 감속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속기는 설계에서 고려된 회전비와 토오크를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li> <li>2) 감속기의 연결부재는 결합상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li> <li>3)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4) 수직축 또는 수평축의 직각도, 평행도, 동심도의 오차가 설계도서의 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감속기에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6) 감속기의 윤활유 온도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적정온도 범위내 이어야한다.</li> <li>7) 감속기의 회전은 정상적이고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8) 감속기의 케이스, 기어, 스프로킷 등에 과도한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9) 감속기를 고정하는 볼트 및 기타체결부에 현저한 녹, 부식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10) 감속기 또는 입출력 축 부위에는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11) 회전부에는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3-3 클러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러치 장치의 본체 및 링크에 과도한 부식이나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2) 클러치 장치에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마찰판 및 상대 접촉부재에 과도한 마모,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3-4 축 및 베어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베어링 하우징, 고정용 볼트 등의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윤활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3) 축, 베어링 및 체결부에는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4) 축, 베어링 등에는 이상소음, 마모,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5) 베어링의 발열온도는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6) 베어링 외부에 누유가 없으며 밀봉부에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li> <li>7) 하중에 의한 축의 처짐량은 베어링간 거리의 1/3000이하이거나 0.35 mm/m 이하이어야 하고 응력 집중부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5 축이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이외에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오일 또는 분체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 장치에는 오일 또는 분체의 량이 적절하고 심한 오일 열화 또는 분체의 마모, 녹, 고착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키, 키홈, 코터, 스플라인 등은 설계허용치수 범위 내에 있으며 하중에 의한 압괴, 전단, 균열, 부식,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4) 회전속도의 증감으로 인한 이상발열, 이상소음 및 진동, 충격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li> <li>5) 고무부싱이 열화 또는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li> <li>6) 유체 커플링일 경우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7) 이탈, 이완 방지 등의 분할핀의 파손, 탈락이 없어야 한다.</li> <li>8) 연결핀의 부식, 변형, 균열, 손상,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9) 정회전, 역회전이 반복되는 축이음에서는 체인커플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ol>	육안 기기												
3-6 기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기어 표면의 경도부족에 의한 점부식 현상과 윤활막 파손에 의한 잇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어 상호간의 중심거리 및 중심높이가 설계치수에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li> <li>4) 과도한 진동, 충격으로 인한 균열 또는 부분적인 결함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5) 기어의 각 체결부에는 이상소음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6) 급유상태는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7) 기어의 보스, 고정 볼트, 키 등에 이완, 균열, 변형,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7 체인 및 스프로킷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은 &lt;표 3&gt;의 기준을 따른다.  <table border="1" data-bbox="427 1541 1214 1693"> <caption>&lt;표 3&gt;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 기준</caption> <thead> <tr> <th>상태</th> <th>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인 신장량</td> <td>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축,구멍 등의 직경마모량</td> <td>최초직경의 5% 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td> <td>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td> <td>2개 이상 샘플 확인</td> </tr> </tbody> </table> </li> <li>2) 스프로킷과 축의 조립은 견고하여야 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li> <li>3) 스프로킷의 잇면은 편접촉, 편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4) 체인 및 스프로킷의 과도한 긴장, 이완,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5) 스프로킷 조립부의 부식, 변형,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6) 베어링 부품의 조립상태가 견고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li> <li>7) 체인 가이드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마모,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축,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2개 이상 샘플 확인	육안 기기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축,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2개 이상 샘플 확인												

<p>3-8 벨트 및 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벨트 및 풀리는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2) 벨트와 풀리 접촉면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li> <li>3) 벨트는 장력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4) 벨트의 표면과 모서리에 파손, 열화,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li> <li>5) 풀리는 균열 및 부식이 없고 벨트 마찰면에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6) 풀리와 축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3-9 로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li> <li>2) 와이어로프의 구동드럼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와이어로프의 끝 부분 고정 및 연결 장치에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4) 와이어로프의 고정식 크랩프 수량 및 간격은 &lt;표 4&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li> </ol> <p>&lt;표 4&gt; 와이어로프 크랩프 수량 및 간격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7 860 1214 1312"> <thead> <tr> <th>와이어로프 지름(mm)</th> <th>크랩프 수량</th> <th>크랩프 간격(mm)</th> <th>비고(고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9 이하</td> <td>3</td> <td>50</td> <td rowspan="2"></td> </tr> <tr> <td>9 ~ 16</td> <td>4</td> <td>80 ~ 100</td> </tr> <tr> <td>18</td> <td>5</td> <td>110</td> <td rowspan="2"> &lt;정확한 방법&gt;</td> </tr> <tr> <td>22</td> <td>5</td> <td>130</td> </tr> <tr> <td>24</td> <td>5</td> <td>150</td> <td rowspan="2"> &lt;부정확한 방법&gt;</td> </tr> <tr> <td>28</td> <td>5</td> <td>180</td> </tr> <tr> <td>32</td> <td>6</td> <td>200</td> <td></td> </tr> <tr> <td>36</td> <td>7</td> <td>230</td> <td></td> </tr> <tr> <td>38</td> <td>8</td> <td>250</td> <td></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와이어로프는 녹이 없고 윤회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6) 와이어로프는 변형, 굴절, 꼬임, 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li> <li>7) 와이어로프 끝단의 고정부는 이완이 없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8) 와이어로프 마모는 최소직경의 10% 이하여야 하며 소선의 마모 길이가 &lt;표5&gt;의 기준이하여야 한다.</li> </ol> <p>&lt;표 5&gt;와이어로프 소선의 마모길이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7 1568 1214 1892"> <thead> <tr> <th rowspan="2">와이어로프 직경</th> <th colspan="2">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8 × S(19)</th> <th>8 × Fi (25)</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3.5</td> <td>3.1</td> <td rowspan="10"></td> </tr> <tr> <td>12</td> <td>4.3</td> <td>3.8</td> </tr> <tr> <td>14</td> <td>4.9</td> <td>4.4</td> </tr> <tr> <td>16</td> <td>5.6</td> <td>5.1</td> </tr> <tr> <td>18</td> <td>6.3</td> <td>5.6</td> </tr> <tr> <td>20</td> <td>7.1</td> <td>6.2</td> </tr> <tr> <td>22.4</td> <td>7.8</td> <td>6.9</td> </tr> <tr> <td>25</td> <td>8.8</td> <td>7.8</td> </tr> </tbody> </table>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랩프 수량	크랩프 간격(mm)	비고(고정방법)	9 이하	3	50		9 ~ 16	4	80 ~ 100	18	5	110	 <정확한 방법>	22	5	130	24	5	150	 <부정확한 방법>	28	5	180	32	6	200		36	7	230		38	8	250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i (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p>육안 기기</p>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랩프 수량	크랩프 간격(mm)	비고(고정방법)																																																																			
9 이하	3	50																																																																				
9 ~ 16	4	80 ~ 100																																																																				
18	5	110	 <정확한 방법>																																																																			
22	5	130																																																																				
24	5	150	 <부정확한 방법>																																																																			
28	5	180																																																																				
32	6	200																																																																				
36	7	230																																																																				
38	8	250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i (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p>9) 로프가 여러 가닥인 경우, 각 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가져야 한다.</p> <p>10) 로프 시브 및 가이드는 과도한 마모, 파손,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며, 조립은 견고하여야 한다.</p>							
3-10 컨베이어 장치	<p>1) 컨베이어장치에는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p> <p>2) 조립이 견고하고 각부에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3) 경사가 있는 컨베이어 장치는 반드시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4) 컨베이어 장치에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고 현저한 마모, 부식,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p> <p>5) 컨베이어장치의 각 체결부에는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p> <p>6) 컨베이어 베어링의 회전은 정상이고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7) 롤러, 구동롤러, 반전롤러, 긴장롤러 등은 회전이 원활하고 심한 부식 및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p> <p>8) 컨베이어장치의 구조부재는 설치가 견고하고 녹,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3-11 차륜 장치	<p>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p> <p>2) 차륜의 회전상태가 적절하고 현저한 손상, 마모 및 편마모, 슬립흔적, 이상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p> <p>3) 차륜의 마모는 설계도서의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고 총 마모량은 &lt;표 6&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lt;표 6&gt; 차륜의 재질별 총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차륜의 재질</th> <th style="width: 50%;">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성수지</td> <td>최초 두께의 40% 이하</td> </tr> <tr> <td>강 재</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p>4) 차륜의 조립은 견고하여야하고 조립부의 부식, 이완,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5) 차륜의 베어링부의 윤활상태가 적정하여야 한다.</p> <p>6) 차륜 축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7) 주행륜을 지지하는 장치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8) 타이어형 차륜은 공기압이 적절하여야 하고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p>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재	최초 두께의 10% 이하	육안 기기 (비파괴)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재	최초 두께의 10% 이하							
<b>4. 유압, 공압, 수압장치</b>								
4-1 유압장치	<p>1) 압력회로의 각종 부품은 설치가 견고해야하고 각 부분에 누유가 없으며 운전상태가 양호해야 한다.</p> <p>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p> <p>3) 운행 중 작동유의 온도는 5℃ 이상에서 6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p> <p>4) 수냉식 냉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식수 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p> <p>5) 작동유는 적정량이 탱크 내에 주입되어 있어야 한다.</p>	육안 기기						

	<p>6) 오일탱크는 손상,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고 물이나 이물질 등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지붕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p> <p>7) 유압펌프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p> <p>8) 유압실린더의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누유 및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p>	
4-2 공압장치	<p>1)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압력회로, 액츄에이터 등에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p> <p>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p> <p>3)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운행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p> <p>4) 공기압축기의 윤활, 토출압력, 운전전류 등이 적절하여야 한다.</p> <p>5) 공기압축기의 기계실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자동 드레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p> <p>6) 공기저장탱크는 과도한 녹 및 부식,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7) 공기흡입 필터에 과도한 오염, 손상이 없어야 한다.</p> <p>8) 공압실린더는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이상 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p> <p>9) 공기저장탱크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이 원활하고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4-3 수압장치	<p>1) 수압펌프, 용기, 배관이음부, 패킹 등의 과도한 부식, 균열, 누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2) 펌프장치의 토출압력, 전류치는 적절하여야 한다.</p> <p>3) 배관이음부에 진동흡수장치 및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육안 기기
4-4 기기 및 계기	<p>1)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 등의 설치는 견고하고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한다.</p> <p>2)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는 파손 및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p> <p>3) 각종 압력표시계기에는 사용압력을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육안 기기
4-5 밸브 및 배관장치	<p>1) 안전밸브, 감압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에 과도한 부식, 손상이 없고 작동이 정상적이어야 한다.</p> <p>2) 각종 밸브의 전기솔레노이드 부분에 과도한 발열이 없어야 한다.</p> <p>3) 드레인 밸브는 압력용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p> <p>4) 밸브 및 배관장치의 각종 조립부는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하며 녹,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p> <p>5) 압력호스는 사용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6) 각종 배관에는 외력에 의한 과도한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고 방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p> <p>7) 배관용 고무호스에는 열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접속은 확실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5. 안전, 제동장치		
5-1 제동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제동력 이외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제동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본체 및 제동편 등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브레이크 제동편의 조립은 견고하고, 제동력에 이상이 없으며 조립용 리벳 또는 나사류의 머리 부분은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4) 제동용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의 체결은 견고하고 이완방지가 되어 있으며 녹 및 현저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5) 제동장치 가동부의 축, 베어링 등의 윤활은 적절하고 마모가 적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6)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센서는 조립이 견고하고 손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7) 제동용 드럼 및 브레이크 블록의 마모상태가 설계 두께에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8) 제동장치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9) 제동장치는 급격한 제동 작용 및 불확실한 제동 작용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li> <li>10)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공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li>11) 하나의 궤도 또는 수로에 2대 이상의 승용물이 주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승용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5-2 완충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완충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녹, 부식, 이완,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완충장치는 충격력에 대한 완충기능이 적절하며 충격력에 의한 손상,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유압식, 가스식, 기계식 완충기 각 요소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5-3 역주행 방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의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는 견고해야하고 현저한 녹, 부식, 변형이 없고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li> <li>2) 역주행방지장치의 체결부에는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기 및 장치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승용물의 급하강을 방지하는 장치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6. 승용물장치		
6-1 승용물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승용물 좌석부의 골조, 외관, 바닥 등에는 현저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승용물은 운행 시 이용객의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4) 승용물 구조부재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마모, 열화,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6-2 승용물 체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 연결 장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설계하중을 만족하여야 한다.</li> <li>2) 승용물을 연결 또는 지지하는 체결부, 조립부에 현저한 부식, 이완, 마모, 손상, 파손,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 보조와이어, 보조봉, 보조체인 등의 조립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6-3 승용물 안전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 안전장치는 이용객이 장착했을 때 작용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고 충분히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잠김상태가 확실해야 한다.</li> <li>2) 승용물 안전장치는 과도한 손상, 균열, 파손, 마멸, 부식이 없고 그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3) 고공 또는 강한 회전력에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체결이 용이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4) 안전장치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탈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li> <li>5) 이용객의 신체에 접촉하는 안전장치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6-4 승용물 기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은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 손상,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승용물 내부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승용물의 좌석, 등받이, 발판, 문, 칸막이, 창문 등에 과도한 이완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b>7. 전기장치</b>															
7-1 수전반, 제어반, 조작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전반 주개폐기는 통상 운전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각 판넬의 설치는 견고하고 우수의 침입,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3) 각 판넬의 개폐기, 접촉기, 계전기, 저항기 등의 접점에 심한 마모 및 오손이 없고 또한 퓨즈, 차단기 등에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4)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은 설치에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li> <li>5) 조작반의 누름버튼, 스위치 등은 파손이 없고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li> <li>6) 절연저항은 각 회로마다 &lt;표 7&gt;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li> </ol> <p>&lt;표 7&gt; 회로의 절연저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th> <th>절연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400V 미만</td> <td>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0.1 MΩ이상</td> </tr> <tr> <td>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0.2 MΩ이상</td> </tr> <tr> <td>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0.3 MΩ이상</td> </tr> <tr> <td colspan="2">400V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0.4 MΩ이상</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검사해야 한다.</li> <li>8) 전동기 주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각 누전차단기를 차단한 상태로 두고 검사해야 한다.</li> <li>9) 전력공급용 저압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및 전류계를 시설하여야 한다.</li> </ol>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육안 기기 계측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p>10) 전력공급용 저압발전기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lt;표 8&gt;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p> <p>11) 전력공급용 저압발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7-2 전압계, 전류계 표시	1)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의 설치상태는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	육안						
7-3 배전선, 배관	<p>1) 전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는 접촉저항이 없도록 확실해야 한다.</p> <p>2) 철대, 외함의 접지선 연결은 확실하고 접지저항은 &lt;표 8&gt;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p>&lt;표 8&gt; 회로의 접지저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회로의 사용전압</th> <th style="width: 50%;">회로의 접지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400V이하의 것</td> <td>100 Ω이하</td> </tr> <tr> <td>400V를 초과한 것</td> <td>10 Ω이하</td> </tr> </tbody> </table>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육안 기기 계측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7-4 피뢰설비	<p>1) 피뢰설비는 지상의 접속부(피뢰침, 피뢰도선, 접지선)에 부식이나 탈락으로 인한 전기적, 기계적 이상이 없어야 한다.</p> <p>2) 피뢰설비의 접지저항값은 10Ω 이하여야 한다.</p>	육안 기기 예 측						
7-5 조명장치	<p>1) 조명장치의 설치는 이완이 없고 조명구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p> <p>2) 변압기 등의 취부는 견고하고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p> <p>3) 조명장치로 인한 하중이 설계도서에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으로 구조물에 작용해서는 안된다.</p> <p>4) 물놀이 시설의 조명기구는 아래와 같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a) 수중조명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어서는 안 된다.</p> <p>b) 수중조명등은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넘을 경우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c) 수중등기구와 수중금속관로는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단독접지 하여야 한다.</p> <p>d) 물놀이시설 내벽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노출도전부가 없어야 하고, 설치높이는 2.25m 이상이어야 한다.</p> <p>e) 이중절연 된 조명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외함에 접지단자가 있어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p>	육안 기기						
7-6 공급전선, 집전장치	<p>1) 공급전선의 취부는 견고하고, 이완이 없으며 파손 또는 심한 마모와 오손이 없어야 한다.</p> <p>2) 집전장치의 취부는 양호하고, 파손 또는 심한 마모 및 접촉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p> <p>3) 공급전선, 집전장치는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p>	육안						
7-7 리미트 스위치, 센서	1) 리미트 스위치, 센서는 취부가 확실하며, 파손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육안 조작						

8. 운전조작장치		
8-1 운전조작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작반의 각 조작스위치의 명판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li> <li>2) 조작레버, 버튼, 핸들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주행에 필요한 시동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기능이 정확하고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4) 방송시설 및 안내보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용객에게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8-2 비상조작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정지장치 버튼은 운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2) 비상조작장치에 균열, 손상,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3) 비상탈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4) 예비전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전원장치는 이용객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을 때까지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9. 물놀이장치		
9-1 슬라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슬라이드의 체결상태는 견고해야 한다.</li> <li>3) 슬라이드표면은 매끄럽고 연결부의 곡부 높이차는 2mm이내여야 한다</li> <li>4) 슬라이드 내부에 물의 양은 적절해야 한다.</li> <li>5) 튜브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풀 구조여야 한다.</li> <li>6) 바디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풀 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7) 슬라이드의 이용객 이탈방지 안전벽의 조립은 견고하고 이완,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8) 계단 및 출발지점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li> <li>9) 출발지점에서는 착지물의 상태를 육안 또는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2 파도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파도발생장치로부터 설계기준 이상의 거리에 이용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li> <li>3) 파도풀의 수심이 1.8m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수심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이용객은 부력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li> <li>5) 파도풀 경사에 따른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6) 파도풀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7) 고수위 파도작동 직전 반드시 예령신호를 실시한 후 고수위 파도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8) 수심 1.2m 지점에는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식, 수심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3 유수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한쪽방향으로 흘러야 한다.</li> <li>2) 유수풀의 수심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ol>	육안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4) 유수풀에는 반드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5) 유수풀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6) 입출구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7) 사각지역이 없어야하고 사각지역이 불가피할 경우 관찰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li> <li>8) 유수풀의 바닥, 벽면에 과도한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ul>	
9-4 서핑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2)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3) 바닥에 심한 파손이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4) 정해진 기구 이외에 다른 기구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9-5 수중모험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수중모험놀이 및 수중모험놀이 내 착지풀에도 반드시 수심표기를 하여야 한다.</li> <li>3) 수중모험놀이시설에는 이용자를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4) 시설물의 파손 및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5)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9-6 급수 및 배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 시 검토한 유량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li> <li>2) 물놀이 시설에 공급하는 수량 토출압력은 설계 검토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급수장치 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어야 하며 급수지점도 급물살이 없어야 한다.</li> <li>4) 지정 수위 이상의 물은 자동 배수되어야 한다.</li> <li>5) 배수구의 메쉬(Mesh)는 20mm초과해서는 안 된다.</li> </ul>	육안 기기
9-7 부력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력기구는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2) 튜브는 충분한 공기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li> <li>3) 튜브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와 접착력이 유지되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9-8 착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착지풀에는 반드시 수심 표시를 해야 하고 수심이 변화는 위치에는 변화에 대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2) 착지풀의 수심은 설계에 반영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어린이풀과 수중모험놀이의 수심은 0.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4) 착지풀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5) 착지풀은 과도풀, 유수풀 및 어린이 풀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6) 착지풀이 없는 바디슬라이드의 착지부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0.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p>10-1 공기막 장치, 공기막 연결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의 섬유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되 난연재료는 화재 등에 대비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은 이용객 채중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3) 공기막의 모형을 유지하거나 하중에 의하여 모형이 변형된 후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 유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li> <li>4) 공기막에 현저한 열화,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5) 공기막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나 부스러기가 없는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li> <li>6) 풍속이 10m/sec이상 지역에서는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li> <li>7) 공기막장치 주변의 울타리는 공기막장치로부터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8)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마감재 및 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9) 공기막 박음질용 실은 썩지 않는 연사를 사용해야 한다.</li> <li>10) 박음질용 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11) 박음질은 겹박음질이어야 하고 그 길이는 충분해야 한다.</li> <li>12) 공기막장치는 이용객이 탑승 이용하는 중 손, 발 등 신체의 일부 및 옷이 끼여도 쉽게 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li> <li>13) 터널식의 공기막장치는 충분한 지름을 확보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길이가 75cm 이하일 경우 터널 내부지름이 40c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킨형식 지름이 40cm 이상으로 팽창할 수 있어야 한다.</li> <li>b) 길이가 75cm를 초과하고 2m 이하일 경우에는 터널 내부지름은 50c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킨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li> <li>c) 길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터널 내부지름은 75c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킨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li> </ol> </li> <li>14)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0c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높이가 60cm이상 3m 이하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이용객의 신장보다 높아야 하고 측벽 공기막 높이가 1.8m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li> <li>b) 높이가 3m를 초과하고 6m 이하 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이용객 신장의 1.25배보다 높아야 한다.</li> <li>c)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객 신장의 1.25배보다 높은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최상단에는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 단, 지붕 하부와 이용객이 접근하는 최상단의 간격은 75cm 이상이어야 한다</li> </ol> </li> <li>15) 높이가 6m이상의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는 슬라이드 최초 1m에는 이용객 신장 높이의 측벽 형태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는 이용객 신장 50% 이상의 측벽 형태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li> <li>16)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착지지점은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li> <li>b) 높이가 1m를 초과하고 3m이하 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li> <li>c)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착지지점의 길이는 슬라이드 높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li> </ol> </li> </ol>	<p>육안 기기</p>
--	--	------------------

10-2 공기주입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주입장치는 벽면형태 공기막에서 1.2m 이상, 출입구 등 개방된 면에서는 2~5m 간격을 유지해야한다.</li> <li>2) 공기주입장치 주변에는 이용객이 접근을 금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3) 공기주입장치는 작동은 양호해야하고 송풍구 및 배출구에 과도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0-3 지지 보조부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외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에 고정을 위하여 말뚝기초를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 고정을 위하여 무거운 물체로써 말뚝기초를 대체할 수 있다.</li> <li>2) 말뚝기초는 1600N의 하중에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말뚝기초를 대신하는 무거운 물체에도 같이 적용된다.</li> <li>3) 말뚝기초의 수는 공기막장치의 측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의 1.5배를 1600N으로 나눈 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지면에서 30~45°로 작용하게 하여야 한다.</li> <li>5) 말뚝기초의 상단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li> <li>6) 말뚝기초가 출입구에 설치될 경우에는 최대한 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 이용객의 신체일부와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7)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m이상일 경우에는 공기막장치의 붕괴를 방지하는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부과적인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0-4 승강 및 하강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장치 입출구 끝단에는 잔디, 모래, 충격흡수 매트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설치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장치 입출구에서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울타리는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한다.</li> <li>3)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데 설치된 계단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며 계단 담단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4)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데 설치된 계단 측면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1. 기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요구사항, 승용물,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운전실, 점검로·점검사다리, 출입문, 옥내통로, 계단, 안전유도표시, 안전점검판, 풍속계, 부하시험 등은 허가전 안전성검사 공통사항”을 따른다.</li> </ol>	

[별표6]

유기시설 · 유기기구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

1. 고정식 유기시설 · 유기기구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사 방법
1. 기초, 구조부		
1-1 기초	1) 기초부 주위에 과도한 침하, 함몰, 토사유출 및 경사 등이 없어야 한다. 2) 시설주변 배수로의 배수기능이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부동침하, 전복, 쏠림, 미끄러짐, 들림 및 이동 등이 없어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에 과도한 균열, 파손, 틈새 및 박리가 없어야 한다.	육안
1-2 기초 연결부	1) 기초볼트는 이중너트체결 또는 풀림방지가 되어야 하며 설계치의 체결토크를 만족하여야 한다. 2) 기초볼트 및 바닥판에 과도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기초볼트의 과도한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기초볼트 체결부에 물고임 등 배수불량이 없어야 한다. 5) 기초연결부(장력조절장치 등 포함)의 조립부, 연결부 등의 요소에는 빠짐, 이완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체결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육안 기기
1-3 기둥	1) 기둥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기둥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부재의 진동 등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기둥의 기울기는 최초설계치와 비교하여 기둥높이 1/200이하이어야 한다.	육안 기기
1-4 기둥 연결부	1) 체결부(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의 간격이 설계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체결부에 과도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보조부재 체결부에는 풀림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핀, 볼트 등에는 풀림방지용 핀(헤어핀, 코터핀, 스프링 핀 등) 또는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핀과 핀 구멍의 최대틈새는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비파괴)
1-5 구조물	1) 구조물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구조물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은 진동 등으로 인한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비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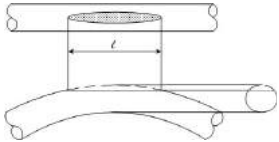
2. 궤도, 수로, 주로장치

<p>2-1 궤도, 수로, 주로</p>	<p>1) 궤도, 수로, 주로에는 균열, 변형이 없고 현저한 녹,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궤도, 수로, 주로에는 장애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3)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상태는 마모가 가장 심한 부분이 &lt;표 1&gt;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p> <p>&lt;표 1&gt;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30 638 1204 757"> <thead> <tr> <th>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형강 궤도</td> <td>최초 두께의 20% 이하</td> </tr> <tr> <td>강관 궤도</td> <td>최초 두께의 15% 이하</td> </tr> <tr> <td>강관수로, 강관주로</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p>4) 궤도, 수로, 주로의 접합부의 접합상태가 견고해야 한다. 5) 궤도, 수로, 주로의 용접하지 않은 체결부에는 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궤도, 수로, 주로와 지지부재의 연결 상태 및 지지부재와 기둥의 연결 상태는 견고해야하고 연결부에는 균열, 부식,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 7) 궤도, 수로, 주로의 완충용 고무재질을 도입할 경우 설치가 양호하고 고무재의 열화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8) 궤도에서 차륜 폭의 중심이 설계 허용치수 범위 또는 주행궤도를 3등분한 주행궤도 중앙부에 차륜의 중심이 위치하여야 한다. 9) 수로의 연결부는 심각한 누수가 없어야 한다. 10) 수로표면은 매끄러워야하고 연결부의 곡부 높이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11) 수로주행형 유기기구 수로의 수심은 1m 이내이어야 한다. 12) 수로 표면의 마모 및 표면상태는 &lt;표 2&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lt;표 2&gt; 수로 표면 마모 및 표면상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30 1243 1204 1388"> <thead> <tr> <th>수로 표면의 재질</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td> </tr> <tr> <td>금속계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td> </tr> <tr> <td>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관수로, 강관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계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p>육안 기기 (비파괴)</p>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관수로, 강관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계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p>2-2 지지부재 및 침목</p>	<p>1) 지지부재 및 침목에는 균열, 변형 및 심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지지부재의 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 체결부는 이완 및 과도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 (비파괴)</p>																
<p>3. 구동장치</p>																		
<p>3-1 전동장치</p>	<p>1) 전동장치와 연결된 각종 동력전달장치는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2) 전동장치의 체결상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기의 제동기는 제동편 마모, 편마모, 손상 등이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4) 브러시의 마모상태는 최초길이의 60%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회전 및 급유상태가 적합하고 절연 및 접지상태가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6) 전동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p>	<p>육안 기기</p>																

<p>3-2 감속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속기의 연결부재는 결합상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li> <li>2)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수직축 또는 수평축의 직각도, 평행도, 동심도의 오차가 설계도서의 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4) 감속기에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윤활유를 사용하여야하며 양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5) 감속기의 윤활유 온도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적정온도 범위 내 이어야한다.</li> <li>6) 감속기의 회전은 정상적이고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7) 감속기의 케이스, 기어, 스프로킷 등에 과도한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8) 감속기를 고정하는 볼트 및 기타체결부에 현저한 녹, 부식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9) 감속기 또는 입출력 축 부위에는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10) 회전부에는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3-3 클러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러치 장치의 본체 및 링크에 과도한 부식이나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2) 클러치 장치에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마찰판 및 상대 접촉부재에 과도한 마모,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3-4 축 및 베어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베어링 하우징, 고정용 볼트 등의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윤활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2) 축, 베어링 및 체결부에는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축, 베어링 등에는 이상소음, 마모,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4) 베어링의 발열온도는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베어링 외부에 누유가 없으며 밀봉부에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li> <li>6) 하중에 의한 축의 처짐량은 베어링간 거리의 1/3000이하이거나 0.35 mm/m이하 이어야 하고 응력 집중부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3-5 축이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일 또는 분체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 장치에는 오일 또는 분체의 양이 적절하고 심한 오일 열화 또는 분체의 마모, 녹, 고착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키, 키홈, 코터, 스플라인 등은 설계허용치수 범위 내에 있으며 하중에 의한 압괴, 전단, 균열, 부식,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3) 회전속도의 증감으로 인한 이상발열, 이상소음 및 진동, 충격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li> <li>4) 고무부싱이 열화 또는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li> <li>5) 유체 커플링일 경우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6) 이탈, 이완 방지 등의 분할핀의 파손, 탈락이 없어야 한다.</li> <li>7) 연결핀의 부식, 변형, 균열, 손상,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3-6 기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기어 표면의 경도부족에 의한 점부식 현상과 윤활막 파손에 의한 잇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어 상호간의 중심거리 및 중심높이가 설계치수에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li> <li>4) 과도한 진동, 충격으로 인한 균열 또는 부분적인 결함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ol>	<p>육안 기기</p>



	<p>5) 기어의 각 체결부에는 이상소음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6) 급유상태는 정상적이어야 한다.          7) 기어의 보스, 고정 볼트, 키 등에 이완, 균열, 변형, 파손이 없어야 한다.</p>																																		
<p>3-7 체인 및 스프로킷</p>	<p>1)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은 &lt;표 3&gt;의 기준을 따른다.          &lt;표 3&gt;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32 640 1209 757"> <thead> <tr> <th>상태</th> <th>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인 신장량</td> <td>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축, 구멍 등의 직경마모량</td> <td>최초직경의 5% 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td> <td>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td> <td>2개 이상 샘플 확인</td> </tr> </tbody> </table> <p>2) 스프로킷과 축의 조립은 견고하여야 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          3) 스프로킷의 잇면은 편접축, 편마모가 없어야 한다.          4) 체인 및 스프로킷의 과도한 긴장, 이완, 부식이 없어야 한다.          5) 스프로킷 조립부의 부식, 변형, 이완이 없어야 한다.          6) 베어링 부품의 조립상태가 견고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          7) 체인 가이드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마모,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p>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축, 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2개 이상 샘플 확인	<p>육안 기기</p>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축, 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2개 이상 샘플 확인																																	
<p>3-8 벨트 및 폴리</p>	<p>1) 벨트 및 폴리는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벨트와 폴리 접촉면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벨트는 장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4) 벨트의 표면과 모서리에 파손, 열화,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          5) 폴리는 균열 및 부식이 없고 벨트 마찰면에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6) 폴리과 축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          7) 베어링의 설치는 견고해야 한다.          8) 베어링의 급유가 양호하고 회전이 원활해야 한다.          9) 2개 이상의 벨트가 동력을 전달할 경우 각각의 벨트의 장력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장력조절장치의 조립이 견고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p>	<p>육안 기기</p>																																	
<p>3-9 로프</p>	<p>1) 와이어로프의 구동드럼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끝 부분 고정 및 연결 장치에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와이어로프의 고정식 크랩프 수량 및 간격은 &lt;표 4&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lt;표 4&gt; 와이어로프 크랩프 수량 및 간격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7 1603 1209 1895"> <thead> <tr> <th>와이어로프 지름(mm)</th> <th>크랩프 수량</th> <th>크랩프 간격(mm)</th> <th>비고(고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9 이하</td> <td>3</td> <td>50</td> <td rowspan="5">             &lt;정확한 방법&gt;         </td> </tr> <tr> <td>9 ~ 16</td> <td>4</td> <td>80 ~ 100</td> </tr> <tr> <td>18</td> <td>5</td> <td>110</td> </tr> <tr> <td>22</td> <td>5</td> <td>130</td> </tr> <tr> <td>24</td> <td>5</td> <td>150</td> </tr> <tr> <td>28</td> <td>5</td> <td>180</td> <td rowspan="4">             &lt;부정확한 방법&gt;         </td> </tr> <tr> <td>32</td> <td>6</td> <td>200</td> </tr> <tr> <td>36</td> <td>7</td> <td>230</td> </tr> <tr> <td>38</td> <td>8</td> <td>250</td> </tr> </tbody> </table>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랩프 수량	크랩프 간격(mm)	비고(고정방법)	9 이하	3	50	 <정확한 방법>	9 ~ 16	4	80 ~ 100	18	5	110	22	5	130	24	5	150	28	5	180	 <부정확한 방법>	32	6	200	36	7	230	38	8	250	<p>육안 기기</p>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랩프 수량	크랩프 간격(mm)	비고(고정방법)																																
9 이하	3	50	 <정확한 방법>																																
9 ~ 16	4	80 ~ 100																																	
18	5	110																																	
22	5	130																																	
24	5	150																																	
28	5	180	 <부정확한 방법>																																
32	6	200																																	
36	7	230																																	
38	8	250																																	

	<p>4) 와이어로프는 녹이 없고 운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변형, 굴절, 꼬임, 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 끝단의 고정부는 이완이 없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7) 와이어로프 마모는 최초직경의 10% 이하여야 하며 소선의 마모 길이가 &lt;표 5&gt;의 기준 이하여야 한다.</p> <p>&lt;표 5&gt;와이어로프 소선의 마모길이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32 674 1206 965"> <thead> <tr> <th rowspan="2">와이어로프 직경</th> <th colspan="2">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8 × S(19)</th> <th>8 × Fi (25)</th> </tr> </thead> <tbody> <tr><td>10</td><td>3.5</td><td>3.1</td></tr> <tr><td>12</td><td>4.3</td><td>3.8</td></tr> <tr><td>14</td><td>4.9</td><td>4.4</td></tr> <tr><td>16</td><td>5.6</td><td>5.1</td></tr> <tr><td>18</td><td>6.3</td><td>5.6</td></tr> <tr><td>20</td><td>7.1</td><td>6.2</td></tr> <tr><td>22.4</td><td>7.8</td><td>6.9</td></tr> <tr><td>25</td><td>8.8</td><td>7.8</td></tr> </tbody> </table>  <p>8) 로프가 여러 가닥인 경우, 각 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가져야 한다.  9) 로프 시브 및 가이드는 과도한 마모, 파손,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며, 조립은 견고하여야 한다.</p>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i (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i (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p>3-10 컨베이어 장치</p>	<p>1) 조립이 견고하고 각부에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경사가 있는 컨베이어 장치는 반드시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컨베이어 장치에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고 현저한 마모, 부식,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컨베이어장치의 각 체결부에는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5) 컨베이어 베어링의 회전은 정상이고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  6) 롤러, 구동롤러, 반전롤러, 긴장롤러 등은 회전이 원활하고 심한 부식 및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7) 컨베이어장치의 구조부재는 설치가 견고하고 녹,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p>																														
<p>3-11 차륜 장치</p>	<p>1) 차륜의 회전상태가 적절하고 현저한 손상, 마모 및 편마모, 슬립흔적, 이상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  2) 차륜의 마모는 설계도서의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고 총 마모량은 &lt;표 6&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lt;표B-6&gt; 차륜의 재질별 총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32 1715 1206 1816"> <thead> <tr> <th>차륜의 재질</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성수지</td> <td>최초 두께의 40% 이하</td> </tr> <tr> <td>강 재</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p>3) 차륜의 조립은 견고하여야 하고 조립부의 부식, 이완,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재	최초 두께의 10% 이하	<p>육안 기기</p>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재	최초 두께의 1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차륜의 베어링부의 윤활상태가 적정하여야 한다.</li> <li>5) 차륜 축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6) 주행륜을 지지하는 장치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7) 타이어형 차륜은 공기압이 적절하여야 하고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ul>	
4. 유압, 공압, 수압장치		
4-1 유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력회로의 각종 부품은 설치가 견고해야하고 각 부분에 누유가 없으며 운전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li> <li>3) 운행 중 작동유의 온도는 5℃ 이상에서 6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li> <li>4) 수냉식 냉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식수 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li> <li>5) 작동유는 적정량이 탱크 내에 주입되어 있어야 한다.</li> <li>6) 오일탱크는 손상,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고 물이나 이물질 등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지붕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li> <li>7) 유압펌프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8) 유압실린더의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누유 및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4-2 공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압력회로, 액츄에이터 등에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li> <li>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li> <li>3)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운행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4) 공기압축기의 윤활, 토출압력, 운전전류 등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5) 공기압축기의 기계실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자동 드레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i> <li>6) 공기저장탱크는 현저한 녹 및 부식,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7) 공기흡입 필터에 과도한 오염,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li>8) 공압실린더는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이상 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li> <li>9) 공기저장탱크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이 원활하고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4-3 수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압펌프, 용기, 배관이음부, 패킹 등의 과도한 부식, 균열, 누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펌프장치의 토출압력, 전류치는 적절하여야 한다.</li> <li>3) 배관이음부에 진동흡수장치 및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4-4 기기 및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 등의 설치는 견고하고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2)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는 파손 및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li> <li>3) 각종 압력표시계기에는 사용압력을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4-5 밸브 및 배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밸브, 감압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에 과도한 부식, 손상이 없고 작동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2) 각종 밸브의 전기솔레노이드 부분에 과도한 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3) 드레인 밸브는 압력용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4) 밸브 및 배관장치의 각종 조립부는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하며 녹,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li>5) 압력호스는 사용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li> <li>6) 각종 배관에는 외력에 의한 과도한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고 방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li> <li>7) 배관용 고무호스에는 열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접속은 확실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b>5. 안전, 제동장치</b>		
5-1 제동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동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본체 및 제동편 등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브레이크 제동편의 조립은 견고하고, 제동력에 이상이 없으며 조립용 리벳 또는 나사류의 머리 부분은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3) 제동용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의 체결은 견고하고 이완방지가 되어 있으며 녹 및 현저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4) 제동장치 가동부의 축, 베어링 등의 윤활은 적절하고 마모가 적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5)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센서는 조립이 견고하고 손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li>6) 제동용 드럼 및 브레이크 블록의 마모상태가 설계 두께에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7) 제동장치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8) 제동장치는 급격한 제동 작용 및 불확실한 제동 작용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li> <li>9)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공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li>10) 하나의 궤도 또는 수로에 2대 이상의 승용물이 주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승용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5-2 완충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완충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녹, 부식, 이완,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완충장치는 충격력에 대한 완충기능이 적절하며 충격력에 의한 손상,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유압식, 가스식, 기계식 완충기 각 요소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5-3 역주행 방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의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는 견고해야하고 현저한 녹, 부식, 변형이 없고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li> <li>2) 역주행방지장치의 체결부에는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기 및 장치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승용물의 급하강을 방지하는 장치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6. 승용물장치															
6-1 승용물 구조	1) 승용물 좌석부의 골조, 외관, 바닥 등에는 현저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승용물은 운행 시 이용객의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승용물 구조부재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마모, 열화,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6-2 승용물 체결부	1) 승용물을 연결 또는 지지하는 체결부, 조립부에 현저한 부식, 이완, 마모, 손상, 파손,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보조와이어, 보조봉, 보조체인 등의 조립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6-3 승용물 안전장치	1) 승용물 안전장치는 이용객이 장착했을 때 작용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고 충분히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잠김상태가 확실해야 한다. 2) 승용물 안전장치는 과도한 손상, 균열, 파손, 마멸, 부식이 없고 그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3) 고공 또는 강한 회전력에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체결이 용이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안전장치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탈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이용객의 신체에 접촉하는 안전장치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6-4 승용물 기타장치	1) 승용물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은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 손상,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승용물 내부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 3) 승용물의 좌석, 등받이, 발판, 문, 칸막이, 창문 등에 과도한 이완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7. 전기장치															
7-1 수전반, 제어반, 조작반	1) 수전반 주개폐기는 통상 운전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판넬의 설치는 견고하고 우수의 침입,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각 판넬의 개폐기, 접촉기, 계전기, 저항기 등의 접점에 심한 마모 및 오손이 없고 또한 퓨즈, 차단기 등에 이완이 없어야 한다. 4)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은 설치에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 5) 조작반의 누름버튼, 스위치 등은 파손이 없고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은 각 회로마다 <표 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 회로의 절연저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th> <th>절연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400V 미만</td> <td>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td> <td>0.1 MΩ이상</td> </tr> <tr> <td>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td> <td>0.2 MΩ이상</td> </tr> <tr> <td>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td> <td>0.3 MΩ이상</td> </tr> <tr> <td colspan="2">400V 이상</td> <td>0.4 MΩ이상</td> </tr> </tbody> </table>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육안 기기 계측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p>7)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검사해야 한다.</p> <p>8) 전동기 주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각 누전차단기를 차단한 상태로 두고 검사해야 한다.</p>							
7-2 전압계, 전류계 표시	1)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의 설치상태는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	육안						
7-3 배전선, 배관	<p>1) 전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는 접촉저항이 없도록 확실해야 한다.</p> <p>2) 절대, 외함의 접지선 연결은 확실하고 접지저항은 &lt;표 8&gt;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p>&lt;표 8&gt; 회로의 접지저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order: 1px solid black;">회로의 사용전압</th> <th style="border: 1px solid black;">회로의 접지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400V이하의 것</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100 Ω이하</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400V를 초과한 것</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10 Ω이하</td> </tr> </tbody> </table>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육안 기기 계측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7-4 피뢰설비	<p>1) 피뢰설비는 지상의 접속부(피뢰침, 피뢰도선, 접지선)에 부식이나 탈락으로 인한 전기적, 기계적 이상이 없어야 한다.</p> <p>2) 피뢰설비의 접지저항값은 10Ω 이하여야 한다.</p>	육안 기기 계측						
7-5 조명장치	<p>1) 조명장치의 설치는 이완이 없고 조명구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p> <p>2) 변압기 등의 취부는 견고하고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p> <p>3) 조명장치로 인한 하중이 설계도서에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으로 구조물에 작용해서는 안 된다.</p> <p>4) 물놀이 시설의 조명기구는 아래와 같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a) 수중조명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어서는 안 된다.</p> <p>b) 수중조명등은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넘을 경우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c) 수중등기구와 수중급속관로는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단독접지 하여야 한다.</p> <p>d) 물놀이시설 내벽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노출도전부가 없어야 하고, 설치높이는 2.25m 이상이어야 한다.</p> <p>e) 이중절연 된 조명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외함에 접지단자가 있어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p>	육안 기기						
7-6 공급전선, 집전장치	<p>1) 공급전선의 취부는 견고하고, 이완이 없으며 파손 또는 심한 마모와 오손이 없어야 한다.</p> <p>2) 집전장치의 취부는 양호하고, 파손 또는 심한 마모 및 접촉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p> <p>3) 공급전선, 집전장치는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p>	육안						
7-7 리미트 스위치, 센서	1) 리미트 스위치, 센서는 취부가 확실하며, 파손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육안 조작						

8. 운전조작장치		
8-1 운전조작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작반의 각 조작스위치의 명판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li> <li>2) 조작레버, 버튼, 핸들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주행에 필요한 시동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기능이 정확하고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4) 방송시설 및 안내보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용객에게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8-2 비상조작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정지장치 버튼은 운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2) 비상조작장치에 균열, 손상,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3) 비상탈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4) 예비전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전원장치는 이용객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을 때까지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9. 물놀이장치		
9-1 슬라 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슬라이드의 체결상태는 견고해야 한다.</li> <li>2) 슬라이드표면은 매끄럽고 연결부의 곡부 높이차는 2mm이내여야 한다</li> <li>3) 슬라이드 내부에 물의 양은 적절해야 한다.</li> <li>4) 튜브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풀 구조여야 한다.</li> <li>5) 바디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풀 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6) 슬라이드의 이용객 이탈방지 안전벽의 조립은 견고하고 이완,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7) 계단 및 출발지점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li> <li>8) 출발지점에서는 착지물의 상태를 육안 또는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2 파도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파도발생장치로부터 설계기준 이상의 거리에 이용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li> <li>3) 파도풀의 수심이 1.8m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수심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이용객은 부력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li> <li>5) 파도풀 경사에 따른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6) 파도풀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7) 고수위 파도작동 직전 반드시 예령신호를 실시한 후 고수위 파도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8) 수심 1.2m 지점에는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식, 수심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3 유수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한쪽방향으로 흘러야 한다.</li> <li>2) 유수풀의 수심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3)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 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유수폴에는 반드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5) 유수폴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6) 입출구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7) 사각지역이 없어야하고 사각지역이 불가피할 경우 관찰기능토록 조치하여 한다.</li> <li>8) 유수폴의 바닥, 벽면에 과도한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ul>	
9-4 서핑 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2)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3) 바닥에 심한 파손이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4) 정해진 기구 이외에 다른 기구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9-5 수중 모험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수중모험놀이 및 수중모험놀이 내 착지폴에도 반드시 수심표기를 하여야 한다.</li> <li>3) 수중모험놀이시설에는 이용자를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4) 시설물의 파손 및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5)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9-6 급수 및 배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 시 검토한 유량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li> <li>2) 물놀이 시설에 공급하는 수량 토출압력은 설계 검토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급수장치 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어야 하며 급수지점도 급물살이 없어야 한다.</li> <li>4) 지정 수위 이상의 물은 자동 배수되어야 한다.</li> <li>5) 배수구의 메쉬(Mesh)는 20mm초과해서는 안 된다.</li> </ul>	육안 기기
9-7 부력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력기구는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2) 튜브는 충분한 공기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li> <li>3) 튜브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와 접착력이 유지되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9-8 착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착지폴에는 반드시 수심 표시를 해야 하고 수심이 변화는 위치에는 변화에 대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2) 착지폴의 수심은 설계에 반영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어린이폴과 수중모험놀이의 수심은 0.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4) 착지폴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5) 착지폴은 과도폴, 유수폴 및 어린이 폴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6) 착지폴이 없는 바디슬라이드의 착지부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b>10. 공기주입식기구 장치</b>		
10-1 공기막 장치, 공기막 연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의 섬유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되 난연재료는 화재 등에 대비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은 이용객 체중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3) 공기막의 모형을 유지하거나 하중에 의하여 모형이 변형된 후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 유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li> <li>4) 공기막에 현저한 열화,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공기막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나 부스러기가 없는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li> <li>6) 풍속이 10m/sec이상 지역에서는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li> <li>7) 공기막장치 주변의 울타리는 공기막장치로부터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8)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마감재 및 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9) 공기막 박음질용 실은 썩지 않는 연사를 사용해야 한다.</li> <li>10) 박음질은 겹박음질이어야 하고 그 길이는 충분해야 한다.</li> <li>11) 공기막장치는 이용객이 탑승 이용하는 중 손, 발 등 신체의 일부, 옷 등이 끼어도 쉽게 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li> <li>12) 터널식의 공기막장치는 충분한 지름을 확보하여야 한다.</li> <li>13)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0c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높이가 60cm이상 3m 이하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탑승제한 높이보다 높아야 하고 측벽 공기막 높이가 1.8m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li> <li>b) 높이가 3m를 초과하고 6m 이하 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탑승제한 높이의 1.25배보다 높아야 한다.</li> <li>c)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탑승제한 높이의 1.25배보다 높은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최상단에는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 단, 지붕 하부와 이용객이 접근하는 최상단의 간격은 75cm 이상이어야 한다.</li> </ol> </li> <li>14) 높이가 6m이상의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는 슬라이드 최초 1m에는 탑승제한높이의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1m 이후에는 탑승제한높이의 50% 이상의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li> <li>15)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착지지점은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li> <li>b) 높이가 1m를 초과하고 3m이하 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li> <li>c)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착지지점의 길이는 슬라이드 높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li> </o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10-2 공기주입 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주입장치는 벽면형태 공기막에서 1.2m 이상, 출입구 등 개방된 면에서는 2.5m 간격을 유지해야한다.</li> <li>2) 공기주입장치 주변에는 이용객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3) 공기주입장치는 작동은 양호해야하고 송풍구 및 배출구에 과도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육안 기기</p>
<p style="text-align: center;">10-3 지지보조 부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외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에 고정을 위하여 말뚝기초를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 고정을 위하여 무거운 물체로써 말뚝기초를 대체할 수 있다.</li> <li>2) 말뚝기초는 1600N의 하중에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말뚝기초를 대신하는 무거운 물체에도 같이 적용된다.</li> <li>3) 말뚝기초의 수는 공기막장치의 측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의 1.5배를 1600N으로 나눈 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지면에서 30°~45°로 작용하게 하여야 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육안 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말뚝기초의 상단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li> <li>6) 말뚝기초가 출입구에 설치될 경우에는 최대한 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 이용객의 신체일부와 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7)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m이상일 경우에는 공기막장치의 붕괴를 방지하는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부과적인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li> </ul>	
10-4 승강 및 하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장치 입출구 끝단에는 잔디, 모래, 충격흡수 매트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설치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장치 입출구에서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올라리는 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데 설치된 계단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며 계단 담판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4)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데 설치된 계단 측면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1. 기타장치		
11-1 승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닥 및 천정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li> <li>2) 바닥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li> <li>3) 부분적인 파손 또는 이완으로 이용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li> <li>4) 운행 중 이용객이 대기동선에서 승강장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li> <li>5) 회전부와 고정부로 이루어진 승강장에는 그 단차를 50mm이하로 하고 회전부와 고정부간의 틈새는 30mm이하로 하며 회전부 또는 고정부에 안전선으로 구획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1-2 안전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울타리는 이용객이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li> <li>2) 안전울타리는 승용물의 끝단에서 1.2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li> <li>3) 수직살의 간격은 10cm이하여야 하고 지면과 수평부재와의 간격은 10cm이하여야 한다.</li> <li>4) 안전울타리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li> <li>5) 유기기구 주위 또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승강장에는 1.2m 이상의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한다.</li> <li>6) 이동식 울타리는 이용객이 쉽게 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승용물의 끝단으로부터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li> <li>7) 안전울타리에는 심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8) 안전울타리에 설치된 문은 부식, 파손 및 심한 녹이 없고 개폐 및 잠김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1-3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발생 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여야 한다.</li> <li>2)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li> <li>3) 비상구의 유도안내표지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li> <li>4) 비상구는 정전 시에도 정상적으로 통행이 되어야 한다.</li> </ul>	육안
11-4 안전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기구는 입구 및 출구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li> <li>2) 안전유도표시는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li> </ul>	육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이용객의 안전수칙 및 탑승안내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li> <li>4)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연락처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강풍, 강설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ul>	
11-5 풍속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풍속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발신기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li>2) 발신기는 감지 및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li> <li>3) 지시기는 작동이 정상적이고 경보설정치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li> <li>4) 지시기에 경보설정치를 10m/s로 설정한다.</li> </ul>	육안 조작
11-6 안전 점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일안전점검관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i> <li>2) 일일안전점검관은 파손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li> <li>3) 강풍, 강설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육안
11-7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전실은 현저한 녹, 부식 및 부분적인 파손이 없고 창과 문의 잠김이 확실해야 한다.</li> <li>2) 운전실은 이용객의 승차, 하차 및 운행 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한다.</li> <li>3) 운전실에는 운행자에게 필요한 비상연락망, 비상조치요령, 운전조작요령, 주의 사항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li> <li>4) 이용객의 승하차 및 운행 중 이용객 및 유기기구 상태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반사경, CCTV가 있는 경우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li>5) 유기기구 출입문은 이용객이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6) 유기기구 · 유기기구 출입문에는 이용객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육안

## 2.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사 방법
1. 기초, 구조부		
1-1 기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면 부동침하가 없어야 하며 받침목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li> <li>2) 받침목이 설치된 지면 주위에 침하, 함몰, 토사유출 및 경사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받침목은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아웃트리거에 의하여 지지되는 유기기구의 경우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유기기구는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트레일러 및 차량에 직접 연결된 유기기구의 경우 트레일러 및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li> <li>6) 받침 및 고임 장치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1-2 기초 연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닥판에 과도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2) 기초연결부(장력조절장치 등 포함)의 조립부, 연결부 등의 요소에는 빠짐, 이완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체결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3 기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둥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2) 기둥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li> <li>3)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부재의 진동 등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4) 기둥의 기울기는 최초설계치와 비교하여 기둥높이 1/200이하이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4 기둥 연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결부(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의 간격이 설계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li> <li>2) 체결부에 과도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보조부재 체결부에는 풀림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4) 핀, 볼트 등에는 풀림방지용 핀(헤어핀, 코터핀, 스프링핀 등) 또는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5)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핀과 핀 구멍의 최대틈새는 1.5mm 이내이어야 한다.</li> <li>6)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7)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기둥이 지지, 고정되는 이동식 유기기구는 제작사의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설치, 고정되어야 한다.</li> <li>8) 기둥을 지지, 고정하는 와이어로프의 고정각도는 30°~6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45°임.)</li> <li>9)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기둥이 지지, 고정되는 이동식 유기기구의 동일 높이에 설치된 와이어로프 등은 등각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긴장상태가 충분하고 균일해야 한다.</li> <li>10)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기둥이 지지, 고정되는 이동식 유기기구의 와이어로프 고정을 위한 기초콘크리트 및 고정철판 등의 강도는 충분하여야 한다.</li> <li>11) 와이어로프 등으로 구조물을 고정한 경우에는 장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1-5 구조물	1) 구조물은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구조물을 받치는 고정판은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유기기구 운행 시 구조물은 진동 등으로 인한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보조부재는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비파괴)																
<b>2. 궤도, 수로, 주로장치</b>																		
2-1 궤도, 수로, 주로	1) 궤도, 수로, 주로에는 균열, 변형이 없고 현저한 녹,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궤도, 수로, 주로에는 장애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3)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상태는 마모가 가장 심한 부분이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궤도, 수로, 주로의 마모량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32 846 1209 99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th> <th style="width: 50%;">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형강 궤도</td> <td>최초 두께의 20% 이하</td> </tr> <tr> <td>강관 궤도</td> <td>최초 두께의 15% 이하</td> </tr> <tr> <td>강관수로, 강관주로</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4) 궤도, 수로, 주로의 접합부의 접합상태가 견고해야 한다. 5) 궤도, 수로, 주로의 용접하지 않은 체결부에는 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궤도, 수로, 주로와 지지부재의 연결 상태 및 지지부재와 기둥의 연결 상태는 견고해야하고 연결부에는 균열, 부식,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 7) 궤도, 수로, 주로의 완충용 고무재질을 도입할 경우 설치가 양호하고 고무재의 열화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8) 궤도에서 차륜 폭의 중심이 설계 허용치수 범위 또는 주행궤도를 3등분한 주행궤도 중앙부에 차륜의 중심이 위치하여야 한다. 9) 수로의 연결부는 심각한 누수가 없어야 한다. 10) 수로표면은 매끄러워야하고 연결부의 국부 높이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11) 수로주행형 유기기구 수로의 수심은 1m 이내이어야 한다. 12) 수로 표면의 마모 및 표면상태는 <표 2>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 2> 수로 표면 마모 및 표면상태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32 1480 1209 165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수로 표면의 재질</th> <th style="width: 50%;">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td> </tr> <tr> <td>금속재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td> </tr> <tr> <td>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관수로, 강관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재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비파괴)
궤도, 수로, 주로의 종류	마모량 기준																	
형강 궤도	최초 두께의 20% 이하																	
강관 궤도	최초 두께의 15% 이하																	
강관수로, 강관주로	최초 두께의 10% 이하																	
수로 표면의 재질	마모량 기준																	
강화섬유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섬유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금속재 및 이와 유사한 재질	금속 박리 및 녹이 없어야 한다. 마모량은 최초 두께의 10%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	열화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2-2 지지부재 및 침목	1) 지지부재 및 침목에는 균열, 변형 및 심한 녹이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지지부재의 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 체결부는 이완 및 과도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비파괴)																
<b>3. 구동장치</b>																		
3-1 전동	1) 전동장치와 연결된 각종 동력전달장치는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전동장치의 체결상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전동기의 제동기는 제동편 마모, 편마모, 손상 등이 없고 동력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li> <li>4) 브러시의 마모상태는 최초길이의 60%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li> <li>5) 회전 및 급유상태가 적합하고 절연 및 접지상태가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li> <li>6) 전동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li> </ol>	
3-2 감속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속기의 연결부재는 결합상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li> <li>2)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수직축 또는 수평축의 직각도, 평행도, 동심도의 오차가 설계도서의 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4) 감속기에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5) 감속기의 윤활유 온도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적정온도 범위내 이어야 한다.</li> <li>6) 감속기의 회전은 정상적이고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한다.</li> <li>7) 감속기의 케이스, 기어, 스프로킷 등에 과도한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8) 감속기를 고정하는 볼트 및 기타 체결부에 현저한 녹, 부식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9) 감속기 또는 입출력 축 부위에는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10) 회전부에는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3 클러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러치 장치의 본체 및 링크에 과도한 부식이나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2) 클러치 장치에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마찰판 및 상대 접촉부재에 과도한 마모,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4 축 및 베어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베어링 하우스, 고정용 볼트 등의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윤활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2) 축, 베어링 및 체결부에는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축, 베어링 등에는 이상소음, 마모, 진동이 없어야 한다.</li> <li>4) 베어링의 발열온도는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5) 베어링 외부에 누유가 없으며 밀봉부에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li> <li>6) 하중에 의한 축의 처짐량은 베어링간 거리의 1/3000이하이거나 0.35mm/m 이하여야 하고 응력 집중부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5 축이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일 또는 분체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 장치에는 오일 또는 분체의 양이 적절하고 심한 오일 열화 또는 분체의 마모, 녹, 고착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키, 키홈, 코터, 스플라인 등은 설계허용치수 범위 내에 있으며 하중에 의한 압괴, 전단, 균열, 부식,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3) 회전속도의 증감으로 인한 이상발열, 이상소음 및 진동, 충격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li> <li>4) 고무부싱이 열화 또는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li> <li>5) 유체 커플링일 경우 누유가 없어야 한다.</li> <li>6) 이탈, 이완 방지 등의 분할핀의 파손, 탈락이 없어야 한다.</li> <li>7) 연결핀의 부식, 변형, 균열, 손상,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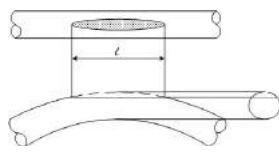
3-6 기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어의 잇면에 과도한 편마모가 없어야 하며 이두께는 최초 두께의 7/8 이상이어야 한다.</li> <li>2) 기어 표면의 경도부족에 의한 점부식 현상과 윤활막 파손에 의한 잇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어 상호간의 중심거리 및 중심높이가 설계치수에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li> <li>4) 과도한 진동, 충격으로 인한 균열 또는 부분적인 결함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5) 기어의 각 체결부에는 이상소음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li> <li>6) 급유상태는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7) 기어의 보스, 고정 볼트, 키 등에 이완, 균열, 변형,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7 체인 및 스프로킷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은 &lt;표 3&gt;의 기준을 따른다.</li> </ol> <p>&lt;표 3&gt; 체인의 연신율 및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9 875 1209 1021"> <thead> <tr> <th>상태</th> <th>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인 신장량</td> <td>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 축, 구멍 등의 직경마모량</td> <td>최초직경의 5% 이하</td> <td>1회/년 이상 측정</td> </tr> <tr> <td>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td> <td>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td> <td>2개 이상 샘플 확인</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스프로킷과 축의 조립은 견고하여야 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li> <li>3) 스프로킷의 잇면은 편접촉, 편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4) 체인 및 스프로킷의 과도한 긴장, 이완,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5) 스프로킷 조립부의 부식, 변형,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6) 베어링 부품의 조립상태가 견고하고 급유가 적절해야 한다.</li> <li>7) 체인 가이드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마모,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 축, 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2개 이상 샘플 확인	육안 기기
상태	기준	비고												
체인 신장량	체인 최초길이의 1.5%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 축, 구멍 등의 직경마모량	최초직경의 5% 이하	1회/년 이상 측정												
링크판의 두께 및 폭 마모량	최초 두께 및 폭의 10%이하	2개 이상 샘플 확인												
3-8 벨트 및 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벨트 및 풀리는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이 없어야 한다.</li> <li>2) 벨트와 풀리 접촉면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li> <li>3) 벨트는 장력이 적절하여야 한다.</li> <li>4) 벨트의 표면과 모서리에 파손, 열화,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li> <li>5) 풀리는 균열 및 부식이 없고 벨트 마찰면에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li> <li>6) 풀리와 축의 설치상태가 견고해야 한다.</li> <li>7) 베어링의 설치는 견고해야 한다.</li> <li>8) 베어링의 급유가 양호하고 회전이 원활해야 한다.</li> <li>9) 2개 이상의 벨트가 동력을 전달할 경우 각각의 벨트의 장력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10) 장력조절장치의 조립이 견고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3-9 로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li> <li>2) 와이어로프의 구동드럼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와이어로프의 끝 부분 고정 및 연결 장치에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4) 와이어로프의 고정식 크랩프 수량 및 간격은 &lt;표 4&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표 4> 와이어로프 크래프 수량 및 간격 기준

와이어로프 지름(mm)	크래프 수량	크래프 간격(mm)	비고(고정방법)
9 이하	3	50	 <정확한 방법>
9 ~ 16	4	80 ~ 100	
18	5	110	
22	5	130	
24	5	150	 <부정확한 방법>
28	5	180	
32	6	200	
36	7	230	
38	8	250	

- 5) 와이어로프는 녹이 없고 윤회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6) 와이어로프는 변형, 굴절, 꼬임, 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7) 와이어로프 끝단의 고정부는 이완이 없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 8) 와이어로프 마모는 최초직경의 10% 이하여야 하며 소선의 마모 길이가 <표 5>의 기준이하여야 한다.

<표 5> 와이어로프 소선의 마모길이 기준

와이어로프 직경	로프의 구성 기호 및 마모길이		비고
	8 × S(19)	8 × Fi (25)	
10	3.5	3.1	
12	4.3	3.8	
14	4.9	4.4	
16	5.6	5.1	
18	6.3	5.6	
20	7.1	6.2	
22.4	7.8	6.9	
25	8.8	7.8	

- 9) 로프가 여러 가닥인 경우, 각 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가져야 한다.
- 10) 로프 시브 및 가이드는 과도한 마모, 파손,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며, 조립은 견고하여야 한다.

3-10  
컨베이어  
장치

- 1) 조립이 견고하고 각부에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
- 2) 경사가 있는 컨베이어 장치는 반드시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컨베이어 장치에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고 현저한 마모, 부식,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4) 컨베이어 장치의 각 체결부에는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5) 컨베이어 베어링의 회전은 정상이고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
- 6) 롤러, 구동롤러, 반전롤러, 긴장롤러 등은 회전이 원활하고 심한 부식 및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 7) 컨베이어 장치의 구조부재는 설치가 견고하고 녹,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p>3-11 차륜 장치</p>	<p>1) 차륜의 회전상태가 적절하고 현저한 손상, 마모 및 편마모, 슬립흔적, 이상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p> <p>2) 차륜의 마모는 설계도서의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고 총 마모량은 &lt;표 6&g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lt;표 6&gt; 차륜의 재질별 총 마모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32 611 1209 701"> <thead> <tr> <th>차륜의 재질</th> <th>마모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성수지</td> <td>최초 두께의 40% 이하</td> </tr> <tr> <td>강 재</td> <td>최초 두께의 10% 이하</td> </tr> </tbody> </table> <p>3) 차륜의 조립은 견고하여야하고 조립부의 부식, 이완,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4) 차륜의 베어링부의 윤활상태가 적정하여야 한다.</p> <p>5) 차륜 축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6) 주행륜을 지지하는 장치에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한다.</p> <p>7) 타이어형 차륜은 공기압이 적절하여야 하고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p>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재	최초 두께의 10% 이하	<p>육안 기기 (비파괴)</p>
차륜의 재질	마모량 기준							
합성수지	최초 두께의 40% 이하							
강 재	최초 두께의 10% 이하							
<p>4. 유압, 공압, 수압장치</p>								
<p>4-1 유압 장치</p>	<p>1) 압력회로의 각종 부품은 설치가 견고해야하고 각 부분에 누유가 없으며 운전상태가 양호해야 한다.</p> <p>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p> <p>3) 운행 중 작동유의 온도는 5℃ 이상에서 6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p> <p>4) 수냉식 냉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식수 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p> <p>5) 작동유는 적정량이 탱크 내에 주입되어 있어야 한다.</p> <p>6) 오일탱크는 손상,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고 물이나 이물질 등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지붕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p> <p>7) 유압펌프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p> <p>8) 유압실린더의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누유 및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p>						
<p>4-2 공압 장치</p>	<p>1)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압력회로, 액츄에이터 등에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p> <p>2)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도 정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해야 한다.</p> <p>3) 공기압축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운행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이상소음, 진동 및 발열이 없어야 한다.</p> <p>4) 공기압축기의 윤활, 토출압력, 운전전류 등이 적절하여야 한다.</p> <p>5) 공기압축기의 기계실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자동 드레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p> <p>6) 공기저장탱크는 과도한 녹 및 부식,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p> <p>7) 공기흡입 필터에 과도한 오염, 손상이 없어야 한다.</p> <p>8) 공압실린더는 조립 및 설치가 견고하고 굽힘, 변형, 손상, 이상 소음 등이 없어야 한다.</p>	<p>육안 기기</p>						

	9) 공기저장탱크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이 원활하고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4-3 수압 장치	1) 수압펌프, 용기, 배관이음부, 패킹 등의 과도한 부식, 균열, 누수, 이상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펌프장치의 토출압력, 전류치는 적절하여야 한다. 3) 배관이음부에 진동흡수장치 및 수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육안 기기
4-4 기기 및 계기	1)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 등의 설치는 견고하고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한다. 2) 압력계 및 압력검출 장치 등은 파손 및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 3) 각종 압력표시계기에는 사용압력을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육안 기기
4-5 밸브 및 배관장치	1) 안전밸브, 감압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에 과도한 부식, 손상이 없고 작동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2) 각종 밸브의 전기솔레노이드 부분에 과도한 발열이 없어야 한다. 3) 드레인 밸브는 압력용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밸브 및 배관장치의 각종 조립부는 누유, 누수, 공기누설이 없어야 하며 녹,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5) 압력호스는 사용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각종 배관에는 외력에 의한 과도한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고 방진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7) 배관용 고무호스에는 열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접속은 확실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육안 기기
5. 안전, 제동장치		
5-1 제동 장치	1) 제동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본체 및 제동편 등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 브레이크 제동편의 조립은 견고하고, 제동력에 이상이 없으며 조립용 리벳 또는 나사류의 머리 부분은 현저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3) 제동용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의 체결은 견고하고 이완방지가 되어 있으며 녹 및 현저한 부식,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제동장치 가동부의 축, 베어링 등의 윤활은 적절하고 마모가 적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5)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센서는 조립이 견고하고 손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6) 제동용 드럼 및 브레이크 블록의 마모상태가 설계 두께에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제동장치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8) 제동장치는 급격한 제동 작용 및 불확실한 제동 작용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9)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공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0) 하나의 궤도 또는 수로에 2대 이상의 승용물이 주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승용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육안 기기

5-2 완충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완충장치의 조립이 견고하고 녹, 부식, 이완,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완충장치는 충격력에 대한 완충기능이 적절하며 충격력에 의한 손상,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유압식, 가스식, 기계식 완충기 각 요소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5-3 역주행 방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의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는 견고해야하고 현저한 녹, 부식, 변형이 없고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li> <li>2) 역주행방지장치의 체결부에는 과도한 부식, 이완,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기기 및 장치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승용물의 급하강을 방지하는 장치는 설치가 견고하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비파괴)
6. 승용물장치		
6-1 승용물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 좌석부의 골조, 외관, 바닥 등에는 현저한 부식, 변형,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2) 승용물은 운행 시 이용객의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3) 승용물 구조부재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마모, 열화, 이완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6-2 승용물 체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을 연결 또는 지지하는 체결부, 조립부에 현저한 부식, 이완, 마모, 손상, 파손,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보조와이어, 보조봉, 보조체인 등의 조립은 견고하고 현저한 부식, 이완,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6-3 승용물 안전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 안전장치는 이용객이 장착했을 때 작용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고 충분히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잠김상태가 확실해야 한다.</li> <li>2) 승용물 안전장치는 과도한 손상, 균열, 파손, 마멸, 부식이 없고 그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3) 고공 또는 강한 회전력에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체결이 용이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4) 안전장치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탈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li> <li>5) 이용객의 신체에 접촉하는 안전장치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6-4 승용물 기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물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은 과도한 부식, 이완, 변형, 손상,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li> <li>2) 승용물 내부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승용물의 좌석, 등받이, 발판, 문, 칸막이, 창문 등에 과도한 이완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7. 전기장치		
7-1 수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전반 주개폐기는 통상 운전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p>제어반, 조작반</p>	<p>2) 각 판넬의 설치는 견고하고 우수의 침입,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각 판넬의 개폐기, 접촉기, 계전기, 저항기 등의 접점에 심한 마모 및 오손이 없고 또한 퓨즈, 차단기 등에 이완이 없어야 한다.  4)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은 설치에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  5) 조작반의 누름버튼, 스위치 등은 파손이 없고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은 각 회로마다 &lt;표 7&gt;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p>&lt;표 7&gt; 회로의 절연저항</p> <table border="1" data-bbox="429 712 1203 882"> <thead> <tr> <th colspan="2">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th> <th>절연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400V 미만</td> <td>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td> <td>0.1 MΩ이상</td> </tr> <tr> <td>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td> <td>0.2 MΩ이상</td> </tr> <tr> <td>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td> <td>0.3 MΩ이상</td> </tr> <tr> <td colspan="2">400V 이상</td> <td>0.4 MΩ이상</td> </tr> </tbody> </table> <p>7)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검사해야 한다.  8) 전동기 주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각 누전차단기를 차단한 상태로 두고 검사해야 한다.  9) 전력공급용 저압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및 전류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력공급용 저압발전기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프레임 등은 &lt;표 8&gt;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전력공급용 저압발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p>계측</p>
저압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값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 MΩ이상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 MΩ이상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 MΩ이상													
400V 이상		0.4 MΩ이상													
<p>7-2 전압계, 전류계 표시</p>	<p>1) 각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의 설치상태는 이완이 없고 지시, 작동, 점등이 확실해야 한다.</p>	<p>육안</p>													
<p>7-3 배전선, 배관</p>	<p>1) 전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는 접촉저항이 없도록 확실해야 한다.  2) 철대, 외함의 접지선 연결은 확실하고 접지저항은 &lt;표 8&gt;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p>&lt;표 8&gt; 회로의 접지저항</p> <table border="1" data-bbox="429 1572 1203 1684"> <thead> <tr> <th>회로의 사용전압</th> <th>회로의 접지저항값</th> </tr> </thead> <tbody> <tr> <td>400V이하의 것</td> <td>100 Ω이하</td> </tr> <tr> <td>400V를 초과한 것</td> <td>10 Ω이하</td> </tr> </tbody> </table>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p>육안 기기 계측</p>							
회로의 사용전압	회로의 접지저항값														
400V이하의 것	100 Ω이하														
400V를 초과한 것	10 Ω이하														
<p>7-4 피뢰 설비</p>	<p>1) 피뢰설비는 지상의 접속부(피뢰침, 피뢰도선, 접지선)에 부식이나 탈락으로 인한 전기적, 기계적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피뢰설비의 접지저항값은 10Ω 이하여야 한다.</p>	<p>육안 기기 계측</p>													

7-5 조명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명장치의 설치에 이완이 없고 조명구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2) 변압기 등의 취부는 견고하고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li> <li>3) 조명장치로 인한 하중이 설계도서에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으로 구 조물에 작용해서는 안 된다.</li> <li>4) 물놀이 시설의 조명기구는 아래와 같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수중조명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어서는 안 된다.</li> <li>b) 수중조명등은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넘을 경우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c) 수중등기구와 수중급속관로는 계통접지와 분리하여 단독접지 하여야 한다.</li> <li>d) 물놀이시설 내벽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노출도전부가 없어야 하고, 설치높이는 2.25m 이상이어야 한다.</li> <li>e) 이중절연 된 조명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외함에 접지단자가 있어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li> </ol> </li> </ol>	육안 기기
7-6 공급전선, 집전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전선의 취부는 견고하고, 이완이 없으며 파손 또는 심한 마모와 오손이 없어야 한다.</li> <li>2) 집전장치의 취부는 양호하고, 파손 또는 심한 마모 및 접촉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li> <li>3) 공급전선, 집전장치는 감전 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7-7 리미트 스위치, 센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미트 스위치, 센서는 취부가 확실하며, 파손 등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8. 운전조작장치		
8-1 운전 조작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작반의 각 조작스위치의 명판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li> <li>2) 조작레버, 버튼, 핸들 등에 과도한 부식, 마모,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3) 주행에 필요한 시동장치, 계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기능이 정확하고 정상적이어야 한다.</li> <li>4) 방송시설 및 안내보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용객에게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8-2 비상 조작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정지장치 버튼은 운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2) 비상조작장치에 균열, 손상, 이완이 없어야 한다.</li> <li>3) 비상탈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li> <li>4) 예비전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전원장치는 이용객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을 때까지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li> </ol>	육안 조작
9. 물놀이장치		
9-1 슬라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하중 이외의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슬라이드의 체결상태는 견고해야 한다.</li> <li>3) 슬라이드표면은 매끄럽고 연결부의 곡부 높이차는 2mm이내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슬라이드 내부에 물의 양은 적절해야 한다.</li> <li>5) 튜브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폴 구조여야 한다.</li> <li>6) 바디슬라이드 도착지점은 착지폴 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li> <li>7) 슬라이드의 이용객 이탈방지 안전벽의 조립은 견고하고 이완,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li> <li>8) 계단 및 출발지점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li> <li>9) 출발지점에서는 착지물의 상태를 육안 또는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9-2 과도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과도발생장치로부터 설계기준 이상의 거리에 이용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li> <li>3) 과도폴의 수심이 1.8m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수심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이용객은 부력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li> <li>5) 과도폴 경사에 따른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6) 과도폴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7) 고수위 과도작동 직전 반드시 예령신호를 실시한 후 고수위 과도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8) 수심 1.2m 지점에는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식, 수심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3 유수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한쪽방향으로 흘러야 한다.</li> <li>2) 유수폴의 수심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3)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 예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4) 유수폴에는 반드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5) 유수폴에는 일정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6) 입출구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7) 사각지역이 없어야하고 사각지역이 불가피할 경우 관찰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li> <li>8) 유수폴의 바닥, 벽면에 과도한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4 서핑 라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 유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2)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3) 바닥에 심한 파손이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4) 정해진 기구 이외에 다른 기구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5 수중 모험놀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 시 검토된 적절한 수량이 담수되어야 한다.</li> <li>2) 수중모험놀이 및 수중모험놀이내 착지폴에도 반드시 수심표기를 하여야 한다.</li> <li>3) 수중모험놀이시설에는 이용자를 관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4) 시설물의 파손 및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li> <li>5)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6 급수 및 배수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 시 검토한 유량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li> <li>2) 물놀이 시설에 공급하는 수량 토출압력은 설계 검토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급수장치 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어야 하며 급수지점도 급물살이 없어야 한다.</li> <li>4) 지정 수위 이상의 물은 자동 배수되어야 한다.</li> <li>5) 배수구의 메쉬(Mesh)는 20mm초과해서는 안 된다.</li> </ol>	육안 기기
9-7 부력 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력기구는 충분한 부력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2) 튜브는 충분한 공기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li> <li>3) 튜브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와 접착력이 유지되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9-8 착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착지풀에는 반드시 수심 표시를 해야 하고 수심이 변화는 위치에는 변화에 대한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2) 착지풀의 수심은 설계에 반영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어린이풀과 수중모험놀이의 수심은 0.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i> <li>4) 착지풀 입출구 동선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단 끝단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li> <li>5) 착지풀은 과도풀, 유수풀 및 어린이 풀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6) 착지풀이 없는 바디슬라이드의 착지부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li> </ol>	육안 기기
10.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10-1 공기막 장치, 공기막 연결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막의 섬유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되 화재 등에 대비되어야 한다.</li> <li>2) 공기막은 이용자 체중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3) 공기막의 모형을 유지하거나 하중에 의하여 모형이 변형된 후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 유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li> <li>4) 공기막에 현저한 열화, 파손이 없어야 한다.</li> <li>5) 공기막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나 부스러기가 없는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li> <li>6) 공기막장치 주변의 울타리는 공기막장치로부터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li> <li>7)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마감재 및 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8) 공기막 박음질용 실은 찌지 않는 연사를 사용해야 한다.</li> <li>9) 박음질은 겹박음질이어야 하고 그 길이는 충분해야 한다.</li> <li>10) 공기막장치는 이용객이 탑승 이용하는 중 손, 발 등 신체의 일부 및 옷 등이 끼어도 쉽게 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li> <li>11) 터널식의 공기막장치는 충분한 지름을 확보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길이가 75cm 이하일 경우 터널 내부지름이 40c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트형식 지름이 40cm 이상으로 팽창할 수 있어야 한다.</li> <li>b) 길이가 75cm를 초과하고 2m 이하일 경우에는 터널 내부지름은 50c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트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li> <li>c) 길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터널 내부지름은 75c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트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li> </ol> </li> </ol>	육안 기기

	<p>12)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0c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p> <p>a) 높이가 60cm이상 3m 이하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이용객이 신장보다 높아야 하고 측벽 공기막 높이가 1.8m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p> <p>b) 높이가 3m를 초과하고 6m 이하 일 경우에는 측벽 공기막의 높이는 이용객 신장의 1.25배보다 높아야 한다.</p> <p>c)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객 신장의 1.25배보다 높은 측벽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최상단에는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하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 단, 지붕 하부와 이용객이 접근하는 최상단의 간격은 75cm 이상이어야 한다</p> <p>13) 높이가 6m이상의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는 슬라이드 최초 1m에는 이용객 신장 높이의 측벽 형태 공기막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는 이용객 신장 50% 이상의 측벽 형태 공기막이 있어야 한다.</p> <p>14)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착지지점은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p> <p>a)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p> <p>b) 높이가 1m를 초과하고 3m이하 일 경우 착지지점의 길이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p> <p>c)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착지지점의 길이는 슬라이드 높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p>	
10-2 공기 주입장치	<p>1) 공기주입장치는 벽면형태 공기막에서 1.2m 이상, 출입구 등 개방된 면에서는 2.5m 간격을 유지해야한다.</p> <p>2) 공기주입장치 주변에는 이용객이 접근을 금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3) 공기주입장치는 작동은 양호해야하고 송풍구 및 배출구에 과도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10-3 지지 보조부재	<p>1) 실외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에 고정을 위하여 말뚝기초를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에 설치되는 공기막장치는 바닥 고정을 위하여 무거운 물체로써 말뚝기초를 대체할 수 있다.</p> <p>2) 말뚝기초는 1600N의 하중에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말뚝기초를 대신하는 무거운 물체에도 같이 적용된다.</p> <p>3) 말뚝기초의 수는 공기막장치의 측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의 1.5배를 1600N으로 나눈 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4)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지면에서 30~45°로 작용하게 하여야 한다.</p> <p>5) 말뚝기초의 상단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p> <p>6) 말뚝기초가 출입구에 설치될 경우에는 최대한 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 이용객의 신체일부와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7) 이용객이 접근하는 공기막의 높이가 6m이상일 경우에는 공기막장치의 붕괴를 방지하는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지지구조물에 의하여 부과적인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p>	육안 기기
10-4 승강 및 하강장치	<p>1) 공기막장치 입출구 끝단에는 잔디, 모래, 충격흡수 매트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설치되어야 한다.</p> <p>2) 공기막장치 입출구에서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울타리는 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한다.</p>	육안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데 설치된 계단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며 계단 담단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li> <li>4) 슬라이드형 공기막장치의 상단에 이르는데 설치된 계단 측면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li> </ul>	
11. 기타장치		
11-1 승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닥 및 천정에 현저한 녹, 부식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li> <li>2) 바닥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li> <li>3) 부분적인 파손 또는 이완으로 이용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li> <li>4) 운행 중 이용객이 대기동선에서 승강장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li> <li>5) 회전부와 고정부로 이루어진 승강장에는 그 단차를 50mm이하로 하고 회전부와 고정부간의 틈새는 30mm이하로 하며 회전부 또는 고정부에 안전선으로 구획하여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1-2 안전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울타리는 이용객이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li> <li>2) 안전울타리는 승용물의 끝단에서 1.2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li> <li>3) 수직살의 간격은 10cm이하여야 하고 지면과 수평부재와의 간격은 10cm이하여야 한다.</li> <li>4) 안전울타리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li> <li>5) 유기기구 주위 또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승강장에는 1.2m 이상의 안전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한다.</li> <li>6) 이동식 울타리는 이용객이 쉽게 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승용물의 끝단으로부터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li> <li>7) 안전울타리에는 심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li> <li>8) 안전울타리에 설치된 문은 부식, 파손 및 심한 녹이 없고 개폐 및 잠김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li> </ul>	육안 기기
11-3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발생 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여야 한다.</li> <li>2) 비상구 및 비상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li> <li>3) 비상구의 유도안내표지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li> <li>4) 비상구는 정전 시에도 정상적으로 통행이 되어야 한다.</li> </ul>	육안
11-4 안전 유도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기구는 입구 및 출구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li> <li>2) 안전유도표시는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li> <li>3) 이용객의 안전수칙 및 탑승안내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li> <li>4) 강풍, 강설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ul>	육안
11-5 풍속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풍속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발신기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li>2) 발신기는 감지 및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li> <li>3) 지시기는 작동이 정상적이고 경보설정치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li> <li>4) 지시기에 경보설정치를 10m/s로 설정한다.</li> </ul>	육안 조작

<p>11-6 안전 점검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일안전점검판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li> <li>2) 일일안전점검판은 파손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li> <li>3) 강풍, 강설에 의해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li>4) 일일안전점검판은 유기기구명, 안전관리자 성명, 안전성검사일자, 일일 안전점검결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li> </ol>	<p>육안</p>
<p>11-7 기타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전실은 현저한 녹, 부식 및 부분적인 파손이 없고 창과 문의 잠김이 확실해야 한다.</li> <li>2) 운전실은 이용객의 승차, 하차 및 운행 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한다.</li> <li>3) 운전실에는 운행자에게 필요한 비상연락망, 비상조치요령, 운전조작요령, 주의사항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li> <li>4) 이용객의 승하차 및 운행 중 이용객 및 유기기구 상태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반사경, CCTV가 있는 경우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li> <li>5) 유기기구 출입문은 이용객이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6) 유기기구 출입문에는 이용객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잠겨어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li> </ol>	<p>육안</p>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					
유기시설. 유기기구명	(분 류)				
업 체 명		대 표 자 (소유자)	( )		
설치장소(주소)					
제작년도 (최초안전성검사일자)	( )	제 작 사			
규 격	(가로×세로×높이)	정원(모델명)			
안 전 성 검 실 시 사 항					
구분	검사일	설치장소 및 영업기간	검사결과	개선 및 지적사항	검사기관
1					
2					
3					
4					
5					
사고이력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력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전성검사기관의 장) 귀하 ※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성적서(A)							
검사 구분	<input type="checkbox"/> 허가전검사 <input type="checkbox"/> 정기검사 <input type="checkbox"/> 재검사						
유기시설. 유기기구명	한글 : _____ (영문 : _____ )						
설 치 장 소							
유기시설.유기 기구관리자	사용대표자 : _____ 점검정비자 : _____		안전관리자 : _____ 운영관리자 : _____				
검 사 구 분	※ 변동시 후임자, 관련자 자동승계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_____년도)						
검사종합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합(검사조서내용은 별지참조)						
차기검사신청기간							
최고부높이	m	전기용량	전동기	V× kW		계 kW	
회 전 직 경	m		조 명	V× kW			
길 이	m						
기 능 측 정 (최대)	상 승	m/min	절연저항	사용전압(저항최소기준치)			상 태
	하 강	m/min		150V이하 (0.1MΩ)	150~300V (0.2MΩ)	300~400V (0.3MΩ)	
	대 회 전	rpm	주 회 로	MΩ	MΩ	MΩ	적.부
	소 회 전	rpm	유압전동기	MΩ	MΩ	MΩ	적.부
			공기압축기	MΩ	MΩ	MΩ	적.부
	주행속도	km/hr	제 어 회 로	MΩ	MΩ	MΩ	적.부
			조 명 회 로	MΩ	MΩ	MΩ	적.부
원주속도	m/min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 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용중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별지 제8호 서식]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성적서(B)							
검사 구분	<input type="checkbox"/> 허가전검사 <input type="checkbox"/> 정기검사 <input type="checkbox"/> 재검사						
유기시설. 유기기구명	한글 :		(영문 :				
설 치 장 소							
유기시설.유기기구관리자	사용대표자 :		안전관리자 :				
	점검정비자 :		운영관리자 :				
	※ 변동시 후입자, 관련자 자동승계						
검 사 구 분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년도)						
검사종합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합(검사조서내용은 별지참조)						
차기검사신청기간							
최고부 높이	m	전기용량	전동기	V× kW	계	kW	
수로 길이	m		조 명	V× kW			
면 적	㎡	토출량	m <sup>3</sup> /min				
최 고 수 심	m	절연저항	사용전압(저항최소기준치)			상 태	
			150V이하 (0.1MΩ)	150~300V (0.2MΩ)	300~400V (0.3MΩ)		
기타제원 및 부대시설	양수장치 1		MΩ	MΩ	MΩ	적.부	
	양수장치 2		MΩ	MΩ	MΩ	적.부	
	양수장치 3		MΩ	MΩ	MΩ	적.부	
	제 어 회 로		MΩ	MΩ	MΩ	적.부	
	조 명 회 로		MΩ	MΩ	MΩ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피뢰침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 점검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용중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영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별지 제9호 서식]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조서											
유기시설.유기기구명				설 치 일 자							
제 작 사				설 치 사							
검 사 항 목		해당 항목	검 사 결 과			검 사 항 목		해당 항목	검 사 결 과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양호	개선					양호	개선	
기 초 부	기초					전기 장치	피뢰설비				
	기초연결부						조명장치				
	기동						공급전선 집전장치				
	기동연결부						리미트스위치센서				
케도수 로주로	구조물					운전조 작장치	운전조작장치				
	케도,수로,주로 지지부계 및 침목						비상조작장치				
구동 장치	전동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감속장치						파도풀				
	클러치						유수풀				
	축 및 베어링						서평라이드				
	축이음						수중모험놀이				
	기어						급수 및 배수장치				
	체인 및 스프로킷						부력기구				
	벨트 및 풀리						착지부				
	로프						공기주 입식기 구장치	공기막장치,연결장 치			
	컨베이어장치							공기주입장치			
차륜장치					지지 보조부계						
유압 공압 수압	유압장치					기타 장치	승강 및 하강장치				
	공압장치						기본요구사항				
	수압장치						승용물				
	기기 및 계기						승강장				
안전 제동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울타리					
	제동장치					비상구					
	완충장치					운전실					
승용물 장치	역주행방지장치					점점로,점점사다리					
	승용물 구조					출입문					
	승용물 체결부					옥내통로					
	승용물 안전장치					계단					
전기 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안전유도표시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안전점검판					
	전압계,전류계표시					풍속계					
	배전선,배관					부하시험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사년월일 :       년       월       일  
 검사책임자 :                               (인)  
**(안전성검사기관명)**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분류)		
설치 장소 업체명,대표자			
설치년월일		제작년월일	
규 격	(가로×세로×높이)	전 원	
대 수(정원)		시 속	
작 동 방식		기 타 사 항	
제 작 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준 수 사 항	일시적인 고장이 아닌 고유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은 자동적으로 이 기종에서 제외되며 또한 동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할 수 없다.		
(사 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1에 의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유기기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 전 성 검 사 기 관 명) 직인			

## 4. 관광진흥법의 유기사설·기구 설명 및 사진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미니코스터	<p>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p>     <p>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p>
		제트코스터	<p>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해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T익스프레스, 알파인 코스터 등)</p>     <p>카멜백코스터      해성특급      T익스프레스      아틀란티스</p>
		루프코스터	<p>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수직, 스크류 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p>     <p>공포특급      판타지아스페셜      블랙홀2000      후렌치레볼루션</p>
		공중케도라이드	<p>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기구(바룬라이드 등)</p>  <p>바룬라이드</p>
		궤도자전거	<p>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철로자전거 등)</p>    <p>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레일바이크</p>
		미니스포츠카	<p>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p>   <p>미니스포츠카      고카트</p>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주 로 주 행 형	한도 는 유 주 가 있 그 를 하 용 운 는 시 는 기 구  정 로 (또 는 이 와 한 를 지 고 주 이 여 물 행 유 설 유 기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p>무궤도열차</p>	 <p>트램카</p>	 <p>코끼리열차</p>
수 로 주 행 형	한 고 수 로 용 승 이 되 기 또 는 유 기 구  정 로 지 고 수 로 이 여 물 행 유 설 유 기	뽀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기구(슈퍼뽀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p>뽀슬레이</p>	 <p>알파인슬라이드</p>	 <p>루지</p>
		후름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기구(후름라이드, 급류타기 등)		
			 <p>후름라이드</p>	 <p>후름라이드</p>	 <p>급류타기</p>
		신밧드의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기구(지구마을 등)		
			<p>신밧드의모험</p>		<p>지구마을</p>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p>래피드라이드</p>	<p>보트라이드</p>	<p>아마존익스프레스</p>
		스포츠카	일정한 지면에서 속도 30 km/h 이하(ISO 17842-1)를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 또는 엔진동력으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방향 전환 주행이 가능한 기구(스포츠카 등)		
			스포츠카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자유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 범퍼카, 박치기 차 등)		
			 <p data-bbox="571 600 657 629">범퍼카</p>	 <p data-bbox="874 600 1046 629">어린이범퍼카</p>	 <p data-bbox="1241 600 1375 629">박치기 차</p>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p data-bbox="644 987 756 1016">범퍼보트</p>	 <p data-bbox="1141 987 1300 1016">박치기 보트</p>			
수륙양용 관람차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기구(로스트밸리 등)				
	 <p data-bbox="890 1344 1031 1373">로스트밸리</p>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중 회 전 고 정 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승객을 수직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기구	회전관람차	<p>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플라잉카펫	<p>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아폴로	<p>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йма스터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레인보우	<p>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div>
		바이킹	<p>수직중심축에 매달린 배 모양의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방식으로 예각의 범위에서 회전 운동하는 기구(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고공파도타기	<p>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애나존스 탑스핀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회 회 전 고 정 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수평방향 수평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스카이코스터	<p>2개의 지지부재 상부에 수평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이코스터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스카이코스터</p>
		회전그네	<p>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메달아 수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4, 1fr); gap: 5px;">     </div>
		회전목마	<p>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4, 1fr); gap: 5px;">     </div>
		티킵	<p>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킵 등)</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4, 1fr); gap: 5px;">     </div>
		회전보트	<p>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4, 1fr); gap: 5px;">     </div>
		점프라이드	<p>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4, 1fr); gap: 5px;">     </div>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p>음악익스프레스</p>	<p>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88 327 743 517">  <p>음악익스프레스</p> </div> <div data-bbox="834 327 1090 517">  <p>피터팬</p> </div> <div data-bbox="1181 327 1436 517">  <p>록카페</p> </div> </div>
		<p>스윙댄스</p>	<p>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 크라운, 유에프오, 디스크라운드, 댄싱플라이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76 622 826 813">  <p>디스크라운드</p> </div> <div data-bbox="1094 622 1345 813">  <p>댄싱플라이</p> </div> </div>
		<p>타가다 디스코</p>	<p>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76 918 826 1108">  <p>타가다</p> </div> <div data-bbox="1094 918 1345 1108">  <p>타가다디스코</p> </div> </div>
		<p>닌자거북이</p>	<p>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스하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48 1214 699 1404">  <p>닌자거북이</p> </div> <div data-bbox="707 1214 957 1404">  <p>스페이스하이타</p> </div> <div data-bbox="965 1214 1216 1404">  <p>라이온킹</p> </div> <div data-bbox="1224 1214 1474 1404">  <p>우주정거장</p> </div> </div>
		<p>회전비행기</p>	<p>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 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76 1509 826 1700">  <p>회전비행기</p> </div> <div data-bbox="1094 1509 1345 1700">  <p>탑비행기</p> </div> </div>
<p>우주전투기</p>	<p>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 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48 1845 699 2036">  <p>우주전투기</p> </div> <div data-bbox="707 1845 957 2036">  <p>미니플라이트</p> </div> <div data-bbox="965 1845 1216 2036">  <p>아라비안나이트</p> </div> <div data-bbox="1224 1845 1474 2036">  <p>삼바</p> </div> </div>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굴곡에 의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타원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스페이스자이로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회전의자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구(문어다리,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문어다리	 왕문어춤	 문어댄스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탐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복합 회전고정형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구 또는 기구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어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브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스포크에 연결된 개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브레이크댄스  브레이크댄스  스피디  스타댄서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등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풍선타기  등실비행선  플라워레이스
		슈퍼라이드	회전하는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축을 중심으로 진자 운동 또는 회전운동하거나 일정 구간의 레일위를 왕복운동하는 기구(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블루션, 삼각바퀴, 쉘러저, 우주선 등)  허리케인  자이로스윙  자이로스핀  유에프오
		사이버인스페이스	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패러슈터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승강고정형	평방 및 수직 방향으로 상승하는 유기기구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다워 등)			
		 <p>자이로드롭</p>	 <p>콘돌</p>	 <p>스페이스샷</p>	 <p>메가드롭</p>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p>프레쉬팡팡</p>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시설·기구	영상모험관	승용물이 좌우·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화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젝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p>영상모험관</p>	 <p>와일드윙</p>	 <p>풍수해체험관</p>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 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좌석 승용물이 화면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일정한 시설 내에서 좌석이 돌며 정해진 주제별로 이용객이 좌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시설(전래동화관 등)		
			 <p>전래동화관</p>		
	 <p>환상의집</p>	 <p>요술집</p>	 <p>착각의집</p>		
 <p>다이나믹시트</p>	 <p>슈팅시어터</p>	 <p>입체영상실</p>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편하우스	<p>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기구(미로탐험, 유명집, 오즈의성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편하우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미로탐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오즈의성</p> </div> </div>
		미로	<p>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칸막이로 통로와 입출구를 만들어 미로 형태로 만든 시설·기구(미로 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미로</p> </div>
		모험놀이	<p>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기구(어린이광장, 짝꿍놀이터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험놀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액션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짝꿍놀이터</p> </div> </div>
		에어바운스	<p>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에어바운스</p>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유수풀	<p>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리버웨이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유수풀      리버웨이      토렌토리버      와일드리버</p>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대표 유기기구 내용(유사기구명)	
물놀이형		바디 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바디슬라이드, 워터톱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p>바디슬라이드</p>	 <p>워터톱슬레이</p>	 <p>레이싱슬라이드</p>
		튜브 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p>튜브슬라이드</p>	 <p>메가스톱</p>	 <p>토네이도슬라이드</p>	 <p>토네이도</p>
		서핑라이더	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는 시설·기구(플로우라이더 등)	
	 <p>서핑라이더</p>	 <p>플로우라이더</p>	 <p>와일드서핑</p>	
		수중모험놀이	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종합 시설·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등)	
 <p>수중모험놀이</p>	 <p>아쿠아플레이</p>	 <p>어린이풀(MLPS)</p>		
	워터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슬라이드 등)		
 <p>에어바운스 워터슬라이드</p>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예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사진 및 정의)	
가. 주행형	일정 궤도 · 주로 ·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가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배터리카		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물을 이용자가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미니자동차		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물을 이용자가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멜로디페트		정원 2인 이하인 동물모형의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별도의 안전울타리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이티로보트		정원 2인 이하인 승용물을 2대 이하로 연결하여 전기 동력으로 짧은 순환형 궤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수상사이클		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발 또는 손으로 페달을 돌려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로봇, 자동차, 동물, 기차, 야자수, 컵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저속 회전, 병진, 요동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우주전차		
		아기돼지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1.5미터 이내로 이용자가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차
미니기차			
다람쥐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아파치헬기			
슈퍼미니카	슈퍼미니카	코끼리	마징가제트
코끼리			
마징가제트	폴리스카	잠수정	공룡
폴리스카			
잠수정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공룡			
마린보이	닭	당나귀	펠리컨
스카이돌핀	당나귀	펠리컨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미니회전목마	미니회전목마	미니회전컵
		미니회전컵		
		미니회전문어		
		회전야자수	미니회전문어	회전야자수
다. 일 정 한 시설물(기계 · 기구 · 건축물 · 보노 기구 등) 내 에 서 이 용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 기 시설 또는 유 기 기구	도깨비집		귀신, 도깨비 등의 호러 조형물이 설치된 이동통로에 음향, 조명 등 다양한 효과를 주어 이용객이 이동하며 체험하는 유 기 기구	
	거울집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진 미로를 따라 움직이며 출구를 찾는 체험을 즐기는 유 기 기구	
	3D·4D입체영화관(좌석 고정영상시설)		이용자가 보조기구 또는 직접 눈으로 입체 영상물을 보며 스탠딩 또는 진동만을 주는 좌석에 앉아 음향, 조명 등 다양한 효과를 주어 이용객이 체험하는 유 기 기구	
	투시경		이용자가 보조기구(헤드셋 등)을 착용하고 투시창(망원 렌즈 등)을 통해서 영상을 보며 이용객이 체험하는 유 기 기구	
	미니시뮬레이션		탑승 높이 1 m 이하의 승용물이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작동(저속 회전, 병진, 요동 등)을 하고 이용자가 영상물을 보면서 직접 핸들 조작하여 입체적인 체험을 하는 유 기 기구	

		만다라		화면상에 이용자 자신이 만다라 무늬처럼 나타나는 가상 놀이 유키기구
일 정 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가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시설 또는 유키기구	플레이스페이스		롤러슬라이드, 타잔타기, 무지개언덕, 원통형건너기, 미끄럼타기, 볼대포 등 여러 복합 놀이요소가 하나의 기구로 형성되어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유키기구. 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놀이기구중 폐쇄형 놀이기구만 해당됨.	
	붕붕뽀뽀		트램폴린 위에서 발을 굴려서 뛰어 놀 수 있는 유키기구	
	미니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유키기구.(탑승높이 3 m 이하이고 전체면적 120㎡ 이하로 물놀이형의 경우는 수심이 표시된 착지부 풀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물놀이형 미니슬라이드		탑승높이 2 m 이하이고 슬라이드가 직선이며 길이 10 m 미만인 바닥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물놀이형 유키기구	
	미니사격		코르크 마개를 쏘아 고정되어 있는 과녁을 맞히는 유키기구(모의총포 확인가능 시설)	
	베이비골프		코인을 넣으면 공이 나오고 하나의 기계로 이루어져 있는 판 위에서 소형 골프채로 공을 쳐 홀에 공을 넣으며 즐기는 유키기구	

	미니골프		홀과 그린 끝의 거리가 10 m 이하이고 그린위에서 퍼팅만 가능한 유키기구
	활쏘기		끝이 뭉툭한 축이 있는 화살을 쏘아 고정되어져 있는 과녁을 맞히는 유키기구
	투환		링을 던져서 고정되어져 있는 고리에 거는 유키기구
	공쏘기		공을 쏘아서 표적에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키기구
	광선총		광선총을 쏘아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키기구
	미니볼링		공을 목표지점까지 굴리는 유키기구
	미니농구		공을 링에 골인시켜 점수를 얻는 유키기구
	공굴리기		공을 굴려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키기구



	공던지기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추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로테오타기		1인승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피칭롤링 회전하는 시설(안전매트 위에 설치)에 탑승하여 로테오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
	공차기		가상의 골대에 공을 발로 차서 넣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에어하키		2인이 손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상대방 골에 퍽을 집어넣어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망치치기		손망치로 화면 및 표적을 맞추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편치		주먹으로 목표물을 때려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가상체험		이용자가 기구와 연결된 장치를 착용하고 기구의 영상을 보조기구(입체안경 등)로 보며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표적맞추기		작은 화살을 던져 표적을 맞추는 유기기구
	물쏘기		물총을 이용하여 표적을 맞추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미니야구		화면상의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로 맞히는 유기기구
	팔씨름		팔모형의 기계와 팔씨름을 겨루는 유기기구
	오토바이타기		고정된 오토바이모형의 좌석에 앉아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오토바이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
	스키타기		스키형태의 발판에 서서 양 옆 손잡이를 잡고 화면에 나오는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
	자동차경주		운전석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 및 레버를 조작하여 운전을 즐기는 유기기구
	자전거타기		자전거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을 조작하여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유기기구
	보트타기		보트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 보트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
	말타기		화면이 없는 말 형태의 승물에 앉아 승마 체험을 즐기는 유기기구(단, 화면이 있는 경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 만 해당 됨.)

	뮤직댄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발판, 드럼 등을 밟거나 두드리며 즐기는 유기기구
	수상기구 타기		수상기구형태의 발판에 서서 화면을 통해 수상 기구를 타는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
	건슈팅		화면의 적을 향해 기기와 연결된 전자총을 쏘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인형뽑기		크레인, 봉 등을 버튼 및 레버를 직접 조작하여 그 움직임에 따라 경품(인형, 완구류, 캔디)를 얻는 유기기구



## 5.유원시설 운영매뉴얼



## 유원시설 운영매뉴얼

- [1] 청결업무 매뉴얼
- [2] 안전점검 매뉴얼
- [3] 시운전 매뉴얼
- [4] 운행자 업무 매뉴얼
- [5] 안전운행 매뉴얼
- [6] 영업마감 매뉴얼
- [7]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 운영매뉴얼
- [8]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 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

## [1] 청결업무 매뉴얼

### ■ 개요

탑승고객에게 쾌적함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탑승동선, 승용물 및 유기사설 전반에 걸쳐 청결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청결업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함

### ■ 적용범위

고객 접점 동선 및 유기사설 전체에 대해 적용함

### ■ 청결담당

근무지별 담당운영자가 우선적으로 실시함

### ■ 청결결과 확인

청결업무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을 실시함


### ■ 청결방법

항 목	청결방법	주 기
바닥	① 영업전 빗자루로 구석까지 쓸어냄 ② 바닥에 떨어진 휴지는 발견 즉시 줍도록 함 ③ 비오는 날은 물기를 제거함(매우 더러운 곳은 비눗물로 닦음) ④ 안전울타리를 깨끗이 닦아냄	매일 수시
기계실	① 바닥은 물기가 없는 걸레로 닦음 ② 비품을 정리정돈 함 ③ 먼지가 없도록 수시로 닦아냄	매일
쓰레기통	① 영업전 깨끗이 통을 비움 ② 수시로 쓰레기통 주변 휴지나 담배를 제거함	수시
소화기	① 매일 먼지를 닦아냄 ② 닦을 때마다 소화기를 흔들어 액이 들어있는지 확인함 (가스볼륨을 확인)	매일
청소도구함	① 빗자루는 말려서 보관함 ② 보관함의 도구는 항상 정리정돈 함	매일
탑승물	① 영업전 걸레로 내부와 외부를 닦음 ② 영업 중 탑승물에서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걸레로 제거함 ③ 기름이 떨어진 탑승물에는 손님을 태우지 않음	수시
TV	① 마른걸레로 TV화면과 케이스를 닦음	매일



부착물	① 유리창과 창틀을 걸레로 닦아냄 ② 안내판은 수시로 닦아내서 먼지가 없도록 함 ③ 각종 부착물 이중 고리는 부식(녹 등)이 없는지 확인함	매일 수시
가드레일	① 깨끗한지 살펴보고 더러우면 깨끗하게 닦음 ②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고장신고를 함	수시
조작실	① 조작실내에는 팸플릿, 계수기, 필기구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함 ② 조작실 내부 서랍을 깨끗이 정리정돈 함 ③ 조작 창문을 깨끗이 유지함	매일 수시
탑승장주변	① 청결한지 살펴보고 쓰레기를 줍도록 함 ② 부착물이 깨끗한지 살펴보고 더러우면 닦음	수시

#### ▣ 청소도구 사용법

청소도구	관련사진	사용방법
물기제거용 밀대		① 사용 시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당기면서 물기를 모아 제거함 ② 보관 시에는 더럽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보관함 ③ 변형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었으면 교체 또는 수리 후 사용함
집게		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 ② 보관 시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쓰레기가 없고 거꾸로 보관함 ③ 변형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었으면 교체 또는 수리 후 사용함
손걸레		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 ② 더럽혀 졌으면 즉시 깨끗하게 닦아 사용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함 ③ 보관 시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정리 정돈하여 보관함

청소보관함



- 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
- ② 보관 시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쓰레기가 없고 거꾸로 보관함
- ③ 더럽혀 졌으면 즉시 깨끗하게 닦아 말리고 난 후 보관함

## [2] 안전점검 매뉴얼

※ 바이킹을 사례로 작성한 매뉴얼임




### ■ 개요






유기시설(기구)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기시설(기구)의 안전 확보와 고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항목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점검 업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함






### ■ 적용범위

바이킹 안전점검 업무에 한하여 적용함






### ■ 안전점검 방법





점검항목		점검내용	
고객 대기 동선	바닥·출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문의 고정 상태는 견고해야 하며 쉽게 개폐가 가능해야 함(개폐 시 고객의 끼임 발생 없어야 함)</li> <li>바닥은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 전도가 없어야 함</li> </ul>
탑승 대기 동선	안전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울타리 기능이 상실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함</li> <li>고객이 기대거나 앉을 경우 변형·파손 이 없어야 함</li> </ul>
	출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문의 고정 상태는 견고해야 하며 쉽게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li> <li>고객이 쉽게 탑승장으로 들어가지 못 하여야 함. 단 자동문일 경우 개폐 스위치는 고객이 직접 작동 할 수 없도록 해야 함</li> </ul>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장치(안전밴드 등)의 조립은 견고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고 잠김 상태는 확실해야 함</li> <li>• 안전장치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함</li> <li>• 안전장치는 고객이 쉽게 풀지 못해야 함</li> </ul>
승물	좌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 손잡이, 안전매트 등에는 파손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함</li> <li>• 좌석 내부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함</li> </ul>
	연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물 연결 또는 지지하는 체결부(볼트, 너트, 핀, 리벳, 용접 등)에 이완 및 과도한 마모, 손상, 균열, 부식이 없어야 하고 기능이 정상상태를 유지해야 함</li> <li>• 연결장치의 급유가 충분한지 확인함</li> </ul>
구동장치	감속기 · 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주행을 통해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발열 및 동작을 확인하고 작동유 등의 누유가 없어야 함</li> <li>• 감속기 고정 볼트 및 기타체결부에 과도한 부식 또는 균열의 발생여부를 확인함</li> </ul>
	축 · 기어 · 체인 ·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 기어, 체인, 벨트의 이상소음, 마멸, 균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함</li> <li>• 누유가 없고 급유상태가 정상상태 이어야 함</li> </ul>

	차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륜은 파손이나 과도한 균열이 없어야 함</li> <li>• 차륜 고정 볼트의 풀림이 없어야 함</li> </ul>
공압 장치	공압실린더 · 컴프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물운행에 적절한 압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함(압력계 확인 후 운행)</li> <li>• 공압장치 연결부 또는 부재에 공기누출이 없어야 함</li> <li>• 압력용기에는 안전밸브, 드레인 밸브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ul>
유압 장치	유닛· 밸브· 유압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압 파워 유닛은 조립이 확실하고 각 부에 누유가 없고 운전상태가 양호해야 함</li> <li>• 압력계의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함</li> <li>• 유압탱크에 과도한 부식, 손상 등이 없어야 함</li> </ul>
제동 장치	브레이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이크 작동 시 비정상적인 소음, 진동, 발열의 발생여부가 없어야 함</li> <li>• 브레이크 장치의 부착은 확실하고 본체 및 제동편 등의 현저한 녹,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함</li> <li>• 브레이크 장치에 작용하는 공기압 또는 유압장치의 기능은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함</li> </ul>
전기 장치	배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그네트, 릴레이 및 각종 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함</li> <li>• 제어반 주변에 누전, 인화물 등 위험이 없어야 함</li> <li>• 판넬의 부착은 견고하고 우수의 침입,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함</li> <li>• 판넬의 전류계, 전압계, 표시등 등에는 조립부에 이완이 없고 지시·동작·점등 이 확실히 되어야 함</li> </ul>



	조명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기구의 연결은 이완·파손이 없어야 함</li> <li>• 화재위험이 높은 네온관은 과도한 발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li> <li>• 가로등은 고객 감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li> <li>• 고온 조명기구는 손이 닿지 않는 구조여야 함</li> </ul>
	신호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내방송설비를 유지해야 함</li> </ul>
운전 조작 장치	운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작버튼에 과도한 부식·마모·균열·파손이 없어야 함</li> <li>• 조작버튼의 표시상태가 명확하게 유지되어야 함</li> <li>• 주행에 필요한 시동·제동·주행방향에 따라 조작하는 기능이 정확한지 여부 확인</li> <li>• 방송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승객에게 주의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함</li> </ul>
	비상조작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조작장치에 균열·손상·이완 등 이상이 없어야 함</li> <li>• 비상정지 버튼은 운행자가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li> <li>• 비상정지장치 버튼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함</li> </ul>
기타 시설	기초, 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및 지주에 고도한 균열·부식·파손·변형 등이 없어야 함</li> </ul>

<p>탑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 및 천정에 과도한 파손·부식·누수 발생여부를 확인함</li> <li>• 바닥에 돌출부가 없어야 함</li> <li>• 탑승 대기동선과 탑승물 사이에 안전선을 구획하여야 함</li> </ul>																																								
<p>안전유도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출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li> <li>• 안전유도 표시 및 탑승고객 이용안전 수칙은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야 함</li> </ul>																																								
<p>안전 점검판</p>	 <table border="1" data-bbox="512 954 839 1211"> <thead> <tr> <th colspan="4">일일안전점검표지판</th> </tr> </thead> <tbody> <tr> <td>위 기 구 명</td> <td>(1)나바(이)리</td> <td>공역연동부</td> <td>2008. 7. 18</td> </tr> <tr> <td>점검요구사항</td> <td>회상환</td> <td>설치연동부</td> <td>2008. 8. 18</td> </tr> <tr> <td>안전점검담당자명</td> <td colspan="3">2014. 8. 27. - 2014. 9. 20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td> </tr> <tr> <td>점검결과</td> <td>점검</td> <td>결과</td> <td>점검결과</td> </tr> <tr> <td>점검일시</td> <td>2014. 8. 27</td> <td>점검시간</td> <td>10:00 ~ 11:00</td> </tr> <tr> <td>점검장소</td> <td colspan="3">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촌동 1-1</td> </tr> <tr> <td>점검인원</td> <td colspan="3">김민준, 김민준, 김민준</td> </tr> <tr> <td>점검장소</td> <td colspan="3">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촌동 1-1</td> </tr> <tr> <td>점검인원</td> <td colspan="3">김민준, 김민준, 김민준</td> </tr> </tbody> </table>	일일안전점검표지판				위 기 구 명	(1)나바(이)리	공역연동부	2008. 7. 18	점검요구사항	회상환	설치연동부	2008. 8. 18	안전점검담당자명	2014. 8. 27. - 2014. 9. 20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점검결과	점검	결과	점검결과	점검일시	2014. 8. 27	점검시간	10:00 ~ 11:00	점검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촌동 1-1			점검인원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점검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촌동 1-1			점검인원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판은 파손 및 오염이 없어야 하며 매일 점검결과를 표시하여야 함</li> <li>•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함</li> </ul>
일일안전점검표지판																																										
위 기 구 명	(1)나바(이)리	공역연동부	2008. 7. 18																																							
점검요구사항	회상환	설치연동부	2008. 8. 18																																							
안전점검담당자명	2014. 8. 27. - 2014. 9. 20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점검결과	점검	결과	점검결과																																							
점검일시	2014. 8. 27	점검시간	10:00 ~ 11:00																																							
점검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촌동 1-1																																									
점검인원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점검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촌동 1-1																																									
점검인원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p>소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의 충약 및 보관은 항상 적정하여야 함</li> <li>• 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함</li> </ul>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자	결재자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고객대기동선	바닥, 출입문	고객에게 위험요소는 없는가?		
탑승대기동선	안전울타리	변형, 파손된 곳은 없는가?		
	출입문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승물	안전장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좌석부	고객에게 위험요소는 없는가?		
	연결장치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구동장치	감속기, 전동기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축, 기어, 체인, 벨트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차륜장치	파손, 과도한 균열은 없는가?		
공압장치	컴프레서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유압장치	유닛, 밸브, 유압유 등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제동장치	브레이크장치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전기장치	배전반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조명설비	작동상태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신호설비	감전, 화재발생 위험은 없는가?		
운전조작	운전실	모든 스위치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비상조작장치	비상 스위치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는가?		
기타시설	기초, 지주	변형, 균열, 파손된 곳은 없는가?		
	탑승장	고객에게 위험요소는 없는가?		
	안전유도표지	고객에게 보기 쉽게 게시되어 있는가?		
	안전점검판	일일안전점검결과가 표시되어 있는가?		
	소화기	충약 및 보관상태가 적정한가?		
특기사항				



### [3] 시운전 매뉴얼

※ 바이킹을 사례로 작성한 매뉴얼임

#### ▣ 개요

유기시설(기구)에 고객이 탑승하기 전에 전반적인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운행자의 올바른 운전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게 탑승을 제공하기 위해 시운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함



#### ▣ 시운전 방법

구분	운 영 업 무	확 인 사 항
운행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방송실시</li> <li>- 유기시설 주변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실시</li> <li>○ 안전점검요원 철수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방송멘트(10초간 3회)</li> <li>“지금부터 바이킹 시운전을 시작하오니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동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 동력전원 스위치 ON</li> <li>- 주전원용 메인스위치 ON</li> <li>- 조작용 메인스위치 ON</li> <li>- 컴프레셔용 메인스위치 ON</li> <li>- 전등용 메인스위치 ON</li> <li>○ 직류전원 각 스위치 ON</li> <li>- 조작회로용 메인스위치 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등상태 확인</li> <li>- 사용 시에만 확인</li> <li>- DC 전압 확인</li> </ul>
운전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작전원스위치 ON</li> <li>○ 근접스위치를 작동시킴</li> <li>○ 램프스위치로 램프 꺼짐 체크</li> <li>○ 컴프레셔 압력 확인</li> <li>○ 각 근접스위치의 작동 체크</li> <li>○ 접근에 따라 점등 확인</li> <li>○ 승용물(안전밴드) 상태확인</li> <li>○ 안전밴드, 손잡이의 작동/연결 상태</li> <li>○ 승용물 운전상태 확인</li> <li>○ 구동장치/회전체 확인</li> <li>○ 승강용 플랫폼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램프점등상태 확인</li> <li>○ 동작음 확인</li> <li>○ 표시램프 점멸확인</li> <li>○ 사용압력 확인</li> <li>○ 접근에 따라 점등 확인</li> <li>○ 이상 유무 확인</li> <li>○ 이상 유무 확인</li> <li>○ 이상 유무 확인</li> <li>○ 이상 유무 확인</li> <li>○ 이상 유무 확인</li> </ul>
운행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 평균풍속 10m/sec</li> <li>○ 우 천: 순간 강우량 과다시</li> <li>○ 번개: 멀리서 번개발생시</li> <li>○ 지진: 낮은 진도 발생시</li> <li>○ 정전: 기중 또는 전체 정전시</li> <li>○ 고장: 시설고장 발생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행 중지 방법</li> <li>- 운행 즉각 중지</li> <li>- 운행 전일 경우 운전 중지</li> <li>- 운행 중일 경우 비상정지버튼 등을 이용해 승용물이 완전히 정지되도록 한 다음 이용객 하차를 안내하고 전체 이용객의 하차 완료 확인 후 운전 중지</li> </ul>




## [4] 운행자 업무 매뉴얼

※ 바이킹을 사례로 작성한 매뉴얼임



### ▣ 입구측 운행자

구분		업 무 내 용	
입 구 안 내	업 무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밝은 인사와 함께 이용티켓과 안전수칙 관련 탑승자 제한 조건을 확인함</li> <li>■ 전방을 보고 바른 자세로 서서 고객행동을 주시하고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15° 각도로 함</li> </ul>
	확 인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고객 확인(탑승 제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장 0cm 이하 어린이 탑승 제한</li> <li>-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심장병·환자, 디스크 환자, 음주자 탑승 제한</li> <li>-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사 제시의 탑승자 제한 조건(키, 신체 등)</li> </ul> </li> <li>■ 탑승 가능한 노약자, 장애인 고객 우선 입장함</li> <li>■ 음식물 소지고객 및 탑승 방해물품 입장을 억제함</li> <li>■ 탑승정원에 맞추어 고객을 입장시킴 (탑승대기라인 포함)</li> <li>■ 대기동선 탑승고객의 불안정한 행동 예방 및 확인함</li> <li>■ 탑승고객 대기동선 내 대기 시 고객 출입구 차단을 확인함</li> </ul>



▣ 탑승안내 운행자

구분	업 무 내 용	
	업 무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동선에서 탑승하는 고객에게 올바른 탑승 자세와 개인소지품은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을 유도함</li> <li>■ 탑승고객에 대한 안전장치(주·보조)를 일일이 검사하고 고객안전을 확인한 후 승물 운행 운행자에게 출발 신호를 전달함</li> </ul>
탑 승 안 내	확 인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동선 출입문을 열어 탑승고객을 승물에 탑승시킴</li> <li>■ 탑승고객이 승물에 탑승 후, 대기동선 출입문을 닫음</li> <li>■ 탑승고객을 확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탑승정원 및 적격탑승여부를 확인함</li> <li>② 탑승고객의 올바른 자세를 안내함</li> <li>③ 탑승고객의 소지품을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함</li> </ol> </li> <li>■ 승물 안전밴드를 닫음</li> <li>■ 탑승고객이 안전장치(안전밴드 등)을 운행 중 단단히 잡고 있을 것을 안내함</li> <li>■ 탑승고객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근주지대로 이동함</li> <li>■ 탑승고객 안전 재확인 후 승물운행 운행자에게 출발신호를 전달함(수신호, 부저신호 등)</li> <li>■ 승물 출발 시 탑승고객의 안전 상태를 주시함(고객 불안전행동 발견 시 즉시 정지신호를 승물운행 운행자에게 전달함)</li> </ul>

■ 승물운행 운영자

구분	업 무 내 용	
승물 운 행	업 무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동선에서 탑승준비를 하는 고객에게 운행 전 탑승 부적격자 안내방송과 탑승 시 주의사항을 알림</li> <li>■ 운행 중 고객의 불안정한 행동과 올바른 탑승자세를 안내하고 운행 후 올바르게 내리는 방법과 소지품 확인 등을 방송·안내함</li> </ul>
	확 인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물에 탑승한 고객에게 안전이용방송을 실시함</li> <li>■ 탑승안내요원으로부터 출발신호를 받으면 탑승고객에게 운행안전방송을 실시한 후 승물을 출발시킴</li> <li>■ 승물 출발과 동시에 위급상황 대비, 손은 비상정지 버튼에 올려 놓아 위급한 상황에 대비함</li> <li>■ 운행 중인 승물을 주시하면서 운행상태를 확인함(CCTV, 육안확인 등)</li> <li>■ 운행을 마쳐 승강장에 진입하기 전에 대기동선 고객에게 안전방송을 실시함</li> <li>■ 승물이 승강장 진입 시 수동운전을 통하여 정위치에 정차시킨 후 브레이크장치를 완전 작동시킴</li> <li>■ 정지 후 승물 안전밴드를 해지하고 고객을 출구로 안내함</li> </ul>

■ 출구측 운행자

구분		업 무 내 용	
출구 안내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킹 운행 종료 후, 탑승을 끝난 고객에게 안전한 하차와 소지품 지참 및 운행 중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출구 밖 퇴장까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시 및 안내</li> </ul>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행 종료 후 승강장에 진입하는 승물 탑승고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고객)</li> <li>■ 승물이 정지되면 개인소지품 지참을 안내함</li> <li>■ 출구방향을 가리키며 탑승고객이 전원 출구로 나갈 때까지 출구안내를 함</li> <li>■ 탑승고객이 전원 퇴장하면 출구문을 닫음(역주행 고객을 제외함)</li> <li>■ 탑승안내, 승물운행 운행자에게 퇴장완료를 전달함(수신호, 부저신호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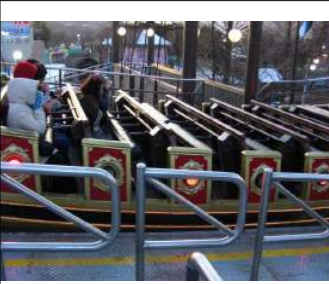
## [5] 안전운행 매뉴얼

※ 바이킹을 사례로 작성한 매뉴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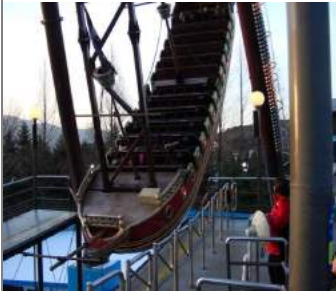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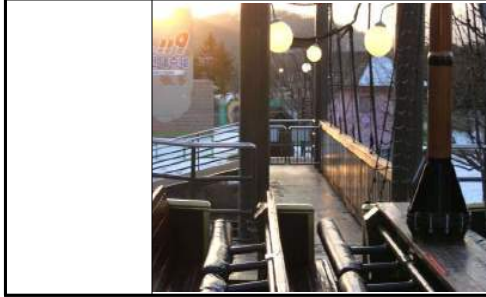
유기시설(기구)에 고객이 탑승하여 하차할 때까지 유기시설(기구)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안전운행을 통하여 고객에게 위험을 최소화 하며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업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함

### ▣ 안전운행 방법

구분	관련사진	안전운행 방법
유기시설 대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탑승제한 안내멘트 “바이킹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신장 〇cm이하 및 탑승 제한 고객은 입장 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탑승고객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제한 고객 안내</li> <li>■ 떨어질 수 있는 소지품 확인</li> <li>■ 보호자 동반 탑승여부 확인</li> <li>■ 1회 탑승인원씩 고객 입장</li> </ul>
탑승 대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지역 안전문 체결상태 확인</li> <li>■ 1회 탑승인원별 고객 배치 확인</li> <li>■ 대기손님 안내멘트 “안전을 위해 대기지역에 계신 고객께서는 승물 진입 시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li> </ul>
고객승물 탑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지역 안전문 체결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탑승시 안전문 Close</li> </ul> </li> <li>■ 승물 안전밴드 잠금 상태 확인</li> <li>■ 착용물품에 대한 안내멘트 “안전을 위해 탑승고객께서는 귀걸이 제거하고 하이힐 및 모자를 벗어 승강장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올바른 탑승자세 멘트 확인</li> </ul>



<p>고객탑승 승물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탑승자세 안내멘트 “안전을 위해 탑승하신 고객께서는 승물운행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자세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안전밴드 잠금 확인 안내멘트 “안전을 위해 탑승하신 고객께서는 안전밴드가 풀리지 않았는지 위쪽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밴드가 풀리는 고객께서는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조작판넬 이상 유무 확인</li> <li>■ 승물출발 안내멘트 “탑승하신 고객께서 모두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밴드를 손으로 꼭 잡고 운행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li> </ul>
<p>운행중 탑승고객 주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고객 이용상태 확인</li> <li>■ 비상정지 버튼 대기상태 유지</li> <li>■ 승물 운행상태 확인</li> </ul>
<p>승물 승강장 진입 및 고객하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물 운행종료 예정 안내멘트 “잠시 후 운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승물 완전 정차 확인</li> <li>■ 고객 하차 안내멘트 “탑승 고객께서는 안전밴드가 완전히 올라간 후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고객 상태확인 안내멘트 “승물이용 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근무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고객 소지품 확인 안내멘트 “탑승 고객께서는 소지품을 확인하여 퇴장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탑승완료 고객 출구 안내멘트 “탑승이 끝난 고객께서는 천천히 출구쪽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p>고객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구 고객퇴장 안내</li> </ul>



- 고객소지품 확인
- 고객 완전 퇴장 후 출구문 잠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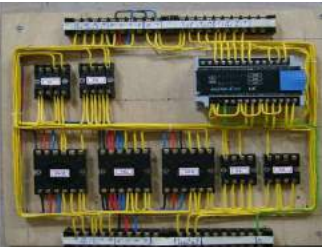
## [6] 영업마감 매뉴얼

※ 바이킹을 사례로 작성한 매뉴얼임

### ▣ 개요

당일 최종 고객퇴장이 완료된 후, 당일업무 수행을 되돌아보고 다음날 원활한 안전운행을 위해 당일 영업 중 발생한 보수 및 개선 사항을 사전에 조기 반영하기 위해 영업마감업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함

### ▣ 영업마감 방법

마감항목		마감점검내용
고객 최종퇴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탑승고객이 출구퇴장을 하였는지 확인함</li> <li>■ 고객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제함</li> <li>■ 출입구 고객동선 및 기종안내 조명을 끄 (전원 OFF기 전 반드시 최종고객 퇴장을 재확인)</li> </ul>
승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물 내부에 고객 분실물을 확인함 (분실물 발생 시 즉시 통보)</li> <li>■ 승물 안전밴드와 탑승대기 출입문을 닫음</li> </ul>
운전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중 이상발생 사항에 대해 운행일지를 기록</li> <li>■ 승물 브레이킹 전원을 해지함</li> <li>■ 각종 부속설비 전원을 해지함 (공압설비, 유압설비, 신호설비, 음향설비 등)</li> <li>■ 조명전원을 해지함</li> <li>■ 조작판넬의 전원을 차단함</li> <li>■ 기계실이 같이 있을 경우는 기계실 확인점검을 동시에 병행함</li> </ul>
기계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조명전원을 차단함</li> <li>■ 부속설비 동력을 차단함</li> <li>■ PLC 프로그램 공급전원을 차단함 (단 계속 공급투입시설은 제외)</li> <li>■ 최종 메인전원 동력을 차단함</li> </ul>

<p>영업 마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마감내용을 일지에 기록함 (운행 종료시간, 손님 클레임, 고장수리 등)</li> <li>■ 고장 및 보수요외 사항 해당부서에 통보함</li> <li>■ 대기동선 및 출,입구 주변을 청소함 (쓰레기통 등)</li> <li>■ 승물(차량) 내부 청소를 함(휴지 제거)</li> <li>■ 조작실 내부를 정리 정돈함</li> </ul>
<p>최종 방화 점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콘센트는 반드시 분리함</li> <li>■ PC 및 전기사용기기는 전원을 분리함</li> <li>■ 정리정돈을 철저히 함</li> <li>■ 단위건물 내 유류통 보관을 금지함</li> <li>■ 소화기는 정위치에 보관함</li> <li>■ 출입문 및 창문의 잠금을 철저히 함</li> <li>■ 난로 주변 인화물, 가연물을 제거함</li> <li>■ 모든 전등은 소등하며 기계실을 시건함</li> </ul>
<p>영업 최종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종 시건을 실시함</li> </ul>

## [7]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 운영 매뉴얼

본 운영 매뉴얼은 운영자에게 제시되는 일반적인 지침으로 설계자 및 제조자, 그 외 법적인 요구 사항에 우선할 수 없으며, 보건, 안전, 건축법 등을 포함하며 한정되지는 않는다.(워터 슬라이드 운영 매뉴얼의 사례)

### 1. 입장객

모든 워터파크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으로 워터파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일정한 규칙과 과정을 모두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 1.1 표지판

워터파크의 입구에 게시되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명기한다.

- 1) 모든 게시물을 잘 읽고 준수할 것.
- 2) 안전요원 및 운영자의 지침을 준수할 것.
- 3) 워터슬라이드 구역 내 유리제품, 담배, 혹은 음식물 반입 금지.
- 4) 음주 혹은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워터파크 내에 입장금지.
- 5) 임산부, 심장 질환자, 척추 이상자는 슬라이드 이용금지.
- 6)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음.
- 7) 본인의 위험부담으로 탑승.

#### 1.2 접근성

규정된 입장 통로 외 지역에서의 입장객들의 슬라이드 진입을 금지하도록 대비한다.

#### 1.3 물리적 환경

워터슬라이드 이용객들의 적절한 수영복을 착용했는지,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등을 확인한다. 슬라이드에 손상을 입히거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물질이 달린 수영 복장의 착용을 금지한다. 약물 혹은 음주의 기미가 보이는 이용객은 본 지역에 접근할 수 없다.

#### 1.4 단순 방문객 및 관람객

단순 방문객과 관람객은 슬라이드 이용지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물에 젖은 부분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슬라이드 탑승자를 방해할 수 없다.

## 1.5 식·음료

어떠한 식·음료도 슬라이드 관과 풀, 데크와 슬라이드 및 풀 주변의 계단 및 통로와 직접적인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반입할 수 없다. 식·음료는 단순 방문자와 관람자구역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며, 슬라이더들을 위해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한다. 데크 및 통로와 슬라이드, 풀 주변을 정리유지하기 위해 휴지통을 두도록 한다.

## 2. 안전요원

워터파크 안전요원들은 이용객들의 안전 및 질서, 안전한 슬라이드 입장 및 퇴장, 그 외 일반 이용객 통제 및 응급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운영시간에는, 적십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표준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가 최소 1인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그가 운영중인 슬라이드에 대한 특정 응급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워터 슬라이드에는 다른 슬라이드에 위치한 안전요원 및 워터파크 사무실 혹은 유인 통제센터와 음성 연락이 가능한 전지 혹은 전기적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2.1 슬라이드 최상부

모든 워터슬라이드의 최상부에는 최소 1인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한다.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직접 감독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살핌.
- ⌚ 이용객들이 슬라이드, 래프트, 매트로 적절하게 진입하고 있는지 살핌.
- ⌚ 이용객들이 안전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핌
- ⌚ 요원 시야 내 슬라이드의 모든 구역(착수풀 제외)를 살피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다른 안전요원과의 연락.
- ⌚ 이용객들이 슬라이드 이용 최소/최대 규정에 미치는지 여부를 살핌
- ⌚ 가동중인 기구들의 상태가 용호한지 살핌, 부푸는 기구라면 적절하게 부풀었는지 살핌

### 2.2 착지풀

착지풀의 깊이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약 1 m 이다. 따라서 인증 받은 안전요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는데, 역시 꾸준하고 직접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살핌
- Ⓢ 이용객들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착수하고 빠져 나가는지 살핌
- Ⓢ 주변 풀 데크에서 뛰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등을 통제
- Ⓢ 풀 내 물의 높이가 적절한지 살핌

### 2.3 런아웃 레인

워터슬라이드의 런아웃 레인 역시 최소 1인의 안전요원이 꾸준히 직접 감시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살핌
- Ⓢ 이용객들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레인을 빠져나가는지 살핌
- Ⓢ 슬라이드 에이프런(apron)상에서 뛰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등을 통제
- Ⓢ 물 높이가 물 높이 표점에 있는지, 물 흐름이 계기장치 내에 있는지 확인

### 2.4 수처리

각의 조에는 염소처리 및 수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전형적인 운영, 조작, 연결, 해체, 응급 처치, 누출통제 절차 등을 포함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훈련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염소 처리실 주변에는 안전 점검표(Safety Chart)가 반드시 게시되어야 하며, 사무실 전화 주변에는 두번째 안전 점검표가 게시되어야 한다. 차트상에는 응급전화번호도 함께 게시하도록 한다

### 2.5 풀 운용(Pool Operations)

각 조에는 물 순환 및 여과 시스템 운용, 유지, 점검, 수세정과 클리닝 등 전반적인 수영장운용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일련의 전문적 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

## 3. 점검

영구 관측노트에 모든 점검사항들 및 운영시험, 수질검사, 사고 및 비상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하도록 한다. 일지는 최근 5년 보관을 권고하며,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3.1 슬라이드 점검

일일점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한다.

- Ⓢ 슬라이드 통로 내에 장애물 유무 여부

- Ⓢ 슬라이드 표면에 균열, 잔조각, 기포 유무
- Ⓢ 이음새 및 균열부분에 때움 처리가 부실하지는 않은지
- Ⓢ 때운 부분이 연결 테두리에서 튀어나왔는지
- Ⓢ 이음새 봉합부분이 새는지 여부
- Ⓢ 걸어갈 때 관이 지나치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 Ⓢ 이음새가 벌여졌는지 여부
- Ⓢ 래프트, 튜브 등이 적당히 부풀어 올랐는지
- Ⓢ 땅 또는 풀 바닥에 충전재가 사용된 경우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한지

### 3.2 기계 점검

각 워터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은 일일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 Ⓢ 물 순환 이전에 안전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살핌
- Ⓢ 물 순환과 관련하여 수로에 충분한 물이 흐르고 있고, 착지과 런아웃 레인의 물 높이가 적절한지 살핌
- Ⓢ 모든 펌프와 여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핌
- Ⓢ 컨베이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및 위험 요소 여부 확인하며, 안전요원은 물이 제조자의 지침사항에 따라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한다. 슬라이드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3.3 화학적 점검

매일 시설 개장 이전에 적절한 화학적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설비 가동중의 수질 점검이 현지의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른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 순환과 물 여과가 이용률의 피크 시점에서도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은 기간에 역시 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행해진 모든 수질 점검에 대한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이용객들이 수철, 재순환, 여과장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계 및 화학창고는 이용객들의 점검을 막기 위해 꼭 잠가둬야 한다.

## 4. 사고

워터파크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고는 미끄러짐, 낙상, 슬라이드 이용객과 또 다른 이용객간의 충돌, 워터폴 수면장력에 의한 충격과 측벽에 의한 까집이다. 운영자는 현장에서의 모든 사고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 4.1 사고기록

소유주 혹은 운영자는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정도의 모든 심각한

사고에 대해 제조자에게 통지한다. 가벼운 부상이라도 기구 및 설계,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알리도록 한다.

현지의 사법권 및 법이 사고의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는 각 현지 사법당국에 추가적 통지를 요구 받을 수 있다.

#### 4.2 뜰 것

운영자는 정부가 인정한 구멍 재킷 이외의 래프트, 튜브 및 기타 어떠한 뜰 것도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인증되지 않은 뜰 것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품목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저 놀이용으로 제공됨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 4.3 미끄러짐 및 낙상

미끄러짐 및 낙상은 워터파크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보행자들의 빈번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물 속, 보행도, 슬라이드 승강장이나 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조류와 곰팡이 등 미끄럼방지 면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에 대한 적절한 정기점검을 보행 면 상에서 실시하며, 충분한 배수 역시 슬라이드의 모든 구역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슬라이드 입구 구역은 미끄러짐과 낙상을 염두에 두고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미끄러운 표면상에서의 이용객이 접촉한 물과 흐르는 물이 처음으로 만나므로, 처음에는 이용객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다. 착수풀의 출구 구역은 항상 젖어있고 물이 흐르므로 표면에 미끄럼 방지, 배수, 안전요원의 수와 위치에 대한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미끄럼과 낙상 등의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요원은 워터파크 내에서 뛰거나 난동부리는 이용객을 관리 해야 한다.

#### 4.4 이용객간 충돌

이용객간의 충돌은 슬라이드 혹은 착수풀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슬라이드 속에서 속도를 줄이고 또는 정지하는 탑승객들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은 탑승의 적절한 간격 조절로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상부 안전요원과 하부의 안전요원은 슬라이드를 충분히 살피고 서로 연락한다. 입구의 안전요원은 이용객의 몸무게, 마찰과 탑승 자세 등의 영향으로 각자의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더 빠르게 내려가며,

나일론과 같은 미끄러운 소재가 면으로 된 소재보다 더 빠르다. 다른 모든 요소들을 같게 두고 보면, 얇은 채로 탄 이용객은 등 쪽으로 누운 이용객보다

느리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객은 서서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달리거나 널뛰면서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입구부분의 안전요원과 더불어 신호등 혹은 전기기계 출발 입구를 사용하는 방안 역시 역시 이용객의 출입 통제를 위해 고려할 수 있다.

착수 풀에서의 이용자간의 충돌은 적절한 출입 속도 통제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착수 풀 안전요원은 훈련 받은 주의 깊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용자가 착수 풀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촉해야 한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며, 언제나 이용객을 돕기 위해 입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탑승객이 착수 풀 퇴장에 지체가 있다면, 다음 탑승객은 입구에서 대기 하도록 한다. 탑승객들은 물에 의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혼란스럽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며, 뒤따라오는 친구를 기다리거나 착수풀 내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풀 내부에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입장하면서(train이라고 부른다.) 충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를 부모의 무릎에 앉혀 태우는 것 까지도 엄격히 금지된다.

부표나 레인로프(lane ropes)를 착수 풀에서 사용할 때는 탑승객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잘 배치한다. 또한 설비들이 탑승객들에게 얽히지 않도록 단순하고 잘 뜨는 디자인으로 한다.

#### 4.5 화학적 위험

직원 모두는 수 처리 화학품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체염소의 누출로 인해 잠재적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화학 조절로 인한 과도한 수 처리로 피부와 눈의 염증을 초래할 수 있고, 부적절한 수 처리는 세균문제 역시 발생시킨다.

### 5. 응급 절차

모든 워터파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비한 일정한 응급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이용객 통제
- Ⓢ 워터파크 대피
- Ⓢ 익사사고
- Ⓢ 심장마비
- Ⓢ 베임과 화상



- Ⓢ 목과 척추의 부상
- Ⓢ 전원 혹은 다른 시설의 중단
- Ⓢ 화재
- Ⓢ 보안 (싸움, 절도, 반달리즘)
- Ⓢ 염소노출

- Ⓢ 환경적 요인(예: 번개, 폭풍, 우박, 지진 등)

응급계획은 사람들의 안전, 장비의 보호와 교정, 고객 관련 사항을 염두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응급계획의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응급계획은 구급장비, 긴급연락망과 함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각 시설에는 최신 비상 연락망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 리스트에는 가까운 의원, 구급차 서비스, 병원, 구조 서비스, 경찰서, 소방서와 독극물 관제센터 등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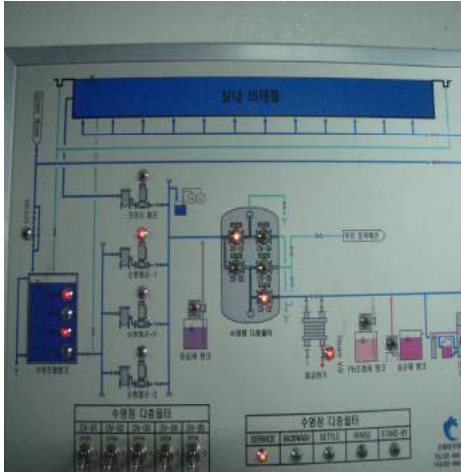
각 시설에는 다음의 구급 품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 표준 24항목 구급상자가 구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 들것과 담요
- Ⓢ 허리 혹은 목 부상자를 위한 표준 합판 받침대 및 부목
- Ⓢ 부상자의 구급치료를 위한 공간 혹은 방



## [8] 물놀이형 유기시설 · 기구 수처리시설 운영 매뉴얼

### ▣ 개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

관련 사진	특 징
	<p>1) 측정장치</p> <p>① 기능 수소이온농도(pH)상태와 잔류염소농도 상태를 표시하여 셋팅치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 약품펌프에 신호를 주어 펌프를 가동하게 하여 적정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 사항 월1회 이상 보정을 실시</p>
<p>PH, 잔류염소 표시창</p>	
	<p>2) 상태 표시창</p> <p>① 기능 여과기 밸브와 펌프가동여부, 트립여부를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 사항 스위치는 가동하였으나,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시 해당기기를 점검하여야 함</p> <p>③ 보수 사항 램프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함</p>
<p>상태 표시창</p>	

관련 사진	특징
	<p>1) 가동 스위치</p> <p>① 기능 여과기 밸브, 펌프가동, 약품주입, 교반기가동, 콤프레샤 가동 등의 기기류 작동 상태를 선택하는 기능을 함.</p> <p>② 가동시 주의사항 월 1회 이상 보정을 실시 * 여과기 밸브는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비상시 비상정지 버튼이 있으며 트립시 리셋버튼을 누른 후 재가동 함.</p>
<p>가동 스위치 판넬</p>	
	<p>2) 수동밸브 조작판넬</p> <p>① 기능 * 여과기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p> <p>② 가동시 주의사항 * 수동조작을 위해서는 펌프를 정지시킨 후 조작 스위치를 반자동에서 수동으로 조작 후 전원램프를 on 위치로 하고 밸브를 조작후 현장확인을 하여야 함.</p> <p>③점검사항 * 스위치를 동작하였는데도 밸브가 열리지거나, 닫히지 않으면 콤프레샤를 점검하고, 이후 쓸밸브의 이상유무를 점검함.</p>
<p>수동밸브 조작판넬</p>	

관련 사진	특 징
	<p>1) 자동 온도 조절기</p> <p>① 기능          풀장 내 현재 온도표시와 목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가동여부에 따라 온도를 올리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방법 및 주의사항          * 램프 점등여부에 따라 스팀밸브의 개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음.          * 여과기 역세 시 반드시 스팀공급 스위치를 off하여야 함.          * 스위치를 off하였는데도 온도가 오르면 밸브가 밀리는 현상이므로 열교환기 유입밸브를 점검함.          * 스팀공급전 환수 드레인 밸브를 열어 응축수를 방출시킨 후 스팀을 공급하여야함.</p>
열교환기 가동 스위치 및 온도표시	
	<p>2) 자동급수 스위치</p> <p>① 기능          * 발란스탱크에 물이 LO 수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전자변이 열려 급수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함          * 과도풀 밸브는 과도풀 발란스탱크의 세팅 수위 이상으로 물이 있으면 닫히고, 그 이하가 되면 밸브가 열리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사항          발란스탱크에 물이 세팅수위 이하로 떨어져도 급수가 되지 않을 시 전자변을 점검함.</p>
자동급수 스위치 및 과도풀 스위치	

관련 사진	특 징
	<p>1) 발란스 탱크</p> <p>① 기능 역세수 저장 및 폴장 내 물 공급 기능을 함.</p> <p>② 점검사항 * 여과기 역세시 발란스 탱크의 물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펌프가 공회전 하지 않도록 주의함. * 폴장 내 물을 교환시 폴 드레인 밸브를 열고, 발란스 탱크에서 펌프로 공급되는 주 밸브를 닫고, PVC관과 연결된 드레인 밸브를 열어 폴 내 물을 배수함. * 발란스 탱크의 물이 넘칠 경우 재빨리 PVC관과 연결된 드레인 밸브를 열어 발란스 탱크 수위를 낮춤.</p>
발란스 탱크	
	<p>2) 직모기 및 순환펌프</p> <p>① 기능 순환펌프는 발란스 탱크에서 여과기로 물을 보내주는 기능을 하고, 직모기는 폴장 내에서 발생된 이물질을 펌프에 손상이 없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함.</p> <p>② 점검사항 * 2회/주 이상 직모기를 open 후 헤어캣 처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 함. * 순환펌프 유출의 압력계이저를 수시로 확인하여 펌프의 이상유무를 점검 함. * 순환펌프의 압력은 3k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함.</p>
직모기 및 순환펌프	

관련 사진	특 징
	<p>1) 여과기</p> <p>① 기능  풀장 순환수 중 용존 되어 있는 유기물과 일부 색도, 악취를 제거 함.</p> <p>② 점검사항  * 유입부의 압력과 유출부의 압력차가 0.5 kg/cm<sup>2</sup> 이상일 경우 역세를 실시 함.  * 여과기의 가동은 풀장 내 물의 상태에 따라 24시간 가동 함.  * 여과기의 상태에 따라 수시 역세를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여 과 기</p>	
	<p>2) 판형 열교환기</p> <p>① 기능  *여과기를 통과한 순환수의 온도를 높여 주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사항  * 가동 전 반드시 환수 드레인 밸브를 열어 응축수 드레인을 실시 함.  * 역세시 스팀밸브 스위치의 개폐를 확인 후 역세를 실시 함.  * 워터햄머 발생시 스팀밸브 스위치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판형 열교환기</p>	



관련 사진	특징
	<p>1) 모래여과기</p> <p>① 기능 탕의 물을 순환시켜 정수하는 기능</p> <p>② 점검사항 * 1회/주 이상 직모기를 open 후 헤어캡 처를 청소함. * 1회/일 이상 여과기 역세 후 스팀을 공급 해 온도를 올림. * 여과기 내 air 유무를 점검 함. * 역세기 스팀공급 스위치를 off 후 역세를 하며, 역세기 밸브 손잡이의 위치는 사진과 반대가 되도록 천천히 조작 함.</p>
<p>모래여과기</p>	
	<p>2) 믹싱밸브</p> <p>① 기능 * 탕 내 물 공급 시 인위적으로 온수와 냉수를 혼합하여 적정온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함. * 급수로만 온도 조절시 믹싱밸브 후단의 온도계를 통한 온도조절을 함.</p> <p>② 점검사항 * 노란색의 온수와 파란색의 냉수를 2:1.5의 비율을 유지 하도록 믹싱밸브를 조절 함. * 탕의 온도가 높을 때 스팀공급을 중단하고 온수를 잠그고 냉수만을 공급하며, 해당 여과기를 역세하여 탕내 온도를 낮춤.(탕내 온도가 낮을 시 반대로 함)</p>
<p>믹싱밸브</p>	

관련 사진	특 징
	<p>1) 스팀 공급 밸브</p> <p>① 기능 모래 여과기를 통과한 순환수의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사항 * 역세 시 스팀 공급 스위치가 반드시 off 상태로 함. * 모래 여과기 가동 시에만 스팀이 공급 * 탱의 온도가 세팅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이패스 밸브의 닫힘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전자변 전후의 밸브를 닫고 전자변을 교체 함.</p>
<p>스 팀 공 급 밸 브</p>	
	<p>2) 산화제 발생 장치</p> <p>① 기능 * 수처리에 필요한 산화제를 생산하는 기능을 함.</p> <p>② 점검사항 * 트립 발생시 본체의 리셋 버튼을 눌러 복귀를 시킴. * 가압펌프 후단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 압력을 줄여줌. * 소금탱크의 소금량 과 필터를 점검하여 수시로 보충 및 교환을 해 줌.</p>
<p>산화제 발생 장치</p>	



## **6. 유원시설업 의무게시사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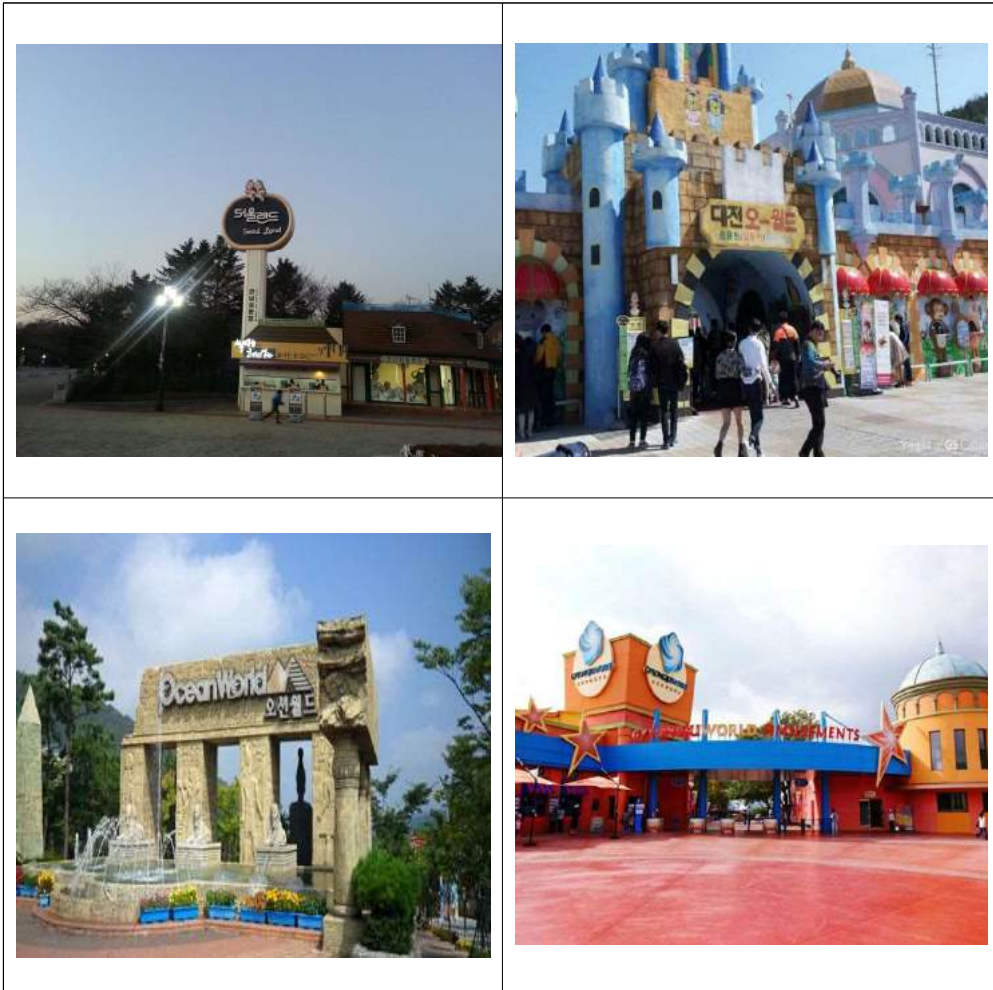


## 유원시설업 의무 게시사항 예시

- [1] 영업소 명칭(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 명칭)
- [2] 이용요금표
- [3]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사항
- [4] 안전점검표시판
- [5]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6] 물의 순환 횟수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7]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8] 수심표시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1. 영업소 명칭(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 명칭)

◎ 정문 또는 입구에 영업소 명칭을 게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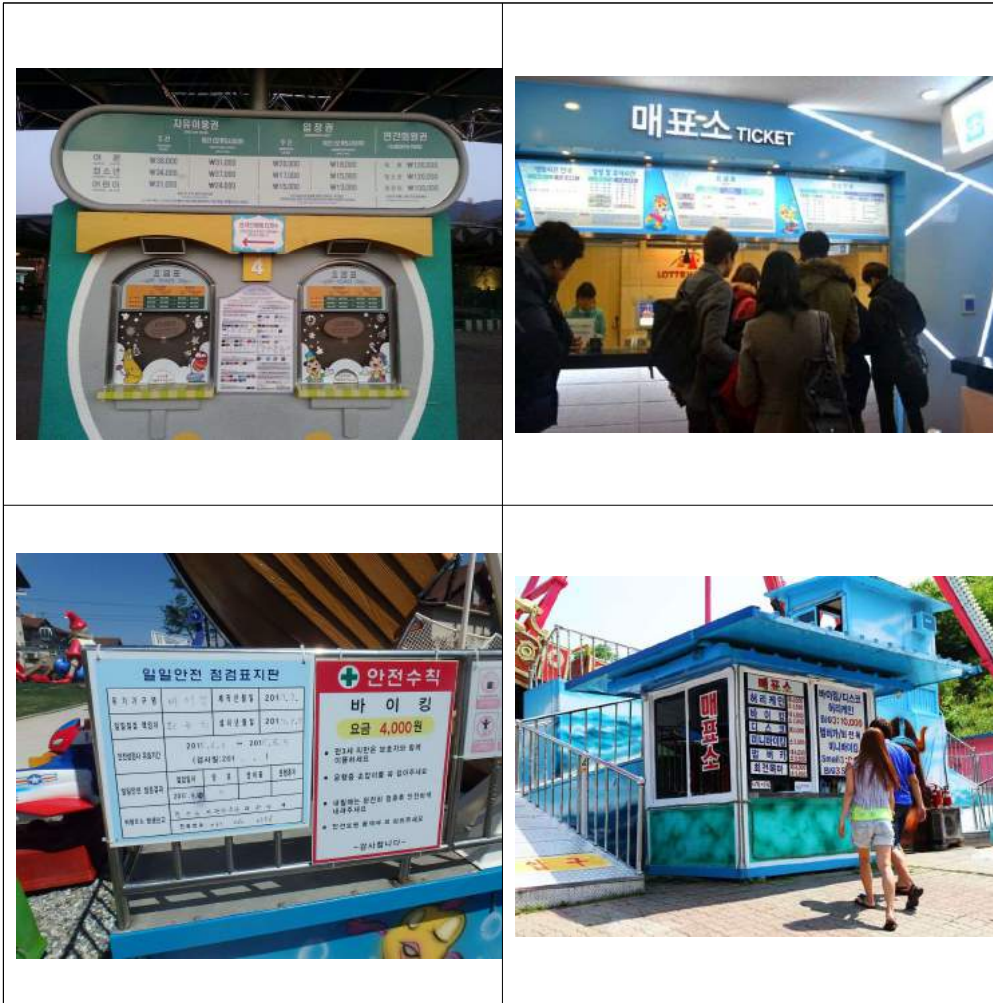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8.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이용요금표

◎ 이용요금표는 정문 매표소 또는 유기기구 옆에 게시하고 있음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사항

◎ 유기기구 탑승전 입구쪽에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 사항 게시함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4. 안전점검표시판

\* 안전점검표시판 권장 양식

### 일 일 안전 점검 표 시 판

유 기 기 구 명		안전성검사일자		
안전관리자		위험요인 발생신고		
일일안전점검 결과	점검일자	양 호	정비중	운행중지
	200 . . .	○		

※ 표 최소 규격 : 가로50cm×세로40cm이상으로 한다.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 3. 안전관리자의 임무

나. (생략),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생략),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놀이형 유기기구에 한함]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 ·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도록 한다.



## 6. 물의 순환 횟수 [물놀이형의 경우]

◎물의 순화 횟수 1일 3회이상 실시하는 사항 게시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도록 한다.

7.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물놀이형의 경우]

◎ 「수질검사 일자」 및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함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사설 ·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도록 한다.

## 8. 수심표시 [물놀이형의 경우]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5.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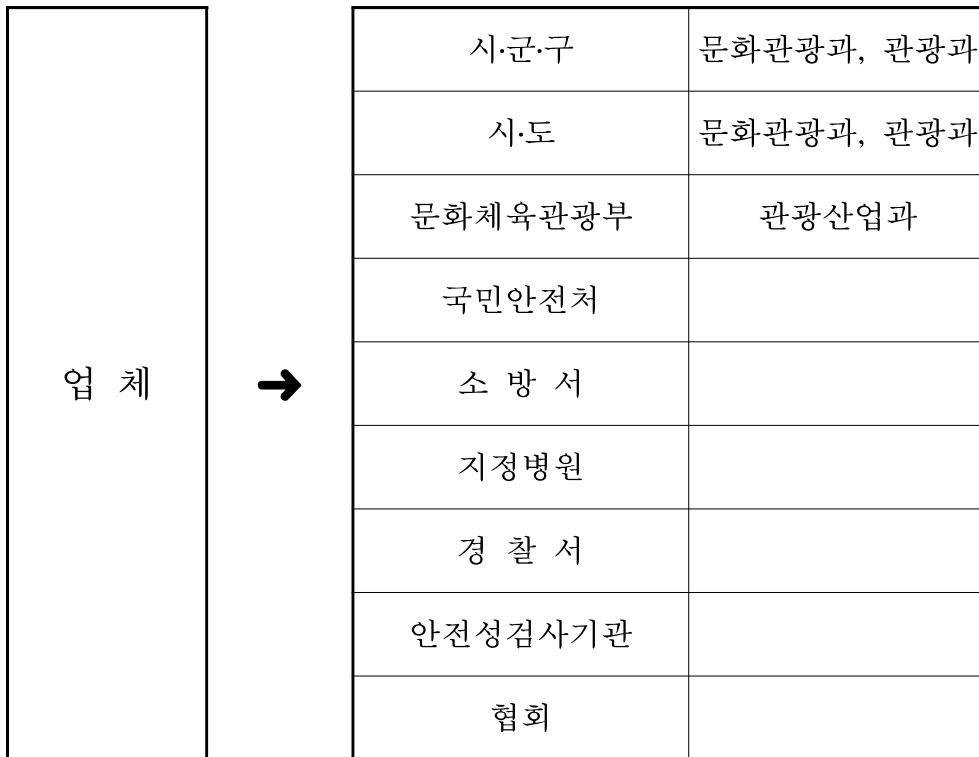
## 7. 유원시설업 의무 구비서류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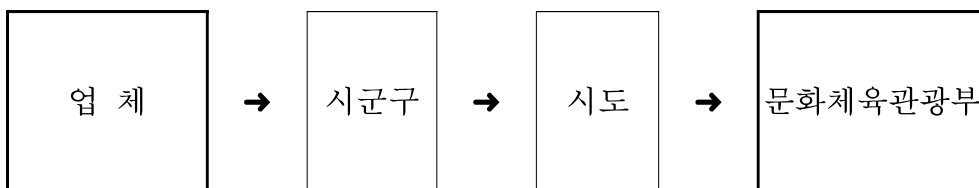
## 유원시설업 의무 구비서류 작성 예시

- [1] 유관기관 연락체계
- [2] 중대사고보고서 양식
- [3] 안전운행 표준지침
- [4]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시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5] 안전점검일지
- [6] 안전교육계획
- [7] 안전교육일지
- [8] 물놀이 안전관리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9]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 [10] 안전모니터링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에 해당]

1. 유관기관 연락체계



※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휴대폰번호를 기록해둔다



※ 야간 및 공휴일 연락처도 기록해 둔다



2. 중대사고보고서 양식

###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서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input type="checkbox"/>			
업소 현황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고 경위	사고 일자		사고 시각	
	사고 장소		사고 기구명	
	사고 개요			
	조치 사항			
	보 험			
사고 자 정보	사고자명		생년월일 (나이)	
	사고자 성별		연락처	
	사망여부	[ ] 생존 [ ] 사망	피해정도	
첨부 서류	1. 사고 관련 현장 사진 2.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3. 안전운행 표준지침(사례)

\* 유기기구명 : 바 이 킹

구 분	운 전 방 법	확 인 방 법
<p style="text-align: center;">운행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B 패널의 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3φ380V)</li> <li>*MSB 패널 주회로 차단기를 'ON'으로 놓는다.</li> <li>*작동조작실내 제어판의 제어스위치는 키를 이용하여 'ON'으로 전환한다. (컴프레샤 작동을 확인한다.)</li> <li>*제어판의 각종 램프의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li> <li>*안전 레바의 작동을 확인한다.</li> <li>*승용물의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li> <li>*방송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li> <li>*고객이 탑승치 않은 상태에서 공회전을 2회 이상 실시</li> <li>*최종 점검 실시</li> <li>*고객의 탑승</li> <li>*양쪽으로 적절한 인원 분배를 한다.</li> <li>*탑승 완료 및 안전 레버 확인</li> <li>*소지품은 안전선 이내에 보관 금지</li> <li>*출발을 알리는 신호를 한다.(벨,안내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표지판 및 운행가능 표지판의 확인(날짜, 상태, 운행여부)</li> <li>*컴프레샤가 작동하면 에어탱크 내에 공압이 완전히 생성될때까지 약 3분 정도 기다린다.</li> <li>*차량의 안전레버를 하나씩 점검하여야 한다.</li> <li>*로프상태 체크, 각종 볼트의 풀림 상태 체크 등.</li> <li>*탑승시설물 주변 장애 요소파악 (사각지대 확인, 공구, 부품, 사람의 접근 여부)</li> <li>*입·출구 시건 장치 확인</li> <li>*차량하단의 타이어 구동 상태 확인(비정상적 소음발생시 즉시 정지시키고 원인을 파악한다.)</li> <li>*안전 레버 이상유무, 기타</li> <li>*일일 체크 리스트 작성(1차), 13시 이후(2차)</li> <li>*운영근무자 주변 청소 및 조작실내 청소</li> <li>*탑승제한 및 탑승인원 준수</li> <li>*운행시 풍향으로 인한 소지품 및 탑승 시설물의 파손 예방</li> <li>*소지품 확인 철저</li> </ul>

구 분	운 전 방 법	확 인 방 법
<p>운행중</p>	<p>*2개의 동작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기종에 따라 작동방법 다름)</p>	<p>*운행 중 입·출구의 고객 출입을 수시로 확인한다. *운행 중 비정상적 소음 발생시 즉시 정지, 점검 후 운행. *고객의 탑승 상태를 확인한다. *올바른 자세로 탑승하는지 확인 *불안한 표정을 하고 탑승하는 고객의 확인 *운행중 운영근무자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p>
<p>운행후</p>	<p>*운행 종료를 알려준다.(벨, 안내 방송) *램바 오픈 버튼을 누른다.</p>	<p>*사각지대 확인철저(차량 하단부) *안전레버의 열림을 확인, 열리지 않을 경우 조치. *고객이 다음에 탑승할 일행을 기다릴 경우 탑승 시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안전레버 및 기타 사항을 점검한다.</p>
<p>비상시</p>	<p>*비상시(위급한 경우) -비상정지(EMERGENCY STOP) 사용 *비상시 -정지버튼(STOP BUTTON) 사용 *정전시 -MSB 판넬의 전원 'OFF'</p>	<p>*타이어 회전 중단 작용(급브레이크 효과)  *타이어의 회전 감소 작용 (일반적 일시 정지) *정전시 재출발을 막기 위해 전원을OFF 한다.  *탑승시설물의 타이어와 차량이 분리된 상태(제동력 없음)에서 안전바를 수동조작하여 열어야 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차시킨다. 이 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된다. *환자 발생시 머리, 목, 척추 등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동해서는 안되며 즉시 간호사에게 연락한다.</p>

4.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목차 샘플

## 2000년 00랜드 안전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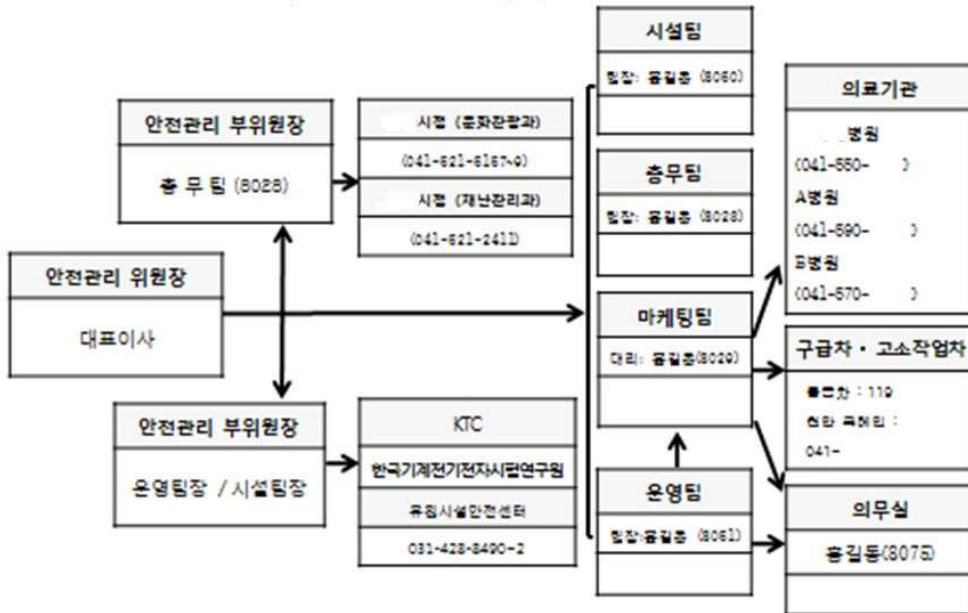
### I. 업체현황

### II. 안전관리 세부계획

1. 기본목표
2. 방침
3. 중점추진사항
  - 3.1. 비상연락체계,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 3.2. 비상시 조치계획
  - 3.3. 의무실운영
  - 3.4. 유기기구 안전점검계획
  - 3.5. 유기기구 연간 유지보수 계획
  - 3.6. 안전사고발생시 조치요령

## 업 체 명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

※ 바이킹 사례

■ 개요

바이킹 시스템은 내포되어 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고객에게 안전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위해 비상시 조치업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업무범위

- 유기사설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지(기계적인 고장, PLC 시스템에 의한 고장, 환경오염)
- 정전으로 인한 운행중지
- 화재로 인한 운행중지
- 지진, 기상악화(낙뢰, 폭우, 폭설)로 인한 운행중지 등

■ 비상조치 방법

발생 상황	비상조치 방법	
	유기사설 승물이 출발 전 탑승장에 있는 경우	유기사설 승물이 운행 중인 경우
고장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정지버튼 작동</li> <li>▪ 승물이 스윙이 정지되지 안 될 경우 자유진자 운동에 의해 승용물이 정지하도록 함(유기사설 정비부서에 연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탑승대기 안전문 개방(작동이 안 될 경우 수동)</li> <li>▪ 승물탑승 고객 출구쪽으로 퇴장 유도</li> <li>▪ 탑승고객 소지품 확인</li> <li>▪ 고객 완전퇴장 조치 확인</li> <li>▪ 출입구 차단조치 확인(입구 점검안내간판 부착, 출구문 닫기)</li> <li>▪ 운전조작 동력 차단 확인</li> <li>▪ 유기사설(기구) 정비부서 연락, 대기</li> </ul>	
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정지버튼 작동</li> </ul>

<p><b>발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안내 멘트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정전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탑승대기 안전문 개방(작동이 안 될 경우 수동)</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li> <li>▪ 비상정지버튼으로 승물이 스윙이 정지되지 안 될 경우 자유진자 운동에 의해 승용물이 정지하도록 함(유기기설 정부부서에 연락)</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승물탑승 고객 출구쪽으로 퇴장 유도</li> <li>▪ 탑승고객 소지품 확인</li> <li>▪ 고객 완전퇴장 조치 확인</li> <li>▪ 출입구 차단조치 확인(입구 점검안내 간판 부착, 출구문 닫기)</li> <li>▪ 운전조작 동력 차단 확인</li> <li>▪ 유기기설(기구) 정비부서 연락, 대기</li> </ul>		
<p><b>화재 발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승물 탑승 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ul>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 안전문 개방(작동이 안 될 경우 수동)</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승물 탑승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정지버튼 작동</li> <li>▪ 화재안내 멘트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탑승대기지역에 계신 고객은 들어오신 입구 쪽으로, 승물에 탑승하고 계신 고객은 출구 쪽으로 차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비상정지버튼으로 승물이 스윙이 정지지 안 될 경우 자유진자 운동에 의해 승용물이 정지하도록 함(유기기설 정부부서에 연락)</li> <li>▪ 화재발생 신고 (☎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비상연락망 의거, 소방차·구급차 출동요청</li> </ul> </li> <li>▪ 고객 완전대피 확인</li> <li>▪ 유기기설 메인동력 차단 확인 : 전기 화재 시 운전동력 우선차단 조치</li> <li>▪ 운행근무자 화재현장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 초기 진화 → 옥내외 소화전 개방·살수 → 화염방향 반대로 고객 유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승물 탑승 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 안전문 개방(작동이 안 될 경우 수동)</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승물 탑승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승물 탑승 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 안전문 개방(작동이 안 될 경우 수동)</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퇴장 유도</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승물 탑승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ul>		

	<p>(유독가스 질식위험 예방) → 화재주변 고객통제 → 소방차 진입통로 확보 → 방화문 절대 개폐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피해손님 병원 후송 조치</li> </ul>
지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대기 안전문 개방(작동이 안 될 경우 수동)</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킹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정지버튼 작동</li> <li>▪ 지진 안내멘트 “고객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탑승대기지역에 계신 고객은 들어오신 입구 쪽으로, 승물에 탑승하고 계신 고객은 출구쪽으로 차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승물 탑승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li>▪ 지진발생 신고 (☎ 119) - 회사 비상연락망 의거, 소방차·구급차 출동 요청</li> <li>▪ 고객 완전대피 확인</li> <li>▪ 유기시설 메인동력 차단 확인</li> <li>▪ 지진피해손님 병원 후송 조치</li> </ul>
낙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정지버튼 작동</li> <li>▪ 낙뢰 안내멘트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낙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탑승대기지역에 계신 고객은 들어오신 입구쪽으로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낙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승물 탑승 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li>▪ 고객 완전대피 확인</li> <li>▪ 유기시설 메인동력 차단 확인: 전기 화재 시 운전동력 우선차단 조치</li> <li>▪ 낙뢰피해손님 병원후송 조치</li> </ul>
폭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정지버튼 작동</li> </ul>



<p>· 폭우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설·폭우 안내멘트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폭설·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탑승대기지역에 계신 고객은 들어오신 입구 쪽으로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고객 안심안내 멘트 “승물 탑승 고객 여러분 폭설·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안전하게 대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전밴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li> <li>▪ 탑승대기지역 고객은 입구로 대피 유도</li> <li>▪ 승물 탑승 고객은 출구로 대피 유도</li> <li>▪ 고객 완전대피 확인</li> <li>▪ 유기시설 메인동력 차단 확인: 전기 화재 시 운전동력 우선차단 조치</li> </ul>
---------------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의 경우)



실내존		다이내믹존		서핑마운트		익스트림존		메가슬라이드존		슈퍼익스트림존	
직원	6	직원	4	직원	3	직원	4	직원	3	직원	3
A/R	38	A/R	43	A/R	36	A/R	38	A/R	39	A/R	21

5. 안전점검일지

일 일 안전 점검 일 지

유기기구 : 바이킹(VIKING)

2000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	담	안전관리자
재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운전사항	정지버튼 및 램바정상작동 이상유무		
	타이머 적정운행시간 세팅 여부		
	뿔대 및 로프연결 및 FRP 파손여부		
	구동 모터 소음 및 타이어 마모 상태		
	"0"(원점위치) 정상위치 여부		
2.일반사항	벨 버튼작동 및 판넬 벨작동상태		
	탑승안내, 각종 안내 표지판		
	소화기 정위치 이상유무		
	승하차 지역 발판 이상유무		
3.승용물	방승 시스템 이상유무		
	뿔대 로프 고정상태 및 팀버플레이트 표면균열상태		
	기동과 프레임의 균열상태 및 연결부분 볼트 조임상태		
	램바 패딩의 안전성 여부		
4.기계장치	램바 작동상태 (열림/닫힘)		
	구동 TIRE의 마모 여부(흠깊이 2mm이상) 및 공기압 상태		
	에어백쿠션의 공기압(5.5BAR)		
	기어박스 오일량 및 누유상태(필요시 보충)		
	클러치 미끄럼여부 및 마모상태, 기어박스 온도과열 여부		
	각 부분(구동부) 볼트,너트 및 안전핀 체결 상태		
5.전기장치	컴프레샤 작동 및 공압 배관 누설여부		
	솔레노이드 밸브(SOLENOD VALVE) 작동상태, 표준압력 점검		
	퓨즈 이상여부 및 각종 보드의 이상유무		
6.상부 보	단자, 콘덴서, 리미트 스위치 연결 볼트 잠금 상태		
	모터 전압 및 전류, 모든 스위치 작동상태		
7.기 타	인코더 상태 및 슬립 링, 카본 브러쉬 상태		
고 발 시 장 생 간	정지 시간	시 분 ~ 시 분 까지 (총 분)	
	조치 자	○ ○ ○	(인)
특이사항 및 정비 고장 현황			

범 레 : 양호; ○, 보완; △, 부적합; ×, 조치; Y

## 6. 안전교육계획

### 1) 교육계획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계획의 유무 및 그 적부가 교육효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 세부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있어서 특히, 안전·인사·교육훈련 부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 등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투자가 따라야 한다.

20〇〇년 안전교육 계획서

구 분	항 목	주 기	시 간	일 정 (월)						교육 방법	비 고	
				1	2			11	12			
사내교육	운전자교육	일일	10분	→	→	→	→	→	→	→	운전책임자	
외부교육	유기시설 OJT교육	2회/년	8			→				→	교육기관	
·												
·												
·												
·												

교육의 목표는 관련법 상에 정해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근원적인 유기시설 사고예방은 물론 업체 직·간접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서 업체경쟁력 강화 및 유기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유기사설 사고 통계·사례 및 정보에 관한 사항
- 나. 종사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 다.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라. 안전의 규정·기준·제도에 관한 사항
- 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등이다.

## 2) 안전교육 세부계획

작성된 안전교육계획서에 따라 각 항목별 유기사설 안전교육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신규채용시 안전교육계획

항 목	내 용
1. 명칭,목적	①명칭 : 종사자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②목적 : 안전지식, 안전기능, 안전태도의 종합능력을 갖도록 하여 안전행동을 유도한다.
2. 교육시기	○월 ○일 신규사원 채용시
3. 장 소	강의실과 현장
4. 교과목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령에 관한 사항 : 1시간</li> <li>◦ 사고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 2시간</li> <li>◦ 유기사설,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시간</li> <li>◦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2시간</li> <li>◦ 안전장치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시간</li> <li>◦ 유기사설 안전관리규정과 종사자 준수사항 : 1시간</li> </ul>
5. 강 사	안전관리 관련 강사
6. 교 재	신규채용시 교육교본, 슬라이드, 차트
7. 교육방법	①강의 ②실습 ③토의
8. 효과평가	설문 조사
9. 기 타	

7. 안전교육일지

# 안 전 교 육 일 지

결 재	○ ○	○ ○	○ ○

교육일시	년 월 일		교육시간	: ~ : ( 시간)			
교육강사			이수인원	명			
교육종류			교육장소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교 육 이 수 현 황							
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교육이수 인원이 많을 경우 뒷면을 활용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물놀이형의 경우]

### CONTENTS

#### 1. 개요

- ① 위치
- ② 연적
- ③ 시설물 배치도
- ④ 기준별 채원 현황  
- 17개소 관리

#### 2. 안전관리현황

- ① 안전관리자 현황
-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임무
- ③ 유기사설 안전관리 조직도
- ④ 환자이송 의무 FLOW
- ⑤ 화재발생시 FLOW
- ⑥ 놀이시설의 고장 또는 오작동 시 대체요령
- ⑦ 고적동선 내 시설물 파손 및 이물질 발견 시
- ⑧ 순간정전이나 정전 시 대체요령
- ⑨ 기상악화로 인한 실외 운영 중지 시
- ⑩ 돌풍이나 기타비상에 의한 사고발생 및 대피 시
- ⑪ 고적 상호간 의견 충돌 상황 시
- ⑫ 성추행 및 특수사항
- ⑬ 의무실 운영현황
- ⑭ 재난관리 조직표
- ⑮ 사고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3. 안전교육

- ① 전직원 안전교육
- ② 정비 담당자 교육
- ③ 일용 근로자 및 신규 교육
- ④ 안전교육 세부 계획 및 교육일지 작성
- ⑤ 외부 기관 교육
- ⑥ 시설형 및 직원 위험관리
- ⑦ 유기사구 안전점검 계획

#### 4. 안전정비 및 점검

- ① 일일 안전점검
- ② 주간 안전점검
- ③ 월간 안전점검
- ④ 반기 및 년간 안전점검
- ⑤ 특별 안전점검

#### 5. 전 직원 안전의식 향상제도

- ① 안전스티커 제작 발부
- ② 부서 자율 안전점검 제도
- ③ 안전 제안 용 제도
- ④ 안전 지도 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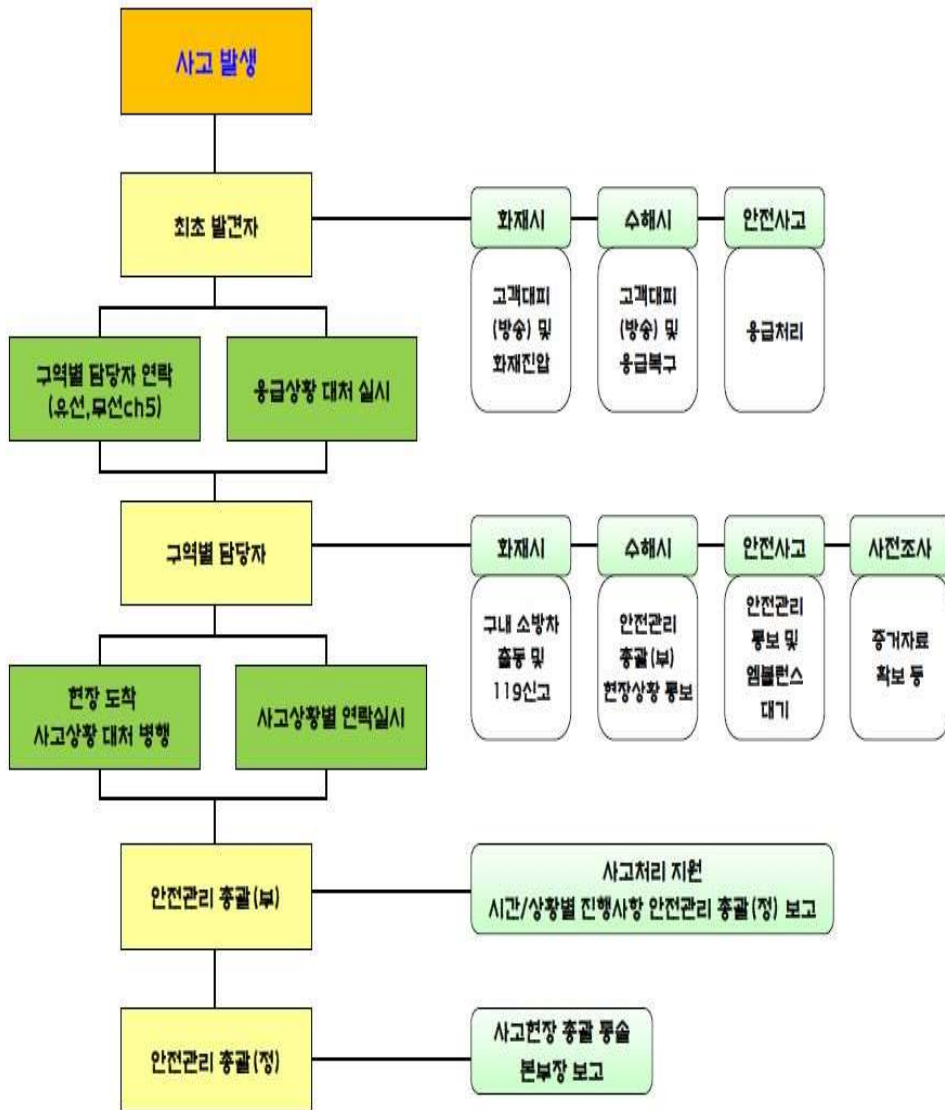
9.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물놀이형의 경우]



목 차 INDEX	
<p><b>I. 인명구조</b></p> <p>1 인명구조의 기본개념</p> <p>2 인명구조의 목적</p> <p>3 인명구조요원의 임무</p>	<p><b>II. 응급처치</b></p> <p>1 응급처치란?</p> <p>2 현장응급활동 시 3원칙</p> <p>3 응급처치자의 법적보호</p> <p>4 파크 내 환자이송 FLOW</p> <p>5 의무실 운영현황</p>
<p><b>III. 기본 인명구조술</b></p> <p>1 기본 인명 구조술이란?</p> <p>2 기도 폐쇄</p> <p>3 심폐소생술</p> <p>4 자동제세동기사용법</p>	<p><b>IV. 응급처치 실습</b></p> <p>1 하임리히법</p> <p>2 심폐소생술</p> <p>3 자동제세동기</p> <p>4 기타 상황별 대처 요령</p>



10. 안전모니터링계획 [물놀이형의 경우]





## 8.유원시설 담당 지자체 현황



## □ 유원시설 담당 지자체 현황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25)			
종로구	문화관광국	관광체육과	02-2148-1866
중구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02-3396-4632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02-2199-7255
성동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02-2286-5208
광진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02-450-7584
동대문구	행정국	문화체육과	02-2127-4706
중랑구	행정국	문화체육과	02-2094-1836
성북구	교육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02-2241-2607
강북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02-901-6204
도봉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02-2091-2264
노원구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02-2116-3777
은평구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02-351-6504
서대문구	경제재정국	지역활성화과	02-330-1127
마포구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	02-3153-8393
양천구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과	02-2620-3405
강서구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02-2600-6634
구로구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과	02-860-2278
금천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02-2627-1453
영등포구	행정국	문화체육과	02-2670-3126
동작구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과	02-820-2943
관악구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	02-879-5614
서초구	문화행정국	문화체육관광과	02-2155-6220
강남구	기획경제국	관광진흥과	02-3423-5553
송파구	행정문화국	국제관광과	02-2147-2107
강동구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02-3425-5253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관광개발추진단 (051-888-6705)			
중구	총무국	문화관광과	051-600-4084
서구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051-240-4081
동구	총무국	문화체육관광과	051-440-4811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영도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51-419-4061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문화관광체육과	051-605-4521
동래구	총무국	문화공보과	051-550-4854
남구	총무국	문화체육과	051-607-4067
북구	총무국	문화체육과	051-309-4064
해운대구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051-749-4085
사하구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051-220-4061
금정구	총무국	문화공보과	051-519-4081
강서구	총무복지국	총무과	051-970-4121
연제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51-665-4064
수영구	총무국	문화공보과	051-610-4372
사상구	행정지원국	문화교육홍보과	051-310-4065
기장군	교육행복국	문화관광과	051-709-4081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053-803-3893)			
중구	도시관광국	관광개발과	053-661-2198
동구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과	053-662-4073
서구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053-663-2166
남구	안전행정국	문화홍보과	053-664-2172
북구	행정국	문화체육과	053-665-2175
수성구	-	일자리관광사업단	053-666-4313
달서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053-667-2191
달성군	정책지원단	관광과	053-668-2483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32-440-4064)			
경제자유구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032-453-7944
부평구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032-509-6422
계양구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과	032-450-5864
서 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032-560-5934
중 구	-	관광진흥실	032-760-6494
동 구	복지환경국	관광개발과	032-770-6924
남 구	자치안전행정국	문화예술과	032-880-4302
연수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32-749-7295
남동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32-453-2143
강화군	-	문화관광과	032-930-3523
옹진군	-	관광문화과	032-899-2213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2-270-3972)			
동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42-251-4204
중구	총무국	문화체육과	042-606-6284
서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42-611-6472
유성구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042-611-2127
대덕구	자치행정국	홍보문화체육과	042-608-6573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52-229-3881)			
중구	-	문화공보실	052-290-3693
남구	복지환경국	고래관광과	052-226-3401
동구	행정지원국	관광과	052-209-3366
북구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052-241-7392
울주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052-229-7641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관광진흥과 (062-613-3661)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062-608-2402
서구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062-360-7669
남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062-607-2323
북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062-510-1399
광산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062-960-8254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031-8008-3332)			
수원시	문화교육국	관광과	031-228-2411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031-729-2994
고양시	교육문화국	신한류관광과	031-8075-3403
부천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031-625-5026
용인시	행정문화국	문화관광과	031-324-2102
안산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031-481-3436
안양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31-8045-2449
남양주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31-590-4245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관광과	031-828-2393
평택시	기획조정실	문예관광과	031-8024-3232
시흥시	주민생활서비스국	문화관광과	031-310-6743
화성시	교육문화국	관광진흥과	031-369-6016
광명시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	031-2680-2193
파주시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031-940-4363
군포시	-	홍보실	031-390-0747
광주시	복지교육국	문화관광과	031-760-2723
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031-980-2481
이천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31-645-3667
구리시	-	문화예술과	031-550-8355
양주시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031-8082-5664
안성시	-	홍보담당관	031-678-2492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포천시	행복도시건설단	관광사업과	031-538-3364
오산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031-8036-7604
하남시	안전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31-790-5481
의왕시	시민서비스국	문화체육과	031-345-2533
여주시	안전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031-887-2086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031-860-2067
양평군	문화복지국	홍보실	031-770-2067
과천시	-	문화체육과	02-3677-2476
가평군	-	문화체육관광과	031-580-2067
연천군	-	문화관광체육과	031-839-2061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개발과 (033-249-2775)			
춘천시	경제관광국	관광정책과	033-250-3242
원주시	경제문화국	관광과	033-737-5102
강릉시	관광문화국	관광과	033-640-5128
동해시	안전도시국	관광과	033-539-5432
태백시	-	관광문화과	033-550-2081
속초시	-	관광과	033-639-2199
삼척시	자치행정국	관광정책과	033-570-3544
홍천군	-	문화관광과	033-430-2742
횡성군	-	기획감사실	033-340-2545
영월군	-	문화관광과	033-370-2140
평창군	-	문화관광과	033-330-2056
정선군	-	문화관광과	033-560-2370
철원군	-	관광문화과	033-450-4796
화천군	-	관광정책과	033-440-2542
양구군	-	경제관광과	033-480-2183
인제군	-	문화관광과	033-460-2082
고성군	-	관광문화체육과	033-680-3352
양양군	-	문화관광과	033-670-2251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043-220-3985)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043-201-2044
충주시	문화복지국	관광과	043-850-6742
제천시	전략사업단	관광과	043-641-6707
보은군	-	문화관광과	043-540-3394
옥천군	-	문화관광과	043-730-3413
영동군	-	문화체육관광과	043-740-3208
증평군	-	문화체육과	043-835-4141
진천군	-	문화체육과	043-539-3623
괴산군	-	문화관광과	043-830-3453
음성군	행정복지국	문화홍보과	043-871-3402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단양군	-	문화관광과	043-420-2555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41-635-3889)			
천안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41-521-5159
공주시	시민국	문화관광과	041-840-8232
보령시	자치행정국	관광과	041-930-4544
아산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41-540-2689
당진시	안전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041-350-3601
서산시	주민지원국	문화관광과	041-660-2498
논산시	친절행정국	관광체육과	041-746-5404
계룡시	-	문화체육과	042-840-2402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041-940-2491
홍성군	-	문화관광과	041-630-1362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042-750-2393
부여군	-	문화관광과	041-830-2241
서천군	-	문화관광과	041-950-4018
예산군	-	문화관광과	041-339-7391
태안군	-	관광진흥과	041-670-2766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63-280-3334)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063-281-5045
군산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063-454-3362
남원시	총무국	문화관광과	063-620-6177
김제시	-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133
정읍시	농생명전략사업단	관광개발과	063-539-5437
익산시	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	063-859-5276
무주군	-	문화관광과	063-320-2552
임실군	-	문화관광체육과	063-640-2345
고창군	-	문화관광과	063-560-2457
부안군	-	문화관광과	063-580-4449
순창군	-	문화관광과	063-650-1631
완주군	-	문화관광과	063-290-2623
진안군	-	문화체육과	063-430-2230
장수군	-	문화체육관광사업소	063-350-5557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061-286-5221)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관광과	061-659-3881
순천시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061-749-4634
나주시	총무국	관광문화과	061-339-8594
목포시	관광경제수산업국	관광과	061-270-8217
곡성군	-	관광과	061-360-8360
구례군	-	문화관광과	061-780-2543
보성군	-	문화관광과	061-850-5213
화순군	-	문화관광과	061-379-3533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강진군	-	문화관광과	061-430-3318
함평군	-	문화관광체육과	061-320-3364
장성군	-	문화관광과	061-390-7242
담양군	-	관광레저과	061-380-3143
고흥군	-	문화관광과	061-830-5347
장흥군	-	문화관광과	061-860-0224
해남군	-	문화관광과	061-530-5329
영암군	-	문화관광체육과	061-470-2259
무안군	-	관광문화과	061-450-5464
영광군	-	문화관광과	061-350-5751
완도군	-	관광정책과	061-550-5153
진도군	-	관광문화과	061-540-3417
신안군	-	문화관광과	061-240-8356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53-950-3018)			
포항시	창조경제국	국제협력관광과	054-270-2243
경주시	문화관광실	관광컨벤션과	054-779-6084
김천시	안전행정국	새마을문화관광과	054-420-6824
안동시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054-840-6393
구미시	정책기획실	문화예술담당관실	054-480-6611
영주시	자치안전국	관광산업과	054-639-6613
영천시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과	054-330-6069
상주시	안전행정국	관광진흥과	054-537-7103
문경시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054-550-6392
경산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54-810-5358
군위군	-	문화관광과	054-380-6230
의성군	-	문화관광과	054-830-6064
청송군	-	문화관광과	054-870-6238
영양군	-	문화관광과	054-680-6432
영덕군	-	문화관광과	054-730-6533
청도군	-	문화관광과	054-370-6376
고령군	-	관광진흥과	054-950-6652
성주군	-	문화관광과	054-930-8373
칠곡군	지역개발국	미래전략과	054-979-6093
예천군	-	문화관광과	054-650-6902
봉화군	-	문화관광과	054-679-6343
울진군	-	문화관광과	054-789-6902
울릉군	-	문화관광체육과	054-790-6392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55-211-4615)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진흥과	055-225-3643
	의창구	문화위생과	055-212-4065
	성산구	문화위생과	055-272-4064

기초지자체	담당국	담당부서(과)	전화번호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055-220-4064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055-225-3643
	진해구	문화위생과	055-225-4960
진주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055-749-2052
통영시	행정자치국	관광과	055-650-4614
사천시	행정국	관광교통과	055-831-2726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055-330-3245
밀양시	행정국	문화관광과	055-359-5644
거제시	해양조선관광국	관광과	055-639-4164
양산시	복지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055-392-2563
의령군	-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43
함안군	-	문화관광과	055-580-2343
창녕군	-	생태관광과	055-530-1533
고성군	-	문화관광체육과	055-670-2233
남해군	-	문화관광과	055-860-8615
하동군	-	문화관광실	055-880-2374
산청군	-	문화관광과	055-970-6423
함양군	-	문화관광과	055-960-4580
거창군	-	문화관광과	055-940-3423
합천군	-	관광진흥과	055-930-375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과 (064-710-3344)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진흥과	064-728-2762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064-760-2863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44)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44



## **9.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업체 현황**



## □ 유원시설업 업체 현황

### ■ 종합 유원시설업 현황

[2015.12.31.현재]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	어린이대공원 아이랜드(주)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능동)	02-454-4442	정재영	
2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02-411-3203	박동기	
3	용마공원놀이동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69-1번지	-	현명수	장기 휴업
4	대전오월드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70 (사정동)	042-580-4831	박남일	
5	이월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두류동)	053-620-0170	유병천	
6	스파밸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891	053-608-5068	홍호용	
7	광주패밀리랜드	광주 북구 우치로 677 (생용동)	062-607-8000	임형택	
8	(주)원마운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031-961-6171	석준호	
9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031-320-5887	김봉영 외1	
10	캐리비안베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554-1	031-320-5885	김봉영 외1	
11	한국민속촌 가족공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07	031-288-0000	정원석	
12	웅진플레이도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	032-310-8110	문무경	
13	하니랜드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02-1	031-945-2250	노상덕	
14	썬밸리호텔 워터파크	경기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연양동)	031-880-3871	이신근 외1	
15	(주)서울랜드	경기 과천시 광명로 181 (막계동)	02-509-6000	최형기	
16	육림랜드	강원 춘천시 영서로 2965 (사농동)	033-252-7226	조성만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7	(주)하이원추추파크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99	033-550-7788	오한동	
18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 20	033-630-5500	홍원기	
19	오션700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70-2	033-339-0101	신만희	
20	블루캐니언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운리 1089-5	033-330-6000	홍석규	
21	용평피크아일랜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7-3	033-330-5757	정창주	
22	(주)대명레저산업 오션월드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033-439-7043	안영혁	
23	천안상록리조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041-560-9055	최재식	
24	천안리조트PFV(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 로 200	041-906-7000	김현철	
25	대천필랜드	충남 보령시 대해로 860 (신후동)	041-932-9860	임정애	
26	JFK대천 위터파크호텔	충남 보령시 대해로 876 (신후동)	041-930-2000	박상면	
27	금호리조트(주) 아산스파비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157번 길 67	041-539-2041	박상배	
28	일상해양산업 주식회사	전남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일원	1588-0377	김종관	
29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전남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산 219-1번 지	061-339-5040	박재천	
30	금호리조트(주)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 510-1	061-370-5233	박상배	
31	(주)삼봉개발 경주월드	경북 경주시 보문로 544 (천군동)	054-745-7711	최건환	
32	블루원위터파크	경북 경주시 보불로 391	1899-18888	윤재연	
33	금오랜드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341 (남통동)	054-451-8500	박창하	
34	판타시온리조트	경북 영주시 회현로 434	054-630-5500	박찬성	휴업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35	썬비치위터파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로 206	055-548-7355	윤장식	
36	가야개발(주) 가야랜드	경남 김해시 인제로 368	055-536-6331	김영섭	휴업
37	롯데위터파크	경남 김해시 장유로 555	055-900-0501	박동기	
38	오션베이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거제대로 2660	055-733-7311	안영혁	
39	통도환타지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7길 68	055-379-7125	김은수	
40	부곡하와이랜드	경남 창원군 부곡면 거문리 195-7	055-536-6331	가나자와 겐지	

■ 일반 유원시설업 현황

[2015.12.31현재]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	APM놀이랜드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35 헬로우에이피엠 지하1층 160호	070-8847-4821	김문일	
2	현대아이파크몰 워터파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4층 (한강로 3가, 현대아이파크몰 이벤트행사장)	02-322-5864	김강식	
3	워커힐 리버파크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17 (광장동)	02-450-4425	문종훈	
4	신촌크레이지디팡존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9-81	010-3741-4515	최태현	
5	디팡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2	010-6747-4734	손은아	
6	씨랄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64, 지하 2층 (문래동 3가)	02-2628-9015	고승희	
7	디스코팡팡 타가존 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59길 22-11 (신림동)	02-882-0303	유보미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02-417-4472	이창섭	
9	뽀로로파크 잠실롯데월드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070-4343-2832	최종일 외1	
10	디스코팡팡 노리존 천호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7번길 18, 지하 1층 (천호동)	02-471-4807	이귀순 외1	
11	노리존 노원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30-5번지 지하5호	02-978-5851	전기석	
12	태종대유원지 사업소	부산 영도구 전망로 24 (동삼동)	051-860-7870	박호국	
13	삼보게임랜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 61, 104, 105, 111 일부호 (부전동)	051-667-7898	이건동	
14	서면디스코랜드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99번길 38 (전포동)	010-2920-4756	강상우	
15	정글X4D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 (초읍동)	-	김영진	휴업
16	일성랜드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55	010-6657-5648	오은순	
17	신나는디스코팡팡	부산 남구 용소로 7번길 6-1 (대연동)	010-2857-7694	이은호	
18	아이스온아트	부산 북구 덕천동 763번지 일원	051-333-3238	김영식	
19	(주)신세계센텀시티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051-745-1605	장재영	
20	광안비치랜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17번길 16	051-759-8986	전진희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21	호텔아쿠아팰리스 지점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25, 7층	051-790-2392	박재옥	
22	위드엔터테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정관로 1133 (신세계 아울렛)	010-3011-5000	홍혜원	
23	(주)씨씨앤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롯데 아울렛)	070-7758-8674	천영문	
24	남포디스코팡팡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18(남포동6가) 1층	-	이은호	
25	골든스파 (와이제이레저산업)	인천 중구 용유서로 379 (을왕동)	032-745-9037	정종인	
26	월미놀이동산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37-1	032-772-3090	공은선	
27	마이랜드	인천 중구 월미로 234번길 7	070-8801-8525	김홍준	
28	비취랜드	인천 중구 월미로 234번길 1	032-777-1138	장성호	
29	월미테마파크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81	070-8801-8525	김기순	
30	(주)슬링샷코리아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242번길 7	010-9413-6159	이영옥	
31	드림랜드	인천 중구 월미로 237	032-765-7556	김영식	
32	디스코팡팡	인천 남동구 성말로 9, 1층 112호 (구월동, 이노프라자)	032-427-1071	홍경숙 외1	
33	소래테마파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3층 (논현동, 소래종합어시장)	-	장정부	기구 폐기
34	로얄워터파크	인천 강화군 길상면 보리고개로 174	032-427-2000	노명선	
35	누리산업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76-51	010-2070-9070	유봉화	
36	나눔펜션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7-21	032-937-0700	박인수	
37	산들바다펜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44-26번지	032-937-5634	김철희	
38	천사의아침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44-22번지	032-937-9612	최영애	
39	노리존	대전 중구 중교로 89 (인행동)	010-3433-0052	백일현	
40	맥스팡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455 (은행동)	-	강상욱	휴업
41	야시디팡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9 (봉산동)	010-9448-9548	변재영 외1	
42	플레이존	대구 중구 동성로2길 21-5, 4층(봉산동)	-	최승호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43	동촌놀이터	대구 동구 효목동 1114-1	010-3802-5453	김태석	
44	동촌파크랜드	대구 동구 효동로 2길 68	053-958-8080	이태규	
45	동촌랜드	대구 동구 효목동 1113	010-7128-7143	안인자	
46	(주)에음기획	대구 동구 팔공로 49번길 16	1661-6176	박일승	
47	(주)수성랜드	대구 수성구 용학로 35-5 (상동)	053-762-6622	김영미	
48	(주)수성파크랜드	대구 수성구 용학로 35-3 (상동)	010-8583-8401	황재복	
49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6 (황금동)	053-760-0659	한창화	
50	온천엘리바덴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8-6 (상인동)	053-644-7000	나우태	
51	두류수영장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성당동)	053-623-2150	김호경	
52	허브랜드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03	051-973-8463	금명하	
53	동림기업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2	-	황유탁	
54	노리존	광주 동구 충장로안길 40-2 (황금동)	010-7734-8009	박효정	
55	조이플렉스 광주점 (주)루덴스	광주 동구 중앙로 160번길 16-7 (블로동)	062-232-3650	이상록	
56	(주)해피랜드	광주 북구 하서로 52 (운암동)	062-528-2327	김형태	
57	노리존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44	010-9632-6985	서은수	
58	롯데쇼핑(주)	울산 남구 삼산로 282 (삼산동)	052-960-2610	이원준	
59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울산 남구 대공원로 94 (옥동)	052-226-0340	최병권	
60	범서온천지지 유티피아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704	052-246-1245	김동연	
61	자수정랜드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자수정로 112	010-3587-1712	안재모	
62	기차여행	울산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로 212	010-3552-2617	신덕균	
63	T.Land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자수정로 170	010-9966-0531	손종호	
64	화성열차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남창동)	031-290-3622	염태영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65	노리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번길 20 (매산로 1가)	010-6444-2225	서금자	
66	디스코팡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갯매산로 71번길 31 (매산로 1가)	010-8627-1278	김혜윤	
67	화정디스코팡팡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회신로 272번길 38, B01호	010-6791-6549	김향숙	
68	라페팡팡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1, 302호 (장항동, 라페스타 F동)	010-7625-1181	박철호	
69	일산디스코팡팡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장항동, 장항동 이스턴시티 153-1호)	031-902-1998	강승현	
70	(주)뽀로로파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킨텍스 제2전시장 1층 일부 (대화동)	070-4343-2832	김일호	
71	메이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031-961-6485	공희연	
72	아이노리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010-9136-8670	김미정	
73	(주)포디에이플러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2099, 2100호 (대화동)	1577-8990	한기장	
74	로만바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21-11번지	031-336-5560	박명근	
75	아쿠아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8-1번지	031-338-2001	장광수	
76	CLUB팡팡디스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25-1번지	010-7557-7751	박호인	
77	(주)부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	010-8008-3450	공성진	
78	안산노리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9 (고잔동)	070-4236-4441	김남인	
79	호수공원야외수영장 (안산도시공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3번지	-	정진택	
80	큰숲안양워터랜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석수동) 지하 2, 3층	031-474-5555	허재욱	
81	노리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15 (안양동) 지하	031-464-7218	김종근	
82	코코몽키즈랜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2, 7층 (호계동, NC백화점)	031-380-5471	강성민	
83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 879 (이패동)	031-560-1512	이기호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청소년수련관				
84	남양주종합촬영소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031-579-0624	김세훈	
85	라바파크 어린이비전센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1544-7721	김진희	
86	유기농테마파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81 (남양주유기농박물관)	-	이기호	
87	하피랜드	경기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483-26	1577-5752	백승호	
88	제부비치랜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25	010-6336-9293	박은석 외1	
89	디스크팡야	경기 평택시 중앙2로 13	010-8076-8877	김혜윤	
90	평택시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진위천시민유원지)	경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523	031-665-6231	손종표	
91	해피팡팡랜드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68번길 66	010-3179-3344	박성기	
92	제3땅굴	경기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산 183-1	031-940-8524	박완재	
93	평화랜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20-1	031-953-4448	이석명	
94	임진강리조트	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62-1	031-959-2222	김민선	
95	(재)경기영어마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9	031-956-2110	김희겸	
96	우리엔터테인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	031-634-0737	김민경	
97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파주시 문발동 645	052-960-2610	이원준	
98	소디프금강산랜드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89-1	031-945-2500	김선택	
99	레드글로브	경기 파주시 문발동 644	070-4423-8109	서기석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00	맥스팡	경기 광명시 오리로 856번길 26	010-5213-4279	남화정	
101	메리코라운드 (키즈씨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152번길 100, 3층	010-6663-8717	이경호	
102	(주)서브윌 곤지암리조트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031-8026-5231	이규홍	
103	디스코팡팡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번길 16	010-4354-1232	박호인	
104	(주)바이오피드백	경기 이천시 증리천로 115번길 45 (안흥동)	031-639-5210	문유선	
105	테르메덴	경기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988	031-645-2000	문영준	
106	팡팡디스코	경기 이천시 영창로 185 (창전동)	010-8008-3450	조양순	
107	티놀자 마장휴게점	경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82	1577-1898	이용현	
108	두리랜드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20	031-855-8515	임채무 외2	
109	디팡존	경기 구리시 검배로 12, 지층 (수택동)	010-5299-7719	손은아	
110	노리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9(신흥동, 2층)	-	이승우	
111	현대백화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백현동)	-	김영태	
112	삼영필택 의왕지사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월암동)	-	구경희	
113	농협중앙회 안성팜랜드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031-8053-7951	이일규	
114	산정랜드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11번길 83-78	010-9866-3751	김양금	
115	호수랜드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11번길 83-64	010-8503-5016	주영국	
116	신복리조트 스프링폴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571	031-536-4410	김경혜	
117	리버스랜드	경기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연양동)	031-886-1852	김조순	
118	브릭웍스	경기 여주시 명품로 360 (상거동, 프리미엄아울렛)	010-6267-5280	이금향	
119	위드엔터테인먼트	경기 여주시 명품로 360 (상거동, 프리미엄아울렛)	010-3011-5000	홍혜원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20	(주)양평레일바이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277	031-775-9911	유정선	
121	동원건설산업(주)	경기 과천시 광명로 181 (막계동)	02-3418-0996	김영현	
122	(주)꿈의동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261	031-581-0515	신동수	
123	(주)꿈의동산2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277	031-581-0515	신동수	휴업
124	별비치위터파크	경기 가평군 북면 먹골로 334	031-581-4999	용덕화	
125	가평레일카프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04-2	-	김찬용	
126	강촌랜드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88	033-261-4544	이정례	
127	(주)남이섬	강원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031-580-8119	전명준	
128	엘리시안강촌	강원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79	033-260-2996	임병용	
129	(주)강촌레일파크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83	033-245-1010	김찬용	
130	디팡	강원 춘천시 중앙로 67번길 4 (중앙로 2가)	010-8008-3450	공성진	
131	팡팡디스코	강원 강릉시 신대학길 32 지하 1층	010-8008-3450	공성진	
132	강릉정동진 레일바이크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17	061-363-9900	이건태	
133	하나엑스포랜드	강원 속초시 엑스포로 12-36	010-2110-3140	현병현	
134	속초놀이공원	강원 속초시 해오름로 169	-	김기춘	휴업
135	용연동굴	강원 태백시 태백로 283-29	033-550-2727	김연식	
136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강원 태백시 평화길 15	033-550-2797	류정대	
137	알파인코스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033-590-7926	함승희	
138	유로번지놀이동산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010-8983-7395	박순자	
139	(주)강원랜드수영장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033-590-7445	함승희	
140	고석정랜드	강원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033-455-1817	배영수	
141	용평리조트 마운틴코스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7-3	033-330-8227	정창주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42	알파인코스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70-2	033-339-0311	신만희	
143	재미있는놀이동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97-2	010-8744-3556	김중기	
144	썬모터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03	010-3030-1618	김민호	
145	(주)대명레저산업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033-439-7101	안영혁	
146	(주)같이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010-6390-3499	이창훈	
147	인테나르사파크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81	031-461-0142	박성근	
148	아이파크콘도	강원 고성군 토성면 고성대로 75-16	033-635-9300	김재식	
149	(주)대명레저산업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1158-4888	안영혁	
150	(주)대명레저산업 양양지점	강원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678	033-670-3656	안영혁	
151	낙산랜드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2-25	010-5427-8352	김규성	
152	우암어린이회관 내 유기장 (쥬이랜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명암동)	010-5468-9011	장충기	
153	우암어린이회관 내 회전목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명암동)	010-8540-6581	권혁기	
154	노리존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10 (북문로 2가)	043-223-0771	박원석	
155	(주)삼다도 로하스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39, 301호	-	손홍선	휴업
156	충주호 리조트놀이동산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 53번지	010-3708-3315	방명순	
157	디팡존	충북 충주시 성서3길 16	010-5315-7754	반영주	
158	의림지파크랜드	충북 제천시 의림지로 24	043-646-0002	이재광	
159	의림지놀이동산	충북 제천시 의림지로 30	043-642-4508	김준경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60	리솜아쿠아존	충북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043-649-6020	서환석	
161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 18-1	043-540-3218	정상혁	
162	대명레저산업 단양	충북 단양군 삼봉로 187-17	043-420-8353	안영혁	
163	단양미니파크	충북 단양군 삼봉로 187-17	010-5509-6565	이귀복	
164	(주)한빛씨에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30-843)	041-557-8020	박상규	
165	디스코팡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0길 15	010-8008-3450	손은아	
166	즐팡디팡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28 (천안문 빌딩 지하 1층)	070-4104-2005	성정현	
167	키즈올랜드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5, 펜타 포트 에이동 지하1층	-	정주식	
168	공주휠밀리랜드	충남 공주시 의당전의로 153-9	041-853-4373	윤수기	
169	(공공시설)곰나루 어린이수영장	충남 공주시 백제큰길 2104 (웅진동 437)	041-840-2194	주진영	
170	대전레일바이크	충남 보령시 옥마벚길 64 (명천동)	041-936-3630	김충수	
171	보령머드축제	충남 보령시 머드로 123 (신흥동 2268)	041-930-3882	김동일	
172	(주)파라다이스 도고지점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041-537-7140	이혁병	
173	아산레일바이크(주)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99-7	041-547-7882	황윤하	
174	온양디스코팡팡	충남 아산시 온양역길 48	010-7131-3000	최병선	
175	현충사관리소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041-539-4614	최이태	
176	대둔산빌리지펜션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길 58	041-734-0926	최희석	
177	(주)삽교호놀이동산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3길 15	041-362-6103	윤경수	
178	서대산드림리조트 (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로 247	041-753-2662	김종준	휴업
179	롯데부여리조트(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041-939-1135	송용덕	
180	롯데쇼핑 부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7	010-2750-6255	박시성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81	리버사이드파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3-1 (장산로 855번길 13)	041-957-0525	이봉환	
182	금강랜드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3-1 (장산로 855번길 13)	041-956-0222	전정식	
183	드림월드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3-1 (장산로 855번길 20)	041-956-0367	전태희	
184	금강엘빙타운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3-1 (장산로 855번길 36)	041-956-2055	이문숙	
185	덕암스파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527-2	041-953-4888	임채선	
186	스파캐슬천천향1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61, 362	041-330-8056	서환석	
187	스파캐슬천천향2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64, 355-1	041-330-8056	서환석	
188	대성아이디씨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47	-	김두세	휴업
189	만리포비치랜드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1길 112	010-4451-3766	국광호	
190	전주드림랜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04	063-275-4900	김일권	
191	전주노리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34 (고사동)	063-285-1495	시우진 외1	
192	금강랜드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53	063-453-1525	이준국	
193	남원랜드	전북 남원시 양림길 53-13 (어현동)	063-632-6070	오경태	
194	모악랜드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76-39	063-548-3001	최두환	
195	오투아일랜드	전북 김제시 승암길 13	063-545-5269	양천두	
196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063-322-9000	이중근 외2	
197	뉴잉글랜드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063-322-0702	오주련	
198	무주놀이랜드	전북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30	063-322-7751	이장호	휴업
199	(유)사선대해피랜드	전북 임실군 관촌면 춘향로 3441-26	010-6377-7352	한금채	
200	석정휴스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063-560-7582	이종균	
201	고인돌박물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676	063-560-8663	박우정	
202	대명 아쿠아월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063-580-8771	안영혁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203	해나루가족호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변길 73	063-580-0912	홍성춘	
204	칠보물테마유원지	전북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	-	정읍시장	
205	외달도해수욕장	전남 목포시 외달도길 72 (달동)	061-270-3513	박홍률	
206	디스코팡팡 (프롬씨드)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39-1	010-6286-5570	김은영 외1	
207	여수시오동도 관리사무소	전남 여수시 수정동 1-2번지	061-659-1821	주철현	
208	여수해양관광개발	전남 여수시 만흥동 141-2번지	061-652-7882	황윤하	
209	주식회사 영천레포츠	전남 여수시 덕충동 2005번지	061-666-2626	김연식	
210	노리존 순천점	전남 순천시 별미길 18 (1층)	061-751-2243	소미순	
211	(주)순천에코트랜스	전남 순천시 강변로 435 (오천동)	061-740-0630	남기형	
212	(주)담양조이플 테마파크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로 146	061-381-1700	박천기	
213	코레일 관광개발 섬진강 레일바이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877	061-363-9900	이건태	
214	코레일 관광개발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061-363-9900	이건태	
215	기차마을 드림랜드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45-5번지	063-363-8977	정승기	
216	기차마을(주) 네츄럴로드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010-3070-3888	전승일	
217	기차마을 곡성레저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010-3721-7280	이향	
218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요술랜드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061-360-8635	유근기	
219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4D영상관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061-360-8635	유근기	
220	울포해수욕장	전남 보성군 회천면 우암길 8	061-850-5953	이용부	
221	도곡가족스파랜드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88	061-374-7600	조성현	
222	그린랜드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01-5	061-375-5515	조희자	
223	스파리조트안단테	전남 장흥읍 안양면 수문리 7	061-862-2100	김은숙	
224	자연이좋은사람들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25번지 1	061-433-4445	김봉옥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225	덕룡산행복마을 영농조합법인	전남 강진군 도암면 봉향로 617	010-4064-5591	김창수	
226	기찬랜드 실내물놀이장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의촌길 14-17	061-471-8500	조미정	
227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전남 무안군 일로읍 북룡리 243	061-450-5863	김철주	
228	(주)하니비테마랜드	전남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1398-77	062-323-4059	김길수	
229	함평엑스포공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근재로 27	061-320-2203	윤익한	
230	엑스포랜드	전남 함평군 함평읍 근재로 27	010-9073-0885	한봉춘	
231	나비랜드	전남 함평군 함평읍 근재로 27	010-6511-7160	장순미	
232	영광테마파크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057	061-353-7778	여정원	
233	유정랜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산 137-2번지	-	유정애	
234	포항랜드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580	010-5445-1472	김세현	
235	포항북부비치랜드	경북 포항시 항구동 17-129	-	정현주	휴업
236	(주)대명레저산업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12	054-778-8353	안영혁	
237	(주)MOD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	-	배성배	휴업
238	(주)한화리조트 경주	경북 경주시 북군동 30-3	054-777-8400	심경섭	
239	우양산업개발(주) 힐튼경주	경북 경주시 보문로 484-7	054-740-1601	조영준	
240	디스코팡팡	경북 안동시 대안로 177 (운흥동)	010-7777-6663	정우현	
241	조합법인 덕곡발전위원회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239	-	김병환	
242	노리존	경북 구미시 문화로 44 (원평동)	011-526-2832	강승구	
243	소백산풍기 온천리조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400	054-604-1700	김명윤	
244	장수조이월드	경북 영주시 장수면 충효로 2032번길	010-4258-5149	송종박	
245	경천대어린이랜드	경북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3-3	054-536-3686	오옥화	
246	워터파크편편비치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구길 23	053-817-5500	정한태	
247	경산스파월드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305-61	053-811-1700	정판임	
248	청도랜드	경북 청도군 회양읍 이슬미로 272-23	010-8574-4712	이동혁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249	봉화워터파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2길 81	010-6785-6786	이정환	
250	용호디스코팡팡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9번길 14, 지하 1층 (용호동)	010-5526-0301	김경원	
251	디팡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1 (중앙동, 올림픽호텔 지하 2층)	055-284-0887	오옥희	
252	홈플러스 놀이동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56 홈플러스 6층	055-255-6091	최희상	
253	디스코팡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31 지하1층	010-8008-3450	공성진	
254	진주랜드	경남 진주시 남강로 1번길 112	055-746-4431	김영희 외1	
255	남강레저산업	경남 진주시 내동면 망경로 13회 60필지	055-758-0101	서원	
256	야타!디스코팡팡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32	010-4953-1415	한명갑	
257	진양호캐리비안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3642	055-853-7500	하갑진	
258	(주)남일대리조트	경남 사천시 남일대길 70 (향촌동)	055-833-0630	이자현	휴업
259	사천온천랜드 워터파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청골길 126	055-855-1500	이영경	
260	김해가야테마파크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파크길 161	055-340-7155	김맹곤	
261	당항포랜드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055-673-1502	황학기	
262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055-673-3964	최낙창	
263	한려개발(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542-35	055-867-4510	한대섭	
264	대도파라다이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5	055-882-9555	이원식	
265	옥종불소유향천 워터파크	경남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73	055-884-5954	김정규	
266	우두령펜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어인안길 56-111	010-3535-6281	허길용	
267	영프라자	제주 제주시 임항로 17 (건입동)	010-3606-5501	김사규	
268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064-786-8255	현명관	
269	(주)더원 에코랜드	제주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064-802-8163	정우석	
270	(주)블루시티홀딩스 제주지점(재밋섬)	제주 제주시 중앙로 14길 18 (삼도이동)	064-757-0500	김정훈	
271	제주레일파크(주)	제주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로 641	064-783-0033	고영수	
272	팡팡디스코	제주 제주시 신성로 13길 9, 지하 (이도	010-7178-0426	공판출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이동)			
273	한국공항(주) 제주민속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064-787-4501	김재건	
274	(주)대한항공 정석항공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554	064-780-0312	지창훈	휴업
275	부국개발(주) 여미지식물원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2920	064-738-3828	남상규	
276	산방산랜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 길 24-32	010-2898-8624	양시경	
277	(주)보광제주 휴닉스아일랜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064-731-7912	홍정화	
278	피오디코리아(주)	제주 서귀포시 법환상로 2번길 97-13 (법환동)	064-739-7707	장지명	
279	(주)아쿠아랜드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064-739-1930	김종운	
280	(주)롯데호텔제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064-731-4170	송용덕	
281	제주코코몽 에코파크(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1	064-764-7777	임미숙	
282	금호리조트(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2-12	064-766-8070	박상배	
283	(주)대한항공 정석비행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064-780-0312	지창훈	
284	산지물 물놀이장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71 (동홍 동)	064-760-4695	서정현	





## 10. 주요 기관 연락처



## 유원시설업 주요기관 연락처

정책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연락처	전화번호 : 044-203-2832 팩스 : 044-203-3479
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원시설안전센터	
	주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금정동 689-29)
	연락처	전화번호 : 031-428-8490 ~ 2 팩스 : 031-459-9706 이메일 : aasc@ktc.re.kr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연락처	전화번호 : 02-2669-8469 팩스 : 02-2669-8420
단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6 은혜빌딩 4층
	연락처	전화번호 : 02-884-2863 ~ 5 팩스 : 02-884-2866 이메일 : kaapa85@empas.com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강 석 원 과 장  
   김 은 희 사무관  
   고 희 영 주무관

수행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환경산업본부  
유원시설안전센터              서 상 근 센터장  
   한 태 희 팀 장  
   임 경 환 팀 장

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 훈 성 부연구위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강 정 구 사무국장  
경기도 부천시청                      석 상 균 팀장  
강원도청 관광개발과              홍 성 정 주무관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곽 두 환 수석

##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

---

인 쇄 : 2016년 3월 1일

발 행 : 2016년 3월 1일

발 행 처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

본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은 향후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매뉴얼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사할 수 없음.